



근현대 한일관계의 제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편 46



동북아역사재단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발간사

동북아역사재단은 근래 격화된 바 있는 한·중·일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사갈등 문제 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동북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상리공생(相利共生)과 평화공영을 도모하는 데 일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주로 한·중·일 3국이 겪고 있는 여러 역사 관련 현안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종 연구·교육사업과 국제교류, 출판활동 등 다양한 사업과 지원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내부 연구활동과 더불어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우리 역사·영토·영해 관련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계의 학술적 기반 강화를 지원하여 수준높은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임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동북아역사재단이 2008년에서 2009년에 걸쳐 공모, 선정하였던 한일관계 관련 연구과제 7편의 결과물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기획연구총서로 간행하는 것입니다.

본서에는 조선총독부 발표 통계의 허구성을 지적한 연구는 물론, 국제법적 측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한 논문과 전후 해외 귀환자에 대한 한일 양국의 지원법을 비교한 연구, 일본 만화와 일본 주요 언론 등 매스미디어 분석, 또한 한일 간 역사갈등 구조의 현상을 점검하고 그 해소방안을 검토한 연구, 동북아시아의 역사갈등 대응과 재미 한인 네트워크를 분석한 글 등 다양한 분야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들은 전체적 연결맥락이 다소

4 근현대 한일관계의 제 문제

부족하다 하더라도 한일 간의 갈등구조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일 간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책이 한국 근현대사의 미해결 과제를 재검토하고, 한일관계의 미래를 진지한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일 양국 사이에 쌓인 여러 현안과 미해결 과제는 일조일석에 해결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차분하게 노력해간다면 점진적으로나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책은 현재 한일 양국 사이에 놓여 있는 여러 문제의 이해와 해결방안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은 한·중·일 사이에 쌓인 여러 역사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책을 발간하여 동북아시아의 갈등 해소와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 그리고 질정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셔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신 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책을 개괄하고 총론 격인 '책머리에'를 집필해주신 류승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좋은 책을 만들어주신 출판사 및 재단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10년 12월 7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정재정

발간사 5

책머리에	11
● 중일전쟁시기 조선총독부 발표 폐품수집 통계의 허구성 김인호	
I. 머리말	19
II. 폐품회수 정책의 개요	23
III. 전국 단위 회수실적의 허구성	29
1 _1938년 실적이 정말 1,000만 원 이상이었나?	29
2 _신문사별 통계 숫자 차이 : 『동아일보』의 기재 오류	32
3 _총독부 발표의 두 가지 모순	33
4 _〈기타〉 항목의 실체는 무엇인가?	34
5 _실제 회수량 추정	38
6 _왜 조작했을까?	41
IV. 도 단위 회수실적의 과장	44
1 _경기도 : 6개월 만에 1년치 전국회수고의 절반?	44
2 _평남 : 평남만 조선전체의 29% 수거	46
3 _강원도 : 경찰부장의 통계와 신문보도가 다른 1938년 실적	47
4 _황해도 : 실적, 갑자기 4배로 뛰다	50
5 _충청 : 거품이 많은 충남, 거품이 적은 충북	51
6 _거품의 규모 추정	52
V. 부·군 단위 회수 규모의 실제	53
VI. 맺음말	56
●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규명과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연구 장복희	
I.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배경과 현황	63

1 _위안부제도의 역사	63
2 _일본의 태도	64
3 _한국의 입장	67
4 _미해결 상황	68
II.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실제	71
1 _구조적인 성폭력	71
2 _강제노동	73
III. 관련 국제법규	74
1 _일본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	74
2 _1907년 헤이그협약 : 전쟁범죄 위반	76
3 _인도에 반하는 범죄	79
4 _1946년 극동국제군사재판소 도쿄현장	81
5 _1949년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81
6 _1993년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1994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및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82
7 _전쟁범죄로서의 강제불임 · 강제낙태	82
8 _성노예 위안부 법정	84
IV. 군위안부에 대한 일본 사법부의 대응	85
V.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설치와 여성의 역할 -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를 중심으로	87
VI. 해결방안	91
1 _입법적 해결 : 관련 특별법 제정	91
2 _사법적 해결	93
3 _진실규명위원회 설치	95
4 _한일 간의 법적 · 외교적 노력	95
VII. 맺음말	96
1 _군위안부제도의 실제와 일련의 결의	96
2 _일본 정부의 책임	97
3 _국제법에 근거한 성인지적 · 여성 참여적 해결	98

• 전후 해외 귀환자에 대한 한일 양국의 지원법 비교연구 이연식

- 입법의 역사적 배경과 성격을 중심으로

I. 머리말	107
II. 한일 양국의 분리와 본토귀환	109
1 _귀환의 역사적 성격	109
2 _양국의 귀환자 규모	115
3 _구 거류지의 귀환환경	120
III. 귀환자에 대한 양국의 인식과 구호 논의	130
1 _귀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130
2 _귀환자 정착원호에 관한 논의	136
3 _정착을 위한 귀환자의 자구활동	141
IV. 한일 양국의 지원법 비교	145
1 _법제의 입법배경	145
2 _법제의 주요 내용	154
3 _법제의 특징과 문제점	160
V. 맺음말	167

•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보수주의 담론과 만화 전략 강기철

I. 머리말	179
1 _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179
2 _선행연구	185
3 _분석방법	187
II. 고바야시의 보수주의 담론	188
1 _과거 전쟁의 신화 분석	189
2 _'전후 민주주의 부정'의 신화 분석	194
3 _'공'과 '개'의 신화 분석	197

Ⅲ. 고바야시의 만화 전략	201
Ⅳ. 맺음말 - 전망과 과제	213

• **일본의 언론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관계** 조규철·김춘식·강태웅·오일환
 -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의 사설 내용분석(1965~2007)을 중심으로

Ⅰ.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219
Ⅱ. 연구문제	222
Ⅲ. 연구방법	224
1 _분석대상과 자료의 수집	224
2 _분석유목	226
3 _코딩절차와 자료의 분석	227
Ⅳ. 분석 결과	228
1 _개관	228
2 _논조	233
3 _기사의 주제	238
Ⅴ. 결론	268

• **한일 간 역사갈등의 구조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최석완
 - 근대국가 성립기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277
Ⅱ. 1950~1960년대의 연구(일본)	280
Ⅲ. 1970~1980년대의 연구(일본)	288
Ⅳ. 1990~2000년대의 연구(일본)	293
Ⅴ. 1950~2000년대의 연구(한국)	300

VI. 갈등의 구조와 해소방안의 모색	304
VII. 맺음말	312

• 미국 내 한인들의 동북아시아 역사 갈등 대응 류승렬

I. 머리말	323
II. 미국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324
III. '요코 이야기' 교재 퇴출	331
IV. 독도 지명 표기 변경 저지	342
V. 역사 현안 대응의 특징	350
VI. 맺음말	356

찾아보기	360
------	-----

• 책머리에

본서에 실린 7편의 논문은 별개로 준비된 관계상 서로를 연결해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일관계의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의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다. 각 논문의 문제의식과 중심 논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인호의 「중일전쟁시기 조선총독부 발표 폐품수집 통계의 허구성」은 1938~1939년 총독부 식산국이 발표하여 각 신문매체에서 기사화한 폐품회수 통계의 허구성에 관심을 갖고 이 시기 통계를 분석한다. 당시 통계가 실제 내용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왜곡된' 통계였다는 점과 총독부와 지방관청이 매체를 통해 '실제'를 숨기고 '조작된' 실적을 전파하여 자신의 '통치 성적'을 과장하려 했음을 밝히고 있다. 총독부는 실제 실적을 은닉하고 가공의 숫자를 조작하여 각종 신문매체에 공표함으로써 실제와는 다른 왜곡된 통계가 조선인들에게 전달되었고, 거기에는 폐품회수에서 조선인의 자발성을 고취하려는 총독부의 '불순하고 수탈지향적'인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점, 폐품수집 통계가 대표적 수탈정책이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장복희의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규명과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연구」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실체와 역사를 재검토하여, 일본이 공약한 국제법에 따른 국내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안부 문제의 진실규명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21세기 전시 여성에 대한 조직적인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

다. 위안부 제도와 같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전쟁범죄는 처벌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혹은 적어도 공식적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기본적인 정의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 개념의 실현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21세기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제 재판소와 국내 재판소의 결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한다. 장 교수는 결론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실체와 일련의 결의, 일본 정부의 책임, 국제법에 근거한 성 인지적·여성 참여적 해결의 세 가지 지향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연식의 「전후 해의 귀환자에 대한 한일 양국의 지원법 비교연구」는 광복·패전 후 한국과 일본 양국이 각기 '피지배자'와 '지배자'라는 상반된 입장에 있던 귀환자들에 대해 왜 '피해자'라는 일면적 인식을 지니게 되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역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약 50년의 시차를 두고 입안된 일본의 귀환자 지원법과 한국의 지원법에 대하여 입법 배경, 최종적으로 한일 양국의 입법 조치와 그로 인한 보상, 지원 행위가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역사인식이라든가 전후 책임, 전후 보상에 대한 인식과 어떠한 함수관계를 맺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전쟁피해자론'의 담론구조와 사회적 확산과정에 대하여 용어, 용례분석, 인식론적 특징, 사회적 인식의 실상, 담론의 공식화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양국의 지원법은 기본적으로 전후 형성·재편된 국민국가의 자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전쟁 책임을 추궁하거나 지원 행위의 역사적 연원을 담아내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향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직후 입안된 전상병자, 전몰자 등의 유족원호법, 군인은급법과의 비교를 통한 '전후 보상법제'라는 보다 큰 틀의 동원피해자 지원법에 대한 조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강기철의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보수우익 담론과 만화 전략」은 일본의 인

기 만화가인 고바야시 요시노리가 ‘사회적 사상가’로서 활동한 1992년 이후에 관심을 갖고 그의 가장 대표적인 만화 작품인 『전쟁론』을 텍스트로 하여 대중적으로 성공하게 된 독특한 만화 전략을 분석하고, 나아가 만화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보수주의 담론을 분석한다. 고바야시 요시노리는 만화 속에서 생산해내는 소위 ‘한일병합’이나 위안부 문제 등과 같은 한일 역사왜곡과 전쟁관을 통해 보수세력 결집의 ‘사회적 사상가’로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고바야시는 젊은 세대에게 친숙한 만화 문화를 통한 보수논리 주체의 확대 재생산을 추구한다는 목표로 만화가, 대학교수 등 문화인과 지식인들의 결집과 연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감으로써 ‘국가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신들의 생각과 입장을 국민들을 상대로 은연중에 전달하고자 한다. 그가 교묘하고 은밀한 활동을 펴는 전략적 접근법에 따르고 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고 한다.

조규철 외의 「일본의 언론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일반 대중의 역사인식 변화에 명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역사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보다도 신문·잡지, 텔레비전, 상업출판과 같은 언론, 저널리스트들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1965년부터 2007년까지 약 43년간을 대상으로 일본의 신문 중에서 신문의 발행부수와 영향력,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차원을 고려하여 진보, 우익, 그리고 중도 성향을 띠는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의 사설에 나타난 한국의 근현대사 관련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통계와 신문 간의 논조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의 결과 산케이신문은 부정적 논조를, 아사히신문은 긍정적 논조를 그리고 요미우리신문은 중립적 논조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신문의 논조는 기존의 연구가 제시한 결과와 일관되지만 이를 통해 기존의 인식을 장기간을 대상으로 확인하고 있다. 더구나 요미우리신문 및 산케이신문보다 진보적인 언론으로 아사히

신문이 이들 두 신문보다 과장된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되새길 만하다.

최석완의 「한일 간 역사갈등의 구조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근대국가 성립기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의 이면에는 양국 역사학계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역사교과서 집필자들의 보수적 성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 한 후, 일본의 보수단체가 발행한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일본 역사학계의 어떠한 연구동향 속에서 등장한 것인지,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두 교과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후 일본 역사학계에서 통설로 자리잡은 진보주의 역사학 및 그 후 보수주의 역사학의 연구가 점차 이를 극복해가는 양상을 살핀 후, 근대국가 성립기의 경우 문제는 팽창주의론과 비팽창주의론 모두가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시키는 데 집중할 뿐 상대의 연구방법론이나 사료의 취사선택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려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류승렬의 「미국 내 한인들의 동북아시아 역사 갈등 대응」은 최근 재미 한인들이 미국에서 동북아시아 역사갈등과 관련하여 전개한 일련의 일들을 되짚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H. Res. 121) 통과, 소위 '요코 이야기'의 교재 퇴출, 미국 의회도서관의 주제어 변경 저지 및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지명 표기 변경 철회 등은 재미 한인들의 적극적 대응이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이러한 활동에 대한 체계적 정리나 연구가 없다는 인식에서 문제에 접근한다. 본론은 세 가지 사안에 대응하여 재미 한인들이 전개한 일련의 움직임을 심층적으로 검토, 정리하면서 핵심 역할을 한 중심인물들과 관련 조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다. 세 사안에서 '평화와 인권'이란 보편적 명제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이해가 일치됨을 강조하고,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자기 권리를 주장한 공통점을 찾는다. 아울러 풀뿌리 운동에 기반을 둔 재미 한인들의 탄탄한 네트워크가 막대한 물량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한 로비에 대항할 수 있는 결정적 무기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상으로 본서의 7편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였다. 다소라도 연관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대별해본다면 일본 내의 우경화 및 우익적 흐름, 그리고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관심과 해결 방안에 대한 것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익담론과 만화의 관련, 일본 언론에 나타난 한일관계, 한일 역사갈등의 구조를 반영한 역사 연구 등은 한일 역사갈등의 뿌리가 되는 일본 내 우파적 인식의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재미한인의 역사갈등 대응, 위안부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제법적 해결, 전후 한일 귀환자에 대한 지원법 연구 등은 관련 사안들이 한일 양국 간을 넘어 국제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환기시켜주고 있다.

본서에 실린 글들을 통하여 한일 간에 놓인 과거사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리와 공통의 인식을 마련하는 일이 양국 간의 원만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한일 과거사 문제의 해결이 인류 사회의 공동 번영과 평화의 실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마련하는 첩경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들의 바람일 것이다. 한일 간의 역사갈등 해소와 관련하여 “특히 역사상 과거 인권침해를 매듭짓지 않고서는 그 공동체의 도약은 있을 수 없다. 일본이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진정한 모범국으로서 선도하기를 원한다면 국제법을 준수하는 일본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새삼 되새기고 싶다.

2010년 12월

필자들을 대표하여 류 승 렬

책머리에 15



중일전쟁시기 조선총독부 발표 폐품수집 통계의 허구성

동의대학교 김인호

- I. 머리말
- II. 폐품회수 정책의 개요
- III. 전국 단위 회수실적의 허구성
- IV. 도 단위 회수실적의 과장
- V. 부·군 단위 회수 규모의 실재
- VI. 맺음말



중일전쟁시기 조선총독부 발표 폐품수집 통계의 허구성

동의대학교 김인호

I. 머리말

조선총독부(이하 '총독부'로 약칭)가 의도하던 개발의 환상이 그들의 통계 속에 고스란히 투영되었을 것이라는 선험적인 신념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일부 연구에는 총독부(각급 관청, 관변)에서 생산한 식민지 관련 통계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있다. 그것을 통하여 국민소득 추계를 내기도 하고 경제성장률을 제시하는 등 식민지시대 경제개발의 증거로 삼는 데 여념이 없다. 예를 들어 “식민지 기간 동안 1인당 소득 연성장률 2.3%, 소비지출 연증가율 1.9%로 당시에 이미 근대적 경제성장 국면이 증명되었다”¹⁾ 등의 연구가 그런 부류이다. 그러한

1) 주익중(2006), 「식민지 시기의 생활수준」,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1)』, 책세상, 142쪽. 그 밖에도 김낙년(2006), 「식민지시기의 공업화 재론」,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1)』, 책세상; 주익중(1998), 「일제시대 사회통계 2-경제성장 추계(지출면)」, 『한국현대사연구』 제1권 제2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現代史研究所, 125~163쪽; 차명수(2002), 「우리나라의 생활수준 1700~2000」, 『한국경제성장사』, 서울대학교출판부 등 대량의 뉴라이트 계열 혹은 유사자유주의 계열의 연구가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치밀한 허구’는 탈민족주의(脫民族主義)라는 작금의 풍설에 힘을 얻고 나아가 국사학자로서는 좀처럼 이겨내기 어려운 계량경제학 기법마저 가미되면서 더욱 맹위를 떨친다.

그럼에도 아직 국사학계는 그들의 통계 조작 — 의도되었든 아니든 — 을 대신할 새로운 형태의 분석 틀을 구축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그들이 다루는 통계의 원래 주인이 그 통계에 과장되고 왜곡된 의도를 가미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정교한 이해가 있어야 할 시점에 왔다. 그렇지만 총독부가 자신의 어떤 정당성(그것이 동원이면 동원, 통치면 통치)을 위해 생산한 통계 이면에 자리한 그들만의 왜곡을 찾아내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명규·서호철의 연구는 의미심장하다. 그들은 일제하 일본의 인구조사 통계를 분석하면서 일본은 근대적 통계체제를 조선에 적용하면서도 그들의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영역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고, 그들의 통치에 불리한 내용은 극비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²⁾ 따라서 통계 자체는 이미 총독부 자신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통치 그 자체의 필요성 혹은 통치 성적의 홍보라는 특별한 목적에 조응하고 있었다.

이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를 비롯한 식민지 관부가 생산한 각종 통계지표나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그것이 신문 등 대중매체에 공표되는 과정에는 심각한 통계조작과 과장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바로 그러한 조작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1940년 딱 한 번 식산국에서 발표하고 그 이후로는 발표하지 않은 폐품회수 통계였다. 폐품회수는 중일전쟁 시기 점점 심각해지는 원료난에 대응하여 조선인들의 자발적인 헌납을 통해서 자원을 염출하자는 논의에서 출발하여 이후 1940년부터는 금속회수가 중심적 역할

2) 박명규·서호철(2003), 『식민권력과 통계』, 서울대학교출판부.

을 담당하게 되고, 1944년 이후에는 설비나 시설회수 등이 이어지면서 조선인의 생활물자까지도 전쟁에 동원하였던 대표적인 수탈정책이었다. 이렇듯 회수라는 언술 이면에는 총독부의 강권적 물자 동원 은폐와 조선인의 자발적 회사(喜捨)라는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회수의 결과물인 통계는 그러한 정치적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고, 급기야 통계조작까지 자행하게 된 것이다.

폐품회수 통계에 대한 최초의 문제제기는 김인호에 의해 이루어졌다.³⁾ 이 연구는 중일전쟁 시기 조선총독부와 관변단체가 추진한 일련의 폐품회수정책 및 운동이나 수집 내역의 전체상을 연차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당시 무엇보다 엄격한 통계관리를 표방했던 조선총독부조차 각 지방의 과장통계에 더하여 자체적인 허위통계를 생산했다는 점을 제시하고 『동아일보(東亞日報)』와 『식은조사월보(殖銀調査月報)』에 제시된 전국적인 폐품통계는 실은 대대적인 허위 과장통계의 결산이며, 실제로는 형편없는 실적으로 인해 소기의 회수실적을 내지 못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오류를 남겼다. 첫째, 당시 『동아일보』 기자가 식산국 발표에 나오는 각종 항목별 통계에서 심각한 오기가 있음을 보지 못한 채, 『식은조사월보』 자료의 부실을 과장하고 『동아일보』와 『식은조사월보』 간의 항목별 액수 차이만을 부각하여 발표의 허구성을 강조했다. 이에 1939년의 경우 1,196만 원이 아니라 935만 원, 1938년은 그보다 적은 753

3) 본 연구에서는 폐품통계 발표자료의 왜곡이나 오류, 불완전성을 집중적으로 타진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 기반이 되는 당대 폐품회수 정책의 일반적 흐름과 정책 내용 그리고 시기별 변화와 통계회사, 당대 사람들의 반응, 재생회사 등에 대한 설명은 개요 정도로 국한하고 자세한 것은 김인호(2008), 「중일전쟁시기 조선에서의 폐품회수 정책」, 『한 국민족운동사연구』 57을 참조하기 바란다.

만 원 정도 회수한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이 추계는 실제 식산국 발표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과도한 선입견이 작용하였다. 이후 면밀한 자료 확인에서 『매일신보(每日新報)』와 『식은조사월보』 내용이 당일 식산국이 발표한 내용과 일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가 제시한 1939년 935만 원 설은 근거를 잃었다. 나아가 『매일신보』나 『식은조사월보』에 나온 통계조차도 여러 면에서 의심스럽다. 특히 총량과 금액 간의 격차나 <기타> 항목의 과잉포장 등의 문제점이 그것이다. 따라서 기왕의 『동아일보』 기록의 부실과 더불어 『식은조사월보』나 『매일신보』에 나온 각종 통계 숫자의 '조작'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각 도별(道別) 보고내용도 다양한 왜곡이 있었다. 기왕의 연구가 신문에 나타난 단편적인 내용으로 전체 폐품회수 과정에 어떠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각 도별 발표의 과장 정도를 타진하고 실적 추계의 명확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폐품회수 정책 추진과정에는 다양한 총독부의 기만이나 왜곡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38~1939년 식산국이 발표하여 각 신문매체에서 기사화한 폐품회수 통계의 허구를 밝히는 데 관심을 집중한다. 즉, 당대 관변 통계가 실제 실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왜곡된' 통계였다는 점을 밝히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그 위에 그렇게 총독부와 지방관청이 매체를 통해 '실제'를 숨기고 '조작된' 실적을 전파하여 자신의 '통치 성적'을 과장하려 한 근본적 이유를 탐문하고자 한다.

II. 폐품회수 정책의 개요

각종 신문을 보면 중일전쟁 이전에는 주로 ‘폐물’, 이후로는 ‘폐품’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이는 종래 재활용 의미가 강했지만 이제는 국가적인 원자재 수급불안 아래서 자원염출의 수단으로 ‘폐품회수(廢品回收)’가 강조된 결과였다. 즉 폐품회수는 폐품의 전시 동원과 같은 말이었다. 그럼에도 중일전쟁 직후에는 총독부가 직접 폐품회수를 발의하거나 추진하지 않았다. 이것은 1938년 4월 19일 오노[大野] 정무총감이 도지사회의에서 아직 총독부는 ‘강권적 폐품회수’보다 ‘계몽적 폐품이용’을 우선하겠다는 훈시를 한 데서도 나타난다.⁴⁾

이에 우선 관민합동의 자발적 폐품수집을 위해 1938년 3월 2일 경성폐물이용보국회(京城廢物利用報國會, 1938. 3. 2)가 결성되었다. 여기서는 일반인은 물론 고물상 업자와 학교, 경찰, 부청 관리 등 각 기관을 회원으로 삼았고, 사무실은 부청 총동원과에 있었으며 폐품을 위탁받아 매각한 후 국방헌금하는 일이 주된 역할이었다. 국민정신총동원주간(1839. 2. 11~17), 총후보국강조주간(1938. 4. 26~5. 2)이나 경제전강조주간(經濟戰強調週間, 1938. 8. 22~28) 등의 계몽주간에는 의례히 공공단체를 앞세워 폐품회수 시범활동을 독려했다. 특히 경제전강조주간에는 폐품이용가치 인식, 폐품 사장 또는 소각 금지, 폐품의 종류별 정리, 고물상으로의 판매 등 폐품회수가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⁵⁾ 즉, 관청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종래의 1호1품(一戶一品) 헌납운동을 넘어서 각 도 부·군·면에는 세포반(細胞班)을 설치, 가가호호 방문수거를 도모

4) 『朝鮮總督府 官報』(1938. 4. 20).

5) “經濟戰強調週間實踐要領 物資의 節約·愛用·利用”, 『東亞日報』(1938. 8. 12).

했다.⁶⁾

그러나 시국대책조사회(時局對策調査會, 1938. 8)를 전후하여 총독부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폐물매입인과 집하장 지정 등을 간접한 다든지,⁷⁾ 『시국대책조사회보고사항』에서 “물자수급을 위하여 수요 면에서는 폐품회수를 실시한다”⁸⁾는 등의 언급은 관의 개입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고⁹⁾ 1938년 8월 각도 산업부장회의에서 폐품의 국가적 회수와 중요물자 폐품회수강화책 등을 협의한 것은 본격적인 개입의 단초를 보인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폐품이용갱생회(廢品利用更生會, 1938. 12. 13)와 폐품이용갱생조합 등이 조직되었다. 여기서 갱생회는 각 부윤, 군수 위원 등 80여 명 그리고 각 부·군 갱생회원 등이 조직¹⁰⁾한 것으로 이전 보국회보다 훨씬 관의 영향이 증가한 조직이었다. 여기서 폐품회수의 통제지도 및 폐품회수 및 처리를 알선하였으며 강연회와 폐품갱생자원애호전람회 등을 주도했다.

1939년 1월에는 각도 산업과장회의에서 호즈미 신로쿠로(穗積真六郎) 식산국장은 폐품회수기관의 강화를 통한 회수증대와 전국적인 폐품회수를 강조하면

6) “一戶一品獻納運動 各道府郡 面에는 細胞班 두고 中央에 中心機關設置”, 『東亞日報』(1938. 8. 12).

7) “廢品回收強化 再生産工場 助成”, 『東亞日報』(1938. 8. 28).

8) 朝鮮總督府(1938), 「物資ノ需給及價格調整ニ關スル件」, 『時局對策調査會報告事項』, 11쪽.

9) “총독부 상공과에서는 폐품회수 및 그 당업자의 지도조장을 위하여 이미 예산까지 청구하였고 또 나가서는 조선의 고물재생산의 기업회사를 맡기하게 되기로 하였고 총동원연맹과 농촌진흥과 사회교육과 학무국 등이 협력하여 일대 폐품회수의 국민운동을 일으키기로 되었는데 실제착수는 이달 말 경 시국대책위원회의 성립과 동시에 시작되리라 한다”, “廢品の 愛護와 回收 再生産企業도 擴充”, 『東亞日報』(1938. 8. 12).

10) “京畿道廢品更生會活動”, “廢品回收 標語募集”, 『東亞日報』(1938. 12. 14, 1939. 7. 2, 1939. 10. 30).

24 근현대 한일관계의 제 문제

서,¹¹⁾ 철·동·양모 등 폐품회수 확대를 위하여 국민정신총동원조직을 활용한 전국적인 사장품 회수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¹²⁾ 이 조치는 사실상 기존의 폐품회수 계몽운동을 강제적 공출 및 동원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마침내 1939년 7월 1일 국민정신총동원 경성연맹(國民精神總動員 京城聯盟)은 연맹이사장대회를 열고 애국반(愛國班) 단위로 폐품회수를 지시하면서¹³⁾ 이후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나 정동(精動)조직에 의한 회수가 일반화되었다. 정동조직을 통한 회수는 늘 정신훈련과 폐품회수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¹⁴⁾의 의미가 부여되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1939년 8월까지의 구체적인 국가통제의 방침이 없었고, 지방관청이나 공공단체가 보국회나 이용조합을 통하여 회수실적을 올리는 방식이 지속되었다.

1940년에 들면서 종래 폐품을 넘어 고철류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철설(鐵屑: 쇠 부스러기), 비철금속설 및 폐품 매매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통제회사로 조선폐품통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전국적인 폐품회수의 일원화를 꾀하였다(1940. 9. 17). 이 회사는 겉으로 보면 민간업자들의 ‘종합’으로 이뤄졌지만 총독부가 파견한 사장과 전무 그리고 그들이 지정한 상무와 감사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실상의 일본인 중심 국책회사였다. 이러한 국책회사라는 의미는 회사 정관에서 더욱 뚜렷하다. 즉, 정관 제2조에서 폐품 및 금속 비철금속설의 판매는 조선총독부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 조항, 제24조에서 중역(취체역)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그리고 제25조에서 사장, 전무 및 상무의 선임은 물론 감사 역까지도 반드시 조선총독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고 효력이 있다는 조항을

11) 『殖銀調査月報』, 1940년 8월호, 94쪽.

12) 『東亞日報』(1939. 1. 24).

13) 『東亞日報』(1939. 7. 2).

14) “廢品回收에 萬全”, 『每日新報』(1939. 7. 1).

넣었다.¹⁵⁾

1941년 3월 (개정) 「국가총동원법」으로 폐품의 회수활용이나 물자징용을 확장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완비되었다. 그 결과 종래 특정한 군수품에 국한되던 물자징용이 이제는 광범한 범위의 ‘총동원물자’로 확장되었다. 그럼에도 회수를 직접 총독부가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한 민간기관으로서 행하게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장점”¹⁶⁾이라고 하여 총력운동조직을 폐품회수운동의 ‘주무기관화’하였다. 이후 폐품회수에 관한 일체의 기획이 연맹을 통해서 이뤄졌다.

1939년까지 회수방식은 가정에 남아도는 섬유나 종이 등을 폐품회수조합이 지정한 방문업자(고물행상)를 통해 수거하거나, 각 관청 공무원, 학교, 애국부인회 등 단체가 헌납이나 봉사활동으로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40년부터는 정동(精動)운동(총력운동)조직이 강화되면서 폐품회수 단위가 정(町)으로 일원화되고 애국반을 통한 회수가 중심을 이루었다. 또한 폐품회수일을 정하여 의무적으로 각 호(戶)마다 한 가지 이상 폐품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전에는 주로 각지로 순회하는 고물행상이 개입되었으나 1940년 이후에는 각 관청에서 허가하거나 계약한 업자가 담당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41년 이후 더욱 강화되었고, 종래 판매대금은 1939년까지 폐품이 주로 국방헌금이나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되었는데, 이후에는 정회 단위로 총력운동을 수행하는 경비로 이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경성부연맹 이사회는 1941년 9월 1일부터 부내 130여 개 정(町)연맹에서 애국일(愛國日) 상회(常會) 때 폐품을 가져오면 이것을 경성부가 지정한 고물상에 팔고 그 대금은 정연맹 이사장이 관리하

15) 京畿道 警察部長(1940. 10. 5), 「朝鮮廢品統制株式會社 創立 內紛에 관한 件」, 10쪽.

16) “廢品을 回收活用 物資徵用을 擴張”, 『每日新報』(1941. 2. 7).

〈표 1〉 1940년 당시 일본 상공성이 정한 폐품 분류와 해당 용도

구분	세목	용도
綿襪樓, 綿屑	현옷, 현셔츠, 현양말, 현실부스러기 裁斷屑, 落綿 등	펄프(스테이플파이버, 셀로판, 종이), 면사포, 방석솜
毛襪樓, 毛屑	현양복, 현털옷, 현털셔츠, 현털양말, 현모자, 裁斷屑 등	羅絲, 毛布, 帽子
紙屑	현종이, 현잡지, 현신문, 裁落紙屑 등	인쇄용지, 포장지, 종이주머니
古 고무	현고무신, 고무다비, 현고무타이어, 현튜브, 현고무 끈, 현고무공, 현麻裏 등	재생고무, 麻裏, 防眩材
屑鐵	古船體屑, 자동차해체屑, 古도단板, 현레일, 부리 끼설(함석설), 현철줄, 현철망, 현못, 현쇠냄비, 가마, 현칼, 기타 철제기구, 양철통, 파이프설	철망, 주물류
亞鉛屑	古도단板屑	아연地金, 眞鎔, 양은, 亞鉛末
鉛屑	古電池, 현활자, 사진필름포장, 鉛관설, 케이블설	鉛地金, 半田, 활자, 도료, 안료
錫屑	古錫器, 치약튜브, 과자포장, 함석屑	錫地金, 청동, 半田
동, 眞鎔	동관, 銅線屑, 古銅槌, 銅개와, 현철망, 電球口金, 쇠보단, 현그릇 등	銅地金, 眞鎔地金, 靑銅地金
알루미늄설	현장난감, 현물통, 현합, 현도시락 그릇, 현냄비, 현술	알루미늄地金
폐유	현기계유	기계유

출처 : 李健赫(1940), 『廢品回收에 對하야』, 『家庭之友』 30, 朝鮮金融聯合會, 13쪽에서 정리함.

며¹⁷⁾ 수익을 정회의 경비로 사용하기로 했다.¹⁸⁾ 또한 지정한 고물상만 회수하게 하고자 옛장수나 고물행상을 단속하고, 완장이나 행상감찰표 혹은 휘장 등을 부착하도록 했다.

폐품수집기관으로는 폐품조합이 최말단이었다. 물론 옛장수, 고물행상 등 무허가 조직이나 업자가 있었지만 이들은 곧바로 단속이 되고 업자들이 모인

17) “廢品回收運動強化”, 『每日新報』(1941. 8. 24).

18) “廢品回收方法決定”, 『每日新報』(1941. 9. 21).

자원회수협회(1938)를 시작으로 폐품회수조합(1939), 조선폐품통제주식회사(1940), 조선자원회수산업조합(1942) 등으로 확장되면서 대부분의 고물상을 폐품수집라인으로 포섭하여 폐품회수를 실행하였다.

가격 면에서 1939년부터 금속류보다 직물류 가격의 상승률이 높고, 단기간 급등하였다. 예를 들어 1939년 6월을 기준으로 중일전쟁 전에는 버려졌던 깡통류가 45전으로, 석유통은 25전에서 55전, 헌기름통은 8전에서 25전으로, 신문지는 40전에서 1관당 90전, 사이다병은 3전 5리에서 5전, 한되들이 빈병은 5전에서 10전, 소주빈병은 70전에서 1원 5전으로 등귀했다. 평균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¹⁹⁾ 반면 비철 및 금속류는 가격상승폭이 크지 않았지만 농촌을 무대로 이것을 수집하여 큰 이익을 내는 집단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39년 5월 10일자 『동아일보』에는 “철고물상(鐵古物商)으로 졸부(卒富)된 자(者) 다수(多數)” 제하의 기사에 “요즘은 철고물상계에 일대 호경기가 보이고 있다. 최근 각 도 각 도시 고물상인들은 철재(鐵材)값이 그렇게 몹시 등귀함을 잘 깨닫지 못한 농촌 각 촌락을 돌아다니면서 금속고물을 헐값주고 사다가 되팔이 하기에 빠르게 활동한 자는 불과 기일에 수백원식 이익을 본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²⁰⁾

폐품가격이 앙등하자 폐품수집은 돈이 되었다. 이에 고물상은 대부분 절도범과 연계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정행위가 일반화되었고, 고가의 폐품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엽장수나 회수조합원의 사기행각이 줄을 이었다. 광산 등 각 공장이나 사업장 소속의 종업원이나 행상 및 엽장수 등이 작당하여 공장에서 사용하는 철 등을 몰래 빼돌려서 고물상에 팔아넘기는 부정이 계속되었다.²¹⁾ 한편, 1939년 생산력확충계획과 함께 1942년까지 조선에 많은

19) “버린 物件更生 新品으로 利用”, 『東亞日報』(1939. 6. 7).

20) “鐵古物商으로 卒富된 者 多數”, 『東亞日報』(1939. 5. 10).

21) 고물상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김인호(2008), 앞의 글, 203~206쪽 참조.

재생공장과 회사가 설립되었는데, 공장 설립 시점은 1939년과 1942년이 많고, 회사 설립은 1939년과 1940년에 많았다.²²⁾ 이렇듯 폐품수집운동은 태평양전쟁을 전후하여 금속회수의 필요성이 고조되면서 금속에 비해 뒷전에 밀리지만 그럼에도 폐품회수는 일제 패망 때까지 계속되었다.

III. 전국 단위 회수실적의 허구성

1. 1938년 실적이 정말 1,000만 원 이상이었나?

총독부에서 발표한 폐품회수 통계는 현재 1938년과 1939년치가 『매일신보』와 『동아일보』, 『식은조사월보』 등에 부분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1940년 이후나 그 이전의 내역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1940년 이후에도 폐품을 회수했으나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고, 1940년대 이후는 금속회수 실적이 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전국적인 금속회수 통계도 폐품의 경우처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그나마 1938년 통계도 제대로 구색을 갖춘 발표가 아니었다. 이러한 한계를 안고 1938년과 1939년의 폐품회수 실적을 추적해보자.

먼저, 잡지나 신문 등에서 1938년 통계를 종합하면 표 2와 같다. 일단 주목되는 것은 강원도이다. 강원도는 수량 면에서 72만 관, 금액은 강원도 경찰부장 기록에서 28만 7천여 원. 그러나 『매일신보』(1939. 6. 13)에는 55만 2,419원

22) 김인호(2008), 앞의 글, 215~219쪽 참조.

〈표 2〉 1938년 폐품회수 실적

지역	수량	금액	출처
강원도	72만 관	28만 7천 원	江原道 警察部長(1939. 4. 11), 「廢品回收에 關한 業者의 感想報告」, 3쪽.
		55만 2,419원	“江原廢品回收熱 昨年一年中에 回收된 物만이 五十五萬圓을 突破”, 『每日新報』(1939. 6. 13).
충북		16만 6천 원	“忠北道の 一年間廢品 十六萬六千餘圓 關係業者二百七十名”, 『매일신보』(1938. 11. 27).
대전		36만 5천 원	“廢品回收類 卅六萬五千圓”, 『東亞日報』(1939. 6. 3).
전북 (1937. 7~1938. 7)		39만 9,379원	“廢品모아 販賣한 物이 四十萬圓의 巨額”, 『每日新報』(1938. 10. 22).
		약 25만 원	군산, 자료 상동
		약 5만 원	전주, 자료 상동
		약 10만 원	기타, 자료 상동
전국	---	1,008만 2,949원	“廢品回收 成績良好 十四年中 比前年 百萬圓의 增加”, 『東亞日報』(1940. 6. 1).

으로 나타나 상당히 차이난다.²³⁾ 그중 인제군은 매일 2천 관 내외를 서울로 보냈다고 했다. 이어서 전북은 중일전쟁 직후부터 1938년 7월 말까지 39만 9,379원을 회수했고, 그중 군산은 25만 원, 전주는 5만 원 정도였다. 전통도시 전주와 신흥 항만도시 군산의 지역별 민족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북은 폐품회수협의회 소속 업자 270명을 동원하여 1년간 약 16만 6천 원의 성적을 올렸다. 1938년 1년 동안 대전에서만 36만 5천 원을 회수했다. 이에 1938년 조선 전체 회수액은 1,008만 2,949원. 그러나 금액과는 달리 수량 통계는 발견할 수 없었다.

1939년의 경우, 총독부(식산국)는 1940년 6월 1일부로 각종 신문지상을 통

23) 그 이유는 본 연구 3-(3)항에서 자세히 밝힌다.

〈표 3〉 1939년도 폐품회수 품종별 세목

발표주체	『동아일보』(1940. 6)		『식은조사월보』(1940. 8) 『조선일보』(1940. 6. 1), 『매일신보』(1940. 6. 1)		
	수량(관)	금액(원)	수량(관)	금액(원)	관당 금액(원)
비철금속	315,511	889,194	315,511	889,194	2.82
합석과 강통	371,829	301,878	371,829	301,878	0.81
섬유고철	2,188,120	1,323,299	2,972,817	2,844,977	0.96
종이설	2,267,008	741,711	2,267,008	741,711	0.33
빈병	19,638,431	771,706	19,638,431	771,706	0.04
고무설			2,188,120	1,323,299	0.6
기타	14,462,224	*6,091,945	14,462,224	*5,091,945	0.35
발표 합계	----	11,964,710	27,753,716	11,964,710	0.43
필자 합계	39,243,113	10,119,733	42,215,940	11,964,710	0.28

출전: (1) “廢品回收 成績良好 十四年中 比前年 百萬圓의 增加”, 『東亞日報』(1940. 6. 1), (2) “폐품회수 천만 원 금년에는 이천만 원목표로 돌진”, 『朝鮮日報』(1940. 6. 1), (3) “폐품회수 실적”, 『殖銀調査月報』, 1940년 8월호, 94쪽(『京城日報』, 6월 1일자를 인용했다는 표시).

비고: (1) 굵은 글씨는 각종 오류가 의심되는 부분, (2) *표시는 양쪽 자료에서 같은 내용 중 금액 차이가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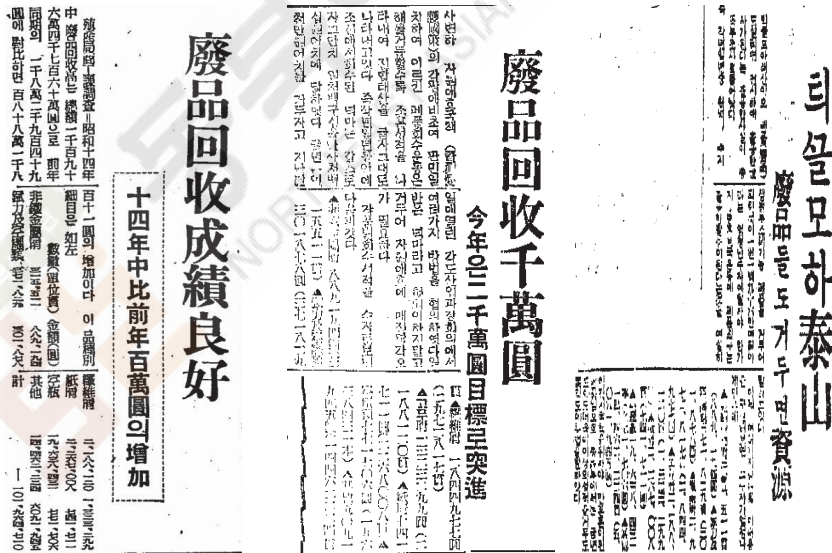


그림 1 『동아일보』·『조선일보』·『매일신보』의 1939년 폐품회수 실적 관련 기사(1940. 6. 1)

하여 1939년 실적을 공표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회수 총량은 2,775만 3,716관, 금액은 1,196만 4,710원으로 “1938년에 비하면 188만 1,811원이 증가”했다고 한다.

2. 신문사별 통계 숫자 차이 : 『동아일보』의 기재 오류

표 3에서 『식은조사월보』(1940. 8), 『조선일보』(1940. 6. 1), 『매일신보』(1940. 6. 1)와 『동아일보』(1940. 6. 1) 통계를 비교하면 『동아일보』만 내용이 다르다. 물론 양 통계에서 각각 비철금속, 함석과 깡통, 빈병 기타 등은 일치하거나 유사하다. 일치하는 수치 중에서 빈병은 1,963만 8,421관으로 제일 많고, 기타를 제외하면 종이류 226만 7,008관, 비철금속이 31만 5,511관이다.

그렇다면 왜 『동아일보』 기록만 다른가? 그 이유는 극히 단순했다. 『동아일보』 기자의 오보였다. 그것은 『식은조사월보』(『京城日報』 1940년 6월 1일자 인용한 자료), 『매일신보』, 『조선일보』 자료가 한결같이 항목별 통계가 일치하지만 『동아일보』는 내용 곳곳에서 기자의 실수로 보이는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²⁴⁾ 구체적으로 『동아일보』는 섬유설과 고무설 자료를 혼동하거나, 고무설 통계를 누락하였다. <기타>인 509만 1,945원을 609만 1,945원으로 잘못 기재하였으며, 총액을 10,196만 4,710원이라고 잘못 작성했다. 물론 1,196만 4,710원을 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당시 총독부 식산국의 발표에서 철설(鐵屑) 부분이 제외된 사실조차 보도하지 않았다. 요컨대 『동아일보』 자료는 총체적인 부실 자료였다.

24) “티끌모아 태산, 폐품을 모으면 자원”, 『每日新報』(1940. 6. 1).

3. 총독부 발표의 두 가지 모순

이상 신문 등 매체에 발표된 1939년 통계는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두 가지 모순이 있다. 하나는 총독부가 발표한 총계와 항목별 총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빈병의 단위가 본(本)일 가능성은 큰데도 관(貫)으로 설정하여 총수거량을 2,775만 3,716관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첫째, <총계와 항목별 통계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자. 총독부(식산국) 발표 통계가 심각한 오류라는 사실은 총독부가 스스로 발표한 전체 총계와 항목별 합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즉, 『식은조사월보』와 『매일신보』, 『조선일보』 공히 <기타> 수량을 포함하면 4,221만 5,940관이다. 그런데 발표는 총독부는 2,775만 3,716관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총독부가 발표한 2,775만 3,716관은 항목별 합계에서 <기타>를 제외한 것이다. 그렇다면 총수량에서 <기타>를 제외했으면 총액에서도 제외해야 한다. 그러나 총계에서는 <기타> 수량(1,446만 2,224관)을 제외하고 1,196만 4,710원을 만들었지만 항목별에서는 <기타> 금액 509만 1,945원을 포함해야 1,196만 4,710원이 되게 했다. 이것이야말로 본 통계가 가지는 심각한 첫 번째 모순이다.

두 번째 모순은 <빈병 단위가 관인가 본인가?>라는 것이다. 총독부가 발표한 2,775만 3,716관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빈병으로 19,638,431관이다. 병류가 1939년 총수거량의 70.76%에 달한다는 말이다. 1939년 모든 폐품이 대부분 빈병이었다는 말인가? 이것은 의문의 시작일 뿐이다. 당시 관례적으로 병류의 단위는 본이다(표 6, 표 7 참조). 그러나 『식은조사월보』와 『매일신보』는 모두 관으로 썼다. 그러나 『조선일보』만은 본이다. 그동안 모든 통계에서 병을 관으로 환산해서 발표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 본 통계만 유독 빈병의 단위가 관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식산국이

발표한 것은 본인데 『조선일보』를 제외한 『경성일보』·『매일신문』·『동아일보』 기자들이 잘못 알아듣고 관으로 쓴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다.

만약 빈병의 단위가 본이라면 식산국이 발표한 통계는 이미 허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표 3에서 보듯이 병류를 19,638,431관으로 할 때만 발표한 전체 수거량인 2,775만 3,716관이라는 통계가 나오기 때문이다. 전체 수거량만큼은 그날 식산국이 발표한 내용의 핵심 중 핵심이었다.

지방별 통계도 빈병만큼은 총량에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한다. 그러므로 흑시 <기타> 를 넣고 반대로 빈병을 제외하면 발표총량인 2,775만 3,716관이 나오지 않을까 계산했다. 그 결과 2,257만 7509관이 나온다. 총독부가 발표한 총량과 전혀 상관없는 수치이다. 따라서 빈병 수량 19,638,431관을 제외한 2,775만 3,716관은 존재할 수 없다.

4. <기타> 항목의 실체는 무엇인가?

만약 <기타>가 실재(實在)한다면 그 실체는 무엇일까? 총독부는 1938년부터 당해 폐품회수가 1천만 원을 달성했다고 대서특필했다.²⁵⁾ 그런데 표 3(1939년 통계 세목)에서는 철설(고철) 세목이 없으나 『식은조사월보』(1940년 8월호, 94쪽)에는 철설을 제외한 폐품회수 통계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워낙 철류가 다양하기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표 4처럼 1944년 이후 중요물자영단에서 회수금속에 대한 보상비를 지출할 때 비철류는 95.1%를 보상했지만 철은 불과 14.6%밖에 보상하지 못했다.

25) “回收取扱業者에 指定制 採用코 全朝鮮 一元統制斷行”, 『東亞日報』(1939. 8. 6).

〈표 4〉 중요물자영단의 회수금속류 보상비 지출액

종류별	회수총중량(A)	보상비지불중량(B)	보상비율	보상비금액
철	6,034톤 071,112	880톤 671,950	14.6%	571,034,51
비철	983톤 323,418	934톤 792,395	95.1%	1,104,088,18
계	7,017톤 394,53	1,815톤 464,345	25.9%	1,675,122,69

출처 : 『第86回朝鮮總督府帝國議會說明資料』, 影印本 제10권, 13쪽, 日本 : 不二出版(1994).

그런데 문제는 〈기타〉를 완전히 철이나 철설(鐵屑)이라고 확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식은조사일보』 자료에서는 제시된 통계가 철설을 제외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총독부(식산국)의 발표(『매일신보』나 두 달 후에 나온 『식은조사일보』조차도)에서 항목별 합계에서는 〈기타〉 금액 509만 1,945원을 포함시키면서도 총계에서는 〈기타〉 수량인 1,446만 2,224관을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단계로 전국평균치를 구하는 문제가 중요했다.

표 5처럼 총독부가 발표한 금액과 수량으로 조선전체A(2,775만 3716관)를, 그리고 〈기타〉 항목 수량을 더한 조선전체B(4,221만 5,940관)를 만들어 1원당 회수 수량(관)을 구했다.

그 결과 조선전체A에서 1원당 수량은 2.32관, 조선전체B는 3.53관이었다. 지역별로 경기도는 2.58관, 충북은 1.62관, 인제군 2.05관, 이천군 2.49관, 충남 0.63관, 강원 0.27관으로 모두 1원당 2.58관 이하였다. 따라서 전국 단위 1원당 수량은 반드시 잠정적으로 수집된 지역별 수량인 0.27~2.58관 범위에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든 최고수량인 2.58관(경기도) 이상을 크게 상회할 수 없다. 물론 경상도, 황해도 등 도별 통계가 없어 일정한 문제점은 있으나 각 군 단위 통계도 예외가 없이 1원당 2.58관 이내이다.

전체가 이렇다면 항목별로도 이러한 1원당 최고 2.58관, 최저 0.27관 사이

〈표 5〉 지역별 1원당 회수수량 비교(추정)

지역과 기간	수량	금액	1원당 수량	출전
경기도 1939. 1~6	1,206만 6,586관	468만 1,390원	2.58관	『東亞日報』(1939. 9. 24)-인천부 제외수량
충남 1939. 1~12	89만 6,943관	142만 3,498원	0.63관	『東亞日報』(1940. 2. 2)
충북 1939. 1~9	112만 7,500관	69만 5,895원	1.62관	『東亞日報』(1939. 6. 23)
충북 1939. 1~3	28만 611관	16만 8,367원 (병값 제외 16만 7,383원)	1.68관	『每日新報』(1939. 6. 1)
강원 1938. 1~12	72만관	28만 7천원	2.51관	江原道 警察部長, 「廢品 回收에 關한 業者의 感 想報告」(1939. 4. 11), 3 쪽.
강원 1939. 1~8	8만 1,641관	30만 1,054원	0.27관	『每日新報』(1940. 1. 13)
인제군 1939. 1~6	14,574관	7,096원	2.05관	江原道 警察部長, 「廢品 回收狀況報告」(1939. 8. 14)
이천군 1939. 1~6	18,801관	7,557원	2.49관	
통천군 1939. 1~3	3,652관	3,020원	1.21관	상동
조선전체 A	2,775만 3,716관	1,196만 4,710원	2.32관	『殖銀調査月報』(1940. 8) 『每日新報』(1940. 6. 1), 『東亞日報』(1940. 6. 1)
조선전체 B	4,221만 5,940관	1,196만 4,710원 * 1,819만 6,525원	**3.53관 2.32관	상동
실제금액 추정A	1,594만 2,280관	1,196만 4,710원 -509만 1,945원 =687만 2,765원	발표금액의 57.44%	조선전체 A에서 총독부 가 발표한 <기타액수> 를 뺀 금액
추정B	1,824만 402관	1,196만 4,710원 -509만 1,945원 +a값(99만 727원) =786만 3,492원	발표금액의 65.72%	a값은 실제의 <기타 금 액>을 추정한 것. 계산 내용은 본 연구 3-(5)항 목 참조.

비고 : 조선전체A는 식산국이 발표한 수량. 조선전체B는 발표한 항목별 수량의 합.

* 1원당 수량을 2.32관으로 산정한 추정 액수 ** 4,221만 5,940관을 수거했을 때 1원당 관 수.

〈표 6〉 충북 폐품회수 항목별 실적(1939. 1~3)

항목	수량	금액	1원당 관 수
금속류	170,595관	71,763원	2,378관
남류류	35,659관	29,966원	1,190관
고무류	77,039관	51,984원	1,482관
모류	1,537관	2,103원	0,731관
기타	15,780관	11,567원	1,364관
병류	28,362본	984원	1원에 28,823병
(1)합계	300,610관	137,419원	2,188관
(2)총계	280,611관	168,367원 (167,383원)	1,676관

비고 : (1) 항목별로 합산한 총계(병은 제외). (2) 신문에서 제시한 합계 28만 611관(병 제외)과 16만 8367원(병 가격 984원 포함). (3) 굵은 글씨는 단위가 다른 병류 수량.

출처 : “忠北의 廢品回收高 十六萬八千餘圓 一月以來三個月間實績”, 『每日新報』(1939. 6. 1).

에 존재해야 한다는 등식이 성립할까? 일단 1939년 1월부터 3월까지 충북에서 수집한 폐품내용을 보면 수량과 금액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에 1원당 관수를 계산해보면 표 6과 같다(소수점 세자리까지 계산함).

이 통계에서도 전국 통계와 마찬가지로 항목별 합계와 신문에 나타난 총계가 다르다. 즉, 항목별 합산수량은 300,610관으로 신문발표에 비해 2만 관 정도 많고, 대신 금액은 신문 발표보다 3만 원 적다. 그만큼 『매일신보』 기록 자체가 부실했다는 것일까? 과연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이런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표 6에서 병류를 제외한 항목별 합산을 해보면 30만 610관과 13만 7,419원이 나온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1원당 2,188관이 나오며, 신문에 나타난 28만 611관과 16만 8,367원에서 병 가격 984원을 제외한 16만 7,383원으로 계산하면 1원당 1,676관으로 조선전체A(최고 2.58~최저 0.27) 이내에 안착한다.²⁶⁾ 이처럼 모든 경우에서 최고점인 2.58 이하에 있다. 그러므로 총수량인 2,775만 3,716관(2.32)은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수치

이다.

그렇다면 <기타> 509만 1,945원(1,446만 2,224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요컨대 1,446만 2,224관을 포함한 조선전체B(4,221만 5,940관)에서 구해진 1원당 3.53관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비싼 폐품(0.27) 혹은 아무리 헐한 폐품(2.58)이라도 조선에서 수거된 모든 폐품은 0.27~2.58 범위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1,446만 2,224관을 포함한 통계는 '가짜'이다. 만약 <기타> 수량을 포함하려면 그만큼 금액이 늘어나서 0.27~2.58 범위에 들어야 한다.

5. 실제 회수량 추정

결국 <기타>를 해명함으로써 이러한 모든 의혹은 해결이 된다. 그렇다면 <기타>는 무엇인가? 1,446만 2,224관의 소속은 어디인가? 여기서 2개의 추정이 가능하다.

첫째, <기타> 금액이 모두 1,196만 4,710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기타> 수량인 1,446만 2,224관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추정이다(추정A). 왜냐하면 총독부도 스스로 <기타> 항목을 뺀 2,775만 3,716관이 총수량이고 이 가격이 1,196만 4,710원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체 총액에서 <기타> 항목

26) 신문에 나온 총 수량과 금액의 근거를 알 수 없다. 실제로 병을 제외하고 합계하면 30만 610관으로 신문에 나온 28만 611관보다 많으며, 대신 금액은 13만 7,419원으로 오히려 신문에 나온 16만 8,367원보다 적다. 통계에서 984원에 불과한 병은 신문에서도 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항목별 합계가 차이가 나는 보도를 하고 있는지 현재는 알 수 없다. 필자는 이러한 왜곡이 신문사의 착오가 아니라 발표를 그대로 받아 적는 특성상 이미 총독부(지방도)에서 금액을 부풀린 결과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

의 총액(509만 1,945원)을 뺀 것이 당연히 실제회수량이다. 이에 1,196만 4,710원에서 509만 1,945원을 뺀 687만 2,765원이 실제로 회수된 금액이라는 것이다. 바꿔 말해 발표총액의 57.44%인 1,594만 2,280관이 실제수거량이다. 그러면 1938년 실적도 506만 1,954원이 된다. 이에 신문에 나타난 실적과 비교하여 총독부가 통계를 조작한 규모를 추정해보면 1938년은 49.80% 그리고 1939년은 43.56%에 이른다.

- 실제 회수량 추정(A)

1939년 : 6,872,765원(57.44%)

1,594만 2,280관(11,964,710원-5,091,945원)

1938년 : 6,872,765원-1,811,811원=5,061,954원

- 조작크기(총독부 발표-추정A)

1938년 : 10,082,949-5,061,954=5,020,995원(49.80%)

1939년 : 11,964,710-6,872,765=5,091,945원(42.56%)

둘째는 <기타>는 '실재(實在)'하며 조선전체B(1 : 3.53)와 조선전체A(1 : 2.32) 사이 어느 곳에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추정A는 총독부가 발표한 <기타> 수량을 무조건 부정하는데, 그럼에도 총독부가 스스로 총계에서는 총수량 27,753,716관=총액 1,196만 4,710원으로 발표했다. 반면, 항목별에서는 <기타> 항목 1,446만 2,224관을 포함해야 1,196만 4,710원이 되었다. 그러므로 <기타> 수량 1,446만 2,224관 중 일부는 '실재'하며 어느 합리적인 범위(평균적인 1원당 관 수) 안에 있다는 것이다(추정B). 이에 조선전체A와 조선전체B를 이용하여 실제로 수거한 <기타> 금액인 **a값**을 구했다. **a값**을 위해 조선전체A의 1원당 수량인 2.32관과 조선전체B의 그것인 3.53관의 환원계수를 구

했다. 이에 0.6572(2.32/3.53)값이 나왔다. 이를 총액인 1,196만 4,710원에 대입하면 7,863,492원이 나온다. 여기서 추정A(687만2,765원)를 뺀 99만 727원이 바로 a값이다. 그러면 1939년 실제수거량도 27,753,716관의 65.72%인 1,824만 402관이 된다. 그리고 조작규모는 410만 1,218원(1,196만4,710원-786만 3,492원) 그리고 1938년의 조작액은 598만 1,681원으로 추정 조작규모는 1938년 40.68%, 1939년은 34.28%이다.

• 실제 회수량 추정(B)

1939년 : 7,863,492원(65.72%)

(11,964,710원-5,091,945원+a(실제 <기타>)= 6,872,765원+a(=990,727원)

$27,753,716\text{관} * 65.72\% = 1,824\text{만 } 402\text{관}$

1938년 : 5,981,681원

(7,863,492원-1,811,811원)

• 조작규모(총독부 발표-추정B)

1938년 : 10,082,949원-5,981,681원=4,101,268원(40.68%)

1939년 : 11,964,710원-7,863,492원=4,101,218원(34.28%)

요컨대, 총독부의 조작규모는 1938년 40.68~49.80% 그리고 1939년 34.28~42.56% 정도였다.

이렇게 <기타> 통계의 조작으로 식민통치의 실정을 호도한 것은 이번 경우만이 아니었다. 1944년 기업정비 당시에도 <기타> 항목은 조작 대상이었다. 당시 총독부는 조선인 중소기업가들이 기업정비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조선에서는 오히려 보호육성할 것이라는 '위무성(慰撫性)' 발언을 자주 쏟았다. 그러나 1944년 2월부터 대대적으로 추진된 기업정비에서 '언약'과 다르

〈표 7〉 업종별 전력수용자 수

업종	1943년			1944년			증감상황		
	조선 북부	조선 남부	합 계	북부	남부	합 계	북부	남부	합 계
일반 업체	7,400	9,385	16,785	7,328	9,829	17,157	-72	444	372
기타 업체	28,760	47,578	76,338	3,855	23,953	27,808	-24,905	-23,625	-48,530
업종 총계	36,160	56,963	93,123	11,183	33,782	44,965	-24,977	-23,181	-48,158
기타업체비중	100	100	100	31	59	48			

비고 : (1) 지수는 1943년을 100으로 한 것. (2) 일반업체는 금속공업, 기계기구, 요업, 화학공업, 제재목재, 중공업, 방직공업, 인쇄제본, 식료품, 잡공업, 광업, 농수산업 방면 전력수용자수 합계.

**102%가 나오는 것은 일반업체는 오히려 증가하여 기타업체의 감소비중을 상쇄한 결과.

출처 : 朝鮮銀行調査部, 『經濟年鑑』(1949년판), 208~209쪽 ; 저자는 『朝鮮經濟年報』(1948년판), 174~175쪽에서 재구성.

계 조선인 다수의 기업이 정리되었다. 그러나 총독부 통계에는 어느 곳에서도 조선인 개인 혹은 중소기업의 정리사실이나 규모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내막은 업종별 전력수용호의 〈기타〉 항목 감소에서 간취되었다.

표 7에서 전력수용호는 1943년에 7만 6,338호이지만 1944년에는 2만 7,808호로 4만 8,530호 줄었다. 그중 〈기타〉는 52%나 감소했지만 일반업체는 조선남부에서 오히려 증가했다. 중요한 것은 총전력수용자 감소규모가 48,158호인데 〈기타〉는 오히려 48,530호로 오히려 많이 감소했다. 〈기타〉업체가 일반업체(비고 참조)를 제외했다는 점에서 상업이나 개인영업체이며, 결국 대부분 영세한 조선인 기업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조선인 기업의 희생은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6. 왜 조작했을까?

이처럼 총독부 식산국은 조선전체B처럼 1원당 3.53관이라는 전혀 통계적

진실성이 결여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기타> 1,446만 2,224관은 실존했는가? 왜 그들은 1,446만 2,224관은 총량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총액에는 해당 금액인 509만 1,945원을 포함하는 조작을 했을까? 다시 돌아보자.

결론적으로 말해 식산국 당국자는 가시적인 수량은 굳이 속일 수 없으니 조선전체A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반면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회수금액만은 1천만 원 실적을 홍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왜곡을 자아낸 것으로 보인다. 즉, 『동아일보』, 1939년 8월 6일자를 보면 “소화 13년(1938) 중 폐품회수고는 1천만 원을 돌파하였다”²⁷⁾고 하여 1938년 이미 1천만 원이 넘었음을 알렸다. 다만, 문제는 이런 회수품이 아직 전 조선적으로도 연락이 없어 각도 임의처분 아래 있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거나 일본본토로 유출되는 실태라고 했다. 그리고 『동아일보』 1940년 6월 1일자에서도 “식산국 상공과 조사 소화 14년 중 폐품회수액은 1,196만 4,760원으로 전년 동기(同期)의 1,008만 2,949원에 비하면 188만 1811원의 증가”라고 하여²⁸⁾ 1939년에도 1천만 원을 넘었을 뿐 아니라 전년도인 1938년에도 1,008만 2,949원으로 천만 원을 달성했다고 식산국 스스로 자평했다. 그리고 『조선일보』 1940년 6월 1일자에도 보듯이 1940년 5월에 총독부에서 열린 각도 산업과장회의에서조차 “당년(1940)은 2천만 원어치를 거두자는 목표로 협의에 들어갔다”²⁹⁾고 했다. 이미 조선인들의 적극적인 폐품회수 확대야말로 총독부가 당면한 중요 과제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이미 1938년부터 회수달성 1,000만 원 시대임을 선전해왔다.

그러한 거품실적 이면에는 당대 폐품회수가 여의치 않았던 ‘절박한’ 사정

27) “回收取扱業者에 指定制 採用코 全朝鮮 一元統制斷行”, 『東亞日報』(1939. 8. 6).

28) “廢品回收 成績良好 十四年中 比前年 百萬圓의 增加”, 『東亞日報』(1940. 6. 1).

29) “폐품회수 천만원 금년에는 이천만원목표로 돌진”, 『朝鮮日報』(1940. 6. 1).

이 있었다.

(중일전쟁) 제3년을 (지나자) …… 이제는 폐품의 출회도 부족되어가고 물자의 사용제한도 더해가므로 이제는 사장된 불요불급의 물자를 회수시키고 있는 중으로 철, 동, 양모의 헌납회수를 하게 된 것은 이 세 가지 물품은 급이 필요한 물자이므로 폐품회수와 별개로 동원계획을 실시하기로 될 것이라 한다.³⁰⁾

위 『동아일보』 기사는 1939년 정초부터 폐품출회의 부족으로 별개의 동원계획이 필요한 시점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8월에는 ‘중류층 이상의 가정에서 폐품공출(廢品供出)이 적다’³¹⁾는 기사가 나오고 1940년 4월에는 ‘한때 경성 폐물보국회가 폐품의 회수가 여의치 못하여 업적이 부진’³²⁾했다는 등의 위기감 어린 신문 논조가 간취된다.

자원을 앗기자 폐품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경성부폐물이용보국에서는 요새와 같이 암취인(암거래)이 성행하는 관계로 그 회의 영업을 자랑할 수 없게 되어 크게 낭패하고 있다고 한다. 즉각 관공서에서 폐품을 매각할 적에는 경쟁입찰을 시키는 관계로 부지불식간에 9. 18 공정가격을 무시하고 자꾸 가격을 올리는 터이므로 이대로 방심하면 전계 폐물이용보국회에서도 9. 18 공정가격을 무시하고 암거래를 하기 전에는 도저히 그 영업을 계속하여 나가게 될 수 없게 되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9일에 그 회에서는 각 관청에 제품을 매각할 적에는 경쟁입찰을 시키지 말고 저물가정책에 순응하는 의미에서 수의계약으로 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내었다.³³⁾

30) “廢品回收運動에서 死藏品蒐集으로 轉換 不急不要의 鐵毛皮物 動員의 新段階”, 『東亞日報』(1939. 1. 24).

31) “廢品供出이 적다”, 『每日新報』(1939. 6. 8).

32) “廢品回收에 非常令”, 『每日新報』(1940. 4. 18).

33) “廢物에도 關取引”, 『每日新報』(1940. 4. 12).

이런 상황에서 총독부 식산국은 신문지상에다 앞서 본 것과 같은 실적을 부풀려 설명했다. 부풀리는 방법은 <기타> 항목을 조작함으로써 어느 쪽이든 1938년과 1939년의 실적이 1천만 원을 넘게 하면 되었다. 그러나 포함되지 않아야 할 <기타> 항목의 금액이 총액에 포함되면서 그들의 조작사실이 백일 하에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식민지 정권이 이런 ‘한심한’ 조작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었다. 이에 1940년 6월 1일에 있었던 식산국의 폐품통계 ‘조작’ 발표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IV. 도 단위 회수실적의 과장

1. 경기도 : 6개월 만에 1년치 전국회수고의 절반?

부풀리기는 도(道) 단위 실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각종 매체에서 나타난 1939년도 조선 내 폐품회수 규모를 보면 표 8과 같다.

먼저,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기도이용갱생회가 1939년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내 부·군 폐품이용갱생회 단위로 회수한 것(직접 회수하거나 인천부에서 회수한 것 제외)만 해도 1,206만 6,586관(468만 1,390원)이라고 했다.³⁴⁾ 이 수량은 『식은조사월보』에서 발표한 1939년 총회수고(2,775만 관)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량이다. 따라서 경기도폐품이용갱생회가 수집한 것은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규모를 말할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 마치 경기도에서 회수한 것, 나아가 인천부는 넣지도 않은 통계처럼 기사화했다.

34) “道廢品利用更生會 廢品回收好成績”, 『東亞日報』(1939. 9. 24).

44 근현대 한일관계의 제 문제

〈표 8〉 각종 매체에서 나타난 1939년도 조선 내 폐품회수 규모

지역	기간	수량	액수	근거
조선전체	1939년 총 12개월	2,775만 3,716관 (기타 1,446만 2,224관 별도)	1,196만 4,710원	『殖銀調査月報』(1940. 8) 『每日新報』(1940. 6. 1), 『東亞日報』(1940. 6. 1)
경기도	1939. 1~6 총 6개월	1,206만 6,586관	468만 1,390원	인천부 제외 『東亞日報』(1939. 9. 24)
평남	1939. 1~6 총 6개월	-	173만 3,038원 (지설 1만 8,904원, 고금물 83만 4,477원, 섬유류 35만 5,182원, 고무 38만 9,567원, 잡품 12만 1,713원)	『東亞日報』(1939. 9. 28)
황해	1938년 총 12개월	-	80만원	『每日新報』(1939. 3. 20)
	1939. 1~8 총 8개월	빈병 50,380개 등	24만 2,966원	『東亞日報』(1940. 3. 10)
	1939년 총 12개월	-	100만 2,346원	『每日新報』(1940. 5. 28)
충북	1939. 1~3 총 3개월	28만 611관 금속류 170,595관, 남류류 35,659관, 고무류 77,039관, 毛類 1,537관, 병류 28,362본, 기타 15,780관	16만 8,367원 (금속류 71,763원, 남류류 2 9,966원, 고무류 51,984원, 모류 2,103원, 병류 984원, 기타 11,567원)	『每日新報』(1939. 6. 1)
	1939. 1~4 총 4개월	-	25만 721원 (4월만 82,365원)	『每日新報』(1939. 6. 23)
	1939. 1~9 총 9개월	112만 7,500관	69만 5,895원	『東亞日報』(1939. 6. 23)
충남	1939년 총 12개월	89만 6,943관	142만 3,498원	『東亞日報』(1940. 2. 2)
전남	1939. 1~6 총 6개월	-	82만 원	『每日新報』(1939. 9. 14)
강원	1938년 총 12개월	-	55만 2,419원 (고철류 206,440원, 누더기 135,097원, 고고무 96,758원, 종이류 2,227원, 硝子류 11,521원, 기타 4,376원)	『每日新報』(1939. 6. 13)

	1938년 총 12개월	72만 관	28만 7천 원	江原道 警察部長(1939. 4. 11), 「廢品回收에 關한 業者의 感想報告」, 3쪽.
	1939. 1~8 총 8개월	8만 1,641관	30만 1,054원 (누더기 142,939원, 고무류 58,294원, 금속류 38,834원, 공병 10,651원, 신문류 824원, 기타 49,512원)	『每日新報』(1940. 1. 13)
	1939. 3~7 총 5개월		47만 3,500원	『東亞日報』(1939. 8. 1)
	1940년 총 12개월		64만 5천 원 이상	『每日新報』(1941. 8. 31)
전북도	1937. 8~1938. 7 총 12개월		39만 9,379원 (전주 5만 원, 군산 25만 원)	『每日新報』 (1938. 10. 22)
목포부	1938. 11~1939. 10 총 12개월		100만 원 정도	『東亞日報』 (1939. 10. 10)
인제군	1939. 1~6 총 6개월	14,574관	7,096원	江原道 警察部長(1939. 8. 14), 「廢品回收狀況報告」
이천군	1939. 1~6 총 6개월	18,801관	7,557원	상동

2. 평남 : 평남만 조선전체의 29% 수거

평남 자원회수조합은 1939년 1월부터 6월까지 도내에서 173만 3,038원을 수집했고, 항목별로는 지설 1만 8,904원, 고금물류 83만 4,477원, 섬유류 35만 5,182원, 고무류 38만 9,567원, 잡품류 12만 1,713원이라 했다.³⁵⁾ 즉, 평남이 1939년 상반기 동안 173만 3,038원을 회수했다면 그것만으로 『식은조사

35) “半個年間 廢品回收 百八十萬圓 突破 平南道內의 集計表(平壤)”, 『東亞日報』(1939. 9. 28).

월보』(1940. 8)에 게재된 조선전체 수거금액의 14.5%에 달한다. 1년으로 추산하면 29%에 달한다. 평남 한 지역만 전국의 29%를 달성했다는 것은 위의 경기도 사례처럼 지나친 과장일 뿐이다.

3. 강원도 : 경찰부장의 통계와 신문보도가 다른 1938년 실적

1938년 강원도의 회수고는 두 개의 자료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강원도 경찰부장이 경무국장에 보낸 자료³⁶⁾에서는 72만 관에 28만 7천여 원이라 한 데 반해 『매일신보』(1939. 6. 13)에서는 55만 2,419원으로 나타난다.

(춘천) 폐품회수협회를 조직한 후 도내에 폐품취급인 13명과 지정매수인 149명을 두어 폐품회수운동을 철저히 해왔는데 작년 1년 중 폐품회수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아서 그 총액이 실로 55만 2천 4백 19원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지정매수인 중에는 1만원 이상 매수한 사람이 다섯 사람이며 취급인 중에는 십만원 이상 취급한 사람이 한사람 있다는 것으로 폐품이라고 함부로 할수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한다. 작년 중 폐품회수 내역 금속류 206,440원 누데기 135,097 고고무 96,758 지설(종이류) 2,227 硝子류 11,521 기타 4,376 계 552,419원³⁷⁾

도대체 왜 두 통계는 다를까? 일단 경찰부장 자료의 신빙성을 알기 위하여 표 5의 방식에 준하여 1원당 회수량을 산정하니 2.51관으로 조선전체A^(2.32)와 거의 비슷하다. 반대로 『매일신보』에 나온 55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1원=

36) 江原道 警察部長(1939. 4. 11), 「廢品回收에 關한 業者의 感想報告」, 3쪽.

37) “江原廢品回收熱 昨年一年中에 回收된 것만이 五十五萬圓을 突破”, 『每日新報』(1939. 6. 13).

2.51관을 기준으로 해서 총 138만 6,571관 정도는 수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1939년에 30만 1,054원을 회수해도 수량은 불과 81,647관에 불과했다. 통계에 대한 신뢰가 크게 상실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양 통계 간 차이는 강원도 지역 폐품회수 실태를 감시하는 경찰부장의 입장에서 비교적 정확한 통계를 인용한 반면 『매일신보』는 실재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신문자료에서 상당한 과장이 나타난 것은 1939년 이후 급박한 회수독려의 국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1939년 회수통계를 보면 『동아일보』(1939. 8. 1)는 1939년 3월부터 7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강원도에서 약 47만 3,500여 원을 수집했다고 특필했다.

강원도 폐품회수협회에서는 작년부터 한 가지라도 버리지 말자 폐품!, 생산 위하여 힘써 모으자! 라고 전도에 부르짖어 각종 폐품취집에 적극 활동을 계속해오는 바 지난 3월 이래 7월 말 현재로 회수한 폐품의 입금액은 47만 3500여원이란 놀라운 수자를 보여 폐품은 과연 큰 역할에 서 있는 것을 여실히 말하고 있다.³⁸⁾

그런데 이 통계는 이듬해 『매일신보』(1940. 1. 13)에서 1939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8개월 동안 30만 1,054원 정도를 회수했다고 밝히고 있는 기사에서 금방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

물건을 앗겨쓰고 또한 못스게 된 물건이라고 함부로 내버리지 말자! 강원도에서는 자원을 증강하자는 뜻에서 폐품회수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중인데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도내에서 회수한 성적을 집계한 바 의하면 폐물 수량이 8만 1천 6백 47관에 그 가격이 실로 30만 1천 54원에 달하였다고 한다.

38) “이아말로 塵合泰山 江原廢品回收額 四十七萬餘圓(春川)”, 『東亞日報』(1939. 8. 1).

그 내역을 보면 누더기가 14만 2천939원으로 제1위를 점하고 잇스며 다음이 고무류 5만 8천294원, 금속류 3만 8천8백34원 공병류 1만 6백 51원 혼신문류 824원 기타가 4만9천 5백12원이었다. 39)

즉, 어디에도 5개월에 45만 3,500원을 수집했는데, 8개월에 30만 1,054원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 5개월과 8개월이라는 시간 차이에 따른 오차는 고사하고 금액이 오히려 30%가량이 줄어든 것은 강원도 당국이 신문기자들에게 그만큼의 과장된 숫자를 기사화하도록 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과장된 것일까? 『매일신보』(1939. 1~8월간)는 총수량이 8만 1,647관으로 가격으로는 301,054원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경찰부 기록(1938년 1년간)은 무려 72만 관이지만 가격은 오히려 28만 7천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에 1939년 전국평균치인 조선전체A(1관당 2.32)를 대입해보면 어느 쪽이 과장을 많이 하였는지 대체적인 윤곽을 알 수 있다.

〈표 9〉 강원도 내 발표 단위별 폐품회수량 과장규모 추정

구분	강원도 경찰부장(1938. 1~12)		『매일신보』 기록(1939. 1~8)	
	수량(관)	금액(원)	수량	금액
발표	720,000	287,000	81,641	301,054
전국 평균가격 · 수량	1원당 2.32관	1관당 0.43원	1원당 2.32관	1관당 0.43원
평균가격 가중 수량	665,840	309,600	698,445	35,105
추정 과장규모(산출-발표)	-54,160	22,600	+616,804	-265,949
추정과장비율 (산출수량/발표수량*100)	-7.5%		858%	

비고 : (1) 전국평균가격 및 수량은 본 연구 〈표 5〉에서 총독부가 발표한 것인 조선전체A에서 추출한 것임. (2) 평균가격 가중수량은 발표통계에 전국평균가격 및 중량을 곱하여 산출. (3) 추정규모는 평균가격으로 산출된 내용에서 발표한 내용을 뺀 것. (4) 추정과장비율은 수량 면에서 어느 정도 과장이 이뤄졌나를 판단하는 비율.

39) “八朔間廢品回收額 勿驚! 三十萬圓”, 『每日新報』(1940. 1. 13).

즉, 표 9에서 강원도 경찰부장의 기록은 추정과장비율이 -7.5%인데, 이는 당시 강원도 경찰부가 실제로 수거한 양에 무척 근접한 통계라는 사실을 말한다. 반면, 『매일신보』 기록은 무려 858%이다. 대단히 과장이 많은 통계라는 사실이다.

요컨대, 강원도 지역 폐품회수 통계는 상당한 불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1939년도 『동아일보』 자료와 『매일신보』 자료 간에도 통계가 50% 정도 차이 난 것처럼 1938년도 강원도 경찰부장 자료와 『매일신보』 자료 간에도 50% 가까운 격차가 있었다. 바로 그 격차가 당시 강원도 폐품통계가 담고 있는 과장의 규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강원도 당국은 자신들만 실제 내용을 알고 있었고, 국민들이 읽는 신문에는 그만큼의 과장된 내용을 신도록 했다.

4. 황해도 : 실적, 갑자기 4배로 뛰다

황해도도 『동아일보』(1940. 3. 10)에 따르면 1939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8개월간 각 애국반에서 빈병 5만 380개, 철설(쇠부스러기) 37만 321문(문, 문매) 등 24만 2,966원을 회수했다고 했다. 그러나 『매일신보』는 그보다 두 달 후 1939년 중 황해도 내 총 폐품회수 실적을 크게 부풀려 발표했다.

(해주) 지난 소화 14년(1939) 중 도내에 있어 폐품회수실적을 조사한 데 의하면 古地(?)金회수액이 3만 5410원, 철*회수액 43만 5천 322원, 古綿회수액이 20만 7822원, 고*회수액이 2만 182원, 石*空*회수액 9만 9641원, 우*회수액이 8456원, 색고무회수액이 5만 9,662원, 백고무회수액 4만 9420원, 기타 권힐(깡통?)이 2만 6,245원으로 **폐품회수총액이 100만 2,346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40)

40) “百萬餘圓의 廢品 黃海道서 一年間回收”, 『每日新報』(1940. 5. 26).

두 달 사이에 24만 2,966원의 회수실적(물론 8개월간)이 100만 2,346원(12개월)으로 약 4배 증가했다. 폐품회수 속도의 보수성을 생각할 때 4배 급증은 통계가 조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 자명하다.

5. 충청 : 거품이 많은 충남, 거품이 적은 충북

충북의 경우 비교적 정확한 수치를 보고한 듯하다. 먼저 1939년 1월부터 3월까지 충북의 회수 실적은 다음과 같다.

(청주) 1월 이후 3월 말까지 실적을 당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종 폐품이 28만 611관, 瓶류 2만 8362본으로 동 금액은 16만 8,367원의 거액에 달하여 영세한 폐품이 여사한 거액에 달하였습에 감탄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금속류 17만 595관에 7만 1,763원, 남류류 3만 5,659관 2만 9,966원, 고무류 7만 7,039관 5만 1984원, 毛類 1537관 2103원, 병류 2만 8,362본에 984원 기타 1만 5,780관 1만 1,567원 이상 합계 16만 8367원. ⁴¹⁾

즉, 충북은 1939년 1월에서 3월까지 16만 8,367원을 수집했고 4월까지 25만 721원이고 그중 4월만 8만 2,365원, ⁴²⁾ 9월까지 112만 7,500관 69만 5,895원을 회수했다고 한다. ⁴³⁾

충남은 1939년 전체 89만 6,943관인 142만 3,498원을 수거했고, 이 중 빈병이 52만 5,150개라고 했다. ⁴⁴⁾ 충남의 경우 산술적으로 전체 수집액을 부분

41) “忠北의 廢品回收高 十六萬八千餘圓 一月以來三個月間實績”, 『每日新報』(1939. 6. 1).

42) “忠北廢品回收高”, 『每日新報』(1939. 6. 23).

43) “忠北道廢品回收 六十九萬餘圓”, 『東亞日報』(1939. 10. 28).

44) “昨年中 廢品回收類 百四十萬圓 突破(大田)”, 『東亞日報』(1940. 2. 2).

으로 나눈 도 평균을 크게 웃도는 과장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수거량이 많았을 것을 무시하고라도 1년간 13도 평균은 총독부의 결과발표에 따르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13도/1,196만원).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모든 도가 100만 원을 훨씬 웃도는 실적이라 발표했다. 그런데 충북은 9개월 동안 112만 7,500여 관을 회수했지만 금액은 불과 69만 5,895원이다. 반면, 충남은 89만 6,943관을 수집했는데도 142만 3,498원이다. 충북은 수량이 훨씬 많아도 금액은 충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물론 폐품의 단가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통계를 재구성하면 당대 도별로 어느 정도 거품통계를 발표하는지 추측이 가능하다.

6. 거품의 규모 추정

표 10을 보면 전국적으로 폐품 1관당 혹은 1원당 평균 가격을 내면 (11,964,710원 : 27,753,716관) 각각 1원에 2.32관, 1관에 0.43원으로 나온다.⁴⁵⁾ 이에 충남북이 발표한 수량에 평균가격 및 평균수량을 가중 처리하면 충북은 48만 4,825원, 충남은 38만 5,685원 정도가 산출된다.

따라서 발표금액에서 산출금액을 공제하면 각각 충남은 240만 5,572관, 103만 7,813원, 반면 충북은 48만 6,976관, 21만 1,070원 정도가 나오며, 이를 과장규모로 보아 그 비율을 추산하면 충남은 약 369%, 충북은 43%로 나오는데, 대체로 충북은 거품이 적은 반면, 충남의 발표에는 거품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⁴⁵⁾ 이 수치가 유의미한 것은 표에서 인제군 폐품회수량(1939. 1~6)이 14,574관, 금액 7,096원, 평균 1관당 0.48원, 1원당 2.05관, 그리고 인제군 18,801관 7,557원으로 평균 1원당 2.49관, 1관당 0.41원으로 나타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표 10〉 충남·북 및 강원도의 폐품회수량 과장규모 추정

구분	충남 12개월(1939. 1~12)		충북 9개월(1939. 1~9)		강원 8개월(1939. 1~8)	
	수량(관)	금액(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발표	896,943	1,423,498	1,127,500	695,895	81,641	301,054
전국 평균가격·수량	1원당 2.32관	1관당 0.43원	1원당 2.32관	1관당 0.43원	1원당 2.32관	1관당 0.43원
평균가격 가중수량	3,302,515관	385,685원	1,614,476관	484,825원	698,445관	35,105원
추정 과장규모 (산출-발표)	+2,405,572	-1,037,813	+486,976	-211,070	+616,804	-265,949
추정과장비율 (산출수량/ 발표수량*100)	369%		43%		858%	

강원도는 1939년 1월부터 8월까지 수거규모는 총 8만 1,641관, 30만 1,054원⁴⁶⁾이었다. 그런데 강원도의 거품비율을 보면 무려 858%이다. 산출된 거품비율이 모두 과장 수치라 단정할 수 없지만 폐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금속이나 섬유를 불문하고 관(貫), 근(斤) 등 무게 단위로 거래하는 것이 관례라고 할 때 이러한 수치는 분명히 당시 각 지역별로 실적 과장에 얼마나 혈안이 되었는가를 증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V. 부·군 단위 회수 규모의 실체

부(府) 단위 통계도 크게 과장되었다. 예를 들어 『동아일보』에 따르면 목포 부는 '1년간 폐품수집액은 백만 원'이라고 했다.

46) “八朔間廢品回收額 勿驚! 三十萬圓”, 『每日新報』(1940. 1. 13).

목포부에서는 애국부인회원과 학생들이 폐품회수일을 기하여 부내가가정을 방문하고 고무혜(고무신), 철설(쇠부스러기, 고철), 공관(빈깡통), 면포, 지설(종이조각) 등을 수집하여 자원이용과 충후보국에 눈물겨운 활동을 계속하여 쓰잘 것 없는 폐품을 뜻기에 놀나올만치 **일년 간 백만 원이라는 대금**에 달하리 만큼 심혈을 짜아 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수한 것같이 생각하던 폐품도 한톨이라도 모아서 진합태산으로 일년간 몇 백만원에 달하리라고 누가 믿었으리오마는 애국부인들의 놀라운 활동과 어린학생들의 수고로운 힘은 오늘에 이러한 성과를 지어 노았다는 것이다. ⁴⁷⁾

즉, 목포부만 조선전체 1년 수거액의 9%를 회수했다는 기사이다. 당시 조선 내 218개 부군도(府郡道)를 생각할 때 통계적으로 어떻게 조합해도 나올 수 없는 가공의 수치이다. 그리고 전남은 1939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82만 원을 회수했다. ⁴⁸⁾ 그렇다면 목포부가 전남과 거의 근접한 성과를 내었다는 것일까?

군 단위의 수집실적은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데, 1939년 상반기 인제군과 이천군의 폐품회수 수량을 보면 표 11과 같다.

인제군은 고물상이 8업자로 14,574관을 수집했으며, 이천군은 18,801관을 수집했다. 금액상으로 각각 7,096원 21전, 7,556원 58전이다. 양구(楊口)도 1939년 전반기 약 2,000관, 통천은 3개월간 3,652.1관(3,020원)을 회수했다. ⁴⁹⁾ 군 단위 평균 수집규모는 편차가 크지만 크게 보아 6개월간 14,000관에서 20,000관 내외를 회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천군은 3개월에 3,652관을 수집하는 등의 오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보고의 허술함은 관을 근으로 잘

47) “木浦의 廢品回收 一年間百萬圓”, 『東亞日報』(1939. 10. 10).

48) “廢品을 回收하자”, 『每日新報』(1939. 9. 14).

49) “楊口廢品蒐集好績”, 『東亞日報』(1939. 7. 25).

〈표 11〉 1939년도 상반기 인제군 및 이천군 폐품회수 수량

군명		인제군	이천군	계
취급인 수		8명	4명	12명
보로류	수량	4,928관	5,796관	10,724관
	금액	3,156원 89전	3,478원 43전	6,635원 33전
고철류	수량	3,269관	6,865관	10,134관
	금액	1,479원 97전	2,068원 96전	3,548원 93전
고고무류	수량	3,846관	2,440관	6,286관
	금액	1,537원 63전	1,646원 12전	3,183원 75전
기타	수량	2,531관	3,700관	6,231관
	금액	921원 72전	363원 07전	1,284원 79전
계	수량	14,574관	18,801관	33,375관
	금액	7,096원 21전	7,556원 58전	14,652원 79전

출처 : 江原道 警察部長(1939. 8. 14), 「廢品回收狀況報告」 제2,053호, 江原道經濟情報(2).

비고 : 원래 단위는 斤으로 나와 있는데, 강원도 경찰부장이 貫을 斤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여겨진다.

고철, 종이 등은 1근 가격에 1원 이상의 가격이 매겨지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못 기재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그만큼 보고용이었고 깊은 심려를 다하지 않은 통계였다.

표 12는 통천군 내 취급업자별 폐품수집 및 매도현황인데, 분석하면 첫째, 수량적으로 고철이 가장 많아 20,189근(1,163원)에 달하고, 고무류가 8,603근(951원)으로 그 다음이다. 고철이 중점 회수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1원당 품목별 폐품 근수(斤數)를 보면 종이 1원당 평균근수는 10.48근, 고철 1원당 17.36근, 고무 1원당 9.05근으로 평균 근수 12.09근이다. 즉, 1939년 초반까지는 고철보다는 종이, 종이보다는 고무를 수집하는 것이 돈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직 금속회수보다는 종이, 고무 등 폐품회수가 중시되던 사정을 말한다.

〈표 12〉 통천군 내 취급업자별 폐품 수집 및 매도 현황(1939년 1월~3월간 수집량)

취급인		람류류(종이)		고철류		고고무류		기타		계	
읍면별	씨명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통천	丁奎英	189근	16원	1,144근	58원	394근	47원	62근	10원	1,789근	131원
	朴明珠	240	28	750	52	230	35	135	27	1,355	122
	韓實淳	1,500	170	7,200	380	3,100	318	500	100	12,300	968
	朴仁洙	210	23	2,820	210	510	68	150	18	3,690	320
	朱桂華	50	6	990	51	140	20	50	8	1,230	85
庫底	金昌成	150	25	500	25	300	28	600	29	1,550	107
	崔柄根	100	17	200	19	100	17	600	30	1,300	86
	金振完	500	30	1,000	60	500	80	1,000	180	3,000	350
	陳東烈	500	30	4,072	244	2,500	250	450	76	7,522	600
踏鐵	南景祐	100	10	100	7	200	15	193	40	593	72
臨南	李龍根	-	-	476	30	369	46	11	4	856	80
歙谷	金小鶯	369	18	937	47	260	27	71	11	1,637	103
계		3,908	373	20,189	1,163	8,603	951	3,821	533	36,521	3,020

출전 : 江原道 警察部長(1939), 「廢品回收狀況에 關한 件」[江經 第1558號, 江原道 經濟情報(1), 1938, 12~1939, 6], 3~4쪽.

VI. 맺음말

본 연구는 1938~1939년 조선총독부 식산국이 발표한 폐품회수 통계가 가지는 오류를 지적하고 그러한 왜곡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첫째, 조작의 방식은 어떠했나 하는 점이다.

각종 자료에 나타난 전체 통계에서 1939년도 폐품회수 총액은 1,196만 4,710원이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1938년 실적 1천만 원으로 만들기 위한 짜

맞춘 숫자였고, 신문매체에 제공하도록 조작된 통계는 바로 <기타> 항목에서 1차적으로 조작되고 있었다. 그 단서는 총액인 1,196만 4,710원에는 <기타> 항목 금액이 들어가는데, 총 수거량에는 제외된 2,775만 3,716관(조선전체A)만 공표한 점이다. 즉, <기타> 수량인 1,446만 2,224관을 더하면 총 수거량은 4,221만 5,940관(조선전체B)이다. 그러나 <기타>를 포함해도 조선전체B는 전국 표준인 1원당 2.32관 혹은 최고기준(경기도) 1원당 2.58관 이내에 안착해야 했지만 3.53관으로 존재할 수 없는 가공의 지수가 산출되었다. 반면 조선전체A는 포착된 최고지수인 경기도의 1원당 2.58관 이내가 들어오므로써 2,775만 3,716관이 상대적으로 실제 수거량에 가까운 통계임을 확인했다. 그런데 총독부 식산국은 아직 제대로 폐품회수 총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혹은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선인의 회수에 자발성을 높이고자 '가짜' 통계나마 공표해야 할 절실한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총액 1,196만 3,710원에는 <기타> 금액 509만 1,945원을 넣은 반면, 총량 2,775만 3,716관에는 <기타> 수량인 1,446만 2,224관을 제외한 것이다. 그래서 조선전체 총계에서 <기타>의 금액만 들어가고 그 수량은 배제된 묘한 '왜곡' 통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둘째, 그럼 실제의 실적은 어느 정도일까?

본 연구는 두 가지 추정을 했다. 추정A에서는 총독부 발표처럼 총독부가 총계에서는 스스로 (총수량)2,775만 3,716관=(총액)1,196만 4,710원으로 발표한 것에 기준하여 전체 총액에서 <기타> 금액(509만 1,945원)을 뺀 687만 2,765원을 1939년 실제 회수량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1938년 실적도 5,061,954원이 된다. 그러나 무조건 <기타>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오류이며, <기타> 항목의 수량 1,446만 2,224관이 어느 합리적인 수준(평균적인 1원당 관 수) 범위에서 실재한다는 추정B를 계산하였다. 이에 실제로 수거된 <기타> 금액 a값을 계산

하면 99만 원이 나온다. 요컨대 <기타> 항목의 조작규모는 410만 1,218원이었고 실제 수거액은 1939년 786만 3,492원, 1938년은 598만 1,681원으로 나온다. 이러한 추정A와 B를 종합하면 당시 식산국 발표가 가지는 왜곡과 과장의 범위를 알 수 있다. 즉, 1938년은 40.68~49.80% 그리고 1939년은 34.28~42.56% 크기로 통계가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별 상황은 어떠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도부군 지역의 실적도 크게 과장된 통계가 빈출하였다. 지역별로 어느 정도 통계가 조작되었는지 직접적인 자료는 없지만 일부 지역, 예를 들어 충남은 369%, 강원은 무려 858%에 달하고 있다. 그렇지만 총독부는 실제 기록을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강원도 경찰부장이 작성한 강원도 폐품회수 통계(28만 7천 원)와 『매일신보』에 수록된 1938년 강원도 실적(55만 2천 원)이 같은 기간의 기록이지만 약 2배 차이가 있다. 추정과장비율을 보면 각각 -7.5%와 858%로 지방당국은 실제 실적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신문매체는 그만큼 부풀려진 기사를 신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총독부 당국이 신문을 통해 발표한 통계는 왜곡이 큰 것이었다.

이처럼 식산국이나 지방당국이 거품실적을 신문에 제공한 이면에는 당시 폐품회수가 여의치 않았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 이는 '중류층 이상의 가정에서 폐품공출이 적다' 혹은 '한때는 경성폐물보국회가 폐품의 회수가 여의치 못하여 업적이 부진'했다는 등의 신문 논조에서도 간취되고 있다. 이러한 '조작'은 어찌면 1938년부터 시끌벅적하게 이미 조선에서 회수량을 1천만 원 달성했다는 그들의 거짓 선전이 자신의 발목을 잡은 결과였다. 이런 고충(?) 때문인지 1940년 이후 총독부는 폐품회수에 관한 공식적인 실적 통계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1939년 한발(旱魃)에도 국방헌납 대금은 날로 증가하였다.

요컨대, 총독부는 실제 실적을 은닉하고 가공의 숫자를 조합하여 각종 신문매체에 공표함으로써 실제와는 다른 왜곡된 통계가 조선인들에게 전달되었고, 거기에는 폐품회수에서 조선인의 자발성을 고취하려는 총독부의 '불순하고 수탈지향적'인 의도가 개입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⁵⁰⁾

50) 그럼에도 본 연구는 제한된 자료로 총독부 발표 통계의 허구성을 밝히는 데 집중함으로써 총독부가 그런 왜곡된 실적을 어떤 방법과 절차로 각 신문매체(『동아일보』, 『매일신보』, 나아가 『식은조사월보』=『경성일보』) 등에 전달하여 紙面化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왜곡된 통계가 실제로 조선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접근하기 어려웠다.

• 참고문헌

『東亞日報』, 『每日新報』, 『殖銀調査月報』, 『朝鮮總督府官報』, 『朝鮮年鑑』, 『朝鮮總督府調査月報』,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42년 판), 『昭和18年 第84回 帝國議會 說明資料』(官房 人事)

朝鮮總督府 經濟警察課, 『經濟治安週報』(1941년판); 『經濟治安日報』(1942년판).

江原道 警察部長(1939. 3. 2), 「廢品蒐集狀況에 관한 件」(江經 第796號, 1938. 12~1939. 6).

江原道 警察部長(1939. 4. 18), 「廢品回收狀況에 관한 件」[江經 第1558號, 江原道 經濟情報(1), 1938. 12~1939. 6].

江原道 警察部長(1939. 8. 14), 「廢品回收狀況報告」(江經 第2,053號, 1939. 7~12).

京畿道 警察部長(1940. 10. 5), 「朝鮮廢品統制株式會社 創立 內紛에 관한 件」(京經 情秘 第10605號, 1940. 6~12).

京畿道 警察部長(1940. 6), 「朝鮮屑物商組合申込團體名簿」(상동).

朝鮮總督府(1938. 9), 「物資ノ需給及價格調整ニ關スル件」, 『時局對策調査會報告事項』.

「失業防止並救濟に關する件」,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諮問案參考書』, 1938. 9.

朝鮮臨戰報國團(1942. 3. 1), 「半島指導層婦人の 決戰報國의 大獅子吼!!」, 『大東亞』 14-3.

「朝鮮に於ける資金·資材·勞力の統制大要」, 『朝鮮經濟統制問答』, 東洋經濟新報社 京城支局, 1941. 9.

軍需省, 「(極秘)昭和19年度物動計劃實施概況并に二十年度國力の見透に付て」, 『第86議會豫算總會說明資料』[田中申一 編(1975), 『日本戰爭經濟秘史』(資料91), コンピュータエージ].

「決戰體制の確立と朝鮮經濟の再編成」, 『朝鮮產業年報』(1943년판).

李健赫(1940), 「廢品回收에對하여」, 『家庭之友』 30, 朝鮮金融聯合會.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규명과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연구

선문대학교 장복희

- I.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배경과 현황
- II.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실체
- III. 관련 국제법규
- IV. 군위안부에 대한 일본 사법부의 대응
- V.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설치와 여성의 역할 -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를 중심으로
- VI. 해결방안
- VII. 맺음말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규명과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연구

선문대학교 장복희

이 연구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실체와 역사를 재검토하여, 일본이 공약한 국제법에 따른 국내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안부 문제의 진실규명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21세기 전시 여성에 대한 조직적인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I.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배경과 현황

1. 위안부제도의 역사

지난 세기 제2차 세계대전 시, 일본군은 일본 영역과 점령지역에 광범위한 군대용 매춘제도를 운영했다. 성적 노동이나 성적 노예에 투입된 정확한 여성의 수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대략 5만에서 4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최근 연구는 후자가 보다 유력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¹⁾ 이들 여성의 80%는 한국인이었고, 모두는 아니나 대부분은 강제로 모집되었다. 이 중 3분의 1의 여성

만이 생존한 것으로 보고 있다.²⁾ 이 위안부제도는 일본군에 의한 현지 여성의 강간을 예방하고 집을 떠나 싸우고 죽는 수많은 군인을 위하여 통제 가능한 형태의 오락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지되었다.³⁾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 최악의 인권침해이자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인 위안부⁴⁾제도는 여성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로 끌려와 일본제국 군대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다. 세계는 거의 50년 동안이나 이러한 극악무도한 일을 간과하였고 이들 여성의 피해된 삶이 인권 문제로 부상되는 데는 50년이 걸렸다.⁵⁾ 수만의 아시아 여성이 인도에 반하는 죄(crime against humanity)에 해당되는 조직적인 군대 성노예의 희생자가 되었다.⁶⁾

2. 일본의 태도

패전 후 일본은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 여성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나

- 1) Chunghee Soh(2000), "Human Rights and the 'Comfort Women'," *Peace Review*, Vol. 12, No. 1, pp. 123~129.
- 2) Chunghee Soh(2000), p. 124.
- 3) Yuki Tanaka(2001), *Japan's Comfort Women-Sexual slavery and prostitution during World War II and the US occupation*, Routledge : London and New York, p. 166.
- 4) 위안부라는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 군대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위안부라는 개념은 일본군에 의하여 성노예로 생활하며 노예상태로 감금되어 있었던 여성 희생자에 대하여 사용된 참혹한 용어이다.
- 5) Jan-Ruff-O'Herne(2005), "Fifty Years of Silence : Cry of the Raped," Helen Durham and Tracey Gurd eds., *Listening to the Silences : Women and War*, Hague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p. 3.
- 6) Yuki Tanaka(2001), *supra note*, p. 166.

물질적인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군대 매춘장소가 수많은 출간물로 발행되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강요된 성노예제도에 직접 연루되어 있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무시하고 있다.⁷⁾

UN, 국제노동기구, NGO의 비판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아직까지 취하지 않고 있다. 2007년 현재까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내외 상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 정부는 국가보상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고, '방위조약'과 같은 정당하지 않은 근거로 '아시아여성기금'과 같은 개인기금단체에 기금을 지불하고 있다.⁸⁾

둘째,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로 아마구치 지방법원의 악명 높은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모든 보상요구를 거부하였다.⁹⁾ 독립적이고 예외적인 승소판결의 경우는 히로시마 고등법원에서 번복되었고,¹⁰⁾ 이 판결은 2003년 3월 25일 일본 최고법원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국제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한국 여성의 제안은 — UN 인권단체에 의하여 강력히 지지되었는데 — 일본 정부에 의하여 거부되었다.

7) Elazar Barkan(2001), *Guilt of Nations*, Baltimore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51~53 ; George Hicks(1999), "The Comfort Women Redress Movement," Brooks ed., *When Sorry Isn't Enough*,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113~125.

8) Etsuro Totsuka(1995),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nd Issues in Law," Keith Howard ed., *True Stories of the Korean Comfort Women*, London & New York : Cassell, pp. 193~200.

9) Etsuro Totsuka(1999), "Commentary on a Victory for "Comfort Women" : Japan's Judicial Recognition of Military Sexual Slavery," *Pacific Rim Law & Policy Journal*, Vol. 8, pp. 47~61.

10) Reuters=CNN. Com. news, Japan court rules against 'comfort women', March 29, 2001.



셋째, 입법에 의한 국가사죄와 국가보상을 마련하려고 했던 일본 의회 야당 의원이 마련한 제안은 성공적으로 의회에 상정되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입법안은 국제법 혹은 일본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보수파 의원에 의하여 거부되었고, 의회 의원들은 일본 정부를 지지하였다.¹¹⁾

넷째, 전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조사를 위해 야당 의원들이 의회에 제출한 입법안은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파 의원들에 의하여 또 한 번 제지당했다.¹²⁾

다섯째, 일본 정부는 당시 일본 군대가 일본 국내법에 근거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¹³⁾

여섯째, 일본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 않다.¹⁴⁾

일곱째,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의 조사를 행하지 않고 있다.¹⁵⁾

① 군위안부의 탄생과 그것의 범죄성을 둘러싼 사실을 제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② 당시 국가가 규율하는 매춘제도가 합법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위안부 여성 피해자에 대한 군대행위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수적인 연구자들의 논의는,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하여 국가사죄를 해야 한다는 대외압력을 무시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11) "Senso-Higai-Chosakai-Ho wo Jitsugensuru Shimin-Kaigi"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Kjaki/5481>.

12) 각주 11)과 동일.

13) Yoshiaki Yoshimi(2000), "The Emergence of the Issue," Trans. Suzanne O'Brien, *Comfort Women Sexual Slavery in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W II*,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23~40.

14) Yoshiaki Yoshimi(2000), pp. 23~40.

15) Yoshiaki Yoshimi(2000), pp. 23~40.



있다.¹⁶⁾

이러한 식의 합리화와 법적 면제, 미결상태는 여성의 인권뿐 아니라 세계화의 실현을 늦추는 것이 된다.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는 전시의 여성에 대한 조직적 폭력의 예방을 힘겹게 하는 것이다.

3. 한국의 입장

한국 여성 위안부는 유괴되었고,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는 동안 일본 제국 군대에게 성적 쾌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제로 끌려갔다. 전쟁이 끝날 무렵, 많은 위안부 여성은 살해되고 버려지거나 자살했다. 생존자는 일본군의 패배로 인하여 연합군에 의하여 구출되었다.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자들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한국 사회는 여성에게 순결을 강요하고 기대하였으며, 어떠한 종류의 성행위도 난혼으로 치부했다.¹⁷⁾

경제적 동기와 더불어, 한국 정부는 이후 무역과 우수한 경제여건을 제공한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회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여성은 자신들이 참고 견뎠던 극악무도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법상 실행 가능한 청구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는 국제관습법에 근거한 청구였다. 40여 년이 흘러서야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있었고, 페미니즘과 1980년대·1990년대에 여성의 권리에 대한 운동이 시작되었고, 사람

16) Etsuro Totsuka(2006), "Lessons from the Japanese Case of "Comfort Women",” Ystinia Dolgopol and Judith Gardam eds., *The Challenge of Conflict-International Law Respond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p. 506.

17) Christopher Raymond, Morita Mathur, and Petru Roman(2003), "Korea Comfort Women,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A Critical Analysis,” *Journal of Asia-Pacific Affairs*, Vol. 4, p. 47.

들은 위안부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목소리를 내었다.¹⁸⁾

그 결과 다양한 NGO와 국제기구가 제2차 세계대전 시 위안부 문제와 강제노역을 추적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UN은 인권사안으로서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고 그 해결책을 찾도록 특별보고관¹⁹⁾을 보냄으로써 이 일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무시했다. 국내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압력이 있는 후에야, 험난한 역사에 속하는 이 사안을 해결하고 미래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양국의 이익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라고 요청했다. 결국 1993년 일본 정부는 위안부여성을 모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사안은 이미 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상은 거부하고 있다.²⁰⁾

4. 미해결 상황

근위안부의 인권침해는 전후 측사가 아닌 1990년대에 나타난 문제로서 아직 생존해 있는 1만 7,000명에서 6만 5,000명의 위안부 여성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 이들 여성은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구제를 받기 위해 조직화하고 있다. 생존자들의 조직적인 요구에 대한 주요 장애물은 인권침해로서의 강간의 무형성, 피해자와 사회적 유대관계의 부족 등이 관련된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강간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종종 수치

18) Christopher Raymond, Morita Mathur, and Petru Roman(2003), p. 47.

19) Radihuka Coomaraswamy(1996),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published her report on the problem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on February 6.

20) Louise Do Rosario(1993), "A quest for truth : sex slavery issue affects ties with Asian nation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Vol. 156, No. 7, p. 37.

심이 따라다닌다. 강간의 피해자를 확인하는 일은 불명예스럽고 죄악이라는 감정과 결부된다. 또한 이들 성노예의 대부분은 일본 시민이 아니므로 한국인 위안부의 청구는 일본의 국내정치에서 쉽게 무시된다.²¹⁾

군위안부 사안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일본제국주의 시절 위안부에게 가해진 끔찍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해결의 문제로 남겨져 있다.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는 많은 국가의 군사활동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나, 군인에게 성을 제공하기 위해 현지 여성이 조직적으로 제공된 경우는 여태껏 없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시 일본군을 위한 ‘위안부’라는 전대미문의 제도는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여성의 성노예 제도였으며, 이들은 대부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가난한 가정 출신의 식민지 여성이었다.²²⁾

청구인은 국제적 차원에서도 무시된다. 구제와 보상에 대한 국제법 규범은 국가에 적용되고,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개인에게도 인정된다. 반면, 대량강간은 국제범죄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일부 효과로서 보고 있다.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의 붕괴에 따른 전쟁 이후 대량강간은 국제법에 의하여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되었다. 위안부 문제가 대량강간 형태로 간과됨으로써, 한국은 1965년에 일괄비용을 받은 것으로 처리되었고, 일본 정부는 이

21) Angelika von Wahl(2009), “The Politics of Reparations : Why, When, and How Democratic Governments Get Involved,” Manfred Berg and Bernd Schaefer eds., *Historical Justice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 How Societies are Trying to Right the Wrongs of the Past*,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58.

22) Chunghee Sarah Soh(Dec. 1996), “The Korea “Comfort Women”-Movement for Redress,” *Asian Survey*, Vol. 36, No. 12, p. 1238.

문제는 그 이후 종료되었다고 하는 것이다.²³⁾

월권행위를 한 정권이 전쟁에서 패배한 후 패전국으로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이한 반면, 승전국은 새로운 규칙의 일부를 제시할 수 있지만, 이는 일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독일과는 동일한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해자 단체가 어떤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언제 민주정부가 사과하고 보상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청구인들은 사회적 판단과 심리적·사회적 소외의 상당한 부담을 극복하여야 하고, 이들은 국제사회의 정보망 혹은 인권운동을 구축하는 데 정치적·조직적·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²⁴⁾

일본이 중대한 침해를 저지른 과거 역사를 다루는 과정을 부루마(Ian Buruma)는 '역사적 건망증(historical amnesia)'이라고 표현하고 있다.²⁵⁾ 독일과 마찬가지로 전후 즉시 일본인들은 자신들을 일차적인 피해자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핵심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이다. 독일과의 중요한 차이점은 대부분 독일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곧 멈추었지만, 일본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으로 인해 피해자가 되었다는 인식은 남경[Nanking]의 학살사태의 공포와 더불어 위안부 문제를 희미하게 하고 있다.

일부 한국 국민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고통을 받은 한국인 여성을 지목하고 일본 군대의 매춘장소로 위안부를 제공하는 데 한국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소위 '반역자'로 불리는 일본으로부터 사적

23) Angelika von Wahl(2009), *supra* note 21, pp. 58~59.

24) Angelika von Wahl(2009), p. 59.

25) Ian Buruma(1994), *the Wages of Guilt*, New York : Farrar Straus Giroux.

기금을 받기를 원하는 한국 여성이 있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⁶⁾ 일본으로부터의 개인적인 보상의 대안으로, 한국 정부는 위안부로 공식 등록된 여성 시민에게 소액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소외된 개인 청구인의 요구는 국가의 정치활동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²⁷⁾

그러나 국제법상 명백히 전시 여성의 강간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헤이그협약·제네바협약과 제1의정서를 중대히 위반하는 명백한 독립적 국제범죄이다. 위안부제도는 명백히 당시 법에 의해서도 국제법 위반의 범죄이며, 국제법적·국내법적 해결이 필요한 국제범죄행위이다.

II.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실체

1. 구조적인 성폭력

일본의 역사에서 국가가 통제된 매춘제도는 남성의 성적 권리규율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즉 남성의 권리는 혼인 외에 일반적으로 상업적이고 공적인 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²⁸⁾ 이는 정숙하고 모범적인 여성을 강간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이 당시 전시 독재국가인 일본 제국은 군위안부제도를 장기전에 대비한 군대를 위하여 공창제도를 확대하는

26) Sarah Soh(Mar. 9, 2005), "Gender, Class, Nation : Korean Comfort Women," paper presented at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27) Angelika von Wahl(2009), *supra* note 21, p. 59.

28) Carole Pateman(1988), *The Sexual Contract*,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p. 2.

것으로서 인정하였다.²⁹⁾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특권 의식을 가진 남성의 잠정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성에 대한 '생리적 욕구(biological need)' 해소라는 남성주의에 기본적으로 근원을 두고 있다. 가부장적 의식을 가진 일본은 군위안부제도의 실시와 확대를 해왔으며 특히 1938년부터 남경 학살이 있은 후 이 제도는 군대의 사기를 진작하고 현지 여성을 강간으로부터 지킨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군대의 '야성과 욕망'을 조정하고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강간을 예방했다고 볼 수 없다.³⁰⁾ 1942년 남부아시아와 태평양군도를 침략한 후 군대에서 저지른 610개 범죄가 보고되고 있고, 군대기록은 '불충분한 위안소 시설과 불충분한 감시'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으로 강간의 확산을 지적하고 있다.³¹⁾

특히 한국인 위안부의 경우, 이들의 민족성은 사회적 차별의 이유가 되었다. 예컨대 오키나와의 민족계층을 보면 한국 여성은 입대 남성에게 의하여 이용되었고, 반면 오키나와인은 관료직에 지명되었다. 더욱이 일본 국적을 가진 오키나와 여성은 보수를 받았으나, 한국 여성은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식민지인으로서 무보수로 동일한 서비스에 종사하였다. 오키나와 현지인은 본토 일본군에게 잔인하게 확대당했지만, 반대로 오키나와 주민은 식민지 사람으로서의 한국인을 업신여겼다.³²⁾

29) C. Sarah Soh(2008), *The Comfort Women-Sexual Violence and Postcolonial Memory in Korea and Japan*, Chicago and 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16~117.

30) Yoshiaki Yoshimi(1995), *Jugun Ianfu(Military Comfort Women)*, Tokyo : Iwanami Shoten, p. 62.

31) Yoshiaki Yoshimi(1995), p. 62.

32) Chizuko Ueno(Mar. 17, 1993), "Japan's Enduring Shame," *Korea Times*, Los

일본군에 의한 민족차별은 전쟁이 끝날 때 가장 악랄했다. 일본군은 일본인 위안부에게는 일본의 패전을 알리고 피신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많은 한국인 위안부는 그냥 버려졌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퇴진하는 일본군이 이들을 방공호와 굴속으로 밀어 넣어 폭파시키고 불을 지르거나 사살하고, 현지에 대규모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보고가 있다. 전쟁이 끝난 후 퇴진하는 일본군이 저지른 한국인 위안부의 대학살은 군대의 잔인무도성이 폭로될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인 행동은 한국인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일반적으로 경멸적이고 자기 민족 중심적이며 성차별적 태도에 따른 것이다. 식민지 여성은 군대의 성도구로 전락했고, 이들 여성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군이 휴대하는 소모용 공급품이었고 대수롭지 않은 것에 불과했다.³³⁾

2. 강제노동

일본은 태평양전쟁 시 일본군의 성적 노예로서 주로 한국 여성을 충당했다.³⁴⁾ 한국인 군위안부의 비극으로서의 '노예 매춘(enslaved prostitution)'의 역사는 성(gender)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전시 위안부제도는 그곳에서 강제 성노동을 하는 것이었으며,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식민지 한국 여성을 희생시킨 것은 양국 간에 여전히 지배적인 남성 중심의 성문화를 구현한

Angeles.

33) C. Sarah Soh(2008), *supra* note 29, p. 141.

34) Manfred Berg and Bernd Schaefer eds, (2009), *Historical Justice in International Perspective-How Societies are Trying to Right the Wrongs of the Past*,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40.

(계층, 민족과 국적 요소가 얽혀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³⁵⁾

이러한 사태를 정직하게 고찰하는 것만이 한국과 일본 간의 풀리지 않은 역사를 해결해 나아가고, 성찰적인 사고와 대화를 통하여 이웃 나라 간에 진정한 화해로 나아가며 새로운 길을 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 전시와 평시에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그리고 성폭력과 싸우는 공동의 공약을 실현할 때이다.

III. 관련 국제법규

1. 일본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

일본 메이지 시대 초기인 19세기 후반에 일본은 국제법을 준수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면서 중요한 조약에 비준하거나 가입하였다.

다음 세 가지 조약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이 있는 도약들이다. 이 조약들은 대부분 주요 다변조약으로서, 흑인 노예의 국제무역을 억제하는 데 일부 진전이 있는 후, 국제사회가 여성과 아동의 노예무역, 특히 매춘을 위한 노예사용의 억제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 (1) 1904년 5월 18일 파리에서 서명된 백인 노예무역 억제에 관한 국제협정
- (2) 1910년 5월 4일 파리에서 서명된 백인 노예무역 억제에 관한 국제협약

35) Manfred Berg and Bernd Schaefer eds.(2009), p. 240.

이 협약 제1조는, 비록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매춘을 목적으로 소녀를 유인하고 유괴하는 자는 처벌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조는 사기와 속임수 혹은 폭력수단, 강압, 권한남용 또는 강제조치를 이용하여 성인 여성을 유인하고 속이거나 유괴하는 자는 처벌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제3조는 제1조와 제2조에 정의된 범법자의 처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1921년 9월 30일 체결된 여성과 아동의 무역억제에 관한 국제협약

일본은 1925년에 이들 조약에 가입하고 비준하였다.³⁶⁾ 일본은 1926년 9월 25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노예협약을 비준하지는 않았으나, 노예금지와 노예 무역은 이 협약이 채택될 당시 국제관습법 개념이었다.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은 1930년 6월 28일 ILO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일본은 1932년 10월 15일에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³⁷⁾ 이 협약 제2조 첫 번째 문구는 성의 어떠한 강제적 노동도 금지하고 있다. 제24조는 다음과 같다.

강제노동의 불법적 요구는 형사법 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하고, 이 협약의 체결국에 대하여 법이 부과한 형벌은 실제로 적정하고 엄격히 집행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 36) 일본은 1904년 백인 노예무역 억제에 관한 국제협정에 1925년 10월 21일 가입하고 같은 해 12월 21일에 법률로 공포하였다. 1910년 백인 노예무역 억제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1925년 10월 21일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같은 해 12월 21일 공포하였다. 1921년 여성과 아동의 무역억제에 관한 국제협약은 비준서가 1925년 12월 15일에 기탁되었고, 같은 해 12월 21일 법률로 공포되었다.
- 37) 일본은 이 협약을 1932년 10월 15일에 비준하고, 같은 해 11월 21일에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12월 7일에 법률로 공포하였다.

1933년 3월 11일 일본제국 내각은 국제연맹을 탈퇴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불가피하게 소외된 일본과 일본제국 정부와 군대가 중국에 가한 공격 이후 발생하였고,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일으킨 일련의 전쟁을 야기한 행위를 상징하는 결정이었다. 이러한 반국제사회적인 행동들을 보면 일본은 실질적으로 국제법을 존중하려는 의지를 포기한 것으로 보였다. 일본의 그 당시 생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메이지 시대 때 보여주었던 국제법을 준수하려는 의지와 정신을 아직도 회복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군 성노예의 현안을 다루는 UN의 다양한 시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정적 태도 등을 볼 때 일본은, 국제법을 준수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2. 1907년 헤이그협약 : 전쟁범죄 위반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국제인도법적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은 1874년 브뤼셀 회의에서 전쟁에 관한 법규와 일반관습을 정의한 25년 이후에 채택된 1907년 헤이그협약³⁸⁾이다. 이 협약 전문에서 체약국은 다음과 같은 일정한 제한을 마련하였다.

…… 전쟁을 막을 수 없는 극단적인 경우에조차, 인류의 이익과 보다 진보적인 문명의 필요성에 기여할 바람으로 고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보다 상세히 전쟁에 관한 법규와 관습을 정의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체약국은 군사상 요건이 허락하는 한, 전쟁의 해악을 줄이기 위한 바람으로 고무되어 작성된 전문규정은, 교전자 간의 상호관계와 그들

38) 1899년 7월 29일 헤이그협약과 1907년 10월 18일 헤이그협약.

과 민간거주민 간의 관계에서 교전자의 일반행위원칙으로서 제공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

헤이그협약의 체약국은, 실제로 일어난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체약국은, 자신들이 “서면약속이 없는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경우는 군 지휘자의 자의적 판단에 남겨져야 한다고 의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³⁹⁾

헤이그협약 전문에는 소위 ‘Martens⁴⁰⁾ 조항’이라 불리는 규정이 있다.

보다 완전한 법전이 마련될 때까지, 체약국은 그들이 채택한 규칙에 의하여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간거주민과 교전자는, 문명인들이 정해놓은 관행, 인도법(the law of humanity)과 공공의 양심의 명령으로부터 나오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율에 구속당함을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헤이그협약의 ‘Martens’ 전문은 19세기 전쟁인도법의 발전을 구체화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장래 전쟁법의 방향제시를 하고 있다. 이 전문에서 이어받은 인도주의 전쟁규칙을 만드는 작업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⁴¹⁾ 이러한 선언에서, 문명국에서 인정된 서면협약과는 별도로, 이들 원칙이 조약형태로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기본원칙이 있음을 알

39) Yougindra Khushalani(1982), *Dignity and Honour of Women as Basic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Hague, Boston, Lond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p. 9.

40) 러시아 법률가 Fedor Fedorovich Martens.

41) 장복희(1997), 「국제인도법의 발전과정과 그 이행」, 『인도법논총』 제17호,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199~200쪽.

수 있다.

1907년 헤이그협약은 점령지역에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은 1912년에 이 협약을 비준하였고, 일본 군대가 필리핀을 공격하기 시작한 1941년에 이 협약은 효력을 발하였다.

이 협약 제46조는 가족과 개인의 삶 등의 명예와 권리를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규정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그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강간이나 성적 유린은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명백하다. 더욱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가족의 명예에 중대한 위반을 구성한다. 제46조에 규정된 의무의 중요성은 이후 국제법에서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확대되었다.

일본 군대에 의한 헤이그협약의 위반은 극동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일부 판결이 내려졌고, 이 법정에서 원고는 전쟁범죄를 저지르도록 명령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인정한, 전쟁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민간인이 입은 손해가 아직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다루어진 사안은 전쟁포로의 인권유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강간과 강제매춘이라는 전쟁범죄에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헤이그협약을 위반한 당사국에게는 형벌이 부과된다. 이 협약 제3조는 “협약규정을 위반한 교전당사국은 사안이 요구하는 경우 보상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이는 자신의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가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일본 정부는 점령지역에서 일본군이 저지른 살인과 강간 사건에 대한 보상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3. 인도에 반하는 범죄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보상 의무의 근거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 against humanity)에 대한 공약의 위반을 들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일부 국가에서는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인간 행동의 진정한 보편적 기준을 모색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 여기서 키르히하이머(Otto Kirchheimer)의 말을 언급할 수 있다.⁴²⁾

승계 정권의 허망한 기준을 넘어서, 충돌하는 원칙이나 기구, 신뢰제도와 이익제도와 함께, 우리는 모든 집단과 민족이 늘 찬성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제시해야 할 기본적인 개념을 찾고 있다.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단순한 목표에 의한 인간성 비하의 거부가 그러한 개념이다.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개념은 1919년 파리평화회의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이 개념은 평화에 반하는 범죄 즉 침략전쟁을 야기하는 범죄와 구별되지 않고 있었다.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개념은 이후 1948년 집단살해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같은 국제법에 반복해서 채택되고 있다. 국내법 차원에서 1954년 서독 형법은 살인, 위해, 일정 국적, 인종 혹은 민족 집단의 전체 혹은 일부를 절멸할 의도로 저질러진 여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의 진행은 국제형사법 발전의 출발점이다. 이들 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서 두 가지 범죄의 초기범주, 즉 '평화에 반하는 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42) O. Kirchheimer(1961), *Political Justice, The Use of Legal Procedure for Political Ends*, 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319.

분명히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⁴³⁾

한편 위안부제도의 관리자로서 일본 군대 지휘관들은 이를 Kareyuki-San 제도의 정당화이며 확대로 보았고, 본질적으로 어느 곳에서도 국가에 의하여 널리 규율되는 공창제도와 비교하였다. 납치와 성노예의 착취형태가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대 지휘관은 위안소의 설치를 조직적인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았다. 여성이 제공하는 성적 서비스는 표면적으로는 '상업적 거래(commercial transaction)' 즉 성적 서비스와 재정적인 대가 간의 '동등한 가치의 교환' 형태로 보였다. 비양심적으로 의도적인 '거래 형태(business formality)'는 군위안부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범죄성과 강압적인 성적 노예성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하였다. 위안부들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개인이 아닌 단순히 '성적 필수품(sexual commodity)'이었다. 군위안부가 '화물(cargo)'로서 재고관리목록에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고위 군지휘관들이 이들 여성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⁴⁴⁾

일본은 자국의 사회경제적·문화적 환경으로 인하여 일본 남성에게 성적 노예와 깊이 얽혀 있는 독특한 군대기구를 제공한 것이다.⁴⁵⁾ 일본제국 군대의 역사와 문화는 비판적으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43) 장복희(2001), 「국제법상 전쟁범죄로서의 무력 충돌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여성인권의 시각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률위원회 엮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전망』, 풀빛, 131쪽.

44) Yuki Tanaka(2001), *supra* note 3, p. 173.

45) Yuki Tanaka(2001), p. 182.

4. 1946년 극동국제군사재판소 도쿄현장

도쿄현장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정의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1907년 헤이그협약상 전쟁범죄를 확인하고 있다. 이 현장 제5조 c항은 많은 범죄를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명예에 대한 책임은 늘 인도법에 반하고, 전쟁법규와 관습의 위반으로 보고 있다.⁴⁶⁾

5. 1949년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네바협약 제3조는, 국제관습법을 법전화한 것으로, 이 최소한의 규범은 국제적 성격이 아닌 무력충돌시에 적용되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저지른 인류의 양심을 유린하고 인류에 반한 '군위안부' 제도에도 적용된다. 제네바협약은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비준하였고, 비체약국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제3조는 명백히 국제관습법의 개념으로 인정되고 있다.

제네바협약의 제 규정에 의하여, 여성에 대한 대량강간은 인류의 양심을 배반하는 야만행위이며, 협약은 여성이 특별한 고려대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함을 공언하고 있다.

그 외 1977년 국제적 무력충돌시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1추가 의정서에서 제48조, 제51조는 민간인 보호의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1977년 국제적 무력충돌시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2추가 의정서는 국내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원칙을 형성한 거대한 첫 단계로서, 제3조는 4개 제네바협약과 내용이 동일하다. 이 추가의정서는 국내적 무력충돌에

46) 장복희(2001), 앞의 글, note 43, 136쪽.

대한 국제적 합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제2추가의정서의 본질적인 가치는 민간인 보호이다. 제4조는 무력충돌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한 진정으로 기본적인 인권헌장이다.

제네바협약과 그 추가의정서의 현대 전쟁법은 헤이그협약상 Martens전문에서 그 정신을 이끌어내고 있다.⁴⁷⁾

6. 1993년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1994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및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1993년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1994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범법자를 기소하는 것이었으며,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성폭력은 전쟁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⁴⁸⁾

전시 성폭력은 면제되지 않는 범죄이자 형벌로서, 이들 재판소 규정은 국제법을 이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의 실현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발전이다.⁴⁹⁾

7. 전쟁범죄로서의 강제불임·강제낙태

국제전쟁재판소의 규정과 판결을 보면,⁵⁰⁾ ‘위안부’ 법정은 강제낙태, 유산

47) 장복희(2001), 앞의 글, note 43, 140~148쪽 참조.

48)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1998) UN Doc A/CONF 183/9, Article 8(2) (xxii).

49) Charlotte Lindsey(2005), “The Impact of Armed Conflict on Women,” Helen Durham and Tracey Gurd eds., *Listening to the Silences : Women and War*, Hague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p. 26.

50) Kelly D. Askin(2005), “The Jurisprudence of International War Crimes

의 상당한 증거를 확인하였는데, '위안소'의 관리인과 14세에 낙태를 당한 증인에 의해 보고된 특히 끔찍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그녀는 이미 임신 5개월이었으나, 낙태에 사용된 약이 듣지 않아서 태아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복부를 눌렀다고 한다.⁵¹⁾

강제불임은 국제법정에서 독립적인 범죄로 명백히 기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이 범죄는 뉘른베르크 법정에서는 언급하고 있으며 묵시적으로 기소될 수 있는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아시아의 많은 여성과 소녀는 이들에게 가한 수술과 성학대의 결과로 불임이 되었다. 일부 여성은 생식기 혹은 성기에 해를 가하는 성폭력으로 인해 임신기능을 잃었다. 강간으로 인하여 성병이 생기고, 일부는 임신을 예방한다는 의도로 약물을 사용하고, 다른 일부는 강제낙태를 당했다. 실제로 일본 군대의 성노예였던 이전의 대다수 위안부는 성폭행으로 인해 가임능력을 잃었다.⁵²⁾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직접적인 결과, 불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약품이나 불법적인 화학약품을 사용하거나 불법치료를 함으로써 가임능력을 잃은 경우에는 강제불임을 이유로 기소할 수 있다.⁵³⁾

여성이 폭력과 성폭력의 결과로 유산이 되는 경우, 폭력으로 인해 유산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강제낙태로 기소될 수 있다. 신체적 폭력

Tribunals : Securing Gender Justice for Some Survivors,” Helen Durham and Tracey Gurd eds., *Listening to the Silences : Women and War*, Hague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p. 134.

51) Women’s International War Tribunal “Comfort Women” Judgment : Transcript of Oral Judgment Delivered on 4 December 2001’ Caucus for Gender Justice website : <http://www.iccwomen.org/archive/tokyo/summary.htm>. “Comfort Women” Judgment, p. 320.

52) *Ibid.*, pp. 403~409.

53) Kelly D. Askin(2005), *supra* note 50, p. 146.

은 복부 등 몸에 고통을 가하는 것이며, 이는 태아에 상당한 해를 주는 것이다. 인도의 반하는 범죄로서 성적 폭력의 또 다른 형태인 강제낙태는 전쟁범죄로서 기소할 수 있다.⁵⁴⁾

8. 성노예 위안부 법정

노예화(enslavement)와 강간(rape)은 유고 재판소와 르완다 재판소에서 명백히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성노예(sexual slavery)는 ICC규정, 시에라리온과 캄보디아 재판소 규정에서는 명백히 범죄로 기록하고 있다.

유고 재판소에서, Kunarac 판결에서 재판소는 노예협약을 준수했고 노예화는 모든 사람에게 소유권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⁵⁵⁾

Kunarac 판결을 지지하면서, 민간법정의 '위안부' 판결은 성노예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다음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성노예범죄의 위법성은 사람에 대한 성적 통제를 행사하거나 사람으로부터 성적 자율성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소유권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사람의 성이나 성적 자율성에 대한 통제는 소유권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범의(犯意)는 그러한 권한을 국제적으로 행사하려는 것이다.⁵⁶⁾

무력충돌시 강간, 성노예, 노예와 같은 관행에 대해 UN 특별보고관은 성

54) Kelly D. Askin(2005), p. 151.

55) Kunarac Trial Chamber Judgment, p. 539.

<http://www.un.org/ictykvocka/triaic2/judgement/kvo-tjo10222e.pdf>.

56) 'Comfort Women' Judgment, *supra* note 51, p. 618.

84 근현대 한일관계의 제 문제

노예는 “강간을 통한 성관계 혹은 여타 형태의 성폭력을 포함하며 그 사람에게 소유권에 따른 모든 권한이 행사되는 자의 지위 혹은 상황”으로 정의 내렸다.⁵⁷⁾ 특별보고관은 “가장 흔히 인정되는 형태의 노예는 육체노동이나 강제 노역이고, 이는 단순히 ‘지위나 상황’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강간행위가 성적 노예로 이행되었는지 고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⁵⁸⁾

IV. 군위안부에 대한 일본 사법부의 대응

한편 일본의 국내판결의 좋은 예로서 나가사키 지방법원 판결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피고를 기소한 것은 나가사키 지방법원의 검사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피고는 10명의 일본인으로, 나가사키에서 온 7명의 남자와 2명의 여성, 상하이에서 온 1명의 남자로 구성되었다. 이 결정은 1936년 2월 14일 나가사키 지방법원 형사부 소속 3명의 재판관에 의하여 내려졌다.⁵⁹⁾

법원은 일련의 공모로 모든 피고인은 나가사키에 있는 15명의 일본 여성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일본 해군 위안소로 유괴하고 밀매했다고 판시하고, 이들은 일본 형법 제226조 제1항과 제2항에 정의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유죄선고를 내린 바 있다.

57)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 Update to the Final Report Submitted by Ms. Gay J. Mcdougall*, 52 UN ESCOR, Doc. E/CN. 4/Sub. 2/2000/21(2000), p. 47.

58) *Ibid.*, p. 50.

59) Etsuro Totsuka(2006), *supra* note 16, pp. 506~507.

역사가 요시미 교수의 주장과 일치하는 이 사실은 나가사키 지방법원 판결이 첫 번째 일본 해군 위안소에 모집된 군위안부의 유괴사건 중 첫 번째 사건과 관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요시미 교수에 따르면, 이는 대략 1932년 3월경으로 일본군과 해군은 상하이에 배치되었고 그곳에 첫 번째 군위안소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첫 번째 위안소는 해군에서 운영하였다.⁶⁰⁾

15명의 여성 피해자는 나가사키에서 모집되었고 일본인으로 보인다. 이전에 알려진 위안부는 일본인이 아니었고, 이 판결은 위안부 문제의 진실규명에 신선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판결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226조 제1항과 제2항이다. 이 조항은 위에 언급한 매춘에 사용하기 위한 여성 밀매억제에 관한 세 가지 국제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 판결은 형법을 적용함으로써 해군의 위안소에 여성을 유인하고 밀매한 범법자를 성공적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 이는 일본의 사법부가 효과적으로 법의 지배를 실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였으며, 일본이 이들 사례에서는 국제법을 준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파시즘과 군사주의가 대두되고 있을 때 내려진 사법행정의 이와 같은 판결은 획기적인 일이다. 이 재판이 있던 2주 후인 2월 26일 조직화된 쿠데타가 발생했다.

나가사키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이 사건의 원고인 위안부 여성의 모집 사례가 놀랍게도 많은 한국인 위안부 여성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60) Yoshiaki Yoshimi(1995), *supra* note 13, pp. 43~47.

V.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설치와 여성의 역할 –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를 중심으로

무력충돌시 여성 강간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이 참여하는 진실규명위원회 설치와 관련 국내법을 제정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로, 이 위원회는 1995년 성인지적·중립적 국가통일과 화해법을 제정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실과 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이하 TRC)⁶¹⁾는 시민사회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위원회로서, 여성의 경험을 수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TRC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식적인 성별 구성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TRC는 여성의 참여를 고무하고 성인지적 시각(gender-perspective)을 통합시키는 다양한 도전을 시도했다. 특히 위원회가 소집된 후 적용가능한 입법화가 이루어지고 관련 절차가 개시되었다. TRC는 여타 지역에서 화해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국제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TRC는 이후 제도적 발전의 중심점이 되고 있으며, 여성의 참여와 성의 통합을 반영하는 적절한 통로가 되고 있다.⁶²⁾

61) 1982년에서 2003년까지 설립되거나 공식적으로 제안된 진실규명위원회가 설치된 국가로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필리핀, 우간다, 네팔, 칠레, 차드, 엘살바도르, 독일, 하이티, 스리랑카, 과테말라, 부룬디,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나이지리아, 우루과이, 파나마, 한국(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페루,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시에라리온, 동티모르, 가나, 부룬디, 라이베리아를 들 수 있다.

62) Hayli Millar(2001), "Facilitating Women's Voices in Truth Recovery," Helen Durham and Tracey Gurd, *Listening to the Silences: Women and War*, Martinus Nijhoff Publishers, p. 172.

TRC의 경험을 보면 여성과 여성단체가 진실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정과 입법 마련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한 좋은 사례이다. 본질적으로는 성중립적인 진실위원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여성은 성공적으로 특별한 절차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쳤다. 여성을 이끄는 특별절차와 더불어, TRC는 그 구성과 절차에서 여성의 차별적인 참여를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대다수의 남아공 진실위원회 위원장과 관료는 남성이었다. 인권침해위원회와 사면위원회 구성원의 다수는 남성이었고, 여성의 증언은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간접적인 피해와 관련되었고, 일부 소수 여성이 자신의 성적 피해 경험을 이야기했다. 소수 여성 활동가는 위원회 앞에서 증언하였고, 일부 여성은 대규모의 인권침해의 범법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숨겼다.⁶³⁾ 바덴 등(Sally Baden, Shireen Hasim, Sheila Hasim, and Sheila Meintjes)은 TRC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TRC의 과정의 결과는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과거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적어도 대중의 마음속에 새로운 인권문화가 필요함을 인식시켰다. 여성의 권리와 인권 간의 관계는 남아공에서 출현하는 민주주의 속으로 완전히 흡수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인지적 변호와 변론은 상당한 언론의 주의를 이끌었고, TRC는 앞서 '여성의 문제'를 보장하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문제는 …… TRC의 고려사항에서 통합적인 것이기보다는 보완적인 것이 되었다.⁶⁴⁾

최근 페루, 시에라리온과 동티모르에 상징적이고 긍정적으로 성인지적 발전을 이끈 진실위원회가 마련되면서, 진실위원회의 설치와 진실위원회의 입

⁶³⁾ Hayli Millar(2001), p. 217.

⁶⁴⁾ Sally Baden, Shireen Hasim, Sheila Hasim, and Sheila Meintjes(1998), *Country Gender Profile : South Africa*, Report No. 45, Bridge Development-Gender, revised, p. 37.

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보다 개방된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에라리온과 동티모르의 진실위원회의 규정은 특히 성인지적 인식을 강화하고 여성 피해자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는 배타적으로 남성 중심 진실위원회 위원의 지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위원회의 성인지적·성중립적 평화협정규정의 협상은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고 성인지적 사고의 통합을 위하여 보다 많은 성인지적 변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⁶⁵⁾

이 위원회의 목표는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진실위원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과 과도기적 정의, 특히 진실위원회에만 한정되지 않는 비사법적 구제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차원에서도 책임 있는 정책결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배치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⁶⁶⁾

책임문제에서 여성이 참여하고 '연성'과 '경성' 국제형법에서 여성을 위한 입법적·제도적 이익은, 깊이 통합된 여성성의 보호노력의 결과이다. 여성의 참여와 성인지적 시각의 도입으로 인해,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에 대한 사법적·비사법적 범위에 통합되기 위하여 기소와 구제를 넘어서 양심적으로 이들을 변호하는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⁶⁷⁾

현재까지, 진실위원회에서의 여성의 경험을 종합해보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적어도 중요한 세 가지 영역, ① 첫째는, 여성이 모든 형태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책임 있는 정책결정에 여성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평화협상가, 행정관, 입법가 혹은 비정부

65) Hayli Millar(2001), *supra* note 62, pp. 217~218.

66) Hayli Millar(2001), p. 218.

67) Hayli Millar(2001), p. 218.

기구의 회원이든 정책결정자 중 여성에 대한 고려와 성인지적 시각을 증진시키는 것이 절실하다. ② 둘째, 진실위원회에 진정기간, 공평한 여성대표 기준, 진실위원회와 관료의 성별 할당 그리고 여성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치에서, 입법 혹은 제도적 대안 마련에서, 여성 참여와 성인지적 통합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셋째, 진실위원회는, 무력 혹은 정치적 충돌에 있어서 여성의 다양한 경험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권고에 따른 보상과 제도적 개정 혹은 정책적 조치를 통하여 여성에 대한 무력 및 정치적 폭력의 결과를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⁶⁸⁾

진실위원회의 전 과정에서, 여성 재정착이나 비호와 같이 보다 최종적인 장기간 보호조치에서, 무력 혹은 정치적 충돌의 후유증으로 성적 피해와 성폭력 증언의 신빙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기술이 제시되었다. 진실위원회에 의하여 여성의 주제별 심문을 듣고, 혁신적으로 보상과 법개정을 위하여 성인지적 특별권고를 하고 여성이 참여하고 증언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 진실위원회의 구성과 과정 내 여성의 참여 확대는 진실위원회와 사법기구 내 여성 전문가의 노력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⁶⁹⁾

진실위원회나 제도적 전략에 관계없이, 책임메커니즘은 상호적이어야 하고 과거 정치적 폭력에 직접 영향을 받은 여성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과거 무력 혹은 정치적 충돌의 피해를 받은 여성은 책임 있는 정책 결정에서 발언권을 가져야 하고 진실위원회와 같은 책임 있는 제도를 고안, 이행하고 감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⁷⁰⁾ 이들

68) Hayli Millar(2001), pp. 218~219.

69) Hayli Millar(2001), p. 219.

70) Naomi Roht-Arriaza(2002), "Civil Society Processes in Accountability," M. Cherif Bassiouni ed., *Post Conflict Justice*, p. 255, pp. 268~272.

사안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진실규명위원회의 설치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VI. 해결방안

1. 입법적 해결 : 관련 특별법 제정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입법에 의한 국가사죄와 국가보상을 마련하려고 했던 일본 의회 야당 의원이 마련한 제안이 의회에 상정되었고, 이 입법안은 국제법 혹은 일본 헌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보수파 의원에 의하여 거부된 바 있다. 전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조사를 위해 야당 의원들이 의회에 제출한 입법안도 역시 보수파 의원들에 의하여 또다시 제지당했다.

최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일본 지방자치체 의회의 결의 채택이 줄을 잇고 있다. 2009년 6월 24일 도쿄 고카네이[小金井] 시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도쿄 고카네이시의회의는 찬성 13표, 반대 9표, 결석 1표의 결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를 가결했다. 동년 6월 22일 오사카 미노오시의회, 23일 도쿄 미타가시의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⁷¹⁾ 미키타시의회 결의서에는 “국제적인 인권기관도 이 문제에 성실히 대응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명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 전쟁피해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공존으로 나가

71) “일본 시의회, 위안부 문제 해결 요구 결의 ‘러시’”, 뉴시스(2009. 6. 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747111>.

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진상을 규명하고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정부가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학교 등에서 역사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요구안도 포함되어 있다.⁷²⁾

오사가 센난시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라고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된 이후 네덜란드, 캐나다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결의가 채택되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⁷³⁾

2009년 10월 1일 도쿄 고쿠분지시(國分寺市)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고, 공명당 의원들까지 찬성하였으나 반대는 자민당 의원 4명이었다. 이로써 지금까지 일본 11개 시의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결의, 채택되었다. 고쿠분지시의회는 의견서에서 피해여성들은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여 공식적으로 사죄하지 않으면 우리의 진정한 명예와 존엄의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고, 고노 담화의 정신을 유지·발전하여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야말로 아시아 사람들의 전쟁피해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며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⁷⁴⁾

현재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일본 시민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풀뿌리운동과 더불어 일본의 사회적 여론은 변화될 수 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뜻있고 양식 있는 의원과 특히 여성 의원 주

72) “일본의 양심 위안부문제 해결 잇따라 결의”, 연합뉴스(2009. 6. 24).

73) “디지털의회 ‘위안부 해결촉구서’ 또 채택”, 연합뉴스(2009. 10. 2).

74) “일본도쿄 고쿠분지시의회 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의견서 가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보도자료(2009. 10. 5).

도와 중심하에 일본이 가입한 국제법과 국제관습법, 보편적 인권규범을 준수하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법 제정을 이끄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입법화는 현재 일본 정권의 성향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전후보상 단체들은 하토야마 총리가 야당 시절 국회에 제출한 군위안부 보상 법안 등 각종 과거사 청산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⁷⁵⁾

2. 사법적 해결

일본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위안부에게는 완전한 명예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될 수 없으나, 일본제국의 행동이 적어도 위안부에게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요시미 교수는 위안부 문제가 다음 세 가지 국제조약에서 식민지와 관련이 있는 면제조항에 근거한다고 보고 이를 ‘국제법상 탈출구’라고 지적하고 있다. 1910년 조약 제11조, 백인 노예밀매 억제에 관한 1912년 조약 제14조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와 군대는, 국제법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경우로 한국과 대만에서 여성을 모집하는 것을 고려하였고, 한국과 대만은 군대 위안부 보급소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환된 것이다.⁷⁶⁾

75) “일, 아시아에 큰 고통 진정한 화해 안됐다 : 하토야마 일본 총리, 과거사 청산 적극의 지, 아, 주변국과 신뢰 강조한 신념 발언 평가”, 『한겨레신문』(2009. 11. 16).

76) Yoshiaki Yoshimi(1995), *supra* note 13, p. 157.

그러나 요시미 교수의 주장은 다음의 반론으로 일축된다.

첫째, 상기 조약에서 식민지 적용 면제조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일본 선박을 통하여 수송되고 일본항에 수송되는 경우, 이들 조약은 여성이라는 ‘위안부’를 밀매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일본은 강제노동에 관한 1930년 ILO협약 No. 29를 비준하였으며, 이는 여성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ILO협약은 출신국 영역에서만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역에서도 적용되었다.

셋째, 명백히 남성과 여성을 밀매하는 것은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당시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또한 금지된다. 노예매매금지 현 상황에서도 국제법상 강행규범이 되고 있다.

넷째, 나가사키 지방법원이 입증하였듯이, 여성과 아동의 유괴와 밀매를 금지하는 제226조를 포함한 형법 제33장은 위안부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 일본의 형법은 한국과 대만과 같은 일본의 식민지역에도 도입되었고, 동일한 규정이 그 지역에서도 동시에 유효했다. 의심할 바 없이 이러한 법적 용은 한국과 대만과 같은 식민지역에서 모든 행정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이었다.⁷⁷⁾

결과적으로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식민지역에도 존재했던 국내법과 국제법 양 규정에 근거하여, 근대 위안소로 여성을 유괴하고 밀매했던 것은 금지되었어야 했다. 그러므로 사실상 면제를 받는 것이라는 주장은, 관련 법규정이 없었다든가 면제조항에 근거했다는 점이 이유가 되지 않으며, 단지 일본이 법의 집행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⁷⁸⁾

77) Etsuro Totsuka(2006), *supra* note 16, p. 511.

78) Etsuro Totsuka(2006), pp. 511~512.

지금도 늦지 않았으므로, 일본 사법부는 일본이 가입했던 국제조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형법에 따라 나가사키 판결의 사실판단, 법적 해석과 적용이 한국인 위안부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법리에도 합당하다. 특히 국제인권법의 대원칙은 차별금지원칙이며, 인권은 민족, 국적, 성별 혹은 계층 간 등의 차별적 적용이 있을 수 없다.

3. 진실규명위원회 설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여러 국가에서 시도한 진실·화해위원회를 모델로 한, 여성이 참여하고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한국과 일본 간, 혹은 일본 내에서의 진실규명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고, 이 같은 성격의 위원회의 설치에 국내 관련 입법안을 제시하고 권고할 수 있으며, 성폭력과 관련한 민감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법외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4. 한일 간의 법적·외교적 노력

식민지 점령국으로서 일본은 전쟁에 쓸 목적으로 한국 여성과 남성을 조직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힘 있는 지위를 악용한 셈이다. 식민지였던 한국의 많은 젊은 여성들은 개인의 이익과 국익을 위하여 희생되었다. 일본군 '위안부'의 구조적 근간은 양국 사회의 남성 우월 성문화뿐 아니라, 악랄한 인종주의, 식민지주의, 일본제국의 군사주의에 의하여 촉진되고 확대되었던 것이다.⁷⁹⁾

79) Chunghee Sarah Soh(2007), "The Korean "comfort women" tragedy as structural violence," Gi-Wook Shin, Soon-Won Park, and Daqing Tang eds., *Rethinking Historical Injustice and Reconciliation in Northeast Asia-The*

한국과 일본은 최근의 민간 차원의 교류가 상호 대화의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고, 양국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전시나 평시나 여성 인권보호를 공약하기 위하여 위안부의 비극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일본 정부의 동의하에 일본군 '위안부' 해결 국제특별법정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위안부제도와 같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전쟁범죄는 처벌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혹은 적어도 공식적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기본적인 정의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개념의 실현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21세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제재판소와 국내재판소의 결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다.

VII. 맺음말

1. 군위안부제도의 실체와 일련의 결의

최근 군위안부 문제의 실체를 확인해주는 일련의 사실로서, 2007년 6월 30일 미국 하원은 일본으로 하여금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제국 군대의 위안부로 노예생활을 한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수십만 명의 여성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승인하였다.⁸⁰⁾ 이 결의안은 혼다(Michael Honda)가 2007년 1월 제안하였다. 이 결의는, 일본 정부는 1930년대 아시아·태평양

Korean Experience, New York and London : Routledge, p. 31.

80)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unanimously passes a resolution on comfort women in 35 minutes," *The Yonhap News*(July 31, 2007).

군도의 식민지와 전시 점령지에, 제2차 세계대전 중 ‘위안부’로 세상에 알려진, 젊은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로 투입한 일본제국 군대의 명백한 행위에 대하여 역사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미국 하원의 일반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묻는 일련의 결의는 많은 국가에서 이어지고 있다. 2007년 12월 12일 유럽의회는 ‘위안부를 위한 정의(Justice for the Comfort Women)’라고 명명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와 유사한 결의가 같은 해 11월 8일 네덜란드 하원과 11월 29일 캐나다 하원에서 채택되었다.

2. 일본 정부의 책임

20여 년의 연구와 조사 결과, 일본 정부는 위안부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 개인 피해자에게 보상하라는 UN 소위원회 1993년 권고에도 따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개인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가의 정부에게 국제법상 보상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위안부 피해자는 국제법상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해 개인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법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학자들은, 개인 피해자가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⁸¹⁾

이에 대한 해결로서 ‘보편적 인권개념’을 확립하고 장래 우리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국제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화상을 재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과거에 대한 철저하고 합법적인 진실규명 노력 없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법적 조치를 포함해 위안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아직 일본 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가사키 지방법원의 판결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진실규명에 실패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 의회 이전에 반복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진실을 실질적으로 은폐하겠다는 반증이며 관련 정보가 없다는 자체가 모순이며 인권침해의 증거가 된다. 일본의 자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시작으로 정의 실현을 통한 일본 정부의 국가책임을 다하는 것이 세계 강대국과 문명국으로서의 도의이자 법적 의무이다.

3. 국제법에 근거한 성인지적 · 여성 참여적 해결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여타 국가들이 유사한 과거 청산에서 시도하였듯이 여성이 사법제도, 군대와 여타 정부에서 관련 정책결정을 내리는 데 동등하게

- 81) Youn Myoung-sook(2008),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Question of the Japanese Army’s Comfort Stations and ‘Comfort Women,’” Hyun Dae-song ed., *The Historical Perceptions of Korea and Japan, Its Origins and Points of the Issues Concerning Dokdo Takeshima, Yasukuni Shrine, Comfort Women, and Textbooks*, Nanam Publishing House, p. 228.



대표되고 발언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국제법을 근거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여성이 참여하고 포함된 진실규명 위원회 설치, 관련 특별법의 제정 등의 고려가 위안부 문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정의로운 재판관은 정의로운 재판이다”라는 법언처럼 여성 문제는 성인지적 시각에서 당사자 참여하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의회복이 가능하고, 정의회복은 올바른 정책결정자와 조정관의 도덕성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법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의 성인지적 해결이 필요하고, 생존 위안부 피해자와 여성이 관련 정책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위안부 문제의 진실규명과 해결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될 것이다. 또한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일본 정부에 압력을 넣기 위해 국제사회의 여론 조성, NGO의 활동, 국제기구의 결의, 국가의 지원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역사상 과거 인권침해를 매듭짓지 않고서는 그 공동체의 도약은 있을 수 없다. 일본이 동북아시아와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진정한 모범국으로서 선도하기를 원한다면 국제법을 준수하는 일본 정부의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결국 법적 결정—입법, 사법적 결정, 여성이 참여하는 진실규명위원회 설치를 통한 입법화와 조정, 외교적 해결, 관련 국제법정의 설치와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국내법·제도적 해결을 통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성노예의 사례를 근절하고, 사전 예방·제어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여성의 인권신장에 걸맞는 과거 청산, 보편적 인권의 실현, 인권존중의식을 전 세계에 표방해야만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위안부 문제의 진실규명과 해결은 실정법으로 행해지기 이전에, 인류 모두의 양심의 문제인 것이다.



• 참고문헌

장복희(1997), 「국제인도법의 발전과정과 그 이행」, 『인도법논총』 제17호,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장복희(2001), 「국제법상 전쟁범죄로서의 무력 충돌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여성인권의 시각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률위원회 역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전망』, 풀빛.

Askin, Kelly D.(2005), "The Jurisprudence of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s : Securing Gender Justice for Some Survivors," Helen Durham and Tracey Gurd eds., *Listening to the Silences : Women and War*, Hague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Baden, Sally, Hasim, Shireen, Hasim, Sheila and Meintjes, Sheila(1998), *Country Gender Profile : South Africa* (Report No. 45), Bridge Development-Gender.

Berg, Manfred and Schaefer, Bernd eds.(2009), *Historical Justice in International Perspective-How Societies are Trying to Right the Wrongs of the Past*,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omaraswamy, Radihuka(1996),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published her report on the problem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on February 6.

Hicks, George(1999), "The Comfort Women Redress Movement," Brooks ed., *When Sorry Isn't Enough*,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Khushalani, Yougindra(1982), *Dignity and Honour of Women as Basic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Hague, Boston, Lond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Kirchheimer, O.(1961), *Political Justice, The Use of Legal Procedure for Political Ends*, 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indsey, Charlotte(2005), "The Impact of Armed Conflict on Women," Helen Durham and Tracey Gurd eds., *Listening to the Silences : Women and War*, Hague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Millar, Hayli(2001), "Facilitating Women's Voices in Truth Recovery," Helen Durham and Tracey Gurd, *Listening to the Silences : Women and War*,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O'Herne, Jan-Ruff(2005), "Fifty Years of Silence : Cry of the Raped," Helen Durham and Tracey Gurd eds., *Listening to the Silences : Women and War*, Hague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Pateman, Carole(1988), *The Sexual Contract*,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Raymond, Christopher, Mathur, Morita, and Roman, Petru(2003), "Korea Comfort Women,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A Critical Analysis," *Journal of Asia-Pacific Affairs*, Vol. 4.
- Roht-Arriaza, Naomi(2002), "Civil Society Processes in Accountability," M. Cherif Bassiouni ed., *Post Conflict Justice*.
- Soh, Sarah(Dec. 1996), "The Korea "Comfort Women"—Movement for Redress," *Asian Survey*, Vol. 36, No. 12.
- Soh, Sarah(2000), "Human Rights and the 'Comfort Women'," *Peace Review*, Vol. 12, No. 1.
- Soh, Sarah(Mar. 9, 2005), "Gender, Class, Nation : Korean Comfort Women," paper presented at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 Soh, Sarah(2007), "The Korean "comfort women" tragedy as structural violence," Gi-Wook Shin, Soon-Won Park, and Daqing Tang eds., *Rethinking Historical Injustice and Reconciliation in Northeast Asia—The Korean Experience*, New York and London : Routledge.
- Soh, Sarah(2008), *The Comfort Women-Sexual Violence and Postcolonial Memory in Korea and Japan*, Chicago and 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anaka, Yuki(2001), *Japan's Comfort Women-Sexual slavery and prostitution*

- during World War II and the US occupation, Routledge : London and New York.
- Totsuka, Etsuro(1999), "Commentary on a Victory for "Comfort Women : Japan's Judicial Recognition of Military Sexual Slavery," *Pacific Rim Law & Policy Journal*, Vol. 8.
- Totsuka, Etsuro(2006), "Lessons from the Japanese Case of "Comfort Women", " Ystinia Dolgopol and Judith Gardam eds., *The Challenge of Conflict-International Law Respond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Von Wahl, Angelika(2009), "The Politics of Reparations : Why, When, and How Democratic Governments Get Involved," Manfred Berg and Bernd Schaefer eds., *Historical Justice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 How Societies are Trying to Right the Wrongs of the Past*,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oshimi, Yoshiaki(1995), *Jugun Ianfu (Military Comfort Women)*, Tokyo : Iwanami Shoten.
- Yoshimi, Yoshiaki(2000), "The Emergence of the Issue," Yoshiaki Yoshimi, translated by Suzanne O'Brien, *Comfort Women Sexual Slavery in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W II*, Colombia University Press.
- Youn, Myoung-sook(2008),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Question of the Japanese Army's Comfort Stations and 'Comfort Women,'" Hyun Dae-song ed., *The Historical Perceptions of Korea and Japan, Its Origins and Points of the Issues Concerning Dokdo Takeshima, Yasukuni Shrine, Comfort Women, and Textbooks*, Nanam Publishing House, 2008.
-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 Update to the Final Report Submitted by Ms. Gay J. Mcdougall*, 52 UN ESCOR, Doc. E/CN. 4/Sub. 2/2000/21(2000).
- Reuters=CNN, Com, news, Japan court rules against 'comfort women', March 29, 2001.

“Senso-Higai-Chosakai-Ho wo Jitsugensuru Shimin-Kaigi”

<http://www.geocities.co.jp/HeartLand-Kjaki/5481>,

Women’s International War Tribunal “Comfort Women” Judgment : Transcript of Oral Judgment Delivered on 4 December 2001’ Caucus for Gender Justice website : <http://www.iccwomen.org/archive/tokyo/summary.htm>, “Comfort Women” Judgment.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unanimously passes a resolution on comfort women in 35 minutes,” *The Yonhap News*(July 31, 2007).

“일본의 양심 위안부문제 해결 잇따라 결의”, 연합뉴스(2009. 6. 24).

“일본 시의회, 위안부 문제 해결 요구 결의 ‘러시.’”, 뉴시스(2009. 6. 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747111>.

“디지털의회 ‘위안부 해결촉구서’ 또 채택”, 연합뉴스(2009. 10. 2).

“일본도쿄 고쿠분지시의회 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의견서 가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보도자료(2009. 10. 5).

“일, 아시아에 큰 고통 진정한 화해 안됐다 : 하토야마 일본 총리, 과거사 청산 적극 의지, 아, 주변국과 신뢰 강조한 신년 발언 평가”, 『한겨레신문』(2009. 11. 16).



전후 해외 귀환자에 대한 한일 양국의 지원법 비교연구

입법의 역사적 배경과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이연식

- I. 머리말
- II. 한일 양국의 분리와 본토귀환
- III. 귀환자에 대한 양국의 인식과 구호 논의
- IV. 한일 양국의 지원법 비교
- V. 맺음말



전후 해외 귀환자에 대한 한일 양국의 지원법 비교연구

입법의 역사적 배경과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사면찬위원회 이연식

I. 머리말

광복 이래 남한과 북한에서는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 식민자(colonial settlers) 들을 식민지배의 실체인 '가해자·지배자(colonial empire)' 집단으로 기억해왔다. 그러나 전후 일본 정부는 이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본토의 전재민·소개민·복원(제대)군인과 함께 광의의 '전쟁피해자(war victim)'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유포했다. 한편 남한과 북한에서는 공히 식민지배하에서 징병·징용 등으로 인해 해외로 동원된 조선인들을 제국주의 '동원체제의 최대 피해자'로 인식해왔다. 일본에서는 최근 이들 조선인에 대해 외적 강압과 동시에 개인의 성취 욕구(promotion)라는 내적 동의기제라든가, 정당한 동원 대가의 지불 등을 주장하며 피해 사실을 교묘히 부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동시에 조선인 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조선에 남겨두고 온 재외재산 문제라든가, 광복 후 북한지역에서 약 1년 남짓 '억류'되었던 일본인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문제를 제기하며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거나 이를 상쇄하려는 역사인

식이 주로 귀환자 개인의 회고록과 수기를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일 공히 광복·패전 후 해외에서 돌아온 자민족을 ‘피해자’라는 맥락에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광복·패전 후 한일 양국은 각기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상반된 입장에 있던 귀환자들에 대해 왜 ‘피해자’라는 일면적 인식을 지니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역사적 접근방법을 통해 밝히고자 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그러한 역사·사회적 인식 위에서 양국에서 제정된 귀환자 지원법의 입법 배경과 성격을 법제사적 관점에서 비교 고찰함으로써, 각 지원법이 지닌 특징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살피고자 했다.

이 글의 연구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시기적으로 약 ‘50년’의 시차를 두고 입안된 양국 ‘지원법의 입법 배경’을 상세히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광복·패전 후 해외 귀환자들을 수용한 본토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사회적 인식), 그러한 인식에 대해 귀환 당사자들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귀환자의 대응),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통해 집단적 이미지를 창출했으며, 최종적으로 그러한 노력들이 이들에 대한 보상·지원 입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정치세력화와 입법활동), 그리고 귀환자 구호에 관한 초기 논의가 어떤 요인에 의해 어떻게 굴절되어가는가(입법의 사회적 절충·합의과정) 하는 네 가지 하위 과제를 설정하였다.

둘째, 최종적으로 한일 양국의 상기 입법 조치와 그로 인한 보상·지원행위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인식이라든가, 전후책임·전후보상에 대한 인식과 어떠한 함수관계를 맺게 되는지를 살피고자 했다. 아울러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효과와 그것이 지닌 사회적 파급효과를 총체적으로 살피고자 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귀환자’라는 집단을 매개로 과거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 놓였던 상대국의 전후 처리방식을 보다 넓은 시야에

서 이해할 수 있는 인식 기반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 글에서 다룬 대한민국의 법률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 12. 10 제정, 법률 제8669호)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04. 4. 5 제정, 법률 7174호)이다. 한편 일본의 법률은 「인양자(引揚者)급부금 등 지급법」(1957. 5. 7 제정, 법률 109호)과 「인양자 등에 대한 특별급부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1967. 8. 1 제정, 법률 114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아울러 입법과정에 관한 역사적 접근을 위해 광복·패전 직후 양국의 해외 귀환자 관련 신문기사를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이들 자료를 통해 양국에서 해외 귀환자들은 초기에 어떻게 정착하였고, 본토사회에 대해 어떠한 요구를 하였는지, 그리고 수용 당국은 이들 집단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였고, 이들의 정착·생활 지원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살폈다.

이 글은 광복·패전을 계기로 본토로 돌아온 귀환자에 대해 각기 한국과 일본 정부가 취한 지원법의 입법 배경과 그것이 내포하는 역사인식을 비교한 시론이다. 이것은 양국 지원법에 반영된 상반된 역사인식의 특징과 그것이 지닌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자국의 법제를 상대화하기 위한 기반적 연구이다.

II. 한일 양국의 분리와 본토귀환

1. 귀환의 역사적 성격

일본제국은 과거 인도차이나에서 태평양지역에 걸쳐 광대한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패전을 계기로 급속히 붕괴·해체되었다. 이에 따라 구 제국

의 영역은 지역에 따라 종전 직후부터, 혹은 새로운 점령체제를 거친 후 개별 국민국가로 분절되어나갔다. 그 과정에서 일본본토는 물론 제국 지배하의 구 식민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혀 없는 인구이동을 경험하였다. 전후 인구 이동은 크게 보아 2개의 상반된 이동으로 나타났다. 즉 구 식민지·점령지에 있던 일본인들은 일본본토로 돌아갔고, 일본본토를 비롯해 외지에 있던 구 식민지민은 출신지로 돌아갔다.¹⁾

이러한 전후 인구이동은 일본제국의 탄생과 팽창과정에서 배태되었다. 주지하듯이 일본제국은 구 식민지의 전근대적 국경을 허물고 해당 지역에서 정치·경제·군사적 지배권을 확보함으로써 탄생하였다. 이것은 곧 사람들의 이동을 수반하는 과정으로서 일본 정부와 식민기구는 지속적인 제국의 팽창과 지배의 안정을 위해 제국 내 인적 자원 이동에 대해 배타적 통제권을 행사했다. 그 결과 일본본토와 구 식민지 사이에는 '지배'와 '피지배'라는 일방적 관계 속에서 이주·식민·동원 등 비대칭적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일본의 침략전쟁이 확대되면서 각 식민지·점령지 사이의 인구이동도 증가해 갔다. 특히 만주 침략과 중일전쟁을 거쳐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준비·수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수의 일본인과 구 식민지민들이 각기 다른 입장에서 외지로 동원되었다.

근대 이래 구 일본제국 안에서 일어난 인구이동은 태생적으로 침략전쟁을 통한 식민지배에서 비롯되었고, 전쟁을 통한 제국의 확대, 패전에 따른 제국 붕괴로 인해 확산되었다. 따라서 지배자·식민자였던 일본인과 피지배자였던

1) 전후 인구이동이 반드시 귀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중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현지에 장기간 억류되었거나 부득이하게 잔류를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시베리아 억류포로, 사할린의 조선인, 중국의 일본인 잔류교아, 재일조선인 등을 들 수 있다.

조선인의 귀환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종전 후에는 종래의 인구이동 메커니즘이 붕괴하면서 구 거류지의 새로운 정치환경에 따라 이동의 시기·조건·방식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총체적 혼란을 동반한 종전국면에서 양자의 귀환양태는 재산의 상실이라든가 인신적 피해 등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양 집단이 지닌 역사적 성격은 물론이고, 양국 귀환자가 주장하는 '피해'의 연원과 맥락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 층위에서 논하는 오류를 범하고는 한다.

근대 이래 등장한 국제사회라는 것은 곧 서구 열강이 좌지우지하는 무대였고, '근대'로 통칭되는 시공간 역시 폭력성과 식민주의를 내포한 것이었다.²⁾ 흔히 '만국공법'이라 불리던 휘튼의 *Elements of International*(1836)류의 국제법 역시 이러한 열강들이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자 침략주의를 코드화한 것에 불과했다.³⁾ 따라서 양 민족의 귀환이 지닌 역사적 성격 차이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당시 국제법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의 조선 지배가 '합법'이었는가 혹은 '불법'이었는가를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해외로 '진출'한 일본인들이 실제로 현지에서 '어떠한 일상'을 구가했는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일찍이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는 1910년 이전 근대 일본인의 조선 도항 자체가 '서민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조선 침략'이었다고 일갈했다. 그리고 이들은 치외법권적 지위를 악용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전위로서 기능하였고,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과 지배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식민자'라고 주

2) 윤건차(2002), 「왜 한·일 양국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한일민족문제연구』 2, 15쪽.

3) 박홍규(2002), 「제2차세계대전의 전후보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한일민족문제연구』 2, 29~31쪽.

장했다.⁴⁾ 실제로 조선에 살던 일본인들은 한반도 총인구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의 집단이었으나, 식민통치와 직결되는 공무직과 교육 등 전문 직종을 독점하다시피 했다.⁵⁾ 그리고 조선 전역에 그들만의 식민도시를 건설하여, 정치·경제·행정·문화·교통 등 각종 사회인프라가 집중된 노른자위 땅에서 본토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았다.⁶⁾ 그로 인해 해외 일본인들은 본토로 돌아간 뒤 한동안 극심한 '삶의 낙차'와 아울러 '사회적 냉대'를 감수해야 했다. 종전 후 13년이 지난 1958년 조선에서 돌아온 일본인을 상대로 한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정착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는데?” 하는 질문에 절대다수가 본토인들의 싸늘한 시선을 꼽았다. 즉 이들은 “(먹고 사는 어려움보다도) 너희들은 외지에서 실컷 호사를 누렸으니 조금 고생한다고 해도 당연한 일”⁷⁾이라고 치부하는 본토인들의 태도가 가장 마음 아팠다고 답했다. 이처럼 이들은 하루빨리 일본으로 돌아가기를 바랐던 조선인뿐만 아니라,⁸⁾ 본토인들로부터도 대개 ‘군국주의자’ 내지는 ‘그 하수인’ 정도로 간주되었다.

반면 광복 후 한반도로 돌아온 조선인들은 흔히 ‘전재민’ 혹은 ‘전재동포’로 불렸다.⁹⁾ 그것은 그만큼 조선 사회가 해외 귀환자를 아시아·태평양전쟁

4) 梶村秀樹(1974), 「植民地と日本人」, 『日本生活文化史 8-生活のなかの國家』, 河出書房新社(『梶村秀樹著作集』第1卷-朝鮮史と日本人, 明石書店, 1992에 재수록), 193~268쪽.

5) 朝鮮總督府(1934), 『朝鮮國勢調査報告(昭和五年)』, 全編編, 第1卷, 248~262쪽.

6) 김백영(2007), 「제국의 스펙타클 효과와 식민지 대중의 도시경험-1930년대 서울의 백화점과 소비문화」, 『사회와 역사』 75.

7) 三吉明(1959. 2), 「貧困階層としての引揚者の援護について」, 『明治學院論叢』 第52號, 16쪽.

8) “사실 : 하로 속히 구축하라, 일본군국주의자 및 주구배를!”, 『해방일보』(1945. 10. 12).

9) “조선재외전재동포구제회의 창립총회가 개최되다”, 『매일신보』(1945. 9. 2) ; “일인전 물 매매 반대, 전재동포에게 우선임차”, 『조선인민보』(1945. 12. 21) 등.

의 피해자로서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귀환 초기에는 각 지역에서 이들을 위한 환영대회를 마을 단위로 개최하고 신국가건설의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본 군수공장이나 탄광에서 받았던 비인간적 대우 등을 포함해 광복 전 동원으로 인한 각종 폐해에 대한 대대적인 성토가 이루어지고는 하였다.¹⁰⁾

종전 후 본토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일본인 귀환자와 조선인 귀환자는 일견 유사한 집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처럼 귀환의 원점인 이주와 동원 배경을 살펴보면 이들은 명확히 다른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귀환 역시 다른 층위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양 집단 공히 귀환 및 정착과정의 '피해'를 호소하며 자국 정부를 상대로 '보상(지원)'을 요구한 만큼, 그 원인과 맥락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 문제를 이 글과 관련해서 보자면 국제법적 관점에서 이들의 피해와 보상 문제를 다루어온 종래의 논의구도 속에서는 구 식민지의 입장이 간과되거나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왔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흔히 전후처리와 관련해 독일과 일본을 비교할 때 독일은 '그릇된 나치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면, 일본은 '군국주의 정책을 수행하다가 피해를 당한 자', 즉 식민지배 가해자를 전쟁의 희생자라며 보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한다.¹¹⁾ 그리고 일본의 전후처리와 관련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을 배제함으로써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세계 냉전구조 속에서 '아시아'에 대한 전쟁책임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도쿄재판 역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강제동원과 집단 학살·학대 등 구 식민지민을 상대로 한 인도에

10) 범수(1946), 「도라온 징병·응징사 환영위안회」, 『누구나 잘 사는 도리』, 신농민사.

11) 정인섭(1995), 「일본의 과거사 책임 이행상의 문제점」, 『국제법학회논총』 제40권 1호, 364쪽.

반한 범죄 등에 관하여 정면으로 책임을 추궁하지 못했다고 한다.¹²⁾ 그 원인을 캐기 위해서는 조약의 내용과 더불어 조약체결 당시 ‘승전국’ 혹은 ‘패전국’으로 일컬어지는 ‘세계열강’의 역사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 식민지민의 피해는 단순히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의 피해는 이미 ‘식민지배’로부터 시작되었다. 전쟁의 확대는 그러한 피해를 증폭시켰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강들은 강화조약을 통해 단지 ‘중전의 대차대조표’만 작성하였고, 대부분의 구 식민지 국가는 그 과정에 참여조차 할 수 없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제국주의 국가 간의 전쟁이었고, 그것의 마무리 또한 각 제국의 입장에서 이루어졌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승전국) 역시 식민지 영유를 지향했기 때문에 식민지배에 관한 일본의 보상문제는 함구했던 것이다.¹³⁾ 이것은 이탈리아와 아프리카 국가의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2008년 8월 이탈리아 총리는 리비아를 방문해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함께 향후 25년간 미화 25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¹⁴⁾ 이것은 리비아가 무려 60여 년간 집요하게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결과였다. 1947년 2월 파리강화조약 체결 당시 리비아·소말리아·에티오피아 등은 독립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줄곧 배상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¹⁵⁾ 즉 제2차 세계대전 처리과정에서 구 식민지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는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었을 뿐 결코 독립적 의제가 될

12) 内藤光博(2001), 「戦後責任・戦後補償と日本國憲法－平和主義の原理からの考察」, 『世界憲法研究』 6, 45~46쪽; 박홍규(2002), 앞의 글, 40쪽.

13) 김명섭(2005), 「동아시아 냉전질서의 탄생: 극동의 부정과 대동아의 온존」, 백영서 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14) AFP 보도, 2008. 8. 31.

15)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 편·서각수 외 역(2009), 『세계의 전쟁 책임과 전후 보상』, 동북아역사재단, 159~160쪽.

114 근현대 한일관계의 제 문제

수 없었다. 하지만 구 식민지의 진정한 ‘종전처리’는 곧 ‘식민지배에 대한 청산’이었다. 이것은 이승만 정부가 1949년 9월 기획처 산하에 대일배상청구위원회를 설치한 뒤 작성한 대일배상요구조서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서두에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언급하고 있다.¹⁶⁾ 이것은 식민통치 말기 총동원으로 인한 피해뿐만이 아니라 식민지배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환언하자면 이것은 일본의 전후처리에 관한 논의가 향후 국제적 정치지형과 한일관계 변화에 따라 매우 좁은 시야에서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 양국 해외 귀환자에 대한 지원 논의 역시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그러면 이어서 한일 양국의 귀환자 규모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수용과 정착 지원 문제가 얼마나 긴절한 사안이었는지를 확인해 보자.

2. 양국의 귀환자 규모

패전 후 해외에서 본토로 돌아온 일본인 규모는 최소 630만 명에서 최대 700만 명 규모로 추정된다. 이것은 1945년 일본본토 인구의 약 9~10%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과거 일본제국이 아시아·태평양 각 지역에 이르는 광대한 식민지와 점령지에 자국민을 식민자(colonial settlers)로 송출한 결과였다.¹⁷⁾

표 1은 1996년 현재 후생노동성의 공식집계로서 이들의 귀환규모를 구 거

- 16) 김명섭·김승배(2009), 「20세기 ‘전후보상’ 개념의 형성과 변용 : 한국과 일본 간의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5권 3호, 39~42쪽.
- 17)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2006), 『一般人口統計・人口統計資料集』의 「人口及び人口增加率」 표 1-3에 따르면 1945년 일본본토의 총인구는 7,214만 7,000명이며, 總務省統計研修所(2006), 『日本の統計』, 8쪽에 따르면 7,199만 8,000명이었다.

〈표 1〉 종전 후 구 거주지별 일본인 귀환자 규모 (1996. 1. 1, 단위 : 명, %)

지역/귀환자	군인·군속(A)	민간인(B)	지역소계(C)	귀환자 누계	C/D	A/C	B/C
구소련	453,787	19,158	472,945	472,945	7.5	95.9	4.1
쿠릴·사할린	16,006	277,490	293,496	766,441	4.7	5.5	94.5
만주	41,916	1,003,609	1,045,525	1,811,966	16.6	4.0	96.0
대련	10,917	215,037	225,954	2,037,920	3.6	4.8	95.2
중국	1,044,460	495,723	1,540,183	3,578,103	24.5	67.8	32.2
홍콩	14,285	5,062	19,347	3,597,450	0.3	73.8	26.2
*북한	25,391	297,194	322,585	3,920,035	5.1	7.9	92.1
*남한	181,209	416,110	597,319	4,517,354	9.5	30.3	69.7
대만	157,388	322,156	479,544	4,996,898	7.6	32.8	67.2
본토근도	60,007	2,382	62,389	5,059,287	1	96.2	3.8
오키나와	57,364	12,052	69,416	5,128,703	1.1	82.6	17.4
인도네시아	14,129	1,464	15,593	5,144,296	0.2	90.6	9.4
인도차이나	28,710	3,593	32,303	5,176,599	0.5	88.9	11.1
태평양제도	103,462	27,506	130,968	5,307,567	2.1	79.0	21.0
필리핀	108,912	24,211	133,123	5,440,690	2.1	81.8	18.2
동남아시아	655,330	56,177	711,507	6,152,197	11.3	92.1	7.9
하와이	3,349	310	3,659	6,155,856	0.1	91.5	8.5
오스트레일리아	130,398	8,445	138,843	6,294,699	2.2	93.9	6.1
뉴질랜드	391	406	797	6,295,496	0.01	49.1	50.9
총 귀환자 수(D)	3,107,411	3,188,085	6,295,496	6,295,496	100	49.4	50.6

출처 : 厚生省社會援護局援護50年史編集委員會(1997), 『援護50年史』, 730쪽의 표 2를 바탕으로 재작성.

주 : C/D-총 귀환자 대비 해당 지역 귀환자 비율, A/C-해당 지역 귀환자 중 민간인 비율, B/C-해당 지역 귀환자 중 군인·군속 비율.

류지별로 살펴보면 중국본토가 약 154만 명, 구 만주지역이 약 105만 명, 한반도가 약 92만 명(남한 약 60만 명, 북한 약 32만 명), 대만이 약 48만 명이었다. 그 밖에 구소련지역이 약 47만 명, 쿠릴·사할린이 29만 명, 대련이 약 23만 명이였다. 이것을 도해하면 그림 1과 같다.

한편 귀환자의 신분 구성을 보면 군인·군속과 민간인 비율은 대략 '5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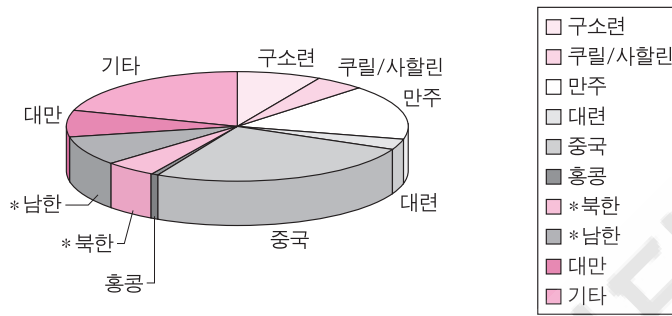


그림 1_ 일본인 귀환자의 구 거류지 분포도(표 1의 C)

〈표 2〉 중전시 지역별 일본 육해군 배치규모 추계

(단위 : 명, %)

지역/병종	육군(A)	해군(B)	소계(A+B)
일본본토	2,388,000	1972,000	4,360,000
쿠릴열도·사할린	88,000	3,000	91,000
타이완·남서제도	169,000	75,000	244,000
조선(한반도)	294,000	42,000	336,000
만주	664,000	0	664,000
중국본토	1,056,000	71,000	1,127,000
기타 (동남아·태평양지역 포함)	814,000	258,000	1,072,000
총계	5,473,000	2,421,000	7,894,000

출처 : A자료는 厚生省援護局(1978), 『引揚げと援護三十年の歩み』, 46~47쪽, B자료는 같은 책, 60쪽에서 발췌 제작성.

정도였다. 그런데 1945~1946년간 귀환자 중 군인·군속의 비율은 미군 점령지에 비해 소련 점령지가 현격히 낮았다. 그 이유는 소련 점령지구의 일본군이 대거 소련 본토로 압송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종전 이전 일본인들이 거류하지 않았던 구 소련지역에서 돌아온 약 47만 명 중 무려 95.9%가 군인·군속이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이들은 장기간 억류생활을 거친 후 돌아온 자들이었다.

〈표 3〉 광복 직후 조선인 귀환자의 유입지 분포

(단위 : 명)

유입지/자료	A	B	C
북한	859,930	463,941	456,393
관내지역 (중국본토)	71,611	71,611	78,442
만주	304,391	504,391	382,348
일본	1,110,972	1,104,407	1,407,255
오스트레일리아	3,051	3,051	
하와이	2,646	3,646	
타이완	3,449	3,449	
홍콩	302	302	
인도차이나	28	28	157,920
필리핀	1,406	1,406	
오키나와	1,755	1,751	
태평양제도	13,986	13,986	
기타	7,294	7,294	
합계	2,380,821	2,179,263	2,482,358

(A) 朝鮮銀行調査部(1948), 『朝鮮經濟年報』 Ⅲ, 19쪽, 집계시기 및 조사방법 미상.

(B) 朝鮮通信社(1948), 『朝鮮年鑑』, 358쪽, 1947년 6월 1일 현재 군정청 외무처 발표.

(C) 朝鮮銀行調査部(1949), 『經濟年鑑』 Ⅳ, 238~239쪽, 1948년 3월 말 현재, 조사기관 및 조사방법 미상.

그러면 이어서 광복 직후 남한지역으로 돌아온 조선인 귀환규모를 살펴 보자.

표 3은 광복 직후 귀환인구를 추정할 수 있는 대표적 자료를 구 거류지(유입지)별로 정리한 것이다. 조선인 귀환자의 경우 통계 교란으로 인해 귀환규모를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다. 다만 표 3을 보면 대략 220~250만 명 정도가 현재 남한지역으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표 3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곳은 단연 일본이었다. 이들의 귀환규모는 최소 110만 명에서 최대 140만 명으로서 총 귀환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자료에 따라 발생한 약 30만 명의 오차는 거류지와 귀환지 공식집

계 시스템에서 누락된 수치로서 이들은 대개 귀환 도중 사망자이거나 행방불명자, 그리고 공식 귀환선 외에 밀선·사선을 이용해 돌아온 자들이다.¹⁸⁾

이러한 상황은 일본열도에서 해외로 송출한 외국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뒤에 후생노동성으로 흡수된 인양원호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1950년 2월 현재 재일외국인 송출자 총수 약 119만 명 중 95만 명이 조선인이었다. 그중 남한 출신자는 79%, 북한 출신자는 0.03%였으며, 기타 중국인과 대만인이 각기 3% 정도를 차지했다.¹⁹⁾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1950년 12월 현재 총 송출자 약 130만 명 중 조선인은 80.7%인 약 105만 명을 차지했고, 중국인이 3.4%, 대만인이 1.9%, 기타 오키나와를 포함한 남서제도 출신이 13.9%로 집계되었다.²⁰⁾ 이들 수치는 공식 귀환선을 통해 한반도로 돌아간 조선인 수로서 실제보다 약 40만 명 가량이 누락되었으나, 일본제국 내에서 조선·조선인이 차지하는 정치적 위상을 가늠케 하는 데이터이다.

이처럼 종전 후 동북아지역에서는 구 제국의 중심인 일본열도로부터 식민지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세계적 규모의 인구이동이 일어났다. 앞서 보았듯 한일 양국의 귀환자 수는 도합 730만 명에서 최대 850만 명에 달했다. 이를 볼

18) 종전시 일본열도에는 대략 200만 명의 조선인이 거류하고 있었다. 그런데 1947년 9월 30일 일본에서 실시된 외국인등록 결과에 따르면 조선인은 약 '53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동아일보』(1947. 11. 11)와 『조선일보』(1947. 11. 12)에 따르면 당시 등록된 조선인은 '53만 265명'이었다. 그리고 모리타 요시오는 총무성 통계국과 인양원호청 자료를 토대로 당시 등록된 조선인을 '52만 9,907명'으로 파악했다(『數字が語る在日韓國・朝鮮人の歴史』, 1996, 明石書店, 103쪽). 따라서 종전시 거류인구 200만 명 중 약 140여만 명이 한반도로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개중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잔류한 자, 귀환 도중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가 일부 포함되었다.

19) 引揚援護廳(1950), 「資料編」, 『引揚援護の記録』, 85쪽.

20) 厚生省援護局(1978), 『引揚げと援護三十年の歩み』, 152쪽.

때 이 지역은 아시아에서도 가장 극심한 민족의 이동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여기에 중국대륙 내에서 발생한 국지적 이동까지도 포함한다면 이것은 세계사적으로 손꼽히는 전후 독일과 동유럽 일대의 인구이동에 비견할 만한 대사건이었다.²¹⁾

3. 구 거류지의 귀환환경²²⁾

종전 후 귀환자 처리는 일본 정부와 구 식민기구, 구 식민지의 신생정부, 미소 점령당국 모두에게 큰 부담이었다. 우선 방대한 귀환자 수도 문제였지만 이들을 단기간에 출신지로 송출할 운송수단 조달이 어려웠다.²³⁾ 또한 이민족 송출과 자민족 수용은 이들을 단순히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지역을 막론하고 식민기구, 새로운 점령당국, 구 식민지 정치세력 중 누가 정국을 주도하건 종전과 더불어 불거진 ‘해방된 구 식민지민’과 ‘패전한 식민자’ 사이의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고 통제해야 했다. 또 각 지역은 돌아가

21) 독일의 경우 영토상실로 인한 귀환자와 동유럽에서 ‘추방’된 자들을 포함해 패전 후 2년 사이에 약 1,200~1,300만 명이 유입되었는데 그중 약 967만 명이 서독에 집중되었다. 독일인 추방에 관해서는 解良澄雄(2000), 「第二次大戦後のドイツ人追放問題-ポーランドにおけるその現在」, 現代史研究會, 『現代史研究』 46, 54~57쪽, 독일-폴란드 간의 국경조정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한운석 외(2008), 『가해와 피해의 구분을 넘어-독일·폴란드 역사 화해의 길』, 동북아역사재단, 29~30쪽과 170~174쪽 참조.

22) 구 거류지의 귀환환경은 필자의 이민인종학회 제3회 학술대회 발표문[이연식(2010. 2. 20), 「제국이 버린 사람들-한일 양국의 귀환자」, 이화여자대학교]을 보강한 것임.

23) 일본의 선박 부족 상황과 수송난에 대해서는 “引揚邦人の安全を圖れ”, 『毎日新聞』(大阪, 1945. 9. 11); “艦艇乗組員再招集”, 『毎日新聞』(大阪, 1945. 9. 22); “24時間制實現へ、船造、修理に對策萬全”, 『毎日新聞』(大阪, 1945. 10. 3); “下關・歸鮮者洪水に悩む”, 『讀賣報知』(1945. 9. 14) 등 참조.

는 사람들과 돌아오는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룬 가운데 이들의 주택·직업·식량을 알선해야 하는 응급구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했다.²⁴⁾ 뿐만 아니라 구 식민지가 새로운 국민국가로 독립하거나, 독립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민족 송출 조치는 어느새 외교상의 문제로 전화되었다. 그에 따라 이민족의 거주지 선택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재류자격 심사 및 출입국 관리에 관한 문제와 아울러 이들의 사유재산 처리가 초미의 급무로 부상했다.

그런데 구 일본제국이 광역에 걸쳐 존재했던 만큼 이러한 제반 문제의 향배를 가를 수 있는 귀환환경은 거주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조성되었다. 즉 구 식민지의 신생정부(정치세력), 구 식민기구와 일본 중앙정부, 미소 점령당국이라는 3대 정치세력의 역관계 변화에 따라 귀환자 처우는 천차만별이었다. 본토의 정착환경과 더불어 구 거주지의 귀환환경, 그리고 송출 및 수용 당국의 처우는 향후 당사자들이 귀환 및 정착과정의 '피해'를 호소함으로써 '귀환자에 관한 지원 입법'을 촉구하는 주·객관적 근거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1) 해외 일본인

귀환환경을 이루는 요소는 이민족에 대한 현지인들의 추방압력이라는 사회·심리적 요인을 비롯해 각종의 제도적 제재·제한 등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다. 이 글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거주지 선택권, 재류자격, 사유재산권이 핵심 사안이었다. 종전 후 구 일본제국을 점령한 미소 양국은 이와 관련

24) 일본의 귀환자 원호에 관한 사례연구로는 木村健二(2005), 「引揚援護事業の推移」, 『「帝國」と植民地-「大日本帝國」崩壊60年』年報; 『日本現代史』第10號. 한국의 원호 정책에 관해서는 이영환(1989), 「미군정기 전재민 구호정책의 성격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참조.

해 절대 권한을 행사했다. 해외 일본인에 대해 미소 점령당국은 공히 귀환과 잔류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사유재산권 행사를 부정함으로써 일본인 귀환자들로 하여금 후에 '재외재산 보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귀환의 시기·순서·방식도 미소의 전후처리 정책에 따라 점령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미소 점령당국의 대일본인 정책은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각론의 내용과 동기라는 측면에서는 각기 다른 양상을 띠었다. 먼저 거주지 선택과 관련해 미군은 일본열도와 구 식민지 사이의 철저한 단절과 봉쇄를 지향했다.²⁵⁾ 그 결과 GHQ와 주한미군정은 가용 선박을 최대한 투입해 군인·군속을 먼저 송환한 뒤 일반 민간인을 본토로 송환하였다. 즉 철저히 군사적 관점에서 송환업무에 임했다. 따라서 이것은 신분과 지역에 따라 송환순서를 달리한 점에서는 계획송환이었으며, 잔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일괄 송환이었다.²⁶⁾ 하지만 이것은 진주와 더불어 일본인의 이동금지를 지시하고, 성별·연령·직업군(신분)에 따라 압송·억류·방치 등을 고집한 소련 측의 대일본인 정책과 달리 최소한 안전한 귀환을 도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뚜렷이 구별된다. 따라서 해외 일본인의 귀환과정과 방식은 미소 중에서 어느 나라가 점령하였는지, 점령당국의 정치적 위상과 권한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가령 미군 영향하에 있던 남한·중국본토·대만·

25) 미국의 한일 점령정책 기조에 관해서는 민경배(1991), 「미군정의 한·일 점령정책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35~39쪽; 남기정(1991), 「남한과 일본에서의 미국의 점령정책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93~96쪽 참조.

26) 일본본토의 송환조직 정비과정과 GHQ의 운송수단 원조에 관해서는 加藤陽子(1995), 「敗者の歸還 - 中國からの復員・引揚問題の展開」, 『國際政治』 109號 참조.

태평양지역은 대개 계획송환·일괄송환의 형태를 띠었다.²⁷⁾ 반면 소련은 북한·만주·대련(구 관동주)·사할린·쿠릴 등지를 점령한 뒤 노동력 확보를 위해 청장년기 남성을 장기간 억류하고, 부녀자와 노약자는 방치하였다. 그리고 주요 산업 부문의 전문엔지니어에 대해서는 미군보다도 적극적인 유용(留用) 정책을 고집했다.²⁸⁾ 그 결과 미군 점령지의 일본인들은 대개 종전 후 1~2년 내에 본토로 돌아갔으나, 소련 점령지에서는 억류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들의 귀환문제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다.²⁹⁾

해외 일본인 개인 재산에 관한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미소 공히 사유재산권을 부정했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하지만 정책의 결정과정과 당국의 실무처리 방식에서는 많은 점이 달랐다. 미국은 점령 초기 해외 일본인 재산에 관해 명확한 태도를 유보하면서 일본본토와 구 식민지 경제의 분리를 현안으로 삼아 양 지역의 물품 거래와 외화의 반입·반출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다.³⁰⁾ 그 결과 남한의 경우 1945년 11월까지 미군정청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매자가

27) 일본인에 대한 장개석의 '以德報怨' 정책과 그로 인한 조속한 귀환과정에 관해서는 若槻泰雄(1995), 『(新版)戰後引揚の記録』, 時事通信社, 73~74쪽, 대만 일본인의 전후 귀환과정 전반에 관해서는 加藤聖文(2003), 「台灣引揚と戰後日本人の台灣觀」, 台灣研究部會編, 『台灣の近代と日本』, 125~131쪽 참조.

28) 종전 후 소련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력 확보와 경제복구였다. 그 결과 새로이 진주한 각 점령지의 소련군은 모든 주둔비용을 현지에서 조달했다. 일본인과 일본인의 사유재산 역시 귀중한 노동력이었으며 소련의 경제복구를 위한 전리품으로 간주되었다. 정성임(1999), 「소련의 대북한 점령정책에 대한 연구(1945. 8~1948)」,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32~38쪽.

29) 전후 일본 사회에서 소련 점령지의 '억류'에 관한 기억이 지닌 의미를 천착한 논고로는 成田龍一(2006), 「引揚げと抑留」, 『岩波講座 アジア・太平洋戦争 4-帝國の戦争體驗』, 岩波書店, 191~197쪽 참조.

30) 김국태 편역(1984), 『해방 3년과 미국 I-미국무성 비밀외교문서(FRUS)』, 돌베개, 103쪽.

대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탁하면 일본인 사유재산의 매매를 얼마든지 허가했다. 다만 당국은 일본인의 반출 허가 한도액을 현금 1,000엔으로 제한함으로써 해외 귀환자의 외화 반입에 따른 일본 본토의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했다. 즉 이 시기에는 해외 일본인의 소유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재산권 행사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였다.³¹⁾ 그러나 이러한 임시조치는 오래가지 못했다. 조선에서는 부정한 수단으로 돌아가는 일본인 재산을 매수해 부를 축적하는 자가 나타나 사회적으로 부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었다.³²⁾ 또 일본인들이 방출한 물자를 매점매석함으로써 경제가 교란되자 국공유재산은 물론 사유재산도 몰수하지는 여론이 고조되었다.³³⁾ 한편 귀환자인 일본 본토에서는 구 거류지에 두고 온 재산반입과 현금인출 한도의 증액 요구가 쇄도함으로써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미군정은 법령 2호 발표 후 불과 2개월여 만인 1945년 12월 초 법령 33호를 통해 일본인 사유재산의 일괄귀속을 지시했다.³⁴⁾ 즉 미군정은 초기에 해외 일본인의 사유권 존중을 기조로 삼았다. 그러나 여러 현실적 이유로 인해 이들 재산의 일괄귀속을 지시함으로써

- 31)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Concerning Property Transfers」, 1945. 9. 25 발령, 『미군정청 관보』 Vol. No. 1, 원주문화사, 1993, 94~96쪽; “일본인 재산 매매 허가, 군정청에 보고, 대금은 조선은행에 예금, 평가기준 기타는 추후 발표될 터”, 『자유신문』(1945. 10. 16).
- 32) “사리와 사욕에 끌리어 일인재산 사지 말라, 유지(有志)의 발기로 불매동맹을 결성”, 『매일신보』(1945. 10. 18).
- 33) “일인재산은 전부몰수, 조선인민당서 결의, 군정청에 요청”, 『중앙신문』(1945. 11. 6).
- 3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 「Vesting title to Japanese Property within Korea」, 1945. 12. 6, 『미군정청 관보』 Vol. No. 1, 원주문화사, 1993, 166~168쪽; “일인소유재산일괄, 군정청에서 접수관리”, 『조선일보』(1945. 12. 16); “일인재산매매는 불허, 접수관리했다(가) 신정부에 전장(傳掌), 기업운영은 조선인에, 주택매매는 일건도 정식처리 없다”, 『동아일보』(1945. 12. 16); “일인의 송사유재산, 군정청이 전부 접수, 장래 조선정부를 위하여 관리”, 『서울신문』(1945. 12. 16).

124 근현대 한일관계의 제 문제

이 어려운 문제를 구 식민지에 들어선 새로운 신생정부와 일본 정부가 해결하도록 미뤘다.³⁵⁾ 반면 소련 측은 일본 정부는 물론 GHQ와의 교섭도 배제한 채 대규모 생산설비와 원자재 등의 국공유재산을 반출해갔으며,³⁶⁾ 사유재산 역시 제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부터 접수(몰수)를 단행했다.³⁷⁾ 가옥의 경우는 이미 소련군의 진주와 북한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 조직이 가동되기 시작한 1945년 8월 말부터 접수되었고, 9월로 접어들면서 현금의 강제예금과 직업 활동의 금지조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³⁸⁾

이처럼 미소 점령지역의 일본인들은 귀환과 잔류의 기로에서 자신이 거주지를 선택할 수 없었고, 개인 재산을 본토로 반입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같은 귀환조건에 있었다. 그러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한 미군 점령지와 달리 소련 점령지의 일본인은 재산권 행사는 고사하고 가족의 이산, 강제노동, 집단탈출³⁹⁾ 등을 경험함으로써 본토로 돌아간 뒤 자신의 피해사실을 대내외에 강력히 호소하였다.

- 35) “적산가옥상점 등, 판매를 일절로 중지”, 『서울신문』(1948. 9. 30); “공장 가옥 등을 공개로 조리 따라 공정히, 이대통령, 방대원칙을 단명(斷明)”, 『서울신문』(1949. 12. 22).
- 36) 정성임(1999), 앞의 논문, 32~38쪽; 김광운(2000), 「북한 권력구조의 형성과 간부 충원(1945. 8~1947. 3)」,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5~34쪽.
- 37) 북조선인민위원회회의 일본인재산관리에 관한 결정사항은 1946년 6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확인된다. 「적산건물관리에 관한 결정(제24호, 1946. 6. 18.)」,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자료집』 제5권 법제편 162쪽.
- 38) 松本五郎(1949. 3), 「元山-終戦から引揚まで」[森田芳夫·長田かな子 編(1979)], 『朝鮮終戦の記録』(資料編) 3권, 巖南堂書店, 407쪽에 재수록]. 이하 이 자료는 ‘森田자료’로 약칭.
- 39) 남한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1946년 2~3월을 기점으로 대개 본토로 돌아갔으나, 북한에 억류 중인 일본인들은 1946년 봄이 되어서야 비로소 소련군과 북한 당국의 묵인 하에 남하 이동이 가능했다. 이들은 ‘집단탈출’의 형태로 1946년 3월에서 12월 사이에 일본으로 돌아갔다.

2) 해외 조선인

해외 조선인의 귀환환경 역시 지역과 귀환 시기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인구 유출지였던 중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육지로 연결된 지역과 바다를 건너야 하는 지역의 귀환양상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⁴⁰⁾ 또한 거류지 점령주체에 따라 조선인은 각기 다른 귀환환경에 놓였다. 한 예로 중국 안에서도 소위 ‘중국본토(China proper)’ 혹은 ‘재화지역’으로 불리던 국민당 관할의 관내지역과, 소련→국민당→공산당 순으로 점령주체가 바뀐 동북지역의 귀환환경이 달랐다. 특히 중국의 경우 조선인 귀환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은 종전 후 이 지역에서 부각된 민족배외주의 열기와 국·공 간의 이념대립이었다.

관내지역 조선인은 동북지역 조선인(재만조선인)에 비해 이주연혁과 배경, 인구규모, 그리고 직업구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⁴¹⁾ 이들은 구한말부터 농토

40) 한반도와 인접한 동북지방의 조선인들은 대개 도보로 북한지역을 거쳐 남한으로 귀환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군캠프는 이들을 월남인과 함께 집계하였는데 1945년 12월 미군정 외무과는 38도선을 넘어 남하한 이들의 3분의 1을 동북지방에서 귀환한 이들로 추정하였다[『서울신문』(1945. 12. 21)]. 반면 일본에서 귀환하는 동포는 배편에 따라 귀환시기가 결정되기도 하였는데 1945년 9~10월 한일 간에 공식적인 송환 사업이 정비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선·밀선을 통해 개인적으로 귀환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그 후에도 귀환 일자를 앞당기거나 공식송환과정에서 반입할 수 없는 개인재산을 들여오기 위해 위협으로 무릅쓰고 수송선이 아닌 사선을 이용하기도 하였다[『조선일보』(1946. 2. 11); USAMGIK, 『G-2 Periodic Report』, November 1945, No 77, December 1945, No. 101, 이하 G-2보고서로 약칭]. 또한 관내지역의 동포들도 연합국의 배편 알선을 통해 일부가 인천항으로 귀환하기도 하였다[『조선일보』(1946. 2. 12); 『한성일보』(1946. 3. 11)].

41) 염인호(1994), 「화북조선독립동맹의 적구 거점건립운동」, 『국사관논총』 54; 염인호(1996), 「해방후 한국독립당의 중국 동북지방 진출과 재중한국독립당의 정책(45. 8~47. 2)」, 『역사교육』 60; 염인호(1996), 「해방 후 한국독립당의 중국 관내지방에서의 광복군 확군운동」, 『역사문제연구』 창간호; 이연식(1997), 「해방 직후 해외동



를 찾아 이주하기 시작한 재만조선인과 달리 일본의 중국본토 침략과정에서 일본군을 따라 이주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현지인의 경계 대상이 되었다. 이들 중에는 실제로 일본 관헌의 하급관리나 밀정으로 활동하거나 잡화행상, 유흥업, 무역업 등에 종사하면서 중국인 재산을 헐값에 사들인 자도 있었다. 이들은 약 10만 명 내외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 조선인 중 절반가량은 민족배외주의에 내몰려 종전과 더불어 도망 왔고, 나머지 잔류자는 장개석의 명령으로 1946년 봄에 강제로 송환당했다.⁴²⁾

동북지역의 약 200만 조선인들은 대개 농업에 종사했다. 1946년 가을 국민당은 동북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조선인 재산을 몰수하는 등 추방의지를 노골화했다.⁴³⁾ 반면 공산당 치하의 '해방구'에서는 2중국적 부여와 토지개혁을 통해 조선인의 정착을 유도했다.⁴⁴⁾ 그러나 지역을 막론하고 국공내전 과정에서 전선이 이동하면서 발생한 치안 공백은 결국 소수자였던 조선인의 피해로 이어졌다. 여기에 1947~1948년 동절기에는 동사 위기까지 겹쳤다.⁴⁵⁾ 이들은 대개 현지에서 배한정서(排韓正緒)나 이데올로기적 중상에 노출된 채 방치되었다. 이들에게 귀환은 곧 생환의 문제이기도 했다.

포의 귀환과 미군정의 정책」(제1장 2절),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손춘일(2003), 「해방직후 재만조선인들의 한반도 귀환」,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전농사론』 9; 김춘선(2003), 「광복 후 동북지역 한인들의 귀환과 정착」, 서행, 「전후 화북지구 한교의 안치와 송환」,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제2회 귀환문제연구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해방 후 중국지역 한인의 귀환문제 연구』 참조.

42) 1946년 관내지역 동포에 대한 관련기사는 『조선인민보』(1946. 3. 20, 1946. 6. 2, 1946. 6. 6); 『서울신문』(1946. 3. 22); 『조선일보』(1946. 10. 18); 『독립신보』(1946. 10. 30, 1946. 12. 5); 『한성일보』(1946. 12. 4, 1946. 12. 6) 참조.

43) “아는가 재만동포의 참상”, 『한성일보』(1946. 12. 14).

44) 조선족략사편찬조(1986), 『조선족략사』, 연변인민출판사, 제6장; 손춘일(2003), 앞의 글, 9~16, 27~28쪽; 김춘선(2003), 앞의 글, 제4장 참조.

45) “십만동북동포의 참경, 기아지경에 여자는 몸팔아 연명”, 『독립신보』(1947. 11. 13).



한편 남한 출신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한 일본의 조선인 귀환자는 GHQ·일본 정부의 송환정책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당시 GHQ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동일한 조건으로 송환하되, 송환자의 소지금과 재산반입을 철저히 제한하였다. 이에 송환당국은 양 지역의 인플레이션을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개인 재산 반입에 대해서는 양국 사이에 정식으로 국교가 수립되면 추후 협상도록 하였다.⁴⁶⁾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이미 송환되었거나 송환 대기 중인 일본인과 조선인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⁴⁷⁾ 그런데 1946년 초에 송환이 마무리된 남한의 일본인과 달리 일본에는 아직도 귀환을 기다리던 조선인들이 남아 있었다. 이들은 이미 귀환한 자들의 열악한 생활상을 전해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반입하기 위해 당국이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⁴⁸⁾ 그러나 이들의 재산반입 요구는 결국 관철되지 않았고,⁴⁹⁾ 귀환자의 경

46) 『중앙신문』(1946. 3. 29).

47) 1945년 11월 21일 일본 정부는 GHQ 앞으로 「朝鮮在留邦人の生命財産保護」라는 서신을 보내 일인재산과 생명보호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정이 '호의적 배려'를 하도록 종용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 森田芳夫(1964), 『朝鮮終戦の記録』, 巖南堂書店, 941~942쪽 참조. 이것은 점점 재산 처분과 반출조건이 불리해져가자 초조해진 미귀환 재조일본인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귀환대기자들은 패전 초기 사적인 방법으로 돌아간 일본인들과 달리 당국의 공식송환방침에 따라 불리한 조건에서 귀환해야 했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도 재외재산 문제에 대해 더욱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1952년 2월 결렬된 1차 한일회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사유재산권'에 관한 한 일본인에게 여전히 보상청구권이 남아 있음을 주장하게 된 것도 일본인 귀환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정부(1965), 『한일회담 합의사항-가조인 내용 해설』, 33~34쪽;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일본연구실 편(1976), 『한일관계자료집』 1, 92~94쪽 참조.

48) "귀국하려나 生道가 막연", 『한성일보』(1946. 3. 22).

49) 재산반입문제를 둘러싸고 주한미군정과 GHQ는 각기 입장이 달랐다. 미군정의 경우 귀환자의 빈곤이 곧바로 통치의 부담으로 직결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난 완화를 위해 GHQ 측에 조선인의 재산반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GHQ는 이를 묵살하였다. 이것은 GHQ와 주한미군정의 위상 차이를 시사한다. 『G-2보고

우 일화에금령까지 실시되어 요행히 숨겨온 일화도 무용지물이 되었다.⁵⁰⁾ 이것은 조선인 귀환자들로 하여금 ‘이주·강제동원’의 기억과 함께 행정편의주의적 ‘송환정책’으로 인한 재산상실이라는 이중의 피해의식을 심어주었다.

마지막으로 사할린 지역의 미귀환 조선인 문제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양국 귀환자들은 큰 틀에서 같은 환경에 놓여 있었다. 1905년 러일전쟁 패배 후 40년 만에 남사할린에 진주한 소련군은 남아 있던 일본인 약 30만 명의 귀환을 최대한 지연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태도는 1946년 12월 미국과 GHQ 레벨에서 일본인 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뒤에도 변함없었다.⁵¹⁾ 그러나 거듭되는 GHQ와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인들은 대개 1949년 7월까지 본토로 돌아갈 수 있었다.⁵²⁾ 하지만 그로 인해 더욱 극심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게 된 소련 측이 조선인을 ‘일본인’ 범주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현지에 잔류하게 되었다.⁵³⁾

서』(1946. 2. 14) ; 『경향신문』(1946. 12. 28) ; 『독립신보』(1947. 7. 3) 참조. 아울러 주한미군정의 활동과 GHQ 사이의 관계는 Edward, W. Wagner(1951),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日本における朝鮮少數民族』 1904~1950, 東京: 清溪書舍(1989, 複刻版), 107~116쪽 참조.

50) 『조선일보』(1946. 1. 5) ; “일화에금령에 목졸린 귀환동포들”, 『한성일보』(1946. 4. 11).

51) 「소련지구 송환에 관한 미소간 협정」(1946. 12. 19). 이 협정은 대일이사회 소련 대표 육군중장 텔레비안코와 GHQ의 대표 볼 J. 물러가 도쿄에서 체결한 것이다. 이것은 극소수의 엔지니어를 제외한 북한의 일본인들이 거의 모두 남한을 거쳐 일본으로 돌아간 시점에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여타 사할린과 소련본토의 억류자들을 위한 협정이었다. 그러나 소련 측은 이 협정 체결 후에도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일본인의 귀환을 최대한 지연시키고자 했다.

52) 大沼保昭(1992), 『サハリン棄民』, 中央公論社の 번역본 : 이종원 역(1993), 『사할린에 버려진 사람들』, 청계연구소, 23쪽.

53) GHQ는 일본 정부의 보고를 기초로 사할린 조선인의 규모를 1944년에 ‘2만 5,435명’, 소련 점령시에는 약 1만 5,000명으로 파악했다(GHQ/SCAP Record RG331,

III. 귀환자에 대한 양국의 인식과 구호 논의

1. 귀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귀환자에 대한 양국의 지원법 성안과정을 고찰하기에 앞서 종전 직후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양국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해외 귀환자와 이들을 받아들이는 본토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양국 정부가 일정한 타협점을 모색한 결과가 결국 지원법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해외 일본인들이 본토로 쇄도할 무렵의 신문기사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⁵⁴⁾

첫째, 귀환자 관련 기사에는 대개 전쟁터에서 돌아온 복원(復員, 復讐)군인, 본토의 전재민·소개민이 함께 등장했다.⁵⁵⁾

둘째, 이들 관련 기사는 대부분 주택·식량·실업 등 ‘민생문제’를 다룬 사

National Archives and Record Service Box no. 382 문서철의 “Repatriation of Koreans from Sakhalin : Jan. 1946–June 1949”). 그러나 현재는 소련 점령하에서 조선인단체가 종전 직후 보고한 ‘4만 3,000명 설’이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사할린 거주 조선인 규모에 관해서는 大沼保昭(1992), 앞의 책, 28~33쪽.

54) 해외귀환자에 관한 일본 사회의 인식은 이연식(2008), 「해방 직후 38이북 일본인의 거류환경 변화」, 『한일민족문제연구』 14의 제2장 “조선 거류 일본인에 대한 본토의 인식”을 보완 집필한 것이다.

55) “예년 같으면 결혼이 격증할 시즌이다. 그런데 복원자(復員者)들이 격증함에도 불구하고 결혼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 전재자, 실업자, 부상 복원자 등의 전쟁피해자는 결혼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였다. …… 결혼하고 싶지만 집이 없다, 가재도구가 없다, 당장 먹을 식량이 없다, 아이가 태어나도 기저귀 한 장이 없다.”-“出雲の神様, 大あくび, 復員者に結婚難時代”, 『讀賣報知』(1945. 12. 23).

회 면에 집중되었고 이들은 시급한 ‘구호’가 필요한 집단으로 보도되었다.⁵⁶⁾

셋째, 이들 집단은 공히 ‘전쟁희생자’ 혹은 ‘전쟁피해자’로 범주화되고 있었다.⁵⁷⁾

이것은 해외에서 돌아온 복원군인과 민간인 귀환자들이 본토의 전재민·소개민들과 함께 광의의 전쟁피해자이므로 사회 전체가 구호를 책임져야 하는 동정의 대상이라는 ‘당위론’이 널리 유포되었음을 의미한다. 귀환 초기 각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사찰이나 공가에 이들을 분숙시키고,⁵⁸⁾ ‘인양민사무소’와 ‘인양자상담소’를 개설하는가 하면,⁵⁹⁾ 구호품 기증을 호소하는 기사⁶⁰⁾가 대중을 이룬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 이들을 바라보는 본토인의 시선은 사뭇 달랐다. 즉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이들에 대한 동정과 관심을 호소하였지만, 실제 이들을 대하는 본토인들의 태도는 차갑기 그지없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바로 1945~1946년 동절기를 기점으로 귀환자의 ‘궁상’과 ‘범죄’를 다룬 특집기사가 급증한 사실이다. 대표적인 기사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복원자(復員者)의 정신적 허탈감과 어려운 환경으로 인한 세상의 실정

56) “다가오는 동절기를 맞이해 전재민과 외지 인양민의 민생안정은 식량사정의 안정화와 함께 서둘러야 할 급무 중의 급무이다.”-“復興住宅”, 『讀賣新聞』(1946. 9. 17); “引揚, 戦災者 優先, 返還軍需衣料配分決まる”, 『毎日(大阪)』(1945. 10. 27).

57) “중전과 함께 본토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전제(戰災)로 인해 소개(疎開)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들은 전쟁이 낳은 가장 큰 희생자들이다.”-“生まれ故郷が冷淡”, 『秋田魁日報』(1945. 10. 18).

58) “贈物のパンに笑顔”, 『西日本新聞』(1945. 9. 4).

59) “引揚民事務所關門等に設置”, 『毎日(大阪)』(1945. 9. 21); “引揚民相談所 上野・品川驛に設置”, 『朝日(東京)』(1945. 11. 9).

60) “衣料を持寄る”, 『朝日(大阪)』(1945. 12. 22).

은 절망적이다. …… 최근에는 대체로 은사금도 소진하고 생활의 위협을 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일반 병과(兵科) 출신자나 보통교육을 받은 자의 경우 상당수의 사람들이 암거래 상인으로 둔갑하거나 일부는 범죄자로 전락하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게 된다. 61)

(B) 복원자들의 범죄조사를 현재 각 현에서 행하고 있다. 7월 1일 현재까지 야마가타 지방 사회부의 범죄조사에 따르면 본 현에서도 각 현과 마찬가지로 범죄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범죄의 내용은 절도 65.5%, 경제범 5.3%, 상해 5%, 사기공갈 3.4% 등이다. …… 범죄의 동기는 고도의 생활고에 직면하여, 일이 없는 회사나 공장에서는 취직을 거부당하고 …… 결국 취직난, 생활고에 기인한 것이 가장 많고 …… 이것은 방범(防犯) 차원에서도 등한시할 수 없는 문제로서 이들 복원자의 구제야말로 초미의 관심사이다. 62)

(C) 지난 10일 …… 60세가량의 신원 불명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소지품 앨범 말미에 연필로 '만주에서 돌아왔으나 집도 없고 처자도 없는 나 한 명'이라고 적혀 있는 점으로 추측건대 인양자(引揚者)로서 고독을 비판해 자살한 듯하다. 63)

(D) 고민은 13명이 동거하는 좁은 집-마쓰이 가네상(62) 집에 세 들어 사는 龍川幸三(48)의 장녀 夏代양(22)이 2층 6조 방에서 청산가리를 마시고 신음 중인 것을 가족이 발견하여 손을 썼으나 같은 날 밤 9시에 절명하였다. 夏代씨 일가는 재작년 11월 조선 경성에서 인양해 작년 1월부터 친척인 松井씨 덕의 2층을 빌렸으나, 변변한 일도 없고 생활에 곤란을 겪던 중 夏代씨를 비롯해 8인 가족, 한편 마쓰이씨도 5인 가족이므로 그로부터 티격태격하는 일이 잦았다. …… 많은 수의 가족이 한 칸을 빌려 생활한다는 자괴감에서 젊은 처자가 마음에 상처를 입어, 인양자에 대한 세간의 차가운 태도에

61) “引揚完了40萬人, 失業予想30萬, 陸海軍解體の總決算”, 『朝日(大阪)』(1945. 12. 31).
 62) “復員者に職を, 生活苦が罪をつくる”, 『山形新聞』(1946. 7. 10).
 63) “孤獨の引揚者自殺”, 『山形新聞』(1946. 11. 19).

죽음으로 향의한 것이다. 64)

(E) 본 현의 요구호 세대 생활 실정 조사는 패전 직후에 착수하여 1개월마다 현 후생과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 소지금과 함께 가구 등을 팔아 치워 물가고 속에서 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인양자 등 본 현으로 유입된 자가 많다. …… 이 요구호 세대는 전재자, 외지 인양자, 퇴직자, 복원군인, 군인가족, 재외자 유수(留守)가족, 부상군인, 거기에 일반 생활 곤란자 등으로서 전재자가 그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65)

(F) 임시 기숙사에서 (추위에) 떠는 1천 명-도내(都内) 우에노, 시나가와 각 역두의 임시 수용소의 상황은, 현재 인양자 중 기댈 곳 없는 무연고자 300세대, 약 1천명이 임시 기숙사를 반영구적인 숙소로 전환하였다. …… 櫻井篤子(24) : 7월에 만주 봉천에서 인양(引揚)왔는데 이 수용소에 들어온 지 벌써 4개월째이다. 지난달에 이 수용소에서 출산도 했다. 최소한 한 칸이라도 빌리려 했으나 수만 엔의 관리금이 필요해 불가능했다. 남편도 인양 당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이었으나 차분히 주위를 돌아보니 비관적인 요소들 뿐. …… 66)

위 기사 중 (A)와 (B)는 해외 귀환자들이 생활고에 직면해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C)와 (D)는 본토인들의 냉대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귀환자의 '자살' 기사이다. 그리고 (E)와 (F)는 귀환자들의 빈곤한 생활, 정착과정의 어려움, 전망의 부재를 두루 시사한다.

이들 기사를 통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귀환자들로 인해 주택·실업·식량난이 가중되자 본토인들도 이들을 경원시하기 시작했고, 귀환자들은 이

64) “引揚娘が腹毒”, 『毎日(大阪)』(1947. 1. 20).

65) “半分は生活苦にあへぐ”, 『山形新聞』(1946. 4. 4).

66) “冬に泣く引揚者”, 『毎日(東京)』(1947. 11. 19).

러한 사회적 냉대 속에서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해 정착의 장기 전망을 세우지 못한 채 급기야 범죄집단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본토인들은 본토인대로, 귀환자들은 귀환자대로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투사하는 등 일본 사회는 도처에 균열이 발생함으로써 총체적 '피로현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요컨대 본토인에게 귀환자란 사회적 부담층이요, 민폐집단에 불과했다. 게다가 본토인의 차별·경계·냉대 속에는 앞서 보았듯이 자신들은 전쟁기간 내내 전쟁수행을 위해 각종 동원에 시달리고, 전쟁 말기에는 대공습과 원폭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귀환자는 외지에서 호사를 누렸다는 미묘한 질시의 정서가 복류되어 있었다. 그 결과 아무리 언론을 통해 귀환자들에 대한 사회의 온정을 호소한다 한들 본토인들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다. 오히려 귀환자들의 열악한 정착상황을 보도할수록 본토인들은 일종의 '보상 심리'에서 그것을 당연시 여겼고, 역으로 귀환자에 대한 편견만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본토의 상황은 결국 귀환자들로 하여금 복합적인 피해의식을 안겨 주었다. 이들은 외지에서 군인 혹은 식민자로서 일본제국의 유지와 팽창에 일조한 집단으로서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구호를 기대했으나 재정 부족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이처럼 본토인의 냉대까지 결부되어 이들은 귀환과정에서 모든 삶의 기반과 재산을 상실했다는 1단계 삶의 낙차에 이어 정착과정에서 재차 2단계 낙차를 맛보았다. 이러한 귀환자들의 집단적 멘탈리티는 향후 이들의 조직적인 보상요구운동의 자양분이 되었다.

이번에는 해외에서 돌아온 조선인의 생활실태와 이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인식을 살펴보자.

먼저 1945년 광복 직후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외지에 거류 중인 조선인들의 귀환을 원호하기 위한 현지 시찰담, 각 지역별 귀환현황에 관한 것이 대

종을 이룬다.⁶⁷⁾ 그 후 1945년 10월 말부터 미군정과 GHQ 사이의 공식송환 행정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언론은 국내 원호단체의 조직현황과 귀환자의 생활대책 문제를 집중 보도하였다. 당시 기사내용을 보면 광복 직후의 건국 열기를 반영하듯 귀환자들을 ‘신국가건설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전재동포 중 백만의 기술자와 기능자를 위하여 전재기술자협회가 새로이 결성”되었다는 기사나, “해외에서 돌아오는 전재동포에게 직업을 알선하여 생활의 근거를 만들어 줌으로써 …… 해외 공업방면에 종사하던 전재동포의 기술을 하루바삐 총동원시켜 국가건설에 공헌하고자 ……”라는 기사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⁶⁸⁾ 즉 이 시기에는 일본 정부나 점령당국이 해외 동포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 이들을 ‘구호’하고, 이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동포애’와 ‘건국’ 정서가 지배했다.

그러나 1945년 12월 동절기를 맞이하면서 귀환자들에 대한 보도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사회문제’ 차원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⁶⁹⁾ 이것은 남한 사회가 귀환자 구호문제를 막연한 ‘동포애’에 기반한 인식단계에서 벗어나, 이를 당면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는 미군정을 상대로 체계적인 귀환자 대책을 촉구한 기사들이 집중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련 점령지의 미귀환 조선인 송환교섭이나 일본인 재산의 엄정관리를 촉구하는 기사가 많았다.⁷⁰⁾

그런데 동절기 내내 귀환자들의 아사·동사가 일상화되자 1946년 전반기

67) 『매일신보』(1945. 9. 19, 1945. 9. 24, 1945. 9. 30).

68) 『매일신보』(1945. 10. 2, 1945. 10. 10).

69) “조선사회문제대책중앙협의회가 결성되다”, 『동아일보』(1945. 12. 5).

70) 『자유신문』(1945. 12. 19) ; 『조선인민보』(1945. 12. 21) ; 『서울신문』(1945. 12. 21).

의 귀환 관련 보도는 미군정의 잘못된 구호정책과 귀환자에 대한 남한 사회의 냉담한 태도를 비판한 것이 많았다.⁷¹⁾ 가령 남한에 귀환한 자들의 만주 재이민 현상이나 일본 재밀항 관련 보도는, “빙설 같은 동포애”, “굶주린 모국보다 왜지(倭地)”, “귀환동포들, 우리의 밀항”, “운명의 국경도시 개성, 북으로 다시 가는 이민단” 등 자극적인 머리 기사를 게재했다.⁷²⁾ 귀환자의 재이민 현상은 이미 남한 사회의 구호기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귀환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막연한 그리움의 대상으로서 ‘고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했다. 결국 남한으로 돌아온 조선인들 역시 구호행정의 미비로 인해 토굴·역전·방공호 등을 전전하는가 하면,⁷³⁾ 전염병이나 몰고 오는 ‘우환동포’요,⁷⁴⁾ 궁도죄 증가로 ‘범죄집단’이라는 오명까지 떠안게 되었다.⁷⁵⁾

이처럼 남한 사회 역시 귀환 초기에는 독립과 건국에 대한 기대 속에서 ‘동포애’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이들의 구호를 역설했으나, 오히려 일본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귀환자들은 사회적 소외집단으로 자리 잡았다.

2. 귀환자 정착원호에 관한 논의

1947년 8월 18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귀환자들의 정착을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주택문제가 논의되었다. 전재부흥원 총재 아베(阿部美樹志)는

71) 『조선일보』(1946. 1. 22) ; 『동아일보』(1946. 2. 5) ; 『한성일보』(1946. 3. 8, 1946. 3. 12, 1946. 3. 20).

72) 『조선인민보』(1946. 3. 19, 1946. 7. 29) ; 『한성일보』(1946. 4. 21) ; 『독립신보』(1946. 8. 4).

73) 『조선일보』(1946. 11. 19) ; 『동아일보』(1946. 12. 4) ; 『서울신문』(1947. 1. 29).

74) 『한성일보』(1946. 6. 7) ; 『독립신보』(1946. 8. 9).

75) 『조선인민보』(1946. 7. 11) ; 『동아일보』(1947. 1. 11) ; 『독립신보』(1947. 1. 4).

1947년 8월 현재 일본의 주택부족 수는 약 450만 호로서 해외에서 돌아온 귀환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향후 10년간 매년 60만 호의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투자가 부진해 정부가 직접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동시에 유희가옥을 개방해 무주택자들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⁷⁶⁾

그러나 이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다카하시^[高橋哲] 의원은 자재조달과 관련한 법규 정비와 아울러 기성 건물의 구체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라고 비판하였다. 또 사회당의 나카히라^[中平常太郎] 의원은 귀환자 스스로 집을 짓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다무라^[田村文吉] 의원은 귀환자와 국내 전제자 약 332만 명과 기존 세공민 100여만 명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근본적으로 정책마인드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다무라는 당시 부흥원 측에서 경제부흥 후 점진적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오히려 주택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부흥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무소속간담회의 가네이와^[兼岩傳一] 의원도 거들며 부흥원의 관료 행정이 문제라며 식량과 주택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다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중국에서 돌아온 귀환자였던 호조^[北條秀一] 의원은, 도쿄의 경우 30만 귀환자 중 다다미 위에서 생활하는 자는 20%에 불과하다며, 전 국민의 전쟁 희생^(피해) ‘균분’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1947년 10월 재외동포인양자특별위원회에서 이노우에^[井上なつゐ] 의원은 자신 또한 공습으로 인한 전제자라며 당장 텐트라도 지급해야 할 실정이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상기 호조 의원은 일본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전쟁희생 부담의 불평등이라며, 귀환자들이 전후 일본의 ‘국민’으로 재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76) 參議院 第1回國會, 本會議 第23號(1947. 8. 18).

라도 주택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귀환자의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귀환자 명의의 토지가 '농지조정법'에 의해 부재지주지로 간주되어 소유권 행사가 금지된 것을 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⁷⁾

귀환자에 대한 의회의 정착원호 논의는 상기한 주택·농지문제와 아울러 갱생자금 대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⁷⁸⁾ 역시 귀환자였던 무라세(村瀬) 의원은 귀환만이 농사가 아니라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생업자금을 지원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인양동포 대책에 관한 결의문」을 발표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귀환자 대책을 위한 심의기구를 설치한다.

둘째, 귀환자에게는 면세조치를 강구한다.

셋째, 귀환자에게 직업, 사업용자와 원자재, 토지와 농기구 등을 지급하도록 한다.

넷째, 여유 주택을 개방함과 동시에 국고로 시급히 20만 호를 건설한다.

다섯째, 해외에서 상실한 재산에 대해서는 '전쟁희생 부담'을 공평히 하고 자 국가가 최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여섯째, 유가족과 미귀환자 가족(留守家族)의 원호를 적극 실시한다.

이들은 일본인이 연합국의 절대적 '동정' 하에 귀환하였으나 속히 '정상적인' 국민생활로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를, 사회적 네트워크 상실로 인해 구직 등에 있어 본토인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상에서 보듯이 의회를 중심으로 한 귀환자 원호에 관한 초기 논의는 귀

77) 參議院 第1回國會, 在外同胞引揚問題に關する特別小委員會 第2號(1947. 10. 2).

78) 參議院 第1回國會, 在外同胞引揚問題に關する特別小委員會 第10號(1948. 4. 13).

환자 출신 의원이 주도하였고, 주로 주택⁷⁹⁾·식량·갱생자금의 지급⁸⁰⁾ 등 응급구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기본원칙은 '전쟁희생 균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남한의 경우는 일본과 달리 미군의 직접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의회공간을 통한 관련 입법 논의를 좀처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군정의 주요 정책과 이에 대한 일반 사회단체의 반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1946년 6월 미군정은 광복 직후부터 난립한 사설 원호단체들을 통폐합해 조선전재동포원호회⁸¹⁾를 대표 단체로 삼았다. 그런데 이 단체는 귀환자와 세국민을 위해 미군정이 추진하고 있던 '가주택건설안'에 처음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1946년 11월 동절기를 맞이해서는 지지부진한 가주택건설보다 당장 귀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유희음식점 등의 유희가옥과 구 일본

79) 실제 건설실적을 보면 1954년까지 4만 9,316호를 건설했는데, 대부분 1인 1실의 바라크였다. 당시 국내 전재민은 1,000만 명에 달했고, 도회지에서 셋집이나 가주택 혹은 방공호에 거주하는 자는 13만 호 정도로 추정되었다.

80) 갱생자금 지원은 1946년 9월부터 개시하였다. 처음에는 3,000엔으로 시작하였는데 이후 금액을 인상하였다. 당시 이 금액은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할 때 30만 엔 정도의 가치로 추정되며 1969년에 정지되었다.

81) 광복 후 조직된 주요 귀환자 원호단체를 살펴보면 조선재외전재동포구제회, 조선이재동포구제회, 조선전재기술자협회, 조선인민원호회, 해외귀환자자강협회, 조선원호단체연합중앙위원회, 조선사회문제대책중앙협의회, 만주귀환동포협력준비위원회, 귀국전재동포구제회중앙본부, 전재동포총동맹, 재일동포옹호대책위원회, 귀환동포협생회, 조선전재민공생협회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좌우를 막론하고 다수의 단체가 난립하였으나, 이것들은 미군정의 통제하에 조소앙을 위원장, 김성수와 이훈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전재동포원호회 중앙본부로 통합되어갔다. 상기 단체에 대해서는 『매일신보』(1945. 9. 2, 1945. 9. 30, 1945. 10. 2, 1945. 10. 10, 1945. 10. 20); 『동아일보』(1945. 12. 5, 1946. 3. 15, 1946. 7. 24, 1946. 9. 24, 1947. 3. 16); 『조선일보』(1946. 1. 18, 1946. 9. 21); 『조선인민보』(1946. 3. 11); 『서울신문』(1946. 11. 29) 참조.

인 가옥을 개방하라고 주장했다.⁸²⁾ 이에 미군정은 대형 유곽의 개방을 약속하였으나, 지속되는 자연사태로 인해 세간의 비난을 샀다.⁸³⁾ 이에 '전재민원호법안'을 검토 중이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는 귀환자가 일본인 가옥을 매수할 경우 동결된 일화(日貨)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미군정에 건의하였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⁸⁴⁾ 결국 귀환자의 거주택건설은 재정 부족과 공사 지연으로 인해 부진을 면치 못했고, 유상분양을 실시함으로써 극빈자가 대부분인 귀환자들은 입주할 수 없었다.⁸⁵⁾

한편 미군정은 산업시설 가동이 부진하였기 때문에 귀환자 실업구제를 위해 이들을 농촌으로 흡수하고자 귀농알선사업을 실시하였다. 즉 도시로 몰려든 귀환자의 인구 분산과 실업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군정이 애초 계획한 30만 호 중 실제 귀농 호수는 3만여 호에 불과해 사실상 실패했다.⁸⁶⁾ 이것은 이미 계획단계부터 예견된 것으로서 토지개혁이 지연되어 귀농을 뒷받침할 제도적 정비가 미비했고, 농자 융통과 농기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미군정의 직접 통치하에서나마 과도입법의원에서는 일종의 귀환자 원호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 '전재민원호법' 초안을 1947년 9월 초부터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이후 중국·일본·남양·기타 전재

82) 『독립신보』(1946. 11. 23).

83) 『동아일보』(1946. 12. 28).

84) 秘書處(1947. 9. 18),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제146호.

85) 애초에 미군정은 전국에 2,000원 예산으로 약 3만 호의 거주택을 신축하고자 했다. 그 결과 수도권권의 경우 영등포와 경기도 광주에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1947년 현재 건설실적은 채 1만 호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계획을 수정하여 전국에 총 1억 원을 배당해 1만 호 건설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달성하지 못했다[『독립신보』(1946. 7. 31); 『동아일보』(1948. 6. 4)].

86) 『한성일보』(1947. 10. 8); 『독립신보』(1947. 10. 8).

외지로부터 귀국한 요원호자와 해(당) 전재지에 잔류한 요원호자(제1조)”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자 했다.⁸⁷⁾ 그러나 입안단계부터 월남자들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김지봉·안동원 등 이북에서 월남한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법안은 결국 검토단계에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⁸⁸⁾

이처럼 한일 양국의 초기 귀환자 원호에 관한 논의는 주택과 식량 등 응급 구호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종전으로 인한 ‘피해’를 전 사회적으로 균분해야 한다는 명분 위에서 전개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광의의 전쟁피해자로서 해외 귀환 민간인, 제대군인, 본토의 전재민과 세국민에 대한 공평한 지원 방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짝하여 남한에서는 새로이 남한으로 유입된 월남민과 해외 귀환자에 대한 구호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실제 추진된 구호 정책 역시 한일 공히 거주택 건설과 유희가옥 활용, 귀농 알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별다른 실효는 없었다. 특히 남한의 경우는 일본보다 훨씬 더 정책효과가 미진했다.

3. 정착을 위한 귀환자의 지구활동

양국의 지원법이 입안된 시기가 약 50년가량 차이가 나는 관계로 귀환 직후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본의 경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종전시 일본의 공업시설은 산업부문에 따라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 가까이 파괴되었다. 또한 미군의 전략폭격 대상이 된 약 66개 도시의 주거 밀

87) 秘書處(1947. 9. 25), 앞의 속기록 제151호.

88) 秘書處(1947. 9. 26), 앞의 속기록 제152호.

집지구 중 약 40%가 파괴되었다. 그 결과 본토 인구의 30%가 전재민이 되었고 완전실업자는 450만 명에 달했다. 한편 농업은 전전의 약 75% 수준을 유지했으나, 제국 해체로 인해 구 식민지에서 유입되었던 농산물이 차단되어 식량 공급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5년 11월 1일 현재 7,241만 명이던 일본의 인구가 1948년에는 8,0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것은 외지에서 돌아온 이들로 인한 사회적 증가 때문이었다.⁸⁹⁾

그런데 문제는 증가한 인구수보다도 이들이 대부분 외지에서 모든 재산을 박탈당한 '빈곤집단'이라는 데에 있었다. 즉 이들은 본토에 연고자가 있거나 몰래 재산을 반입할 수 있었던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회의 시급한 도움이 필요한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본토 귀환 후 일본 사회의 열악한 정착 환경과 냉대로 귀환자들은 대개 의기소침해 있었으나, 일부는 자구노력을 통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도 하였다. 일부 귀환자들은 공동으로 공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며, 어촌에서는 귀환자들이 생선통조림 공장을 지어 자립에 성공하기도 하였다.⁹⁰⁾ 또 귀환자들 중에는 비슷한 처지에 있던 군인·군속 유가족이나 전재자 등이 협력해 섬유회사를 설립한 뒤 공동생활, 공동생산, 공동분배 시스템을 도입해 자활을 꾀한 사례도 있었다.⁹¹⁾

또한 이들은 전국에 걸쳐 네트워크를 형성해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꾀하기도 하였다. 가령 1946년 7월에 도쿄 도심에서는 해외인양자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재외재산과 예금을 담보로 한 생계비와 사업자금 융자, 의류·주택·직

89) 若槻泰雄(1991), 『戦後引揚の記録』, 時事通信社(新版, 1995), 258~259쪽.

90) “引揚者再生の樂園”, 『毎日(大阪)』(1947. 9. 11).

91) “幼稚園もある家族工場”, 『信濃毎日新聞』(1947. 7. 8).

업 알선, 본토 전재자와의 평등한 대우 등을 요구하였다.⁹²⁾ 또한 교토에서는 인양자정치동맹이 결성되어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표방하였고,⁹³⁾ 전국적으로는 인양자단체전국연합회가 조직되어 귀환자의 지역 간 연대를 꾀하였다. 이들은 취업 알선을 위해 국철과 방송사 파업시 노조 간부와 만나, “현재 노동조합은 반동 타도에 전념하고 있으나, 앞문의 호랑이만 신경 쓰다가 뒷문의 이리가 될 수 있는 우리들 인양실업자를 잊지 말라”며 기취업자의 자리를 위협하기도 하였다.⁹⁴⁾ 이들의 정치적 요구는 1946년 12월 국회 점거로 이어져 전국인양자대회 개최 후 귀환자의 우선취직, 월동물자의 무상배급, 귀환 자제들의 완전 취학 등등을 요구하였다.⁹⁵⁾ 당시 귀환자들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1947년 4월 의회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인양자단체전국연합회에서만 4명이 참의원과 중의원에 입후보하였으며, 기타 귀환자 단체도 후보자를 내었다. 당시 일본 노동조합원이 400여만 명, 농민조합원이 130만 명이었음을 고려할 때 650만 귀환자 중 약 530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 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표밭이었다.⁹⁶⁾ 종전 후 초대 의회에서 당선된 귀환자 출신 의원들은 곧바로 인양자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귀환자에 관한 각종 지원 입법을 주도하였다.

반면 조선인 귀환자들은 광복 직후 좌익계인 인민원호회·조선혁명자구원회·반일운동자구원회와 우익계인 전재동포구제회·구휼동맹 등 다양한 정

92) “引揚同胞の援護を急げ”, 『朝日(東京)』(1946. 7. 23).

93) “引揚者で政黨”, 『京都新聞』(1946. 11. 8).

94) “引揚戰災の失業者”, 『讀賣新聞』(1946. 11. 19).

95) “議會に逃走本部”, 『讀賣新聞』(1946. 12. 5). 당시 전국인양자단체 대표가 바로 앞서 본 호조 슈이치[北條秀一]로서 그는 이후 의회 진출을 통해 귀환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96) “内地の現状に不満色濃い革新待望”, 『朝日(東京)』(1947. 3. 19).

치적 스펙트럼을 지닌 귀환자원호단체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조직의 좌경화를 막고자 사설원호단체에 대한 강력한 감독과 통제를 실시하여 조선인 귀환자들은 일본과 같이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이르지 못하였다.⁹⁷⁾ 또한 조선전재기술자협회, 귀환동포협생회, 전재농민협회, 만주귀환동포협력회, 해외귀환자자강협회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거나 동일 직업군의 귀환자들이 특화된 이익단체를 조직하기도 하였으나, 1947년 이후로는 뚜렷한 활동이 포착되지 않는다. 보수세력이 다수를 차지한 과도입법의원 역시 앞서 보았듯이 1947년 9월 5일 상신된 전재민원호법은 심의조차 하지 못했고, 귀환자의 일화 사용 건의도 미군정의 냉담한 반응에 재건의의를 포기했으며, 해외 미 귀환자에 대한 구제 청원 역시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이것은 광복 후 조선인 귀환자에 대한 지원 논의가 주로 보수우익 계열의 명망가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마저도 미군정의 절대적 영향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에서 돌아간 구 조선총독부 관료와 경제계 인사가 동화협회·중앙일한협회 등을 조직한 뒤 타 지역 귀환자단체와 연계해 귀환자 원호, 재외재산의 조사, 보상지원 요구 등의 활동을 활발히 벌인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었다.⁹⁸⁾

97) 이영환(1989), 앞의 글, 59~60쪽.

98) 구 총독부 관료들의 귀환 후 활동에 관해서는 정병욱(2005), 「조선총독부관료의 일본 귀환 후 활동과 한일교섭-1950, 60년대 동화협회·중앙일한협회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 14 ; 노기영(2006), 「해방 후 일본인의 귀환과 중앙일한협회」, 한일민족문제학회, 『한일민족문제연구』 10 참조.

IV. 한일 양국의 지원법 비교

1. 법제의 입법배경

1) 일본의 전후보상 법제 변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후 일본 사회에서 ‘인양자’, ‘전재자’, ‘복원자’ 들은 대개 식량·주택·실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빈곤에 허덕였다. 이들은 사회적 부담계층으로서 경원시된 소외집단이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제각기 자신만의 특수한 ‘전쟁피해’를 호소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가령 일본본토와 해외에서 복원(제대)한 군인들은 국가의 공적 동원에 의해 목숨을 걸고 전장으로 나간 집단이었음을 주장했다. 한편 해외에서 돌아온 민간인 귀환자들은 외지에서 일본의 식민지배를 일상을 통해 수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재산은 물론 오랜 기간 일궈온 무형의 인적 네트워크 등 모든 생활기반을 상실했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해외 귀환자에 비해 수적으로 월등히 많았던 본토의 전재민·소개민들은 전쟁기간 내내 각종 동원에 시달렸고, 막바지에는 연합군의 대공습으로 재산과 가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는 점령당국의 강제 인구분산 정책으로 인해 멀쩡한 자기 집을 두고도 돌아갈 수 없는 부당함을 호소했다.⁹⁹⁾

따라서 일본의 ‘전후보상’ 법제는 이들 세 집단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정비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종전 직후 일본 정부는 일본 사회 도처에서 불거진 집단 간의 균열을 막고자 광의의 ‘전쟁피해자(희생자)론’,

99) “疎開者の都市復歸”, 『毎日(大阪)』(1945. 9. 22); “疎開家族呼戻も抑制”, 『毎日(大阪)』(1946. 1. 26).

즉 모든 국민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정치적 수사를 구사하며, 부족한 구호재정 등을 이유로 각 집단의 요구를 교묘히 무마해왔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과 은급법 부활은 GHQ 점령하에서 동일 원호체계에 있던 이들 세 집단 사이에 ‘차별’을 초래했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각 집단에 대해 개별 대응을 해야만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러면 강화조약 체결을 기점으로 일본의 원호체계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살펴보자.

주지하다시피 은급법은 GHQ 점령하에서 군인과 그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는 것이 바로 군국주의의 기반이라며 점령기간 내내 폐지되었던 제도이다. 그 결과 GHQ는 군인과 그 가족, 전재자, 귀환자 모두를 SCAPIN-404(救濟並福祉計畫ノ件)를 통해 ‘일반생활원호’라는 관점에서 동일 원호체계에 두었다. 그리고 1946년 9월 이래 생활보호법을 제정해 ‘무차별 평등원칙’에 입각해 생계 곤란자에 대해 공적부조를 실시했다.¹⁰⁰⁾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51년에 들어 강화조약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전상병자와 전몰자 유족에 대한 원호법안을 검토하기 시작해 이듬해인 1952년 4월 30일 정식으로 전상병자 전몰자유족등원호법(법률 제127호, 이하 유족원호법)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1일 은급법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전전의 원호체계를 부활시켰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후처리의 원점인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제1차 세계대전의 처리조약인 베르

100) 村上貴美子(1987), 『占領期の福祉政策』, 勁草書房, 58~59쪽. GHQ는 후생성 건민국을 사회국으로 개편하고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시설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년 12월에는 생활곤궁자 긴급생활 요강(CLO 1092)을 공포하여 생활곤궁자를 국내 생활자, 실업자, 국내 전재민, 국외 전재민(귀환자), 국외 거주자의 잔류가족, 상이군인·군인과 유가족으로 대별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의식주 비용을 지급했다. 이혜원 외(1998), 「한국과 일본의 미군정기 사회복지정책 비교연구-빈곤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6호, 321~326쪽.

사유조약과 비교할 때 민간인 피해에 관한 조항이 없고, 국가 간 배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훨씬 관대하였다는 점에서 달랐다. 반면 구 식민지에 관한 배상을 명기하지 않은 점은 같았다.¹⁰¹⁾ 이러한 관대한 전후처리는 결국 전쟁책임과 전후책임(전후보상)을 면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로 하여금 주권회복 후 ‘민간인’과 ‘구 식민지(靑)’에 대한 배상을 배제하게 만든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면 이처럼 점령기의 원호체계를 뒤흔든 은급법의 부활과정과 과도적 법제로서 제정한 유족원호법 대상 확정 과정에서 불거진 일본 정계 내부의 논쟁을 간략히 살펴보자.

은급법 부활은 1952년 6월 20일 은급법특별심의회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심의회는 동년 11월 구 군인군속 및 유족의 은급에 관한 건의를 제출하고, 은급의 본질은 고용자인 국가에 의한 “재직 중 획득능력 소모에 대한 손해보상”에 있다며, 전쟁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제도라는 관점에서 구 법제를 부활시킬 것을 주장했다. 반면 사회보장제도심의회의 스에타카(末高信)는 은급법만을 부활시키는 것은 국민 일반과 군인 사이 뿐만 아니라, 군인 간에도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반대하였다.¹⁰²⁾ 즉 이들은 적어도 전쟁희생을 균분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피해자와 군인을 동일한 사회보장 방법으로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유족원호법의 대상과 관련해 좌파사회당의 한 의원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공무로 인한 사망과 전상자를 대상으로 하되, 공습·원폭 피해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산당의 한 의원은 해외 귀환자와 선원·징용공·동원학도·여자정신대 등 일반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 확대를 주장했다.¹⁰³⁾ 즉 강화조

101) 김명섭·김승배(2009), 앞의 글, 46~47쪽; 內藤光博(2001), 앞의 글, 45~46쪽.

102) 衆議員厚生委員會公聽會 1號(昭和 27年 3月 25日)

103) 남상구(2005), 「전후 일본의 전쟁희생자 ‘보상’에 관한 고찰 - 전상병자 전몰자유족

약 체결 후 일본의 원호법제는 재군비를 통해 전전으로 회귀하려는 보수세력과,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한 전쟁피해 균분을 주장하는 진보세력 간의 갈등과 타협을 거치며 정비되어갔다. 그리고 그 귀결은 군인·군속에 대한 은급 지급, 국가와 공적 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일부 준군속에 대한 원호금 지급이었다. 결국 강화조약 체결 후 일본의 원호법제 속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첫째, 잘못된 과거사로 인한 '특별한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침략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군인)에 대한 생활보장적 성격이 강했다. 둘째, 국가와 명확히 공적인 관계가 입증된 자에 국한해 지원을 실시했기 때문에 여타 민간인 피해자의 경우는 좀처럼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는 점이다.¹⁰⁴⁾

이처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와 맞물려 발생한 '차별' 조치에 대해 민간인들 특히, 해외 귀환자들은 전재자·소개자 등 본토의 구호대상자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다. 귀환자들 중에서도 '재외재산의 95%'가 집중된 만주와 한반도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생활지원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전쟁 피해를 국가로부터 '공인'받지 못할 경우 이것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웠다.¹⁰⁵⁾ 게다가 이들 지역은 연합국과 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국교수립이 불투명한 지역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돌아온 자들은 정부의 조치를 더욱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일종의 무마책으로 부랴부랴 1957년 '인양자급부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귀환자들은 '강화조약 체결시 배상을 최소화하고자 구 식민지에 접수된 재

등 원호법과 은급법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22, 131~133쪽.

104) 정인섭(1995), 앞의 글, 360쪽.

105) 内閣總理大臣官房管理室(1973), 『在外財産問題の處理記録-引揚者特別交付金の支給』, 資料編, 13쪽.

산에 관한 청구권을 정부가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포기했다'며 오히려 거세게 재외재산보상요구운동을 전개했다.¹⁰⁶⁾ 특히 인양자단체전국연합회는 정부가 인양자급부금제도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1962년 4월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시효가 다가오자 강화조약 체결 10주년을 맞이해 전국적으로 보상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이 단체는 46만 세대의 귀환자를 대표해 무려 재외재산 총액 1조 888억 엔의 보상비를 청구했다. 또한 총리실에는 귀환자로부터 무려 20만 통의 항의편지가 도착했다.¹⁰⁷⁾ 이에 정부는 다시 1964년 총리실 산하 재외재산문제심의회 제3차 회의를 통해 특별교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1967년 법률 114호 '인양자 등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349만 명에게 총 1,925억 엔을 지급하고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조치가 결코 국가의 '보상 의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며 끝까지 '국가책임' 문제를 회피했다. 이처럼 일본의 귀환자 지원법은 은급법 부활로 발생한 '전쟁피해자' 간의 차별적 원호제도에 대한 불만과, 강화조약 체결과 국교수립 과정에서 상실한

106) 이를 상징하는 재판이 바로 최고재판소까지 갔던 '損失補償—平和條約による在外財産喪失と國の補償責任'에 관한 소송이다. 당시 귀환자들은 평화조약의 대가로 치러진 자신의 재산을 헌법 제29조 3항 손실보상청구권 조항을 통해 돌려받고자 했다. 일명 '캐나다재판'으로 불리는 일본계 캐나다인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960년에 제기한 이 소송은 1963년 동경지방법판소(제1심), 1965년 동경고등재판소(항소심)를 거쳐 결국 1968년 11월 27일 동경최고재판소(대법정판결)에서 결론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귀환자의 재외재산 상실은 일종의 전쟁희생 혹은 전쟁피해로서, 본토의 국민도 모두 이를 감내[受忍]해야 했던 당시 상황으로 보아, "헌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이므로 헌법 제29조 3항에 기초한 보상청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若槻泰雄(1991), 『戦後引揚の記録』, 時事通信社(新版, 1995), 289쪽. 원문은 『行政百選』Ⅱ, No. 253의 『最高裁判所民事判例集』22卷12號, 2080쪽, 『訟務月報』14卷12號, 1359쪽, 『判例タイムズ』229號, 100쪽 참조.

107) 小林英夫外(2008), 『戦後アジアにおける日本人團體』, ゆまに書房, 161쪽.

‘재외재산에 대한 보상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입안되었다.

2) 한국의 전후보상 법제 변화

한편 한국의 지원법은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선에서, 1974년 제정된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을 위한 법이었다.¹⁰⁸⁾

한국에서는 광복 후 수많은 귀환자원호단체가 조직되었으나 앞서 보았듯이 어느 하나 제대로 명맥을 유지하지 못했다. 광복 직후 해외 귀환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호소할 마땅한 창구를 찾지 못했다. 자신을 동원한 조선총독부가 미군의 점령으로 인해 해체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 조선에 남아 있던 일본인 관료라든가, 일본 민간인의 본토 귀환을 돕기 위해 조직한 세화회를 상대로 강제동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가령 일본으로 징용 갔던 조선인들이 대거 밀선을 타고 들어온 목포에서는 과거 자신을 동원한 일본인 부윤을 찾아가 일본에서 겪은 학대에 대한 보상으로 잔류 일본인 1인당 3,000엔의 위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또 인천에서도 돌아온 징용자들이 집단 실업에 처하자

108) 1965년 청구권 협정 체결 후 한국 정부는 1966년 2월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1호)’을 제정하고, 1971년 1월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2287호)’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일본국에 의해 군인·군속 혹은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피징용사망자)”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한 뒤, 1974년 12월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685)을 제정해 피징용사망자에 대한 청구권보상금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1971년 5월 21일부터 1972년 3월 20일까지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1975년 7월 1일부터 1977년 6월 30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했다. 김창록(2007), 「한국에서의 한일과거청산 소송」, 『법학논고』 26, 138쪽.

인천부청을 찾아가 생계대책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다.¹⁰⁹⁾ 조선총독부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조선인들을 동원하였던 주무기관인 광공국 산하의 조선근로동원원호회를 돌아오는 조선인들을 위한 원호기구로 활용하고자 했고, 언론을 통해 조선인을 위한 다양한 원호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함으로써 불만을 무마하고자 했다.¹¹⁰⁾ 그러나 이 기구는 유명 무실하였고, 곧 관료들이 일본으로 돌아감에 따라 외지로 동원된 조선인들은 자신의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어졌다. 이에 이들은 미군정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구호를 요청했다. 가령 응징사동맹이란 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였다.

1. 외지로 징용된 기간 중 가족에게 약속한 원조금을 지불할 것.
2. 귀환한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으므로 취업시까지 생활비를 보조할 것.
3. 휴면상태의 공장을 재가동해 일자리를 제공할 것.
4. 유희가옥을 개방해 집 없는 귀환자에게 제공할 것.
5. 외지에서 사망한 징용자 가족에게 생활비를 제공할 것.¹¹¹⁾

그러나 미군정은 과도점령기구라는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로 미루었고, 곧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함으로써 한반도 전역이 전재지로 전락하자 귀환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특별한 피해를 호소할 길이 없어졌다. 그 결과 이들은 1965년 한일 간에 국교가 수립될 때까지 이렇다 할 움직

109) 八木信雄(1961. 5~6), 「全羅南道」, 『同和』 161~162號 연재(森田자료-1, 399~400 쪽에 재수록); 小穀益次郎(1952. 5), 「仁川引揚誌」(森田자료-2, 229~230쪽).

110) “半島同胞歸鮮, 第一船就航, 内地側でも萬全策”, 『京城日報』(1945. 9. 3); “在内地半島勤勞者や戰災者の援護に全力, さらに歸郷者援護部を設く”, 『京城日報』(1945. 9. 6).

111) “준다던 원호금은? 일인에게 학대받든 응징사들 쫓기”, 『중앙신문』(1945. 11. 2).

임을 보이지 못했다. 해외 귀환자들의 진상규명과 보상 요구 활동은 1967년 한국피폭자협회가 결성되면서 가시화되었다. 특히 1970년 ‘손진두사건’은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고, 구 식민지민에 대한 전후보상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¹¹²⁾ 바로 이 무렵 한국 정부는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1971. 1)을 제정해 같은 해 5월부터 10개월간 피해신고를 접수하였다. 이를 계기로 각지의 유족들이 모여 1973년 태평양전쟁유족회를 발족함으로써 한국에서도 전후보상운동의 싹을 틔웠다. 그 후 1980년대 한국 사회의 민주화, 세계 냉전체제의 붕괴, 남북관계의 안정 등을 배경으로 시베리아 전쟁포로들의 모임인 삭풍회(1990),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1991) 등이 결성되면서 본격적인 전후보상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의 위안부 체험고백은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전후보상운동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¹¹³⁾ 이 시기 전후보상운동의 주된 활동은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다. 이것은 일본의 전쟁 및 전후책임을 추궁한 신흥탄이 되어 향후 세계 각국의 소송을 추동하는 역할을 하였다.¹¹⁴⁾

한편 1990년대 중반 국내 유족회는 무라야마 정권이 설립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내분에 휩싸이기도 했으나, 일본 시민운동단체와 국제연대를 모색하는 등 운동의 질적 변화를 꾀하

112) 신주백(2005), 「한국과 일본에서 대일 과거청산운동의 역사-한국과 관련하여」, 『역사문제연구』 14, 140쪽.

113) 신주백(2005), 위의 글, 144쪽.

114) 한국인 피해자들의 소송은 일본에 대한 전후책임을 추궁하는 신흥탄이 되었다. 특히 그 선두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나선 것은 국제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소송이 이어졌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국인의 소송에 대해서는 김창록(2007),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35 참조.

였다. 그 연장선에서 2000년대에 들어 사회적으로 '과거청산'과 '한일협정 문서공개' 운동이 강력히 전개되었다. 한국에서 진행된 과거청산소송은 한국 정부의 보상조치가 종료된 197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었다. 당시에는 주로 보상조치의 '절차'를 문제 삼는 데 그친 반면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에 구제의 미비함을 추궁하거나, 청구권협정 관련 법률의 불완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이 이어졌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일본에서 소송 전망이 어두워지고 한국 내에서 과거청산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자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을 상대로 한 사죄, 배상, 유골 인도, 문서공개 요구 등에 관한 소송으로 확대되어갔다.¹¹⁵⁾ 특히 뜻을 같이하는 연구자와 시민운동관계자들은 2001년 강제동원에 관한 진상규명모임을 조직하고, 이듬해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특별법) 추진위를 결성했다. 그리고 2003년 8월에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국적포기운동'¹¹⁶⁾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통해 정부의 관심을 촉구한 결과 2004년 2월 13일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회담기록 공개요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¹¹⁷⁾ 이에 정부는 2005년 1월 16일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일부 공개한 뒤, 같은 해 8월 나머지 문서를 전부 공개하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4조에 근거해 한일 양국 사이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가 해결되었으므로, 개인청구권은 소멸했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다만 인도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엔인권위원회

115) 김창록(2007), 「한국에서의 한일과거청산소송」, 『법학논고』 27.

116) 『연합뉴스』(2003. 8. 12).

117) 김광열(2008), 「한국의 '역사청산' 법제화 운동에 대한 연구-일제강제동원피해 규명 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14, 284쪽.

를 통해 일본의 책임을 묻겠다고 표명했다.¹¹⁸⁾ 이로써 6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연장선에서 동원피해자에 대한 지원법이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2. 법제의 주요 내용

1) '인양자급부금 등 지급법'(1957, 법률 제109호)

• 제1조, 입법 취지-인양자(해외 귀환자), 그 유족 및 귀환 전 사망자의 유족에게는 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급부금을 지급한다.

• 제2조, 인양자의 정의-인양자란 단기 체류자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명백히 생활기반을 지니고 있던 자와 그 자식으로서 패전으로 인해 송환되었거나, 그 과정에서 재산을 상실한 자를 의미한다.¹¹⁹⁾

• 제4조, 지급대상자 자격-1957년 4월 1일 현재 일본 국적을 보유한 자

118) 신주백(2005), 앞의 글, 151쪽.

119) “소화 20년(1945) 8월 15일까지 본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본토 이외의 지역(이하 ‘외지’)에 생활의 근거를 보유한 자(소화 14년 12월 22일 각의결정 만주개척민에 관한 근거방책에 관한 건에 기초한 개척민, 그리고 일본국 정부의 명령 혹은 요청에 의해 외지에 생활의 근거를 보유하게 된 자로서 후생대신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화 20년 8월 15일까지 외지에 계속하여 생활의 근거를 보유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도 포함, 이하 제3호도 동일)이거나, 혹은 그 자식으로서 동년 동월 동일 이전에 6개월 미만의 기간 내에 외지에서 출생하고, 계속하여 동년 동월 동일일까지 외지에서 종전에 따라 발생한 사태로 인해 외국 관헌의 명령, 생활수단의 상실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동일 이후 본국으로 돌아온 자”(상기 법률 제2조 제1항). 그 밖에 제2조 3~5항에 걸쳐 상기한 기간 동안 외지에 생활의 근거를 보유하였으나 잠시 본국에 체류함으로써 종전 후 외지로 돌아갈 수 없는 자, 종전 이후에도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외지에 잔류해야만 했던 자로서 1952년 4월 29일 이후 본국으로 돌아온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일 이후 귀환자는 귀환시점의 국적 적용).

• 제5조, 연령별 인양자급부금 액수-1945년 8월 15일 기준 연령으로 아래와 같이 급부금 액수를 정하고, 기명 국채(國債)로 교부한다.

〈인양자급부금의 연령별 액수〉

연령	급부금 액수
50세 이상	28,000円
30세 이상, 50세 미만	20,000円
18세 이상 30세 미만	15,000円
18세 미만	7,000円

• 제6조, 급부금 지급 제외자-(사실혼 관계를 포함해) 배우자와 납세액을 합해 88,200엔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한다.

• 제7조, 급부금 및 원리금 상환의 상속-인양자급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자기명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동순위 상속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1명을 정해 신청한다. 또한 국채에 기명된 자가 사망한 경우 원리금 상환자의 기명 변경 역시 상속인 1인으로 한다.

• 제8조, 유족의 급부금 지급-외지에서 송환대기 중, 혹은 억류 중에 사망한 자의 유족으로서, 1957년 4월 1일 시점에 일본국적을 보유한 자.¹²⁰⁾

• 제9조, 유족의 범위-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 혹은 1945년 8월

120) “소화 20년(1945) 8월 15일 시점에 외지에 있던 자로서 종전에 따라 발생한 사태로 인해 외국 관헌의 명령, 생활수단의 상실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동일 이후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상황에서 외지에서 사망한 자, 혹은 같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외지에 잔류해야만 하는(‘억류’:역자) 상황에서 사망한 자”(제8조 제1항). 이하 특별교부금법으로 약칭.

15일 시점에서 그 사망자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였던 손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 당시의 유복자는 자녀로 간주.

- 제10조, 유족의 순위-배우자→자녀→부모→손자→조부모→형제자매→기타
- 제11조, 유족 급부금의 수령액수

〈1945년 8월 15일 외국관헌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거나 억류 중 외지에서 사망한 경우〉

연령	유족급부금액
18세 이상	28,000엔
18세 미만	15,000엔

〈1945년 8월 9일 이전 외지에 있던 자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 소련 참전에 의해 사망하였고,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자〉

연령	유족급부금액
50세 이상	28,000엔
30세 이상 50세 미만	20,000엔
18세 이상 30세 미만	15,000엔
18세 미만	7,000엔

• 제12조, 유족 급부금 수령 제외자-소득세 88,200엔 이상의 납부자, 1957년 3월 31일 이전에 사망자와의 친족관계가 정리된 자, 여타 전상병자전몰자유족 등의 원호법으로 인하여 유족급부금을 받는 자.

• 제14조, 국채발행-인양자급부금과 유족급부금 지급을 위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고, 발행된 국채는 10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이자는 연 6부로 한다.

• 제15조, 불복신청(제15조)-인양자급부금 혹은 유족급부금 지급과 관련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 수령 후 1년 이내에 불복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인양자 등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1967, 법률 114호)의

변경 및 수정 내용¹²¹⁾

• 제1조, 취지-이 법률은 인양자 및 그 유족, 그리고 인양 전 사망자의 유족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 해외 귀환자 정의-(제2항) 1945년 8월 9일까지 1년 이상(총래 6개월) 외지에 계속 거주하던 중 소련 참전에 따라 종전일 전에 본국으로 돌아온 자.
(제3항) 위임통치령 남양군도에 1943년 10월 1일까지 1년 이상(총래 6개월) 거주하다가 일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동일 이후, 종전일 전에 본국으로 돌아온 자.

• 제3조, 특별교부금 지급 대상-1967년 8월 1일 현재 일본국적 보유자로서 앞서 규정한 인양자, 1967년 7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인양자의 유족, 인양 전 사망자의 유족.

• 제4조와 제5조,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동일

• 제6조, 특별교부금액-외지에서 종전일까지 계속하여 8년 이상 생활의 근거를 보유한 자에게 지급할 시에는 1만 엔을 가산한다. 유족특별교부금의 경우 외지에서 8년 이상 생활의 근거를 보유한 자의 유족은 7,000엔을 가산

121) 특별교부금의 지급 조건은 제외거주 기간을 제외하고 대체로 1957년의 인양자급부금등지급법에 기초했다. 그 결과 대체로 특별교부금 지급대상자는 인양자급부금 지급대상자와 중복되었고, 지급 절차 또한 구법에 준하여 시행하였다. 「引揚者等に對する特別交付金の支給に關する法律施行事務取扱要領」, 1967. 9. 28 ; 內閣總理大臣官房管理室(1973), 앞의 책, 자료편, 52쪽.

한다. (아울러 구법의 소득 제한조항 폐지)

〈인양자 특별교부금〉

종전일 당시 연령	특별교부금액(엔)
50세 이상	160,000
35세 이상 50세 미만	100,000
25세 이상 35세 미만	50,000
20세 이상 25세 미만	30,000
20세 미만	20,000

〈유족 특별교부금〉

종전일 기준 사망자 연령	특별교부금액(엔)
50세 이상	112,000
35세 이상 50세 미만	70,000
25세 이상 35세 미만	35,000
20세 이상 25세 미만	21,000
20세 미만	14,000

• 제7조, 국채발행 - 특별교부금은 10년 이내 상환 기명국채로 하되 무이자(종래 연 6부)로 한다.

3)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 12. 10, 법률 제8669호)¹²²⁾

• 제1조, 목적-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해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122) 이하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으로 약칭.

국의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 화합에 기여함.

• 제2조, 용어의 정의

“강제동원희생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된 뒤 귀환 과정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자로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부터 ‘강제동원희생자’로 결정된 자.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피해자’ 판정을 받은 자로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자.

“강제동원생환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강제동원희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부터 ‘강제동원생환자’ 판정을 받은 자.

“미수금피해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으로 강제동원되어 노무 제공 등의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수당, 조위금, 부조료 등을 받지 못한 자로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부터 ‘미수금피해자’ 판정을 받은 자.

• 제3조, 유족의 범위 등-강제동원희생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와 친족으로서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를 말하며, 위로금이나 미수금을 지급받을 순위는 상기 각 호에 따른다.

• 제4조, 위로금-강제동원희생자는 1인당 2,000만 원을 지급하되, 1974년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1인당 234만 원을 공제한다. 강제동원되어 부상을 입은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소정액을 지급한다.

• 제5조, 미수금-일본국과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한다. 단 100엔 이하의 경우는 그 액수를 100엔으로 간주한다.

• 제6조, 의료지원금-강제동원희생자나 강제동원생환자 중에서 생존자의 경우 의료금을 치료 혹은 보조 장구 구입의 일부로 지원한다. 지급액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지급 제외자-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하였거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와 그 유족,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 일본에 거주한 자,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자.

3. 법제의 특징과 문제점

1) 일본 귀환자 지원법의 특징

앞서 살펴본 급부금법과 특별교부금법을 전후처리와 관련해 보자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내적 전후처리와 관련된 보상입법이었다.¹²³⁾ 샌프란시스코

123) 다카키 겐이치는 일본의 전후처리를 대내적·국내적 전후처리와 대외적·국제적 전후처리로 구분했다. 대내적 전후처리는 국내 희생자를 어떻게 원호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군인연금법, 미귀환자유수가족지원호법, 인양자급부금지급법 등의 13개 법률을 들었다. 반면 대외적 전후처리는 평화조약 및 국가 간 조약에 따른

160 근현대 한일관계의 제 문제

강화조약 체결 후 대내적 전후보상법제는 다시 군인 은급법과 전상병자전물 자유족등지원법 등 '국가보상의 정신에 입각한', 즉 국가의 책임을 명기한 법률과 귀환자나 원폭피해자 관련법 등 '민간인·시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 지원법으로 나뉜다.

그런데 일본의 대내적 전후처리가 지닌 일반적 특징은 원폭의료법과 원폭 특별치료법을 제외하면 모두 '국적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후 처리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보상의 대상을 최대한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그 배경에는 전쟁·전후 처리에 관한 논의가 독일에서는 '과거 극복'이라는 포괄적 이해 속에서 이루어진 반면, 일본에서는 직접적인 '개전책임'이라든가 국제법상의 '전쟁범죄' 등 극히 축소된 형태로 논의되어 온 상황이 깊이 작용했다.¹²⁴⁾

그런데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일본의 전후처리 태도는 구 식민지민뿐만 아니라 자국민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이다. 즉 전재민·소개민으로 통칭되어온 나고야·도쿄대공습 피해자라든가 오키나와 지상전의 민간인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그나마 해외귀환자와 원폭피해자들은 '특수한 피해자'로 인정되어 지원법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특수한 '피해' 사실을 공적인 법체계를 통해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또 피해보상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원금 명목도 일종의 위로금이나 보조금으로서 '국가책임'을 명시한 전후보상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었다. 귀환자 지원법의 입법과정을 되돌아보

배상처리를 들었다. 高木健一 著, 최용기 역(1995), 『전후보상의 논리』, 한울, 51~57쪽.

124) 일본전쟁책임자료센터 편, 서각수·신동규 역(2009), 『세계의 전쟁 책임과 전후 보상』, 동북아역사재단, 414~415쪽.

면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상기 교부금법의 제2조 인양자 정의에서 보듯이 이 법률은 근대 일본이 해외 침략을 통해 정복하거나 한시적으로 점령한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사람들이 점령당국의 송환조치에 따라 상실한 '재외재산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해외 귀환자들이 미흡한 구호행정과 사회적 냉대로 인해 유독 재외재산에 집착하고 있는 상황에 일본 정부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가책임·보상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만일 국가책임을 인정한다면 재외재산에 대한 손해보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만일 민간인 귀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명시한다면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전재민·소개민 등 본토의 전쟁피해자들이 은급법 실시 때와 마찬가지로 '차별'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의회 질의에 대해 제2차심의회(1956. 12)에서는, "법률적 의무에 기초한 조치로서 재외재산에 대한 보상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본토의 전재자와 비교할 때 귀환자는, "중전으로 인해 모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생활한 땅에서 강제로 이주를 당하여 모든 생활기반을 잃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답신했다. 그리고 제3차심의회(1966. 11)에서는, 국가가 법률상 보상의무는 없으나 '정책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귀환자의 재외재산 상실은 다른 재산손해와 비교할 때 '가혹'하다고 인정하여 교부금을 지급한다고 답신했다.¹²⁵⁾ 그러자 법학자들은 정부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125) 内閣總理大臣官房管理室(1973), 앞의 책, 자료<2>, 9~24쪽.

162 근현대 한일관계의 제 문제

- 첫째, 재외재산문제를 전쟁피해의 한 형태로서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둘째, 전재와 강제 소개를 포함해 일반적 틀에서 재산피해 문제에 접근해야 하며,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셋째, 같은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처우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담의 형평을 고려해 사회보장이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 넷째, 귀환자 외에도 가족이 사망하였거나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 다섯째, 광의의 전쟁피해를 생각해보면 압력단체가 강한 집단만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여섯째, 귀환자를 구제하려고 한다면 다른 전쟁재해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¹²⁶⁾

요컨대 비판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줄곧 광의의 전쟁피해자로 지칭해온 이들 세 집단에 대한 처우가 불평등하고, 지원금액도 객관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보상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집단에 대해서만 임시방편으로 대응함으로써, 원호법제의 틀이 더욱더 왜곡되어 간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쟁피해의 균분’이라는 국민통합의 대원칙이 무너질 경우 감수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이들 각 집단의 불만을 그때그때 무마하는 선에서 전후보상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일본 정부가 보상에 대한 국가책임문제를 명기하지 않고 최대한 보상액수를 낮추고자 한 것도 여타 ‘전쟁피해자 집단’으로

126) 穴戸伴久(2008, 12), 『戦後處理の殘された課題－日本と歐米における一般市民の戦争被害の補償』, 社會勞動調査室, 『レファレンス』(平成 20年 12月號), 119쪽의 각주 40 발췌 재인용.

부터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막고자 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¹²⁷⁾ 이것은 결국 일본의 지원법제가 기본적으로 전후책임과 전후보상이라는 취지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정비된 결과였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구 식민지 출신자가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 ‘국가무답책’을 비롯해 ‘개인청구권의 부인’, ‘시효’ 등 웅색한 이유를 들어 전쟁책임과 전후책임을 회피해온 법리적 태도는, 이미 50년 전부터 자국민을 상대로 무수히 활용되었던 것이다.¹²⁸⁾

2) 한국의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의 특징

한국의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은 제1조에서 이것이 1965년 한일조약의 청구권적 협정의 연장선에서 입안된 법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아울러 제4조에서는 1974년에 실시한 대일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줄속으로 시행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부기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종래에는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무수한 한국인의 전후보상 소송¹²⁹⁾을 통해 주로 일본 정부의 책임만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어왔으나, 한국 정부의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법이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볼 문제는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의 실시로 한일조약 체결시에 미처 추궁하지 못한 일본의 전쟁 및 전후책임 문제가 그대로 문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¹³⁰⁾ 캐나다의 경우는 1952년 강화조약을 통해 청구

127) “戰爭犠牲の均分化叫ぶ”, 『京都新聞』(1946. 9. 9).

128)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7. 12), 『우키시마호사건소송자료집 1』, 68~69쪽; 홍성필(2009), 「일본에서의 전후배상 소송에 대한 국제인권적 고찰」,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569~574쪽.

129) 김창록(2007),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35.

130) 지명관 편, 김영필 역(2003), 『전후보상과 한일의 상호이해』, 한양대학교출판부.

권문제를 마무리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마저도 보상책임을 부인한 캐나다계 일본인을 상대로 지난 박해에 대해 정식 사죄하고, 보상 합의를 통해 생존자 1만 4,000명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가 하면 일본인 커뮤니티의 활동 지원금을 전달했다.¹³¹⁾ 또 흔히 일본의 전후처리와 비교되는 독일의 경우도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법인 ‘연방원호법’, 물적 피해의 보상근거법인 ‘부담조정법’은 국적을 문제 삼지 않았다.¹³²⁾ 또한 일본과 달리 1990년대 이후에는 민간기업의 보상금 지불을 독려하고 있으며,¹³³⁾ 보상액수에 있어서도 엄청난 격차를 보였다.¹³⁴⁾ 따라서 일본의 강제동원은 계획경제에 의한 강제연행(deportation)의 일종으로서 1932년 일본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강제노동·의무노동에 관한 협정의 4·6·14조 등을 위반하였으므로¹³⁵⁾ 다른 나라의 관례에 비추어볼 때 보상은 응당 일본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이 지원행위를 한국 정부가 대신 실시하게 될 경우 과연 어떠

314~315쪽.

131) 高木健一 저, 최용기 역(1995), 앞의 책, 72~74쪽.

132) 穴戸伴久(2008, 12), 앞의 글, 127~132쪽. 일본의 경우는 1987년 대만인 주민과 유족들에게 1인당 200만 엔을 지불한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양기호(2002), 「전후보상과 한국정부의 대응」, 『일본학보』 53, 623쪽.

133) 정인섭(1995), 앞의 글, 364쪽.

134) 윤용선(2005), 「독일과 일본의 전후 보상 정책」, 『국제지역정보』 139, 61쪽. 1990년대 말까지 독일이 지불한 보상금 총액은 약 1,300억 마르크(한화 72조 원)에 달하며, 2000년에는 강제노동 피해자를 위해 조성한 기금이 100억 마르크(한화 5조 5,000억 원)에 달한다.

135) 제4조는 관계당국이 사기업 또는 단체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강제노동이나 의무노동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조에서는 공무원이 시민에게 개인이나 사기업 또는 단체의 노무취역을 위해 위압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최장 노무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있다. 한형건(1995), 「일제하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전후보상에 관한 국제법적 문제」, 『국제법학회 논총』 제40권 1호, 333~334쪽.



한 취지를 법안 속에 담아내야 할지에 관해 향후 법 개정시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지원법은 청구권협정 제2조에 기초해 제정한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1971, 법률 제2287)과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1974, 법률 2685)의 잘못된 내용 규정과 절차¹³⁶⁾를 보완하기 위한 법으로서 한일간 청구권문제에 중지부를 찍겠다는 뜻을 내포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거나, 그럴 수 없다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개인 청구권 행사¹³⁷⁾의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쉽게도 이와 관련해 여전히 많은 결함들이 지적되고 있다.¹³⁸⁾

또 한 가지 문제는 피해의 객관적 소명절차라든가, 입법의 불안전성(입법부작용)에 따른 지원 대상 누락에 관한 것이다.¹³⁹⁾

표 4는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접수한 동원유형별 피해자 신고건수를 정리한 것이다. 이것을 보면 절대다수가 ‘노무자’인데 이것이 바로 일본 재판부가 국가와의 ‘공적 동원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민간징용’의 범주이다. 이들에 관한 소명자료는 주지하듯이 당시 일본 기업의 전향적

136) 당시 보상금은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망자에게만 지급되었고,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청구권, 피징용 부상자와 행불자의 청구권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1971년부터 1993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징병·징용 관련 기록을 넘겨주었으나 이를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양기호(2002), 앞의 글, 624~625쪽.

137) 김창록(2002), 「한일협정과 한국인 개인의 권리」, 『법학연구』 43권 1호, 9~12쪽.

138) “개인 청구권 소멸 한·일 청구권 협정 헌법 소원”, 『국민일보』(2009. 11. 13).

139) 헌법재판소 1996. 11. 28(95헌마161)은, 강제동원된 피징용부상자가 1974년 피징용사망자만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제기한 소원이었다. 당시 원고는 이것을 입법부 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이처럼 현재의 지원법 역시 피해자의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창록(2007), 「한국에서의 한일과거 청산소송」, 『법학논고』 27, 142쪽.

166 근현대 한일관계의 제 문제



협조 없이는 좀처럼 입수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들을 위한 배려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4〉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피해자 차수별 접수현황¹⁴⁰⁾ (단위 : 명)

접수차수 (2006~2007)	동원유형				
	군인	군속	노무자	군위안부	기타
1	35,171	25,207	146,490	330	1,194
2	1,663	1,041	7,150	29	102
3	955	516	3,918	16	66

V. 맺음말

일본제국의 패전으로 인해 해외에서 본토로 돌아간 일본인 식민지들은 본토 인구의 9~10%에 달하는 약 630만~700만 명이었고, 식민지 시기 자발적 이주 혹은 강제동원에 의해 해외에 거류하다가 돌아온 조선인은 약 230~250만 명에 달했다. 이 수치는 세계사적으로 전후 최대의 인구이동을 보인 독일과 동유럽 제국에 비견할 만한 규모였다. 이들은 식민지 시기 각기 지배자와 피 지배자로서 외지에 거류하게 되었으나 점령당국의 송환정책에 따라 대개는 거주지의 선택권도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구 거류지에 재산을 남겨둔 채 본토로 돌아왔다. 그 결과 짧은 기간에 엄청난 인구를 수용해야 했던 본토 사회는 이들의 응급구호를 위해 주택, 직업, 식량 등을 조달해야 했으나 미흡한 구

140)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공개자료에서 발췌 재작성.

호행정과 현지인들의 냉대로 인해 대개 빈곤한 생활을 면치 못했다.

일본의 경우 해외 귀환자들은 본토의 전재민, 복원군인 등과 함께 광의의 전쟁피해자이므로 사회 전체가 이들의 구호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전쟁피해자론'이 유포되었다. 그러나 본토인들은 귀환자들을 식민지에서 호사를 누리던 집단이나 제국의 팽창에 앞장선 침략주의자로 간주하거나, 이들의 유입으로 본토인들의 민생문제가 악화된다는 현실적 이유로 질시와 경계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그 결과 이들은 사회적 구호에 의지하며 정착을 시작했으나,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 후 은급법이 부활하면서 군인·군속 집단과 차별적인 원호체계에 놓이게 되고, 자신의 재외재산이 연합국 측에 배상의 대가로 접수됨에 따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보상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종의 무마책으로 1957년 인양자급부금제도를 실시해 종전을 기점으로 6개월 이상 식민지·점령지에 체류하였던 사람들에게 연령별로 급부금을 차등 지급하였다. 그러나 귀환자들의 불만은 잦아들지 않았고 1962년에는 전국적으로 귀환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보상소송을 제기하여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1967년 인양자 등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총 349만 명에게 약 2천억 엔을 지급함으로써 귀환자의 재외재산 보상문제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정부는 귀환자들에게 일종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였다.

이 지원법은 귀환 당사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 식민지에 서는 여전히 침략자요 지배자로 기억하고 있는 해외 일본인들의 '가해' 사실을 탈색시키고, 귀환과정과 정착과정의 피해만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피해의 맥락을 교란·사장시킨 결과 구 식민지 국가와 현격한 역사인식의 괴리를 노

정하는 데 일조했다. 이러한 전쟁피해자론의 담론구조와 사회적 유포과정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한편 한국의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은 조선총독부가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한 1938년 4월부터 1945년 8월 광복시까지 군인·군속, 노무, 위안부 등으로 동원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법이 일본보다 약 50년 뒤에야 실시된 데는 한일 간의 역사 경험 차이가 크게 작용했다. 광복 후 본토로 돌아온 조선인들은 일본의 귀환자와 마찬가지로 미흡한 구호행정, 사회적 차별과 냉대로 인해 사회적 빈곤층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일본인 귀환자와 달리 이들은 정치세력화하지 못하고, 귀환 후 얼마 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한반도 전체가 전재지로 전락하자 자신의 피해를 호소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그 결과 장기간에 걸쳐 귀환자 단체를 조직·유지하며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한 일본인 귀환자와 달리 이들은 수동적인 행정의 객체로 존재하였다. 그 결과 한일조약 체결 후 대일민간청구권 관련 입법에 따라 부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 결과 법률의 개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가 관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요했다.

1990년대 사회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2000년대에 한일조약문서 공개와 과거사 청산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과거 한국 정부의 책임이 부분적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2004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가 개시되었고, 이들에 대한 지원법이 2007년에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지원법은 그동안 일본 정부의 책임만을 추궁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한국 정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지원법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책임을 명확히 추궁하지 못했다는 점이 결정적 한계로 남았다. 또한 일본 정부가 나서야 할 전후처리를 한국 정부가 대신 짚

어질 경우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부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

기본적으로 양국의 지원법은 전후 형성·재편된 국민국가의 자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전쟁 및 전후책임을 추궁하거나 지원 행위의 역사적 연원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일본의 귀환자 지원법은 은급법 대상에서 제외된 해외 귀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한국의 지원법은 구 일본제국의 동원피해자로 대상을 국한하고 있으므로 양자를 '동일층위'에서 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직후 입안된 전상병자·전몰자 등의 유족원호법·군인 은급법과의 비교를 통해 '전후 보상 법제'라는 보다 큰 틀에서 국내의 동원피해자 지원법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

〈표 5〉 '전쟁피해자론'의 담론구조와 사회적 확산과정

용어	용례분석	인식론적 특징	사회적 인식의 실상	담론의 공식화
<p>1. 전제-특정 용어 속에는 그 시대와 사회의 역사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에는 그 사회를 주도하는 세력의 정치적 '필요와 지향'이 녹아들어 있다.</p> <p>2. 용어의 공인 인양자(引揚者) : '내지'와 '외지'를 나누어 인식하던 구래의 영토관념에서 비롯된 일상 용어 → 재외 재산 보상문제를 계기로 국가의 공인과정울 거치며 이 용어와 그 속에 내재된 인식이 제도화됨.</p>	<p>(신문)</p> <p>1. 인양자·전재민·소개민·복원군인이 주택·실업·식량 등 민생문제를 다룬 사회면에 함께 등장 2. 이들은 모두 전쟁의 피해자이므로 전 사회가 구호에 동참해야 함을 강조</p>	<p>1. 이들이 귀환자 이전에 구 식민지에서 지배자·식민자였다는 사실을 은폐함. 2. 역사 속의 타자로서 조선인의 존재와 이들과 맺은 다양한 관계의 대차대조표가 누락됨. →현상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간과</p>	<p>1. 본토인의 속내 1) 귀환자의 유입으로 주택·실업·식량난이 가중 → 생계를 둘러싼 경쟁관계 → 일종의 '민폐집단'으로 인식 → '빈민'의 이미지와 결합 → 더럽고 사회에 폐를 끼치는 열등국민(동정과 냉대가 교차) 2) 군국주의의 앞잡이, 식민지에서 호사를 누린 집단(비난과 질시) ⇒ 패전 후 일본의 사회의 '피로현상'</p>	<p>일본 정부의 과제-전쟁피해균분화 요구에 대응, 사회적 균열 봉합을 통한 국민통합</p> <p>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주민회복 → 일본 정부의 속내가 드러나는 공간</p> <p>GHQ의 원호방침 → 군국주의자 및 그 앞잡이의 특혜 금지 → 제대군인·귀환자·전재민·소개민이 동일원호체계(명분은 생활원호)</p>
	<p>(국회속기록)</p> <p>귀환자들에 대한 요구호자·전쟁피해자 담론이 의회 공간에서 재생산 → 귀환자·전재민 출신 의원이 주도</p>	<p>1. 이들이 외지에서 누린 '평화'는 현지인과 역관계가 변화하거나 정치지형이 바뀌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었다. 2. 이들이 송환된 직접적 계기는 '패전'이지만 이미 식민지배가 시작되면서 그러한 운명은 배태되었다. 3. 송환정책을 포괄한 점령국의 대일본인 정책은 연합국의 기본방침, 점령당국의 통치과제와 현지의 여건, 조선인의 집단적 요구와 지향이 맞물려 산출된 결과이다.</p>	<p>1. 본토인에 대한 귀환자의 불만 : 식민지에서 누린 기득권의 상실, 그로 인한 생활상의 낙차 → 박탈감·무력감 → 본토인에게 불만을 투사</p> <p>2. 정부시책 비판 : 열악한 구호행정 → 제국의 확장국면에서 국가가 자신을 실컷 이용하고 이제와 모른척한다는 배신감</p> <p>3. 독자적 정치세력화 : 의회진출, 귀환자단체 조직 → '전쟁피해균분화' 요구</p>	<p>1952~1953년 은급법 부활 → 귀환자와 본토 전재민·소개민의 차별</p>
	<p>(법령·제도)</p> <p>1957년 법률 109호, '인양자급부금 등 지급법'과 1967년 법률 114호, '인양자 등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 제정 → 귀환자를 둘러싼 상기한 사회와 의회의 인식·주장이 제도적으로 정착됨(국가공인).</p>			<p>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로 재외재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상책임 대두 → 귀환자의 보상 요구 → 국가책임 부인, 위로금(급부금·교부금)으로 무마(피해자 공인효과)</p> <p>일본 정부의 노림수 1. 구호재정부족 2. 본토인과 GHQ의 시선 의식 3. 귀환자의 불만 무마 → 귀환자에 대한 특별보상을 회피하며, 전쟁의 '특수한' 피해자로 공인함 ⇒ 아시아인의 전후보상 요구에 대한 대응방식의 뿌리이자 전범</p>

• 참고문헌

〈원자료·자료집〉

內閣總理大臣官房管理室(1973), 『在外財産問題の處理記録-引揚者特別交付金の支給』.

明治大正昭和新聞研究會 編, 『新聞集成昭和編年史』(1945~1950).

森田芳夫·長田かな子 編(1979), 『朝鮮終戦の記録(資料編)』 1~3권, 巖南堂書店.

引揚援護廳(1950), 『引揚援護の記録』(復刻版, くレス出版, 2000).

『日本國會議事録』, 衆議院 本會議 및 參議院 「在外同胞引揚問題に關する特別小委員會」 速記録.

日本大藏省(1966), 『第二次大戰における聯合國財産處理』(資料編).

戰後補償問題研究會 編(1994), 『戰後補償問題資料集』 1~11.

朝日新聞社, 『朝日新聞(縮刷版)』(1945. 8~1946. 12).

厚生省社會·援護局援護50年史編纂委員會(1997), 『援護50年史』.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8), 『우키시마호사건소송자료집』 1·2.

〈단행본〉

高木健一 著·최용기 역(1995), 『전후보상의 논리』, 한울.

공제욱 외(2006),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학과지성사.

김백영(2009), 『지배와 공간-식민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김부자 외(2009),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김승렬 외(2008), 『유럽의 영토 분쟁과 역사 분쟁』, 동북아역사재단.

다카사키 소지 著·김영진 역(1998), 『검증 한일회담』, 청수서원.

다카하시 데쓰야 著·임성모 역(2009), 『역사인식 논쟁』,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편(2009), 『일본의 전쟁기억과 평화기념관 1』, 동북아역사재단.

미셸 짐발리스트 로잘도 외 저(2008), 『여성·문화·사회』, 한길사.

백영서 외(2005),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안태운(2006), 『식민정치와 모성』, 한국학술정보.

오오누키 에미코(2004), 『사쿠라가 지다 젊음도 지다』, 모멘토.

- 오오타 오사무(2008), 『한일교섭 - 청구권문제연구』, 선인.
- 이원덕(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 대학교출판부.
-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 편·서각수 외 역(2009), 『세계의 전쟁 책임과 전후 보상』, 동북아역사재단.
- 지명관 외(2003), 『전후보상과 한일상호이해』, 한양대학교출판부.
- 한운석 외(2008), 『가해와 피해의 구분을 넘어』, 동북아역사재단.
- 함동주 외(2009), 『근현대 일본의 한국인식』, 동북아역사재단.
- 加藤聖文(2006. 3), 『海外引揚問題と戦後日本人の東アジア観形成に関する基盤的研究』(平成15-17年度 科学研究費補助金 若手研究A 研究報告書).
- 加藤聖文(2009), 『大日本帝國崩壊-東アジアの1945年』, 中公新書.
- 岡部史信 解説・譯(1996), 『GHQ日本占領史-日本人財産の管理』 27, 日本圖書センター.
- 古歴正 外(2000), 『日本企業の戦争犯罪』, 創史社.
- 菅原秀(2008), 『ドイツはなぜ和解を求めるか-謝罪と戦後補償への歩み』, 同友館.
- 磯穀季次(1980), 『朝鮮終戦記』, 未來社.
- 内海愛子 外(2007), 『遺骨の戦後-朝鮮人強制連行と日本』, 岩波ブックレット No. 707.
- 北條秀一 外(1971), 『私有財産論 : 在外財産補償要求運動史』, 構造社.
- 山田昭次 外(2005), 『朝鮮人戦時労働動員』, 岩波書店.
- 山田昭次·田中廣(1996), 『隣國からの告發-強制連行の企業責任』, 八月書館.
- 西川博史 解説・譯(1996), 『GHQ日本占領史-賠償』 25, 日本圖書センター.
- 小林英夫 外(2008), 『戦後アジアにおける日本人團體-引揚げから企業進出まで』, ゆまに書房.
- 粟屋憲太郎 外(1994), 『戦争責任·戦後責任-日本とドイツはどう違うか』, 朝日新聞出版.
- 松穀みよ子(1987), 『銃後-思想-彈壓·空襲·原爆·沖繩戰·引揚げ』, 立風書房.
- 尹健次(1997), 『日本國民論-近代日本のアイデンティティ』, 築摩書房.
- 李鐘元(1996), 『東アジア冷戦と韓米日關係』, 東京大學出版會.

引揚體驗集編集委員會(1981), 『死の三八度線』, 國書刊行會.
 田中伸尙 外(1995), 『遺族と戦後』, 岩波書店.
 津崎至(2006), 『平成の大虐殺-在朝日本人に謂われなき斷罪』, 彩流社.
 鎮南浦會 編(1984), 『よみがえる鎮南浦-鎮南浦終戦の記録』, 中央精版印刷.
 村上貴美子(1987), 『占領期の福祉政策』, 勁草書房.
 萩原晋太郎(1985), 『さらば, 仙崎引揚港』, マルジュ社.
 樋口雄一(2001), 『戦時下朝鮮の民衆と徴徴兵』, 總和社.
 坪井幸男(2004), 『ある朝鮮總督府警察官僚の回想』, 草思社.
 ハルミ・ベフ 編(2002), 『日係アメリカ人の歩みと現在』, 人文書院.
 荒井信一(1995), 『戦争責任論-現代からの問い』, 岩波書店.

Cummings, Bruce(1981), *The Origins of Korean War I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University.
 Dower, John W.(1999), *Embraicing Defeat*, W. W. Norton & Company.
 Gayn, Mark(1948), *Japan Diary*(井本威夫 譯, 『ニッポン日記』, 築摩書房, 1963).
 Wagner, Edward, W.(1951),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1904~1950*.
 Watkins, Yoko Kawashima(2008), *So far from the bamboo grove*, Harper Tropy.
 Watt, Lori(2009), *When Empire Comes Hom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논문>

김광열(2008), 「한국의 '역사청산' 법제화 운동에 대한 연구-일제강제동원피해 규명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14.
 김명섭·김승배(2009), 「20세기 '전후보상' 개념의 형성과 변용: 한국과 일본 간의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5권 3호.
 김창록(a)(1996), 「'일본국헌법'의 역사에 대한 법사상사적 고찰」, 『법사학연구』 17.
 김창록(b)(2002), 「'한일협정'과 한국인 개인의 권리」, 『법학연구』 43권 1호.
 김창록(c)(2004), 「한일간 과거청산에 있어서의 국가의 논리와 개인의 권리」, 『법사학연구』 30.
 김창록(d)(2005),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 공개의 의미」, 『역사비평』 통권70호.

- 김창록(c)(2007), 「한국에서의 한일과거청산소송」, 『법학논고』 27.
- 김창록(f)(2007),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35.
- 남상구(2005), 「전후 일본의 전쟁희생자 '보상'에 관한 고찰-전상병자 전물자유족 등 원호법과 은급법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22.
- 박흥규(2002), 「제2차세계대전의 전후보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한일민족문제연구』 2.
- 신주백(2005), 「한국과 일본에서 대일 과거청산운동의 역사-한국과 관련하여」, 『역사문제연구』 14.
- 아베 코오키[阿部浩己]·김창록 역(2007), 「전후책임과 화해의 모색-전후보상재판 이 비추어 내는 지평」, 『법학논고』 26.
- 양기호(2002), 「전후보상과 한국정부의 대응」, 『일본학보』 53.
-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壽](2002), 「일본에서의 한·일조약 반대운동-1960년대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3.
- 윤건차(2002), 「왜 한·일 양국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한일민족문제연구』 2.
- 윤용선(2005), 「독일과 일본의 전후 보상 정책」, 『국제지역정보』 139.
- 이혜원 외(1998), 「한국과 일본의 미군정기 사회복지정책 비교연구-빈곤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 정인섭(1995), 「일본의 과거사 책임 이행상의 문제점」, 『국제법학회논총』 제40권 1호.
- 하재환 외(1996),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37권 1호.
- 한형건(1995), 「일제하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전후보상에 관한 국제법적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제40권 1호.
- 內藤光博(2001), 「戦後責任・戦後補償と日本國憲法-平和主義の原理からの考察」, 『世界憲法研究』 6.
- 赤澤史明(1992), 「戦時災害保護法小論」, 『立命館法學』 5・6號.
- 田中廣(1992), 「日本の援護政策と外國人差別の構造」, 『法學セミナー』.
- 田中伸尙(1998), 「この國はまだ '軍人國家' ではないか」, 『世界』.

- 佐藤正已(1967), 「座談會 在外財産問題審議會答申について」, 『ジュリスト』 362號.
- 舟橋洋一(2001), 「過去克服政策を提唱する」, 『世界』.
- 池穀好治(2003), 「一般戦災者に對する援護施策-自治體の論理・國家の論理」, 『歴史評論』 641號.
- 穴戸伴久(2008), 「戦後處理の殘された課題-日本と歐米における一般市民の戦争被害の補償」, 社會勞動調査室, 『レファレンス』, 平成 20年12月號.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보수주의 담론과 만화 전략

경성대학교 강기철

- I. 머리말
- II. 고바야시의 보수주의 담론
- III. 고바야시의 만화 전략
- IV. 맺음말 - 전망과 과제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보수우익 담론과 만화 전략

경성대학교 강기철

I.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는 일본의 인기 만화가이다. 고바야시의 인기는 다른 만화가와는 달리 두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1976년 데뷔 이후 『오봇차마군[おぼっちゃまくん]』, 『동대일직선(東大一直線)』 등으로 인기를 얻은 시기가 제1기에 해당될 것이고, 1992년 이후 『고마니즘선언(ゴーマニズム宣言)』, 『신고마니즘선언(新ゴーマニズム宣言)』, 『신고마니즘선언스페셜(新ゴーマニズム宣言SPECIAL)』 시리즈 등으로 얻은 인기는 제2기에 해당될 것이다.

두 시기 모두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기의 성격은 달라진다. 이른바 제1기는 재미와 오락을 바탕으로 하는 대중적인 만화로서 인기를 얻은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제2기는 시사적인 내용으로 일본의 정치·사회적인 예민한 부분까지 만화로 다뤄 얻은 ‘사회적 사상가’로서의 인기를

의미한다.

여기서 필자는 고바야시가 '사회적 사상가'로서 활동을 한 제2기에 관심을 가진다. 이 시기의 고바야시는 전혀 새로운 것도 없는 보수적 담론을 만화를 통해서 재해석하고 확대재생산해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그가 만화 속에서 생산해내는 한일 역사왜곡(한일병합, 위안부 등)과 전쟁관은 단순히 만화가로서의 주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수세력의 결집을 통한 '사회적 사상가'로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먼저 고바야시가 과연 어떤 인물인가를 지금까지의 그의 정치·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간략히 살펴보자.

첫째, 고바야시의 만화와 저술 활동이다. 고바야시는 일본 사회에서 다루기 예민한 문제를 그만의 독특한 직설적인 화법으로 풀어내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끌어왔다. 이런 의미에서 1998년 7월에 발행된 『신고마니즘선언스페셜 전쟁론(新ゴーマニズム宣言SPECIAL 戦争論)』(이하 『전쟁론』)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 만화는 일본 내의 보수세력과 진보진영뿐만 아니라, 『뉴욕 타임스』, 『르몽드』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과 관심을 받은 작품이다. 작가 고바야시 스스로도 헤이세이(平成) 10년 후반 논란은 『전쟁론』이 첨거하게 되었다고 자평하면서 스스로 이러한 현상을 '전쟁론 현상'이라고 했다.¹⁾ 『전쟁론』 만화 이외에도 고바야시는 『신고마니즘선언(新ゴーマニズム宣言)』 시리즈와 『신고마니즘선언스페셜(新ゴーマニズム宣言SPECIAL)』 시리즈를 통해서 옴진리교, 종군위안부, 대동아전쟁, 미일안보문제, 9·11테러, 대만 문제, 일본 천황론, 헌법개헌 등 일본의 정치·사회적인 면을 만화 작품으로 다루어왔다. 또한 고바야시는 만화 이외의 저술 활동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를

1) 小林よしのり(2000), 『「個と公」論新ゴーマニズム宣言special』, 幻冬舎, 20쪽.

생산해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전쟁론논쟁』²⁾과 같은 저서로, 자기 만화를 가지고 특정 인물과 논쟁한 내용을 책으로 출판한다든지, 특정 인물과 특정 주제를 가지고 대담³⁾한 것을 책으로 출판한다든지 하면서 일본 사회 내에서 만화가로서가 아니라 보수논객으로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둘째, 고바야시의 실천적 외부 활동이다. 고바야시는 『전쟁론』의 출판으로 얻은 보수논객으로서의 이미지를 이용해 사회적 활동 영역을 확대해나갔다. 그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作る會)'(이하 '만드는 모임')의 이사 대우로써의 활동이다.⁴⁾ 고바야시와 '만드는 모임'은 '역사수정주의'라는 그들의 논리를 대중들이 거부감 없이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고바야시의 만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그 배경에는 정치가나 지식인의 담론은 딱딱하고 거칠어서 독자와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만화가인 고바야시의 담론은 쉽게 대중들에게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의도가 외부의 이벤트로 드러나는 결과물이 바로 고바야시의 만화를 '만드는 모임'의 심포지엄 주제로 선정된 것이다. 실제 1998년 9

2) 小林よしのり・田原總一郎(1999), 『戦争論争戦-小林よしのり VS 田原總一郎』, 幻冬舎.

3) 반미에 관한 대표적인 자료이다. 小林よしのり・西部邁(2002), 『反米という作法』, 小學館.

4) 주지하다시피 이 모임은 자칭 '자유주의사관'을 부르짖는 일부 보수 일본인들이 현 일본 역사교과서 내용을 비판하면서 만든 모임이다. 그 주된 회원은 후지오 노부카츠[藤岡信勝], 니시오 간지[西尾幹二], 사카모토 다카오[阪本多加雄], 야마모토 나쓰히코[山本夏彦],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 등이다. 이들은 기존의 일방적인 보수론자들과는 달리 학계와 대중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유명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바야시는 이 모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という運動がある』(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 1999)라는 책을 내기도 하였다. '만드는 모임'의 홈페이지를 참고. <http://www.tsukurukai.com>

월 20일 '만드는 모임'에서 개최한 제5회 심포지엄 주제는 「현대 일본의 '전쟁과 평화' 관의 서로 다른 대화 —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전쟁론』을 둘러싸고 (現代日本の「戦争と平和」観への異議申立て〜小林よしのり『戦争論』をめぐる)였다. 이때뿐만 아니라 2002년 2월 7일에 개최된 제18회 심포지엄 주제는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전쟁론 2』를 둘러싸고(小林よしのり『戦争論 2』をめぐる)였다. 고바야시는 '만드는 모임'의 활동을 통해서 일본 보수논객의 인지를 쌓게 됨과 동시에 '문화 권력자'로 거듭나게 된다.⁵⁾

셋째, 고바야시의 방송 활동이다. 고바야시는 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보수논객으로 시청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대표적인 것이 아사히 TV의 1998년 10월 『격론! 「전쟁론」과 일본(激論! 「戦争論」と日本)』이라는 토론 프로그램이다. 이는 1998년 7월에 발행된 자신의 저서 『전쟁론』을 주제로 한 토론으로 일본 시청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2003년 11월에 『충격! 테러 계속, 긴박해지는 이라크 정세! 다음은 일본?(衝撃! テロ継続! 緊迫するイラク情勢 次は日本か?)』이라는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6, 2007년도에는 NHK의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인 『일본, 이제부터(日本の、これから)』에 출연⁶⁾하여 미일안보동맹과 개헌논쟁에 적극 발언하는 모습으로 일본 내의 보수논객으로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고바야시의 작품과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을

-
- 5) 고바야시는 2002년 '만드는 모임'에서 탈퇴한다. 외부적으로 표출된 이유는 반미 노선을 주장해왔던 고바야시와 '만드는 모임'에서 친미 노선을 주장한 다른 회원과의 갈등으로 보여진다.
 - 6) 2006년 6월 10일 토론의 주제는 미군기지 문제, 2007년 8월 15일 토론의 주제는 일본 헌법 문제였다.



제시해본다. 고바야시는 만화 『전쟁론』을 통해서 일본 국내외로부터 전쟁을 합리화·미화를 했다는 것으로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고바야시가 단순히 전쟁을 합리화·미화를 하기 위해서 만화를 그렸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만드는 모임’과 같은 일본 우익 보수세력들이 왜 고바야시 만화를 이용해 그들의 주장을 선전하고 수단화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전쟁 합리화 및 미화 이외의 또 다른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해본다. 고바야시에 대한 이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고바야시 연구 필요성을 몇 가지 제시해본다.

첫째, 고바야시의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이전 시대에서는 고바야시와 같은 주장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고바야시와 같은 문화인, 지식인의 주장이 사회적 이슈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 이슈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본의 방송과 잡지 환경의 변화도 한몫을 했지만, 정치인이 시작한 보수 담론 생산이 이제는 문화인과 지식인에게까지 확대가 되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특히 이들 보수 세력은 보수논리의 확대를 위해서 모임을 만들어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 수단화하고, 그 최전방에서 흥위병 역할을 하는 것이 고바야시의 만화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고바야시의 만화를 단순히 만화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 고바야시 연구의 필요성이다.

둘째, 문화 권력자로서의 만화가 고바야시에 대한 이해이다. 고바야시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가 만화가이자 그의 생산담론과 사회적 활동이 ‘문화 권력자’로 행사했기 때문이다. 문화적 실천으로서 사회 가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문화 권력’이라고 정의를 하면, 만화가 고바야시는 ‘문화 권력자’가 된다. 즉, 문화인(만화가)인 고바야시는 문화와 권력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권력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존 권력을 물리력에 기반한 지배계층의 통치행위라고 한다면, 이제는 물리력이 아닌 또 다른 형태, 즉 문화



를 앞장세운 새로운 형태의 권력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⁷⁾ 고바야시는 일본의 유명 만화가이다. 그리고 그는 문화 권력자이자 사회적 실천가이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만화가이기도 하다. 만화가인 고바야시에게 있어서 만화는 단순한 대중매체가 아니라, 한 지식인이 생산하는 '지식 담론'의 장이다. 이를 통해서 한 사회의 헤게모니를 생산해내고자 하는 것이다. 고바야시에게서 만화는 지배력과 피지배력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문화 권력'의 등장, 이것이 고바야시 연구의 두 번째 필요성이다.

셋째, 전체적인 일본 만화 문화 속에서 고바야시 만화에 대한 연구이다. 일본 만화 산업은 1995년과 2000년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출판물에서 만화가 차지하는 판매량의 비율이 39.3%, 37.0%이다. 이는 10권의 출판물 중 만화가 약 4권이라는 의미다.⁸⁾ 그리고 정부와 언론의 우호적인 시각은 만화에 대한 관심과 만화의 확대 재생산에 기여했고, 시민들의 만화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을 수용할 수 있게끔 하였다. 이제 일본 만화는 전 세대를 포함하는 대중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일본 사회 내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화라는 매체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평가되기 때문에, 특정 시대에 대히트한 작품을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대히트한 작품은 다수의 독자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회적 표현과 시대적 가치관 등의 분석이 가능하다. 고바야시의 작품도 일본의 만화 문화와 이러한 만화에 대한 시각적 맥락에서 이해를

7) 정재철 편(1998), 「푸코의 권력과 문화」, 『문화연구이론』, 한나래.

8) 일본 만화의 외형적 성장, 영역확대 과정, 만화에 대한 인식 전환 등 일본 만화 전체의 사회적 평가에 대해서 다음 논문을 참고. 강기철(2003), 「일본 만화의 사회적 평가에 관한 연구」, 『일어교육』 23.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고바야시의 만화를 본 독자들이 바로 거리로 나와 우익단체에 가입하거나 그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바야시의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이들 독자를 잠재적 우익 동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호적인 지지를 받아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바야시는 자기의 작품을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고바야시 만화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고바야시가 그의 만화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보수우익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고바야시 만화가 대중적으로 성공하게 된 그만의 독특한 만화 수용구조인 만화 전략에 대해서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만화 작품인 『전쟁론』이 그 텍스트가 될 것이다.

2. 선행연구

고바야시 요시노리 만화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기의 고바야시 만화에 관심을 가졌던 연구자는 구레 도모후사(吳智英)였다. 그는 초기 고바야시의 만화에 대해서 신선하게 느꼈다고 지적했지만,⁹⁾ 『전쟁론』이 사회적 이목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요즘, 고선은 만화로 서로 별로 재미가 없다. 왜냐하면 고선은 혐의의 만화의 틀을 벗어나 만화가 아닌 다른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초기의 고바야시 만화는 이제 만화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어버렸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9) 吳智英(1995), 『ゴーマニズムとは何か! 小林よしのり論序説』, 出帆新社.



본격적인 고바야시 만화의 비판 연구는 우에스기 사토시[上杉聰]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⁰⁾ 그의 고바야시 비판 연구도 사회적 주목을 받았지만, 그의 저서에 고바야시 만화 컷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 고바야시에게 고소를 당함으로써 재판까지 간 것이 더 사회적 이목을 받았다.¹¹⁾ 결론적으로 우에스기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고바야시 만화는 보수우익 세력의 선전전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내고자 한 것이다. 그는 고바야시가 언급한 위안부 문제의 왜곡을 직접 분석함으로써 고바야시의 만화를 비판하고 있다.

고바야시 만화의 비판적 저서 중의 또 하나는 오비나타 스미오[大日方純夫]의 연구가 있다.¹²⁾ 오비나타 저서의 특징은 역사학자의 시선으로 고바야시 만화가 등장하게 된 일본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거짓된 역사왜곡의 내용에 대해서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미야다이 신지[宮台眞司]를 비롯한 8명의 연구자들이 집필한 『전쟁론 망상론(戰爭論妄想論)』에서는 고바야시의 『전쟁론』에 나타나는 국가와 개인,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8명의 집필자가 독자들을 대상으로 고바야시 만화의 위험성과 역사적 왜곡을 분석하고 있다.¹³⁾

그 외에도 『만화사회학(マンガ社會學)』에서 우루 요시미즈[瓜生吉則]는 고바야시 만화를 둘러싼 논쟁을 사회학자의 시각으로 고바야시 만화의 한계와 정체성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하는 연구가 주목을 받았다.¹⁴⁾

국내에서의 고바야시 연구는 신문 기사와 몇몇 잡지의 기사 외에 본격적인

-
- 10) 上杉聰(1997), 『脱ゴーマニズム宣言-小林よしのりの「慰安婦」問題』, 東方出版.
 - 11) 上杉聰(2000), 『脱戦争論-小林よしのりとの裁判を経て』, 東方出版.
 - 12) 大日方純夫 編(1999), 『君たちは戦争で死ぬるか 小林よしのり『戦争論』批判』, 大月書店.
 - 13) 宮台眞司 外(1999), 『戦争論妄想論』, 教育史料出版會.
 - 14) 宮原浩二郎 編(2001), 『マンガ社會學』, 世界思想社.



연구는 강기철의 논문을 제외한다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¹⁵⁾ 강기철은 고바야시 만화의 등장 배경과 위안부를 둘러싼 만화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고바야시 만화에 대한 활발한 연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

3. 분석방법

이 글의 텍스트 분석방법으로 롤랑 바르트의 신화론을 이용한다. 바르트 신화론의 장점은 대중문화 텍스트 분석에서 대중들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자연스럽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는 사회의 고정관념들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바르트는 당시 사회에서 쉽사리 볼 수 있는 현상이나 사건들 하나하나를 신화로 보며, 그 신화 속에는 독자 내지 대중으로 하여금 그 신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려는 간교한 책략이 있다고 보고 그 책략 내지 허구성을 드러내 보였다. 즉 개개의 현상이나 사건은 하나의 기표

〈바르트의 신화체계 모형〉

언어 차원의 의미 (외시적 의미)	1. 기표	2. 기의
	3. 기호	
신화 차원의 의미 (공시적 의미)	I. 기표	II. 기의
	III. 기호(신화)	

15) 강기철(2004), 「고바야시 요시노리 만화에 나타난 사회적 가치 변화 요소에 관한 연구」, 『일어교육』 28, 한국일본어교육학회; 강기철(2008), 「문화 권력으로서의 고바야시 요시노리 만화 연구-위안부 논쟁을 중심으로」, 『일어교육』 46.

로서 하나의 기의를 갖지만, 그 기의는 조작된 것으로 그것을 파헤쳐 감춰진 다른 기의를 찾아낸다는 전략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 바르트는 하나의 신화 체계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앞의 도식에서 1, 2, 3은 언어 차원이고, I, II, III은 신화 차원이다. 언어 차원의 의미, 기표₍₁₎와 기의₍₂₎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호₍₃₎를 생산해낸다. 하지만 기호₍₃₎에서 성격의 변화가 생기는데, 외시적 차원에서 공시적 차원으로 옮겨가면서 신화 차원의 새로운 기표₍₁₎로 바뀌는 것이다. 이를 바르트는 '언어 기호의 기표에 대응하는 기의(=내용)는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해석을 산출할 가능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배 담론이 은폐하고 있는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이데올로기를 폭로하기 위해서는 실제 체계의 기표에 대응하는 기의에 담긴 내용을 새로운 신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틀로서의 기의(II)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표와 기의의 결합은 언어 차원의 의미를 신화 차원의 의미 작용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¹⁶⁾

이처럼 바르트의 신화 연구는 사회현상 그 자체보다 그것이 갖는 신화적 의미와 그 속에 담겨진 지배층의 규범을 자연스러운 사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대중매체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탐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II. 고바야시의 보수우익 담론

고바야시의 만화 『전쟁론』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16) 김기국(2002), 「기호학을 통한 사회 현상 연구-대중매체 보도의 기호학적 분석」, 『불어불문학연구』 50, 34~35쪽.

① 과거 전쟁의 합리화와 미화, ② 전후 민주주의 부정, ③ '공'의 영역 바로 세우기이다. 고바야시의 만화는 국내외적으로 과거 전쟁의 합리화와 미화 때문에 사회적 찬사와 비판을 받았지만, 그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고 했던 논리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그가 주장하려고 했던 최종 담론이 무엇인가를 신화 분석을 이용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과거 전쟁의 신화 분석

고바야시의 만화 『전쟁론』이 사회적 주목을 받은 것은 과거 전쟁에 대한 고바야시의 독특한 만화 담론 때문이다. 여기서는 고바야시가 만화 『전쟁론』의 담론 생산을 통해서 어떤 것을 주장하려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다음은 『전쟁론』에 나온 주요 대목이다.

① 전쟁은 악이 아니라 정책이다. 34쪽.

전쟁은 외교의 연장이고 대화로 쌍방이 해결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수단이다. 12쪽.

전쟁은 승인된 폭력이다. 본래적으로 약탈도 강간도 학살도 모든 폭력이 승인된 상태. 114쪽.

②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아시아인과 싸운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식민지화 시킨 차별주의자 구미인들과 싸운 것이다. 36쪽.

백인들은 동아시아인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가축으로 생각했다. …… 백인에게 반항해서 싸우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든 시기였다. 그 절대 차별의 세계를 바꾼 것이 일본이다. 그리고 구일본군이였다. 145쪽.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구미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을 때 일본만이 독립국

이었다. 일본만이 구미와 싸울 수 있었다. 싸워야 하는 책무였다. 367쪽.
대동아전쟁이야말로 일본인의 민족성을 건 것이다. 복잡해도 다양한 감동을 엮어낸 일대서사시였다. 365쪽.

③ 일한병합은 조선의 최대 정당인 일진회가 원했고, 세계가 승인했다. 34쪽.
일본군에 강제연행되어 성노예가 된 자는 없다. 자발적인 창부와 어쩔 수 없이 된 창부가 일본병을 상대로 상업적 행위를 한 이야기뿐이다. 180쪽.
빈곤 때문에 부모가 딸을 팔아서 업자에게 군위안소로 데려와 일한 경우도 많다. 181쪽.

소련이 베를린에 침공했을 때는 베를린 여성의 50%가 강간당했고, 10%가 성병에 걸렸다. 147쪽.

노구교 사건은 공산군이 일본군과 국민당 군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꾸민 것이다. 122쪽.

④ 전쟁 속에서 사랑과 용기가 도전받고 자기희생의 감동이 생겨나 자긍심의 고귀함을 깨닫는 경우도 있었다. 37쪽.

전쟁에서 죽은 병사와 모든 백성들은 조국의 역사와 국토에 목숨을 걸었고, 가족과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해도 좋다. 280쪽.

힘든 전투를 참고 참으면서 죽어갔던 조부들, 용감한 전투에서 전과를 올린 조부들, 군대의 불합리한 구속에 원망을 가진 조부들, 후방에서 지원하면서 전사를 극복한 조모들, 일본병을 위로해준 위안부들, 이들 모두에게 감사하면서 전쟁을 이야기하자. 38쪽.

전시 중에는 군수뇌부로부터 뉴기니에 버려지고, 전후에는 반전평화주의자로부터 자학국 일본에 버려지고, 푸념 하나 없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조부들은 돌아가셨다. 208쪽.

가령 조국을 위해서 죽은 병사는 신이 되어 야스쿠니에 모셔진다. 따라서 그는 “야스쿠니에서 만나자”면서 죽어간다. “나는 먼저 간다”, “야스쿠니에서 만나자”, “야스쿠니에서 기다려줘. 나도 곧 갈게”, “달아 야스쿠니 신사에 오면 아빠를 볼 수 있어.” 293쪽.

그러나 언젠가는 이 전쟁이야말로 인류가 이룬 가장 아름답고 잔혹한 그리고 숭고한 싸움이었다고 재평가될 날이 올 것이다. 개인을 넘어선 용기 있는 영령들에게 감사한다. 368쪽.

①~④는 『전쟁론』에 담긴 과거 전쟁에 관한 고바야시의 주장이다. 이들 주장을 통해서 고바야시가 과거 전쟁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지를 바르트가 주장한 외시 차원과 공시 차원으로 읽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바야시가 어떻게 독자들에게 공시 차원의 의미를 읽도록 은연중에 강요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①에서는 고바야시만의 전쟁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악이 아닌 정책’, ‘외교의 연장’, ‘강간’, ‘살인’, ‘승인된 폭력’이라는 강한 어구로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기존 일본 사회에서 금기시되다시피 한 과거 전쟁에 대해서 반전(反戰)이 아니라, 전쟁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독자를 자기만의 세계로 끌어들이고자 한다.

②에서 고바야시는 백인/아시아인, 식민/해방으로 나눠 과거 전쟁을 침략 전쟁이 아닌, ‘인종전쟁’, ‘해방전쟁’으로 정당화해버렸다. 과거 전쟁을 동아시아인을 ‘가축’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차별주의자’인 ‘구미인’을 상대로 한 전쟁으로,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독립국이었던 일본이 백인의 식민지로부터 동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해 벌인 ‘해방전쟁’, ‘인종전쟁’으로 왜곡시켜버렸다. 과거 전쟁이야말로 일본의 ‘역사적 책무’였다는 점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고바야시의 이러한 이분법적이고 단정적인 전쟁관은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지금까지 전후 일본 사회의 반전 평화교육에 대해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닐까’, ‘혹시 잘못된 정보에 속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독자들이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③에서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해서 부정하는 대목이다. '일진회가 원해서', '자발적인 창부', '어쩔 수 없는 창부', '딸을 팔아서' 등을 이용해서 조선에서의 한일병합은 정당한 것이고, 군대 위안부 자체는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책임이 아니라 그것은 자발적이었고, 어쩔 수 없었던 혹은 부모가 딸을 팔아먹은 경우로 왜곡해버렸다. 1993년 고노 담화¹⁷⁾를 통해서 군대 위안부의 존재를 일본 정부가 인정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역사왜곡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위안부 자체를 정당화하기 위해 소련이 독일에 침공했을 때 50% 이상의 여성을 강간했다든가, 10%가 성병에 걸렸다는 근거가 희박한 내용을 가지고 상대적 비교를 하고 있다. 또한 중국 침략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이 아니라 공산당의 계략 때문에 노구교사건이 일어났다고 왜곡하고 있다. 고바야시의 역사왜곡 의도는 체계적인 역사교육을 받지 않은 독자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속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④에서는 전쟁을 미화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사랑과 용기', '자기희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전쟁 세대였던 조부들의 숭고한 마음을 독자에게 정서적으로 호소한다. '조국의 역사와 국토', '가족과 일본의 미래' 등을 언급하면서, 독자들에게 조부들의 숭고함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뉴기니에 버려지고', '일본에 버려지고', '푸념 하나 없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이런 대목에서는 조부 세대들의 대가 없는 조국애 등을 이야기한다. '야스쿠니에서 만나자', '야스쿠니에서 기다려줘', '딸아 아빠를 볼 수 있어'라

17) 고노 담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今次調査の結果, 長期に, かつ廣範な地域にわたって慰安所が設置され, 數多くの慰安婦が存在したことが認められた. 慰安所は, 當時の軍當局の要請により設營されたものであり, 慰安所の設置, 管理及び慰安婦の移送については, 舊日本軍が直接あるいは間接にこれに關與した(1993. 8. 4).

는 대목에서는 조부들의 숭고한 정신이 절정에 이른다. 이때 고바야시는 결론을 내린다. 전쟁을 ‘재평가’ 하자는 것이다. 만화에서는 언젠가는 인류가 이룬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전쟁으로 ‘재평가’ 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면서 독자들에게도 전쟁에 대한 ‘재평가’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I~IV에 담겨 있는 과거 전쟁에 대한 신화를 공시 차원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식 1〉 과거 전쟁의 신화 분석

인용문	외시 차원의 기의	공시 차원의 기의	만들어진 신화
①	악이 아닌 정책/외교의 연장/승인된 폭력	전쟁 개념 재정의/독자의 관심 유발	과거 전쟁은 정당한 전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②	차별주의자 구미인/식민지/가축/싸우는 책무/대동아전쟁/일대서사시	전쟁의 정당함/책임감	
③	일한병합/세계가 승인/자발적/어쩔 수 없는/말을 팔아서/꾸민 것	과거 전쟁에 대한 의심 유발/역사왜곡	
④	사랑과 용기/자기희생/목숨을 걸고/돌아가셨다/야스쿠니에서 만나자	전쟁의 숭고함/정서적 호소	

①~④에서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시 개념과 신화 체계의 모형을 제시해본다. 도식 1에서처럼 외시 차원에서의 기의인 ‘만화 그 자체’와 ‘만화 내용’은 사회현상 차원에서 독자들이 이해한 기호인 ‘만화가 전달한 내용의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 그다음으로 이 기호는 신화 차원의 기표 즉 형식으로 작용해서 새로운 의미를 담는 그릇이 되어 신화 차원의 기의인 ‘독자가 이해한 만화 내용’과 어우러져 신화 기호인 ‘독자에게 은밀하게 전달된 책략’을 형성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작가 고바야시가 『전쟁론』에서 제시한 만화의 내용

은 독자들의 해독을 거쳐 신화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전달된 만화의 내용은 일본 독자에게 새로운 기의로서 해석이 되어 '과거 전쟁은 정당한 전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신화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2. '전후 민주주의 부정'의 신화 분석

여기서는 고바야시의 만화 『전쟁론』에서 중요 대목으로 다루어진 '전후 민주주의 부정'에 대해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고바야시의 만화 『전쟁론』이 전쟁을 미화했다는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실제 고바야시는 『전쟁론』을 통해서 또 다른 중요한 주장을 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전후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전후 민주주의는 일본 전후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체제인데, 고바야시는 이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체제를 삼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낱 공허한 주장으로만 들릴 수 있지만, 일본의 무질서, 혼란, 공공성 상실, 개인주의, 에고이스트를 양산시켰다는 전후 민주주의의 허상을 지적하는 대목에서는 독자들은 혼란스러워한다. 이것이 바로 고바야시의 노림수이다. 여기서는 고바야시가 독자의 '이데올로기 흔들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보기로 한다.

- ⑤ 도쿄재판.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의 전승국이 패전국 일본의 전쟁범죄를 일방적으로 재판한 집단 린치재판이 패전 후에 즉시 열렸다. 44쪽.
미국이 일본 전토에 행한 대공습으로 60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전쟁범죄이다. 이유는 민간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폭의 희생자는 30만 명이었지만, 이것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중대한 전쟁범죄다. 하지만 미국은 재판받지 않는다.

117쪽.

⑥ 인권, 평화, 평등, 페미니스트 등은 전후 미국에서 들어온 민주주의 사상이다. 반전평화는 미국이 일본에 강요한 사상이다. 또한 개인주의를 포함한 전후의 일본인 모두가 이 교육을 받고 자랐다. …… 즉 인권, 자유, 개인, 반전평화 등의 가치를 내걸면서 '진존좌익'과 넓게 퍼져 있는 좌익 시민그룹 그리고 전후 민주주의자까지 대동단결해버렸다. 요컨대 전후 민주주의는 좌익이다. 그것이 공기의 정체이다. 23~24쪽.

⑦ 나라[國]라고 하는 공(公)은 성가시다. 권리는 가능한 한 주장하지만, 의무는 납세조차 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을 지금 일본에서는 '개인주의'라고 한다. 일본의 개인주의는 국가, 권리도 싫다. 그리고 이 평화가 명백해서 세금만 내면 손에 들어오는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개인주의는 마치 소비자인 것 같다. 18쪽.

'귀축미영(鬼畜米英)'이 '반전평화'로 되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일본. 그 '반전평화'가 미래의 일본 파멸을 불러올 가능성 등을 생각도 하지 않고. 21쪽.

무기를 사용하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다. '정보전', '선전전'이라는 전쟁도 있다. 평화라고 하는 현재에도 이 전쟁은 항상 계속되고 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전후 정보의 발신 기지로서 역할을 해온 마스크와 대부분의 교육이 '반일 정보 선언군'이 되어서 일본은 정보전쟁에 연전연패를 계속해왔다. 정보의 수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관객'이 되어 대일 정보에 저항해보자. 171쪽.

먼저 ⑤에서는 전후 민주주의를 부정하기 위해 고바야시는 도쿄재판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일본, 전승국/패전국 하는 식으로 이분법으로 나누어, 도쿄재판을 '일방적', '집단린치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후 민주주의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미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도쿄재판의 부당함과 전후 민주주의에 대한 의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⑥에서는 전후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대목이다. 민주주의의 주요 항목인 '인권', '평화', '평등', '페미니스트' 등은 미국에 의해 강요된 사상이라고 일방적으로 결론내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워버린다. 그리고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주주의', '반전평화' 등의 전후 민주주의를 좌익이라고 공격해버린다. 독자들에게는 현재 일본에서 만연하고 있는 '개인주의' 문제의 근원을 '미국에 의해 강요된 전후 민주주의' 때문이었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후 민주주의'와 '개인주의'와의 중간의 상관관계는 전부 무시해버린다.

⑦은 미국에 의해 강요된 전후 민주주의로 인한 일본의 미래를 부정하는 대목이다. 현재의 일본은 개인주의가 만연해 국가도 권리도 싫어하는 개인주의 소비자가 되었다고 자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전쟁 시 슬로건이었던 '귀족 미영'이 '반전평화'로 바뀌었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변함이 없다고 주장한다. 더 큰 문제는 '반전평화'가 일본의 파멸을 불러올지도 모른다고 독자들에게 은연중에 위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좌익세력들이 마스크와 교육 등의 대부분의 정보전쟁에서 승리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대목에서 고바야시는 이제 독자들을 정보전쟁에 저항하도록 하는 배후 조종 역할까지 하고 있다.

다음의 도식 2는 ⑤~⑦에서 생산된 『전쟁론』 속에 또 다른 신화인 '전후 민주주의 부정'에 대한 담론 분석이다. 필자가 분류한 만화의 내용을 공시 차원에서 접근해 추출한 신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것이다.

도식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바야시는 『전쟁론』에서 과거 전쟁만을 합리화 및 미화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식 2에서 만들어진 신화는 "미국에 의해 강요된 전후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식 2〉 전후 민주주의 부정의 신화

인용문	외시 차원의 기의	공시 차원의 기의	만들어진 신화
⑤	전승국/패전국/일방적/집단 린치/전쟁범죄	도쿄재판의 문제점 제시/독자 관심 유발	미국에 강요된 전후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항해야 한다.
⑥	미국에서 들어온/미국에 강요된/전후 민주주의는 좌익	미국의 강제성/적대감 유발/비대칭적 권력관계	
⑦	마치 소비자/일본의 파멸/저항해보자	적대감 유발/위기 고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바야시는 현재 일본 사회에서 일어나는 제반 문제점을 미국에 의해 강요된 ‘전후 민주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하고 일본을 파멸시키는 ‘허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고바야시에게 있어 ‘전후 민주주의’는 ‘허상’으로 공격과 해체의 대상이 될 뿐이다. 독자들에게는 일본 미래에 대한 위기를 고조시켜 전후 민주주의에 저항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3. ‘공’과 ‘개’의 신화 분석

여기서는 고바야시 만화 『전쟁론』에서 전쟁 합리화와 미화, 전후 민주주의의 부정과 함께 중요 대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公)’과 ‘개(個)’의 관계에 대한 주장을 앞에서 적용한 신화 분석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해본다. 다음은 『전쟁론』에서 고바야시가 ‘공’과 ‘개’를 다룬 주요 만화 장면이다.

- ⑧ 지금의 일본을 보면, 개와 공이 분리된 사회이다. 공공성이 없는 관료와 정치가, 공공성이 없는 어른, 공공성이 없는 젊은이와 어린이 …… 선거 따위에서 투표하려는 마음도 없고, 사회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한다면서도 3일이면 잊어버리고 만다. 결국 자신의 일밖에 관심이 없다. 54쪽.
지금의 일본인에게 ‘개인주의다’, ‘개인정신이다’고 외치는 놈은 미국의 세

뇌에 의해 '공'을 짊어질 수 없는 약해빠져버린 자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개인주의자는 단순히 에고이스트다. 55쪽.

⑨ 바보스러운 것은 일본 국내의 '세뇌된 자'에 지나지 않는 아사히신문·마이니치신문을 비롯한 매스컴, 좌익[サヨク]운동가만이 아니라, 시민운동가로 칭하는 자, 그리고 높으신 미국에 부여받은 반전평화의 이데올로기 속에 따뜻하게 자란 일반 시민도 …… 51쪽.

좌익은 나라를 위해서보다 '인권'과 '평등사회'를 위한 목적이 상위를 차지한다. 게다가 '반전평화를 위해서' 21세기에는 국가가 없어져도 좋다고 생각한다. …… 좌익도 '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 공의 범위가 '나라'가 아니라 '세계'이다. 나는 '나라'이다. 좌익(左翼) 및 좌익[サヨク]¹⁸⁾은 세계이다. 343쪽.

지금도 잔존좌익들은 이전에 일본과 싸웠던 중국, 미국을 향해 달려가서 '일본은 전쟁 범죄국이다'고 세계에 PR하는 것으로 반권력·반국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5쪽.

⑩ 특공대는 조국, 향토, 가족, 천황 등의 공을 지켰다. 91쪽.

공이라는 것은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346쪽.

그들은 個를 없앤 것이 아니라 공을 위해서 감히 個를 버린 것이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즉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다. 96쪽.

공과 個는 대립시켜서는 안 된다. 공이 個를 유지하고 있다. 個가 공[나라]에 권리만을 주장하는 지금, 개인은 공을 지킬 의무조차 지지 않으려고 하는가? 349쪽.

평화라는 것은 질서가 있는 상태이다.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은 권력이고 폭력조치이다. 국내에서는 경찰, 국외에서는 군대. 이 양자의 폭력조치가 국내에 질서를 만들어낸다. 그것이 평화이다. 373쪽.

18) 고바야시는 좌익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사용했다. 마르크스주의 의식이 있는 자를 한자로 좌익(左翼)이라고 쓰고, 이들의 사상을 무의식적으로 교육받은 자를 가타가나로 좌익[サヨク]이라고 불렀다. 『전쟁론』, 24쪽.

⑧에서는 현재 일본은 ‘개’와 ‘공’이 분리된 사회라고 지적한다. 공공성 없는 관료와 정치인, 어른, 젊은이, 아이들까지 모두 고바야시의 비판의 대상이 된다. ‘선거 따위에서’, ‘3일이면 잊어버리고’ 등을 사용하면서 ‘결국 자신’으로 돌아가버리는 현재의 일본인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다. 또한 ‘개인주의’와 ‘개인정신’을 이야기하는 이를 ‘미국에 세뇌된 자’, 그리고 ‘약해져버린 자’로 치부해버린다. 개인주의자는 단순히 에고이스트로 결론지어버린다.

⑨에서는 좌익세력의 위협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좌익들은 공(나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반전평화’와 ‘세계’를 위해서 활동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들 좌익세력들이 반권력·반국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들과 분리되어 저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고바야시는 이들 세력들이 뿌리 깊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들 좌익세력들의 이데올로기를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⑩에서는 결국 고바야시가 주장하는 바가 나타난다. 바로 ‘공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개인주의와 좌익의 활동으로 엄청난 사회적 불안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고바야시는 전쟁론의 많은

〈도식 3〉 ‘공’과 ‘개’의 신화 분석

인용문	외시 차원의 기의	공시 차원의 기의	만들어진 신화
⑧	공공성 없는/분리된/자신의/개인주의	개인주의화된 일본/사회적 불안감 조성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공을 바로 세워야 한다.
⑨	세뇌된 자/좌익/반권력/반국가 운동	좌익에 대한 위협성/공과 분리된 일본	
⑩	특공대/개를 버린/나라의 미래/	공 중시/일본의 미래	

부분을 조부들의 전쟁 체험담과 전후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목숨을 버려가면서 지키고자 했던 조국, 향토, 가족, 천황 등의 ‘공’을 바로 세우자는 것을 독자들에게 은연중에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⑧~⑩의 내용을 공시 차원에서 신화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식 3에서 외시 차원에서는 공공성이 없는 현실, 좌익세력의 반국가적 성격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독자들은 공시 차원에서 고바야시의 숨겨진 의도를 해독하게 된다. 공시 차원의 기의인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는 공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만화로 접할 수밖에 없는 독자들은 고바야시의 논리를 무의식중에 스스로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식 1, 2,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바야시의 작품 『전쟁론』을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신화 분석을 해보았다. 도식 1에서는 ‘과거 전쟁은 정당한 전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신화를 도출하였고, 도식 2에서는 ‘미국에 강요된 전후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항해야 한다’를, 도식 3에서는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는 공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신화를 도출해내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바야시의 『전쟁론』은 과거 전쟁의 합리화와 미화가 부각되었지만 실제 고바야시가 주장하는 바는 더욱 교묘하게 독자들에게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식 4는 앞에서 살펴본 도식 1, 2, 3의 공시적 차원의 기의를

〈도식 4〉 고바야시의 최종 신화

1. 기표 : 과거 전쟁과 전후 민주주의에 대한 장면	2. 기의 : 전쟁관과 전후 민주주의의 문제가 있다.	
3. 기호 : 과거 전쟁의 재평가와 전후 민주주의를 부정해야 한다. I. 기표 : 상동	II. 기의 : 일본의 미래는 전전 시대의 가치를 복구해야 한다.	
III. 기호(신화) : ‘개’를 버리고 ‘공’을 바로 세워야 한다.		



바탕으로 고바야시의 만화 『전쟁론』의 최종 신화를 도출해본다.

도식 4에서는 언어 차원에서 기표(1)와 기의(2)는 새로운 기호(3) ‘과거 전쟁의 재평가와 전후 민주주의를 부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호를 생성해낸다. 여기서 언어 차원의 기호(3)는 자연스럽게 신화 차원의 기표(1)로 바뀐다. 신화 차원의 새로운 기표(1)는 고바야시의 최종 신화(III) ‘개’를 버리고 ‘공’을 바로 세우야 한다는 신화를 도출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고바야시의 만화가 과거 전쟁을 합리화와 미화를 통해서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여기서 필자의 신화 분석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고바야시의 최종 목적은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는 ‘공’을 바로 세우자’라고 주장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III. 고바야시의 만화 전략

고바야시의 만화에 나타난 주장, 특히 과거 전쟁에 대한 합리화와 미화는 단행본이나 영화, 텔레비전, 만화 등과 같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미 일본 독자에게 많이 전달되었으며 주로 보수우익의 정치가가 전달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어디까지나 만화로서만 존재하는 고바야시의 『전쟁론』의 주장이 왜 일본 독자들에게 선택을 받게 되었는가이다. 어떻게 보면 이전 시대의 보수논리를 재탕, 삼탕하는 내용뿐인데 왜 사회적 비판과 찬사를 동시에 받았는가? 여기서는 그 해답을 고바야시만의 독특한 만화 전략을 통해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첫째, 고바야시는 독자들의 이해와 자기의 보수논리 전달을 위해 극단적인 이분법을 사용하고 있다. 극단적인 이분법의 효과는 만화에 대한 해독을 단순



화시켜버린다. 이는 만화를 단순 구도로 설정함으로써 작가의 주장을 독자에게 명쾌하고 단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구도로 만들어버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고바야시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이분법 구도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설정해왔다.

먼저 내용적인 측면이다. 전전(戰前)/전후(戰後), 전승국/패전국, 차별/해방, 미국/일본, 조부/젊은이, 통쾌/불안, 과거/미래, 행복/파멸, 공/개, 공공주의/개인주의, 질서/혼란, 질서/파괴,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 조국/에고이스트, 애국/좌익 등 고바야시가 설정할 수 있는 이분법을 총동원했다. 이는 독자들에게 선과 악을 의도적으로 분리시키면서 선악의 구도를 완전히 단순화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앞 장에서 신화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바야시는 과거 전쟁을 합리화하고 미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은 외교의 연장이며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또한 구미인, 차별주의자에게 차별받아왔던 동아시아 식민지를 해방시키기 위한 해방전쟁이라고 역설하였다. 여기서도 구미인/일본, 차별주의/해방이라고 하는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일본의 사회인식 면에서도 질서/혼란, 공공주의/개인주의, 공/개, 조국/에고이스트 등의 이분법적인 구도를 설정해버린다. 공의 가치를 실현해왔던 조부들의 전전의 가치는 전후 미국에 의해 강요된 개인주의 및 좌익에 의해서 무질서와 혼란의 상태에 처해 있다고 결론지어버린다. 여기서도 전전/전후, 조부/젊은이, 일본/미국, 공공/개인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설정해버린다. 해결책도 단순하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다. 과거 조부들이 지녔던 '공'을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시 바로 세우자는 논리이다. 독자들은 그의 단순하고 이분법적인 논리에 빠져들거나 그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 만화 속의 전지전능한 고바야시가 그 여지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고바야시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용어 선택과 대립구도를 통해서 그

의 주장을 관철시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고바야시의 이분법적인 만화 전략은 만화 내용과 용어 선택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 1_ 니시오 간지 교수, 140쪽.

도상 기호인 그림을 통해서도 극단적인 이분법적 구도 설정을 시도하고 있다. 선과 악의 구도를 도상 기호인 그림을 통해서도 고바야시만의 주장을 독자들이 은연중에 수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그림을 보자.

그림 1은 도상 기호인 만화 컷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분법적 구도를 설정한 경우이다. 그림 1에 나온 인물은 니시오 간지(西尾幹二)로, '만드는 모임'의 대표적인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만화 컷을 통해서 조금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하자. 니시오 간지에 대한 인물 묘사의 전체적인 느낌은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일단 앉아 있는 모습과 흥부까지만 묘사한 구도는 독자와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독자와의 거리감을 최대한 줄였다. 또한 얼굴 묘사는 둥근형으로 만들어 각진 얼굴보다 편안한 느낌을 주도록 설정했다. 게다가 둥근 안경 착용과 줄무늬의 양복 정장, 그리고 타이트하게 맨 넥타이 그리고 손가락지를 끼고 앉아 있는 반듯한 자세를 통해서 등장인물의 지적인 이미지와 신뢰할 수 있는 바른 인물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



그림 2_ 다카무라 다케히토, 210쪽.

하고 있다.

그림 2는 고바야시가 과거 전쟁을 미화하기 위해서 조부의 전쟁 체험 편에 등장시킨 인물이다. 이름은 다카무라 다케히토[高村武人]다. 조부의 전쟁 체험 부분이 만화 『전쟁론』의 다른 장과 비교해본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도 그 의도를 엿볼 수 있지만¹⁹⁾ 등장인물 묘사에서도 고바야시의 의도가 잘 나타난다. 먼저 그림 2는 대포 사격을 하고 있는 병사 3명을 배경으로 등장시킴으로써 다카무라가 과거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고바야시는 독자들에게 뭔가 넌지시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전쟁의 비인간성, 참혹함, 잔인함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전쟁터에서 죽어간 전우와 가족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괴롭고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고바야시는 전쟁에 참가해서 그때의 추억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서 웃음이 나오는 모습으로 왜곡해 버렸다. 심지어 다른 장에서는 다른 인물을 등장시켜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내용을 전한다.

전쟁은 마치 해외여행 갔다 오는 것 같다./ 아 그래요. …… 나는 운이 좋은 남자야/해외여행 잘 했다. 273~275쪽.

전쟁 체험을 해외여행으로 왜곡해버리는 것이 고바야시의 만화 전략이다. 이 또한 전쟁의 비인간성과 잔인함을 숨기고 과거 전쟁을 합리화·미화하려

19) 고바야시의 만화 『전쟁론』은 전체 22장 총 381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제15장 「통쾌한 전쟁체험(痛快な戦争體驗)」은 각 장 평균 17쪽보다 3.8배 많은 65쪽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고바야시가 조부들의 전쟁을 합리화하고 미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는 의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서 고바야시는 비우호적인 인물은 지지분하고, 욕심 많고, 불안정한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다. 그림 3은 고바야시가 전후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가장 많이 공격한 대상인 좌익세력을 인물 묘사한 장면이다. 전체적인 느낌은 어둡다는 이미지다. 의도적으로 고바야시는 좌익의 이미지를 어둡게 하기 위해서 남녀 얼굴 위에 검은색을 덧칠해버렸다. 그리고 남자는 면도를 하지 않은 얼굴로 지지분하고 불결한



그림 3_ 좌익, 25쪽.

이미지를 만들어내었고, 뚱뚱한 몸매를 묘사함으로써 부자연스러움, 탐욕 등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다. 또한 좌익 남녀가 눈을 위로 쳐다보면서 주위를 살피는 장면을 통해서 이들의 행동이 수상하다거나 이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은연중에 알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으로 몰래 정보를 전달해주는 사람으로 좌익세력을 그렸기 때문이다. 그림 묘사에서 좌익의 존재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면서 국가의 이익을 중국과 미국에 팔아먹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다.

그림 4는 좌익의 인물 묘사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 예이다. 여기에 묘사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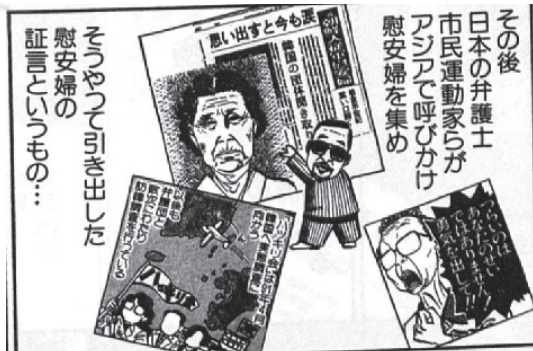


그림 4_ 위안부, 시민단체, 한국 교수, 182쪽.

인물은 위안부 김학순 할머니, 다카키 변호사, 한국의 윤정옥 교수를 묘사하고 있다. 먼저 김학순 할머니는 직사각형에 가까운 얼굴형에 경직된 표정으로 그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살아가는 인물로 묘사했다. 그리고 김학순을 지원하고 있는 다카키 변호사의 경우 검은 안경을 착용시켜 어둡고 불안한 이미지 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그림 3의 부정적인 좌익의 이미지와 동일화시킨 것이다. 그림 1에서 보여준 단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니시오 간지 교수와 다르게 한국인 교수는 눈과 입을 상대적으로 크게 그려 불균형적이고 추한 인물로 묘사해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들고 있다. 고바야시는 자신과 가깝거나 자신과 우호적인 인물은 선하고 착한 이미지를 만들었고, 자신의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비정상적, 불안정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고바야시는 도상 기호인 그림을 통해서도 이분법적인 대립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만화에 자기 자신의 분신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다른 만화 장르에서는 예를 찾아보기 힘든 요시린(よしりん)이라는 자신의 분신 캐릭터를 통해 고바야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작가 자신의 분신의 등장은 독자들에게 자전적인 에세이의 신선한 느낌을 들게 할 수 있다. 또한 작가의 분신 캐릭터의 등장은 만화라는 가상공간 속에서 작가와 직접 대면하면서 주장을 듣는 듯한 환상을 야기할 수 있다. 고바야시의 이런 방법은 독자와의 친근감을 상승시켜 작가에 대한 신뢰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만화의 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림 5를 보자.

그림 5는 고바야시의 만화 『전쟁론』의 표지이다. 표지에서도 고바야시의 과거 전쟁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다. 고바야시는 표지에서 일본군 병사로 보이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적의 진지를 공격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 배경 위에 고바야시의 캐릭터인 요시린이 등장한다. 둥근 은테 안경 착용과 군

인용 물통에 고바야시^[小林]라고 적힌 글자를 통해서 분신 캐릭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요시린이 철모를 쓰고, 소총을 들고, 물통을 차고 전쟁터로 달려가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세를 취한 점이다. “왜 너희들은 전쟁터에 달려오지 않느냐”고 묻는 듯한 표정으로 뒤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의 물음에 독자들은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림 5_ 고바야시의 분신 요시린. 표지.

그림 6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여기서도 고바야시의 분신인 요시린은 군인들이 울고 있는 장면, 분노하는 장면, 총을 들고 앞으로 진격하는 장면, 큰 소리로 격려하는 장면 등의 한가운데에서 있다. 고바야시는 이런 실제적인 전쟁 묘사를 통해서 전쟁의 긴장감을 살리고 있다. 또한 고바야시가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 주면서, 조부들의 전쟁의 정당함을 간접적으로 독자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6_ 요시린 분신. 272쪽.

고바야시의 분신 캐릭터의 등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요시린은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권위와 힘을 가지고 풍자

되지 않는 안전한 위치에 원천적으로 서 있다는 것이다. 즉 고바야시의 만화는 말하는 이의 주장에 대해서 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독특한 수용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방적 수용구조는 만화의 위력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여론을 움직여서 어떤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셋째, 만화의 전달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만화는 글과 그림이 공존하는 매체로, 다른 매체가 갖지 못한 우수한 전달력을 가지고 있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그림을 통해서 의미를 이해하듯이, 글과 그림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가면서 독자에게 최대의 전달 효과를 볼 수 있게 만든 매체가 바로 만화이다. 만화는 그림을 통해서 현실 같은 이미지를 독자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희미한 상상 속 밖의 사실을 그림이라고 하는 가상의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매체이다. 이런 만화 매체의 전달력을 최대한 잘 이용한 만화가가 바로 고바야시 요시노리이다. 고바야시에게 있어 만화는 단순히 만화가 아니라 보수 논리의 선전장이자 미래의 우군을 확보하는 장소이다. 전쟁을 체험하지 않은 세

대에게는 고상한 사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전쟁을 하는 것보다 만화나 영화, 교육, 놀이 등을 통한 단순한 세계관의 주입과 순화가 사람들을 바꾸어놓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바야시의 만화 전략이 얼마나 교묘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고바야시가 만화의 전달력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림 7을 보도록 하자.

그림 7에서는 신문 기사 사진의 내용을 이용했다. 사진의 내용은 한 소녀가 죽은



그림 7_ 소녀 데생, 140쪽.



그림 8_ 마이니치 기사 인용, 26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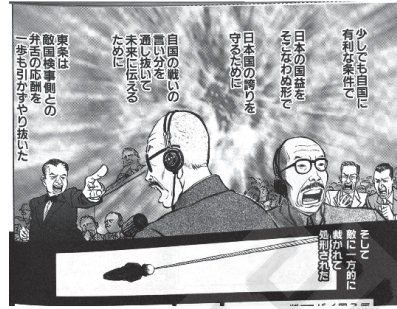


그림 9_ 도조 히데키, 308쪽.

사람의 두개골을 앞에다 두고 테생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소녀의 잔인함에 놀랄 것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의 두개골을 보면서 손으로 턱을 괴고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테생을 할 수 있냐고 느낄 것이다. 독자들의 이런 반감을 고바야시는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고바야시는 친절하게 그림 옆에 설명을 덧붙인다. 차별주의자라고 적고, 이 사진은 미국 『라이프』지에 실린 사진으로 미군 병사가 기념품으로 본국에 보낸 두개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사진을 본 일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고바야시는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자료만 선택해서 자신의 주장의 신뢰도와 합리성을 높였다.

그림 8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군 전원이 옥쇄했다는 소식을 당시 보도된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의 기사를 인용해 전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그림 9에서는 고바야시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역사적 재현'을 시도하고 있다. 그림 9를 보면 도조 히데키는 국익과 자긍심을 위해 죽어간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그것도 적국의 검사와의 재판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당당함이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긴 밧줄에 목이 매 달려 처형당하는 장면과 대조시키면서 그의 억울한 죽음을 독자에게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고바야시는 '역사적 사실'을 그만의 '역사적 재현'



그림 10_ 의도된 죽음, 35쪽.

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입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고바야시는 전쟁터에서 죽은 조부들의 묘사에서도 만화의 전달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그림 10은 패전 후에 전쟁 책임 때문에 죽었던 일본인의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다. 일본인 1,068명 모두가 목에

뱃줄을 휘감은 채 죽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목은 앞으로 숙여지고 손발은 뒤로 묶인 채 하늘에 봉 떠서 죽은 모습이다. 이 모습을 본 독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는 자명하다. 전쟁에 참여한 우리 조부들이 억울하고 비참하게 미국에 의해서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고바야시가 노리는 점이 바로 이러한 선동일 것이다. 선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고바야시의 만화에 일본군에 의해 죽어간 '아시아 사람들의 묘사'나 '일본에 대한 아시아 사람들의 생각'은 단 한 쪽도 없기 때문이다. 즉 고바야시에게 있어 과거 전쟁은 일방적이고 상대가 없는 전쟁이다. 2,000만 명이 넘는 아시아의 사망자와 일본에 대항한 독립운동 인물이 그려져 있지 않은 것도 다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 대신에 고바야시는 미국의 대공습으로 60만 명, 원폭으로 30만 명이 사망했다는 것만 강조한다.

고바야시 만화의 또 다른 특징은 문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대개 만화라고 하면 그림이 위주이고 문자가 그림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고바야시의 만화에서는 문자가 그림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만화 컷을 통해서 살펴보자.

210 근현대 한일관계의 제 문제

고바야시가 가장 많이 사용한 글씨체는 고딕체이다. 적을 공격하거나 용어의 정의를 할 때, 특히 자기의 주장을 마지막에 정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글씨체이다. 고딕체 자체는 각이 져 있어 차갑고 딱딱한 느낌도 들지만 간결해서 시선을 끌기 때문에 특별한 주장이나 용어 정의에 많이 사용한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전평화를 비판하는 장면에서도 굵은 고딕체를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림 11 반전평화 고딕체, 24쪽.

고바야시 만화에서 특징적인 글씨체 중에는 모필체와 스모체가 있다.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 전쟁을 합리화하고 미화할 때, 전쟁 당시 어려움을 극복한 내용을 언급할 때는 부드러운 모필체를 사용했다. 붓으로 한 자 한 자 적은 글씨는 독자들로 하여금 '따뜻함'을 느끼게 할 것이다. 조부들이 참가한 전쟁,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따뜻함'을 부가하는 것이다. 또한 자주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분노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때 스모체를 이용했다.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씨 높이가 낮으면서 선이 굵고 한 번에 쓴 것



그림 12 모필체, 46쪽.



그림 13_ 스모체, 20쪽.

같은 글씨체는 스모 경기장에서나 볼 수 있는 글씨체이다. 이는 자신이 결의한 의지가 무겁고, 중요하다는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고바야시는 대문자, 중문자, 소문자, 감탄사와 의문사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만화 매체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바야시에게 있어서 문자는 단순히 그림을 보충하는 수단이 아니라, 문자 자체에 임팩트를 주어 만화적 의미에서 문자가 시각

에 호소하는 형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단정적인 결론 도출이다. 고바야시의 만화 제목에 고마니즘(ゴーマニズム)의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만화 속



그림 14_ 공과 개, 96쪽.

의 각 장 결론마다 “거만 한번 떨어 보겠습니다. 괜찮습니까?(ゴーマンかましてよかですか)”로 시작해서 결론은 항상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으로 맺고 있는 데서 따온 말이다. 이 부분이 바로 독자들을 사로잡는 이유이다. 정확한 해답을 구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현실 속에서 명확한 해답과 결론을 제시하는 고바야시의 만화는 분명 독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 수 있다. 그림 14를

살펴보자.

그림 14도 역시 “거만 한번 떨어 보겠 습니다”로 시작한다. 그리고 결론은 ‘일본 의 개인주의자는 단순히 에고이스트다’라 고 맺고 있다. 그림 15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공을 위해서 오히려 개를 버려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바야시 만화의 각 장의 결론은 ‘A는 B이다’라는 논리와 ‘A 를 위해서는 B를 해야 한다’라는 단순논



그림 15_ 에고이스트, 55쪽.

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단순논리는 독자들을 쉽게 이해시켜 자기 가 원하는 세계로 이끌어올 수 있지만, 고바야시의 논리의 함정에 빠져든 사 람이 무비판적인 자세가 될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 이제 고바야시는 자기의 만화 속에서만 만화 전략으로 거만을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와 국민을 대상으로 통 크게 거만을 떨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고바야시와 그의 작품을 단순히 만화가와 만화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IV. 맺음말 – 전망과 과제

만화는 원래 권위와 힘이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발전해온 문화이다. 문자 를 읽을 수 없는 서민에게 정치와 사회 문제를 쉽게 전달하고, 그 허위와 왜곡 을 비판하는 ‘약자를 위한 문화’였다. 만화가 이동용으로 그려지게 된 이유도 ‘약자를 위한 문화’라는 관점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고바야 시의 만화의 경우는 다르다. ‘약자를 위한 문화’도 아닐 뿐더러 허위와 왜곡을

비판하는 ‘사회적 비판 문화’도 아니다. 우월적이고 일방적인 위치를 이용해 자기의 의견을 독자들에게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문화 권력자’의 문화일 뿐이다. 이는 필자가 본문에서 『전쟁론』을 통해서 그가 추구하는 최종 신화와 만화 전략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다.

그러면 이 글에서 분석한 고바야시 만화 연구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글에서 천착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이면서 앞으로 고바야시 만화 연구의 과제에 해당될 것이다.

첫째, 고바야시가 주장하는 ‘공’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고바야시가 만화 『전쟁론』에서 공은 나라, 국토, 가족, 천황이라고 지적하였지만 이 개념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언뜻 공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 같지만, 고바야시가 공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독자들에게 바라는 기대효과를 고려해본다면 정치·사상적인 문제로 확대 전개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고바야시는 지엽적으로 과거 전쟁론과 전후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숨은 의도는 일본 전체의 사회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바야시의 담론과 그의 사회실천을 통해 유추해보았을 때, 그 사회변화는 당연히 ‘국가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수우익적인 세계일 것이다. 이 점에 대한 연구가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보수논리 주체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보수논리가 확대되면서 1980년대 정치인들이 주로 보수우익화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활동했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고바야시와 같은 문화인, 지식인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만드는 모임’이 될 것이다. 이전 시대의 정치가와는 달리 만화가,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감으로써 그들의 생각과 입장을 국민들을 상대로 은연중에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 이전 시대의 정치인들이 망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서까지 주장했던 보수논리가 이제는 친근한 인기 만화가, 존경받는 대학교수를 통해 국민들에게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연대와 보수 결집을 통해서 더욱 활발하게 국민들을 설득시켜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정점에 선 것이 '만드는 모임'의 활동이고 고바야시 만화의 선전 활동인 것이다. 앞으로 고바야시나 '만드는 모임'과 유사한 인물과 모임이 더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수논리의 확대 재생산으로 정치인에서 문화인과 지식인으로 이어지는 그다음이 무엇이나는 것이다. 이는 고바야시의 주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고바야시는 그의 만화에서 내 만화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읽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고, 실제 고바야시 만화를 읽고 독자들이 보내온 엽서를 통한 통계에서도 독자들 중 젊은 세대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²⁰⁾ 만화가 젊은 세대의 문화이고 만화에 의한 정보 이미지가 어느 측면에서는 문자를 읽는 것보다 머릿속에 훨씬 더 인상적으로 오래 남을 수도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본다면 이 통계는 시사적이다. 젊은 세대를 향한 보수논리의 확대 재생산, 젊은 세대에게 친숙한 만화 문화, 어느 것 할 것 없이 전략적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이용하는 문화인과 지식인, 그리고 이들 세력이 결집과 연대를 통해서 교묘하고 은밀하게 활동한다는 사실이다. 사회적 환경변화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문화적 헤게모니를 쥐려고 하는 이들 세력과 젊은 세대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마지막 과제에 해당될 것이다.

20) 아직까지 고바야시 『전쟁론』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대 연구는 없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전쟁론』을 읽고 고바야시에게 보내온 엽서 집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10대 483통, 20대 1128통, 30대 1076통, 40대 576통, 50대 336통, 60대 320통, 70대 311통, 80대 45통이다. 이 중 10대·20대의 젊은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51%에 해당한다. 大日方純夫 外(1999), 『君たちは戦争でしぬるか小林よしのり『戦争論』批判』, 大月書店, 12쪽.

• 참고문헌

- 강기철(2003), 「일본 만화의 사회적 평가에 관한 연구」, 『일어교육』 23.
- 강기철(2004), 「고바야시 요시노리 만화에 나타난 사회적 가치 변화 요소에 관한 연구」, 『일어교육』 28.
- 강기철(2008), 「문화 권력으로서의 고바야시 요시노리 만화 연구-위안부 논쟁을 중심으로」, 『일어교육』 46.
- 김기국(2002), 「기호학을 통한 사회 현상 연구-대중매체 보도의 기호학적 분석」, 『불어불문학연구』 50.
- 롤랑 바르트 저, 이화여대 기호학연구소 역(2002), 『현대의 신화』, 동문선.
- 정재철 편(1998), 「푸코의 권력과 문화」, 『문화연구이론』, 한나래.
- 존 스토리 저, 박모 역(1994),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현실문화연구.
- 小林よしのり(1998), 『新ゴーマニズム宣言Special 戦争論』, 幻冬舎.
- 小林よしのり(2000), 『「個と公」論新ゴーマニズム宣言special』, 幻冬舎.
- 小林よしのり・西部邁(2002), 『反米という作法』, 小學館.
- 吳智英(1995), 『ゴーマニズムとは何か! 小林よしのり論序説』, 出帆新社.
- 宮原浩二郎 編(2001), 『マンガ社會學』, 世界思想社.
- 宮台眞司 外(1999), 『戦争論妄想論』, 教育史料出版會.
- 大日方純夫 外(1999), 『君たちは戦争でしぬるか小林よしのり『戦争論』批判』, 大月書店.
- 小林よしのり・田原總一郎(1999), 『戦争論争戦-小林よしのり VS 田原總一郎』, 幻冬舎.
-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의 홈페이지 <http://www.tsukurukai.com>

일본의 언론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관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의
사설 내용분석(1965~2007)을 중심으로

前 한국외국어대학교 조규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춘식, 광운대학교 강태웅,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오일환

- I.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 II. 연구문제
- III. 연구방법
- IV. 분석 결과
- V. 결론



일본의 언론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관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의
사설 내용분석(1965~2007)을 중심으로

前 한국외국어대학교 조규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춘식, 광운대학교 강태웅,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오일환

I.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이 연구는 일반대중의 역사인식 변화에 명확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역사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가 아닌 신문·잡지, 텔레비전, 상업출판과 같은 언론, 혹은 저널리스트들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여(Barne, 1993), 일본의 언론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965년부터 2007년까지 약 43년간을 대상으로 일본의 주요 신문의 사설에 나타난 한국의 근현대사 관련내용이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대상 기간을 이 시기로 한정된 것은 한일관계가 한국전쟁 이후인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을 기준으로 크게 구별되기 때문이다. 즉, 전후의 한일관계는 1965년 이전까지는 청구권 문제를 비롯한 식민지 지배에 관한 역사적 쟁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반면, 1965년 이후의 한일관계는 정치·외교적 사안 이외에도 경제·사회·문화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 및 갈등이라는 다양한 쟁점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한국사 인식에는 근본적으로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일본과의 유사성 내지는 유연성(유연性)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두 나라 사이의 이질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첫 번째 입장을 ‘교류, 독립’을 강조하는 시각이라고 하면, 두 번째 입장은 ‘단절, 종속’을 강조하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반된 한국사 인식 가운데 각각의 일본 언론들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는 학문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주제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일본 언론의 특징은 사상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언론과 차별적이다(오진환, 1991). 일본 언론의 큰 특징은 불편부당(不偏不黨)주의와 중용(中庸)사상, 그리고 순응성과 적용성을 갖는다. 즉 일본 신문의 대부분은 공평무사(公平無私)와 불편부당(non-partial)을 지향하면서 중립주의를 표명한다는 것이다. 일본 신문의 편집방침에 불편부당 사상이 정식으로 명시된 것은 메이지(明治)시대 말기, 즉 188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이며, 『아사히신문』이 1918년 명문화한 이후에 일반화되었다. 당시 신문의 정부 비판과 그에 따른 발행금지처분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정치색을 배제한다는 것이 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보장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후 불편부당이나 중립공정(中立公正)의 태도는 일본 저널리즘의 일반적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일본 언론의 불편부당과 공정중립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언론의 공정성이나 중립성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본 신문이 지향하는 중립이라는 개념은 ‘독립’보다는 수동적·소극적인 것을 의미하며, 특정한 편에 기울지 않는 것에만 주력하는 ‘불개입’ 또는 ‘방관자적’ 태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신문의 사설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평보다는 ‘의견 제시’나 ‘견해’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거나, ‘주장’보

다는 ‘해설’에 가까운 문체를 구사한다. 이는 곧 “일본인의 대다수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민감하고, 상대방의 본의를 살피는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회심리학자 미나미 히로시[南博, 1994]의 분석처럼 일본의 신문도 일반적 독자 또는 비평 대상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신문사 자신만의 입장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것이다(原壽雄, 1997).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일본 신문의 특징은 기자클럽으로 알려진 기자단의 운영과, 해외 보도 측면 특히 한국 등 특정국에 주재하는 특파원의 현지 취재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자단 운영의 경우 각 언론사 기자들이 서로 협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특종 기사나 독특한 시각의 비판 또는 논조가 나오기 힘든 구조를 안고 있다. 해외 보도의 경우, 한국에 주재하는 특파원이 가장 많은 국가가 일본인데, 대부분의 한국 관련 기사를 이들 서울 주재 특파원이 쓰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나 언론사의 경우 해당국 특파원 외에 구미의 대형 통신사나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를 수집하고 참고하여 다양한 시각과 정보에 바탕한 기사를 작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 일본 신문사들은 서울 주재 일본 특파원의 취재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과거 1970~1980년 무렵 일본 언론의 한국 보도는 남북 대결, 개발 독재 또는 민주화 이행 과정에 있는 한국의 특성을 배제한 채 일본적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만 일방적으로 비판하여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일본의 언론은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성향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연 한국사의 인식에서도 이러한 정치적 성향이 발현되는가는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자는 판단하고 있다. 즉 일본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진보’적인 언론이라 할지라도, ‘일본’의 언론이라는 총체적인 시각하에서는 그들이 가지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한국과 일본의 바람직한 관계의 방향

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월드컵 공동개최와 다양한 문화교류의 증대로 인해 상호이해가 심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2006년에 등장한 일본 아베 정권의 한반도 관련 역사인식은 과거의 갈등적인 관계로 다시 회귀하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언론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관한 논의를 위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II. 연구문제

이 연구는 일본의 주요 인쇄매체 중 신문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신문의 발행부수와 영향력,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차원을 고려하여 이들 신문의 사설에 보도된 한국의 근현대사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Krippendorff, 1980).

일본 NHK의 방송문화연구소는 한·중·일 3국의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이미지 형성 및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데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사한 바 있다. 분석 결과 3개국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상파 방송이고, 그다음이 신문이었다. 일본인이 한국에 관한 정보를 얻는 미디어 현황은 표 1과 같다.

이 연구는 일본의 신문에 나타난 한국의 근현대사 관련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주제의 기사가 어떤 방향으로 취급되었으며, 뉴스 및 기타 내용에 반영된 전반적인 정서와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신문의 주제와 논조가 시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

〈표 1〉 일본인이 한국에 관한 정보를 얻는 미디어

(단위 : %)

매체	비율(%)
지상파방송	70.8
신문	13.3
이는 사람으로부터의 이야기	5.2
잡지·주간지	3.8
위성방송·CATV	2.3

* 출처 : 原由美子·鹽田雄大(2000), 「相手國イメージとメヂイアー日本・韓國・中國世論調査から」, 『放送研究と調査』 586(3), 6쪽.

한 배경하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일본의 신문에 나타난 한국의 근현대사 관련 내용의 주제 및 논조는 어떠한가? 그리고 이러한 주제 및 논조는 각 시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두 번째로, 신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한국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주제와 논조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동일한 주제를 다룬다 하더라도 신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기사의 논조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삼으려는 신문 가운데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진보, 그리고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과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은 보수 및 우익 신문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보도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일본의 신문에 나타난 한국의 근현대사 관련 내용의 주제 및 논조는 신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세 번째로,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 심각한 시각차이를 보였던 몇 개의 핵심 주제에 대해 일본의 언론이 어떠한 보도태도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한일관계에 있어서 양국 간에 극명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한일 어업협정 문제, 독도 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교과서 문제, 그리고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참배 문제 등 모두 5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 대한 논조가 신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한·일 간의 역사 인식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야기해왔던 주제로 평가되는 ‘한일 어업협정 문제’, ‘독도 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신사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신문의 보도태도는 어떠하며, 분석대상지 사이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과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1965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의 근현대사에 관해 언급한 일본 신문의 사설을 모집단으로 설정했다. 표집단위는 일자별 신문이며, 분석단위는 한국 근현대사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각각의 사설이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기준에 어긋나는 내용은 표본에서 제외하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실시했다. 의도적 표집은 까다로운 전제를 충족시켜야 하는 단점은 있지만,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표집이 쉽고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Wimmer & Domminick, 1994).

분석 대상 신문은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의 세 개이다. 세 신문을 분석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 모두 전국적 판매망을 갖춘 신문이고 대규모의 발행부수를 갖추어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신문별로 정치적 성향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표 2〉 일본 신문의 발행부수

(단위 : 부수)

신문	전국 조간 평균 판매부수(2007년 1~6월)
아사히신문	8,066,707부
요미우리신문	10,032,441부
산케이신문	2,200,609부

* 출처 : 日本ABC協會(2007. 8. 10), 『新聞發行人レポート』.

구체적으로, 일본 내 판매부수와 영향력 측면에서 상위에 위치한 이들 세 신문 가운데, 아사히신문이 한일관계에서 진보적 성향을 대표하는 신문이며, 산케이신문은 그 대척점에 서 있는 대표적인 우익 신문으로 간주된다. 또한 진보와 보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요미우리신문은 전통적 보수우익의 관점을 대표하는 신문이지만, 최근 산케이신문이 보수우익 진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 상대적으로 전통적 보수 색채가 희박해지는 경향을 띠고 있고 또한 최근 들어 한국에 대한 인식에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요미우리신문은 특집기사와 사설·논평을 통해 동경재판 및 A급 전범문제를 일본제국주의의 실패라는 관점에서 비중 있게 다룬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요미우리신문이 한국 및 한국사에 대해 어떠한 태도변화를 보였는가를 관찰하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2. 분석유목

일본 신문의 사설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가 채택한 분석유목은 표 3과 같다.

〈표 3〉 분석유목

분석유목	상세 분류
기사의 구성	개인 중심적/ 이슈 중심적
기사의 표현형식	사실을 나열하는 형식/ 과장되어 선정적인 인상을 주는 형식
기사의 논조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한국 국내 정치	일반적인 한국 국내 정치와 관련된 이슈/ 개헌문제/ 대통령 · 정부 · 정치인 · 정당의 활동/ 선거/ 남북문제/ 한국 민주화운동
경제	한국 국내 경제/ 한 · 일 경제협력 문제/ 한 · 일 무역 문제/ 일 · 북한 무역 문제
사회	범죄 · 경찰/ 사고 · 재난 · 재해/ 인간홍미 · 가십 · 생활/ 환경 · 공해/ 제일 한국인 문제/ 재한 일본인 문제
제일 한국인 문제	참정권 · 선거권 문제/ 교육 문제/ 법적지위 문제/ 보상권 문제/ 총련계 학생에 대한 이지메
문화 · 스포츠 · 교육 · 종교	문화 교류/ 공연 및 예술 관련 행사/ 미디어 관련 뉴스/ 연예인 관련 뉴스/ 한류 열풍/ 경기 개최 · 시설 · 관람 문화 등 스포츠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축구/ 야구/ 교육제도 · 교육현상/ 종교
국제관계	국제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한국 · 미국과의 관계/ 한국과 타국 간의 관계/ 북한 · 일본과의 관계/ 북한 · 미국과의 관계/ 북한과 타국 간의 관계
한일관계	한일 교류/ 민간 교류/ 일본의 반성, 사죄 요구/ 한국 관련 일본 정치인 발언/ 한국의 일본관/ 한일어업협정 문제/ 독도 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문제
북일관계	북일관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일본인 납치 문제/ 북한 핵 문제/ 사건 · 사고/ 북일국교정상화회담(1990년 이후)/ 재일조선인복송 문제/ 정상회담 · 정상 혹은 각료 등의 상대국 방문/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역할
한일 어업협정 문제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국제해양법조약 가입/ 신중한 처리/ 영유권과 어업권 상충
독도 문제	독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독도의 영토문제 관련 회담/ 독도 관련 발언/ 한국의 접안시설 건설 계획 유감/ 시마네현 독도의 날 제정

종근위안부 문제	일본의 강제성 인정/ 법적 차원의 내용/ 국가 보상·기금 마련/ 국제사회, NGO 등의 여론 의식 필요
교과서 문제	역사교과서 검정 문제/ 일본 정부 개입 배제/ 일본 우익단체 활동/ 한국의 검정 교과서 재수정 요구/ 일본의 역사인식/ 한국과 일본의 공동연구
야스쿠니신사 문제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일반적인 이슈/ 과거사에 대한 반성/ A급 전범 합사 문제/ 야스쿠니 참배 중단/ 제3의 추도시설 건립
식민지 시대	식민지 시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식민통치 배상, 전후보상 문제에 관한 내용

3. 코딩절차와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의 코딩은 숙련된 언론학 전공 대학원생 2명과 일본지역학 전공 대학원생 2명 등 총 4명이 담당했다. 연구자가 대학원생 코더 4명에게 내용분석 변인의 정의와 구성개념 그리고 구체적인 코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기사 100건을 제공하여 각자 개별 코딩을 실시한 후 코딩의 일치도 여부를 확인했다. 1차 코딩결과에서 불일치를 보인 진술문들에 대해서는 토의를 거쳐 개념을 숙지하고 코딩 교육을 다시 실시하였으며, 다른 기사 100건을 무작위로 표집한 뒤 2차 코딩을 실시하여 코딩의 일치도를 측정했다. 코더 간 신뢰도(Cohen, 1960)를 측정한 결과 두 차례의 내용분석 모두 90%의 높은 신뢰도를 얻었다. 2차 코딩이 끝난 뒤 각 코더들로 하여금 처음 코딩을 실시했던 기사의 5%를 다시 코딩하도록 하여 코더 자신의 내적 일치도를 높이는 작업을 병행했다.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적 기법으로는 먼저 빈도분석, 그리고 유목의 관찰빈도와 기대빈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스퀘어(χ^2) 검증을 사용하였다. 통계 검증의 유의 수준은 $p < .05$ 로 설정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처리는 윈도우용 SPSS 프로그램(버전 14.0)을 사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1. 개관

일본 매스미디어에 나타난 한국의 근현대사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을 선정하여 사설에서 언급된 한국 관련 내용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세 개 신문의 한국 근현대사 관련 사설은 모두 1,289건이었다.

1) 연도별 기사의 게재건수

먼저, 분석대상 기간인 1965년부터 2007년까지를 대상으로 일본 사설에서 보도된 한국 관련 기사의 게재건수를 분석하였다(표 4 참조). 한국의 근현대사 관련 내용을 언급한 사설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05년이었으며 총 105건(8.1%)이었다. 대부분의 사설이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한 핵 문제 관련 6자회담의 전개, 그리고 중국의 반일데모 사건 이후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다루었다. 다음으로 2006년 100건(7.8%), 2001년 59건(4.6%), 1990년 56건(4.3%), 1975년·1987년 48건(3.7%), 2004년 44건(3.4%), 1965년·1998년 42건(3.3%)의 순이었다. 신문별로 살펴보면,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가장 많이 보도한 신문은 아사히신문으로 467건이었다. 요미우리신문은 425건, 그리고 산케이신문¹⁾은 397건이었다. 연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아사히신문(36건, 7.7%)과 요미우리신문(40건, 9.4%)은 2006년에 기사건수가

1) 『산케이신문』의 경우 1965년부터 1970년까지의 기사를 수집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기사건수가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이러한 이유도 있었음을 밝힌다.

〈표 4〉 게재년별 기사 건수

[단위 : 건수(%)]

구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합계
1965년	21(4.5)	21(4.9)	-	42(3.3)
1966년	5(1.1)	7(1.6)	-	12(0.9)
1967년	3(0.6)	5(1.2)	-	8(0.6)
1968년	9(1.9)	1(0.2)	-	10(0.8)
1969년	2(0.4)	-	-	2(0.2)
1970년	4(0.9)	1(0.2)	-	5(0.4)
1971년	7(1.5)	-	1(0.3)	8(0.6)
1972년	2(0.4)	3(0.7)	11(2.8)	16(1.2)
1973년	-	6(1.4)	17(4.3)	23(1.8)
1974년	19(4.1)	-	14(3.5)	33(2.6)
1975년	20(4.3)	12(2.8)	16(4)	48(3.7)
1976년	7(1.5)	4(0.9)	-	11(0.9)
1977년	12(2.6)	4(0.9)	10(2.5)	26(2)
1978년	13(2.8)	1(0.2)	5(1.3)	19(1.5)
1979년	15(3.2)	-	7(1.8)	22(1.7)
1980년	13(2.8)	4(0.9)	5(1.3)	22(1.7)
1981년	6(1.3)	6(1.4)	7(1.8)	19(1.5)
1982년	10(2.1)	8(1.9)	4(1)	22(1.7)
1983년	3(0.6)	13(3.1)	4(1)	20(1.6)
1984년	-	17(4)	8(2)	25(1.9)
1985년	9(1.9)	9(2.1)	5(1.3)	23(1.8)
1986년	14(3)	10(2.4)	9(2.3)	33(1.8)
1987년	10(2.1)	20(4.7)	18(4.5)	48(3.7)
1988년	12(2.6)	9(2.1)	8(2)	29(2.2)
1989년	8(1.7)	8(1.9)	4(1)	20(1.6)
1990년	21(4.5)	12(2.8)	23(5.8)	56(4.3)
1991년	10(2.1)	7(1.6)	12(3)	29(2.2)
1992년	15(3.2)	14(3.3)	8(2)	37(2.9)
1993년	8(1.7)	6(1.4)	7(1.8)	21(1.6)
1994년	15(3.2)	9(2.1)	3(0.8)	27(2.1)
1995년	14(3)	12(2.8)	10(2.5)	36(2.8)

1996년	15(3.2)	12(2.8)	6(1.5)	33(2.6)
1997년	11(2.4)	6(1.4)	7(1.8)	24(1.9)
1998년	11(2.4)	15(3.5)	16(4)	42(3.3)
1999년	6(1.3)	9(2.1)	4(1)	19(1.5)
2000년	4(0.9)	10(2.4)	4(1)	18(1.4)
2001년	13(2.8)	19(4.5)	27(6.8)	59(4.6)
2002년	6(1.3)	14(3.3)	21(5.3)	41(3.2)
2003년	7(1.5)	9(2.1)	9(2.3)	25(1.9)
2004년	9(1.9)	16(3.8)	19(4.8)	44(3.4)
2005년	33(7.1)	38(8.9)	34(8.6)	105(8.1)
2006년	36(7.7)	40(9.4)	24(6)	100(7.8)
2007년	9(1.9)	8(1.9)	10(2.5)	27(2.1)
합계	467(100)	425(100)	397(100)	1,289(100)

가장 많았으며, 산케이신문은 2005년에 34건(8.6%)으로 가장 많았다.

1965년부터 2007년까지 기사의 게재빈도 수는 세 신문 사이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눈에 띄는 것은 2001년의 경우 일본 신문 사설에 나타난 한국 관련 기사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는 2001년 당시 고이즈미 총리대신이 야스쿠니신사를 8월 15일에 참배하려고 했던 것이 한·중·일 삼국 간에 외교문제로 비화했던 것과 더불어 우익단체가 만든 교과서의 학교채택과 관련한 문제가 맞물려 언론의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양국 간에 첨예한 대립이 발생했을 때 한국에 대한 사설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2년과 2003년에는 한국에 대한 사설이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부터 한국에 대한 언급이 급증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월드컵경기를 전후하여 한국의 4강 진출, 열광적인 응원문화 등이 주목을 받은데다, 드라마 「겨울소나타[冬ソナ]」와 「배웅준[ヨソ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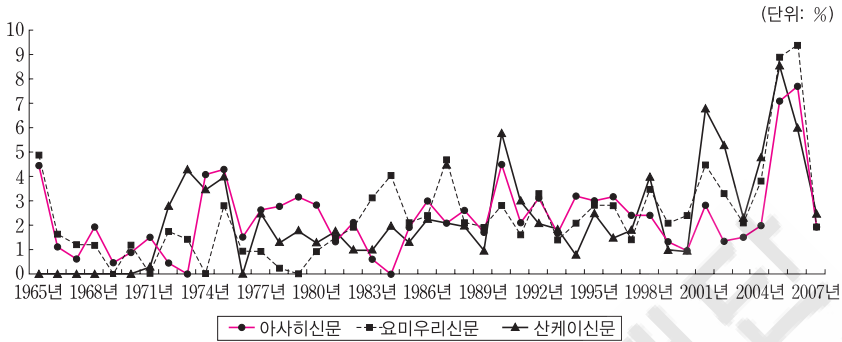


그림 3_ 연도별 기사 게재건수

신드롬으로 대표되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이 일본인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게 된 시점과 맞물려 한국 관련 사설 건수가 증가했다.

또한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정권 시기에 북한의 일본인납치 사건,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부터 한국에 대한 기사가 급증했다고 볼 수 있겠다. 연도별로 기사의 게재 추이를 살펴보면, 신문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1977~1980년의 경우 아사히신문의 보도건수가, 그리고 1983~1986년의 경우에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건수가 다른 신문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한국 관련 사설 건수만으로 한일 간의 사이가 우호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는 없다.

2) 기사의 중심

뉴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수많은 사건 중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하여 가공하고 편집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의 프레임을 제시한다. 즉, 뉴스 프레임은 수용자에게 특정한 사건과 이슈와 관련하여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의 틀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엔거(Iyengar, 1991)는 뉴스가 수용자들이 정치적 이슈를 평

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에서 뉴스프레임이 개인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심층적인 맥락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기사(주제적 프레임, thematic frame)는 책임소재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귀인시키지만, 사건이나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기사(일화적 프레임, episodic frame)는 사회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귀인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신문에 나타난 한국 관련 사설 기사에서 주제적 프레임과 일화적 프레임 가운데 어떤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발견되는지를 분석했다(표 5 참조).

전체 1,289건의 기사에 나타난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일화적 프레임(287건, 22.3%)보다는 주제적 프레임(1,002건, 77.7%)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문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아사히신문(14.6% 대 85.4%)과 요미우리신문(2.8% 대 97.2%)의 경우에는 일화적 프레임보다 주제적 프레임이 훨씬 많이 나타났다지만, 산케이신문의 경우에는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의 비율(52.1% 대 47.9%)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일본 신문은 사건이나 개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슈를 사회 전체적이고 심층적인 맥락에서 다루는 기사가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분석대상 기사 유형이 스트레이트기사가 아니라 사설이기 때문에 개인중심 보도보다 이슈중심 보도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사설은 스트레이트기사보다 논설위원의 분석적 시각이 반영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표 5〉 기사의 중심

[단위 : 건수(%)]

구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합계
개인 중심 보도	68(14.6)	12(2.8)	207(52.1)	287(22.3)
이슈 중심 보도	399(85.4)	413(97.2)	190(47.9)	1002(77.7)
합계	467(100)	425(100)	397(100)	1289(100)

3) 기사의 표현형식

일본 신문의 사설 기사가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과장된 형식으로 작성되어 다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는지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기사의 표현형식을 살펴보았다(표 6 참조). 사실을 그대로 나열하는 형식의 기사가 59.7%(769건)였으며,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형식의 기사는 36.8%(474건)였다. 신문별로 살펴보면, 요미우리신문(97.4% 대 2.6%)과 산케이신문(66.8% 대 21.7%)은 사실을 나열하는 형식의 기사가 과장된 형식의 기사보다 훨씬 더 많았지만, 아사히신문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수용자에게 강하고 자극적인 인상을 주는 형식의 기사(377건, 80.7%)가 사실을 나열한 형식의 기사(90건, 19.3%)보다 훨씬 많았다. 요약하면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할 때 아사히신문이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보다 자극적인 표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기사의 표현형식

[단위 : 건수(%)]

구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합계
사실 나열	90(19.3)	414(97.4)	265(66.8)	769(59.7)
과장	377(80.7)	11(2.6)	86(21.7)	474(36.8)
기타	-	-	46(11.6)	46(3.6)
합계	467(100)	425(100)	397(100)	1289(100)

2. 논조

일본 신문 사설에 나타난 한국 관련 내용에 관한 신문 기사의 논조는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신문 사설 한 건의 전체적인 기사 내용의 논조가 어떠

한지 분석했다. 다음으로 신문 사설 한 건에서 한국 정부(혹은 정부 측)에 대한 논조가 어떠한지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문 기사의 논조

신문 기사의 내용을 읽고 전체 내용의 지배적인 논조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결과, 중립적인 논조를 보여주는 기사가 612건(4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가 437건(33.9%), 긍정적인 논조의 기사가 240건(18.6%)이었다(표 7 참조). 긍정적인 논조를 띤 기사가 가장 많은 신문은 아사히신문(120건, 25.7%)이었으며,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가 가장 많은 신문은 산케이신문(158건, 39.8%)이었다.

〈표 7〉 기사의 논조

[단위 : 건수(%)]

구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합계
긍정적	120(25.7)	82(19.3)	38(9.6)	240(18.6)
중립적	213(45.6)	198(46.6)	201(50.6)	612(47.5)
부정적	134(28.7)	145(34.1)	158(39.8)	437(33.9)
합계	467(100)	425(100)	397(100)	1289(100)

2) 한국에 대한 기사의 논조

전체 내용 중에서 한국 정부나 한국 정부 관계자 혹은 정치인, 정당 등 한국에 대한 기사의 논조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표 8 참조). 한국에 대한 기사 논조는 중립적인 기사(725건, 56.2%)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정적 논조의 사설은 26.4%였고 긍정적 논조의 사설은 17.4%로 가장 적었다. 신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논조의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세 신문 모두 중립적 논조의 기사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요미우리신문(274건, 64.5%)과 산케이신문(249건, 62.7%)은

비슷했지만 아사히신문(202건, 43.3%)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8] 한국에 대한 논조

[단위 : 건수(%)]

구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합계
긍정적	130(27.8)	59(13.9)	35(8.8)	224(17.4)
중립적	202(43.3)	274(64.5)	249(62.7)	725(56.2)
부정적	135(28.9)	92(21.6)	113(28.5)	340(26.4)
합계	467(100)	425(100)	397(100)	1,289(100)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여러 매체 간의 시각이나 신문사의 태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과거의 지적을 확인해주고 있다. 과거 1970~1980년대 한국의 개발독재·민주화투쟁 시기의 경우, 일본의 한국 관련 언론보도는 매우 비판적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두드러졌다. 이도형(1980)은 당시 일본 언론의 보도의 특징을 “일본 언론의 한국에 대한 보도경향에서는 전통적 정론지인 시사신보(時事新報)에서부터 아사히신문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인 요소가 발견되는데, 이것들은 한결같이 시대를 초월한 강렬한 ‘한국 멸시관’을 반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저한 것은 한국의 체제와 일본 민중을 격리·이간시키는 논조이며, 이러한 논조는 또한 일본 정부의 대한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정리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 언론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보도행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하라 유미코(原由實子)의 조사에 따르면, 방송매체보다는 오히려 신문보도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며 우호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영진은 아사히신문의 경우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경향의 논조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이러

〈표 9〉 일본 언론의 한국에 대한 보도행태

구분	TV	신문	기타	전체	
이미지	전체 건수	800	146	130	1094
	민주적	11,6	16,4	10,8	12,0
	변영	15,0	22,6	15,4	15,8
	보수적	26,9	23,3	30,8	26,7
	전통적	41,4	39,0	40,0	40,2
	평화	4,3	6,2	6,2	4,8
	자유	6,8	13,0	10,0	7,9
	불공정	6,4	8,9	7,7	6,8
	폐쇄적	23,0	16,4	21,5	21,8
	어둡다	18,6	12,3	18,5	17,7
	우호	18,8	24,0	16,2	19,3
	청결	1,0	2,7	1,5	1,3

* 출처 : 原由美子·塩鹽田雄大(2000), 『相手國イメージとメディアアー日本・韓國・中國世論調査から』, 放送研究と調査, 586(3), 13쪽.

한 변화는 한국의 국제사회로의 진출과 북일관계의 악화, 소련과 북한 등 공산권 국가들의 몰락 등과 같은 국제관계의 급변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한국의 민주화 수준의 향상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아사히신문의 사설은 한국의 민주화 진전 자체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면서 노조분쟁, 학생운동, 언론자유 등의 변화상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왔다. 또한 북한에 대해 보여주었던 일방적 지지는 급격히 줄어들면서, 한국의 민주화와 남북관계 개선 자체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더욱더 뚜렷해졌다.

3) 신문사별 논조 차이의 실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분석에 사용한 세 신문의 논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실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령 2001년 7월 10일 세 신문

에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한 사실이 동시에 게재되었다.

먼저 요미우리신문 사실의 일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측의 지적으로 검정이 끝난 교과서에서 '명백한 잘못'이 두 군데 발견된 것은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 없다. 금후는 새롭게 조선사 전문가를 검정에 참여하게 하여 검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한층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같은 날의 산케이신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일본의 검정이 끝난 교과서에 대하여 한국정부로부터 35개 항목의 수정요구, 중국정부로부터 8항목의 수정요구가 있었다. 그 결과 문부과학성은 한국의 고대사에 관한 부분에서 발견된 2군데의 잘못에 대해서만, 교과서회사에 정정을 요구하고, 그 밖의 수정요구에 대하여는 '반드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것은 교과서 검정제도의 취지에서 보면, 당연한 조치이다. 중한 양국의 수정요구의 대부분은 역사해석에 관한 것으로, 말하자면 양국의 역사인식을 강요하는 것이다.

원래 양국의 수정요구는 일본의 주권에 대한 내정간섭이고,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었는가는 의문이다. 검정합격 후의 정정은 기본적으로 교과서회사에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산케이신문은 요미우리신문과 달리 한국과 중국의 교과서 수정 요구에 대해 반드시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거론하고 있고, 수정 요구 자체에 대해서도 '주권에 대한 내정간섭' 그리고 세금 낭비와 같은 부정적 표현을 사용했다.

그렇다면 같은 사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어떠한 논조를 보이고 있는가. 아사히신문의 사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린제국과의 우호관계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일한 사이에서는 98년

의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대중문화의 교류가 착실히 진행되어왔다. 교과서 문제가 그러한 협력과 교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크게 걱정되는 바이다. 문부과학성은 검정합격 후의 현단계에서는 명백한 사실의 잘못 등이 없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없는 규칙이라고 말했다. 물론 현재 검정제도 하에서는 수정에는 한계가 있다. 이미 교육위원회에서의 교과서 선정도 시작되었기에 이번 검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과 중국인들의 격렬한 반발은 충분히 이해된다.

문제는 먼저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에 대한 의문이다. 식민지배와 침략의 사실에 통렬한 반성의 뜻을 표한 전후 50년의 무라야마 수상은 담화, 젊은 세대의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확인시킨 일한공동성명과의 관계에서, 언행불일치로 보이고 있다. 근저에는 과거의 침략과 식민지화의 사실로부터 눈을 돌리려는 운동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그것을 용인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차차 일본사회에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신도 있는 것은 아닌가.

이처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과는 달리 한국과의 관계와 교류사를 더욱 강조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3. 기사의 주제

일본 신문 사설에 나타난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주제를 '한국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스포츠·교육·종교', '국제관계', '한일관계', '식민지 관련 문제' 등의 일곱 가지 대주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7개의 대주제를 소주제로 구분하여 다시 분석했다.

1) 대주제

일본 신문의 사설에서 한국과 관련된 내용의 주제를 ‘한국 국내 정치(대통령의 업무수행, 정부·정당·정치인 등의 활동, 선거, 한국의 정치적 이슈 등)’, ‘경제(경제협력, 무역 등)’, ‘사회(한국의 사건이나 사고, 재일한국인 문제, 재한일본인 문제 등)’, ‘문화·스포츠·교육·종교(문화교류, 공연이나 행사, 연예인 관련 내용 등)’, ‘국제관계(한일관계를 제외한 국가 간의 외교 관련 내용, 정상회담, 국제 관련 행사 등)’, ‘한일관계(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관한 내용)’, ‘식민지 관련 문제(식민지 시대의 보상과 관련된 내용)’의 일곱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했다(표 10 참조). 즉, 한 건의 기사에 위와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세부내용이 어떠한지를 확인했다.

‘한일관계’ 관련 기사가 658건으로 전체 1,289건 중 5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한국 국내 정치’가 485건(37.6%)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은 ‘국제관계’ 464건(36%), ‘사회’ 169건(13.1%), ‘경제’ 121건(9.4%), ‘문화·스포츠·교육·종교’ 97건(7.5%), ‘식민지 관련 문제’ 76건(5.9%)의 순이었다. ‘한국 국내 정치’는 산케이신문(187건, 47.1%)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지만, ‘경제’·‘사회’·‘문화·스포츠·교육·종교’·‘국제관계’·‘한일관계’·‘식민지 관련 문제’는 요미우리신문(73건, 17.2%·82건, 19.3%·45건, 10.6%·212건, 49.9%·245건, 57.6%·36건, 8.5%)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등장했다. 즉, 요미우리신문이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보다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에서 가장 빈번한 주제로 다루어진 것은 ‘한일관계’였다. 한국과 관련된 내용은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사회적·외교적 관계를 다룬 ‘한일관계’와 한국 국내의 정치현상이나 상황, 사건 등을 다룬 ‘한국 국내 정치’,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외교관계를 다룬 ‘국제관계’에 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대주제

[단위 : 건수(%)]

구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합계
한국 국내 정치	134(28.7)	164(38.6)	187(47.1)	485(37.6)
경제	19(4.1)	73(17.2)	29(7.3)	121(9.4)
사회	30(6.4)	82(19.3)	57(14.4)	169(13.1)
문화 · 스포츠 · 교육 · 종교	10(2.1)	45(10.6)	42(10.6)	97(7.5)
국제관계	82(17.6)	212(49.9)	170(42.8)	464(36)
한일관계	212(45.4)	245(57.6)	201(50.6)	658(51)
식민지 관련 문제	29(6.2)	36(8.5)	11(2.8)	76(5.9)
기타	14(3)	11(2.6)	2(0.5)	27(2.1)

일본의 신문이 한국의 국내 정치상황이나 남북관계 또는 안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은 선행 연구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송두빈(1981)은 1976년에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에 게재된 한일관계 기사를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각 신문의 한국 관련 기사건수는 아사히신문이 782건, 요미우리신문이 456건, 마이니치신문이 749건이었는데, 일본 언론의 주된 관심은 정부에 대한 반체제의 동향에 관한 기사나 안보 관련 기사에 집

〈표 11〉 한일관계 보도기사

(단위 : %)

구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
반체제의 동향과 그 관련	46.68	35.96	41.92
군사 및 안보	13.3	13.38	13.22
한미관계	12.40	14.25	12.95
정치 · 외교	11.64	8.77	9.61
사회 · 문화	7.16	10.53	8.68
한일관계	1.02	8.11	9.08
경제관계	3.58	5.92	4.27
남북관계	4.22	3.29	0.27

* 출처 : 송두빈 (1981), 「일본신문의 한국관 : 한국관계보도논평을 중심으로」, 『신문과 방송』 1월호, 73쪽.

240 근현대 한일관계의 제 문제

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1970년대와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공통적으로 한국의 국내 정치와 한일관계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최근 들어 사회·문화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한국 국내 정치

‘한국 국내 정치’를 ‘일반적인 내용(한국 국내 정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 ‘개헌 문제’, ‘대통령·정부·정치인 활동(대통령의 업무수행, 국회의원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 등)’, ‘선거(선거운동, 선거결과, 부정선거 등)’, ‘남북문제(한반도의 안보와 관련된 이슈, 국방, 통일, 한국전쟁 등)’, ‘한국 민주화 운동(학생운동, 광주사태 등)’의 소주제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표 12 참조).

한국 국내 정치 문제에는 개헌문제, 정부·정치가·정당 활동, 김종필 한국민주당의장 탈당 사건,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4호의 잔혹성 제기,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방침, 긴급조치1·4호 위반 정치범에 대한 특사발표, 긴급조치9호 발동, 긴급조치7호와 대학교휴교령 발표, 김대중 납치사건,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체제, 비상계엄령, 유신헌법 문제, 12·12와 광주사태, 신군부 등장, 1980년대 민주화운동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남북문제에는 국방·안보 문제, 한반도통일 문제, 한국전쟁 관련,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계럴라·간첩사건, 공동경비구역 내 사건들, 탈북자문제 등이 포함된다.

1960·1970년대에 한국 정치를 보도한 사설의 경우 박정희 군사독재체제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었다. 특히 일본과 연루된 김대중 납치사건, 재일 한국인 또는 일본인 관련 간첩사건, 문세광사건 등을 다룬 사설의 경우 한국의 독재정권이 일본의 주권 및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내면

서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1980년대 이후의 사설에서는 한국의 민주화투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신군부독재체제에 대해서는 과거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난보다는 다소 냉소적인 태도로 관망하는 듯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탈냉전 이후 한국에 민주적인 정부가 수립되자,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사설은 급격히 줄어든 반면,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과거청산, 그리고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대일관계의 변동 등에 대한 언급은 증가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정치변동 및 한일관계에 주도적인 여론을 형성하고자 문민정부 수립 이후의 역사바로세우기 문제,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권 탄생 이후의 한일 갈등, 386세대의 등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면을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²⁾

‘한국 국내 정치’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남북문제’이며 총 485건의 정치 관련 기사 중 242건(49.9%)을 차지했다. ‘대통령·정부·정치인 활동’에 관한 주제는 195건(40.2%)의 기사에서 다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결과는 일본 신문의 경우 한국의 국내 정치 문제와 관련된 주제 중에서도 한국과 북한의 관계, 대통령이나 정부, 정치인들의 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헌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룬 신문은 요미우리신문(17건, 10.4%)이었으며, ‘대통령·정부·정치인 활동’은 산케이신문(105건, 56.1%)이 다른 신문보다 훨씬 많이 다루었다. 한편, ‘대통령·정부·정치인 활동’에 관한 주제는 아사히신문(45건, 33.6%)과 산케이

2) 한국의 민주화정부 수립 이후의 같은 시기 동안, 아사히신문이 한국의 대일관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산케이신문의 우익적·반한국적 사설과 논평도 증가추세를 보인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아사히신문이 친한적 성향의 신문으로 인식되는 한편, 산케이신문이 보수우익적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요미우리신문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신문(105건, 56.1%)이, 그리고 남북 문제는 요미우리신문(106건, 64.6%)이 상대적으로 더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한국 국내 정치

[단위 : 건수(%)]

구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합계
일반적인 내용	22(16.4)	29(17.7)	19(10.2)	70(14.4)
개헌 문제	4(3)	17(10.4)	13(7)	34(7)
대통령 · 정부 · 정치인의 활동	45(33.6)	45(27.4)	105(56.1)	195(40.2)
선거	13(9.7)	30(18.3)	26(13.9)	69(14.2)
남북 문제	36(26.9)	106(64.6)	100(53.5)	242(49.9)
한국 민주화 운동	16(11.9)	43(26.2)	7(3.7)	66(13.6)
기타	2(1.5)	14(8.5)	7(3.4)	23(4.7)

3) 경제

‘경제’의 세부내용을 ‘한국 국내 경제’, ‘한·일 경제협력문제’, ‘한·일 무역문제’, ‘일·북 무역문제’ 등의 4개로 분류하였다(표 13 참조). ‘한국 국내 경제’에는 경제발전, 물가, 농업 경제, 자원 문제, IMF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한·일 경제협력문제’는 한국이나 일본의 기업과 관련된 내용, 기업의 상대국 진출 혹은 철수 등에 관한 내용, 일본 경제사찰단의 한국 방문, 한·일 경제 간담회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불균형과 무역마찰 문제, 수입과 수출에 관한 무역에 한정된 문제는 ‘한·일 무역문제’로 분류하였고, 일본과 북한 간의 무역문제에 관한 내용은 ‘북일 무역문제’로 분류했다.

‘경제’에 관한 기사는 총 121건이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경제관련 내용은 ‘한·일 경제협력문제’로 45.5%(55건)를 차지했다. ‘한·일 무역문제’는 38건(31.4%)이었으며, ‘한국 국내 경제’ 28건(23.1%), ‘일·북 무역문제’ 9건(7.4%)의

순이었다. 신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사히신문은 '한·일 경제협력문제'(7건, 36.8%)와 '한·일 무역문제'(7건, 36.8%) 관련 사실이 가장 많았으며,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은 '한·일 경제협력문제'(34건, 46.6%·14건, 48.3%)를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었다. 즉, 일본의 신문은 한국의 경제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특히 한국과 일본 양국의 경제협력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이슈 보도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 이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관심, 한일무역역조 현상에 관한 입장, 한일어업협정에는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5년 이후 일본의 원조 및 대한차관에 힘입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일본의 자금 및 기술, 원자재 수출시장뿐만 아니라 상품시장으로서의 가치를 재확인시켜주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무역규모 확대와 한국의 경제성장에는 한국의 대일무역적자 확대라는 태생적 딜레마가 뒤따랐다.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1965년부터 1975년까지 전체 무역수지 적자폭의 1/2에 지나지 않았으나, 1976년부터는 전체 무역적자 규모를 상회하였다. 예를 들어, 중동의 건설경기 호조에 따른 한국의 수출이 급격히 신장된 1977년의 경우,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전체 무역적자의 2.3배에 달했다. 이러한 적자폭은 2차 석유 위기로 한국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든 1979년에는 전체 무역적자의 62%까지 떨어졌으나 1985년에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의 무역수지가 점차 개선됨에 따라 대일 무역적자는 다시 전체 무역적자의 3.5배에 달하게 되었다.

한국 측의 심각한 문제제기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전자, 수송기계 등의 수출산업은 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생산기계를 가지고 역시 일본에서 수입된 하이테크제품, 반제품을 조립·가공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입한 기술 및 부품류를 투입하여 만든 조립제품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자

동적으로 대일수입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는 한국 경제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민주화에 따른 노사분쟁의 증가, 임금상승, 시설투자의 지연, 기술 및 품질상의 문제, 그리고 한국 내의 소비성향의 증가 등이 합쳐져 대일적자가 증대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자유무역주의하에서는 2국 간 균형을 주장해서는 안 되며 다국 간 균형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에 따른 여파가 깊어지고, 한국의 반도체와 핸드폰, 선박 등이 일본을 앞서기 시작하고, 중국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자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첨단분야 경제성장과 중국의 약진에 대한 경이감을 표시하면서 일본 내 기업을 자극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어업협정 문제가 단순히 경제문제인가 하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65년 이전 단계에서는 한일회담 및 한일기본조약과 관련된 정치적 요소가 크게 작용한 반면, 국제해양법의 공식화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가 대두된 1996년 이후에는 어업·광물자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차원에서 어업협정 재개정 문제가 가시화되었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영해와 독도 문제 등의 정치적 사안으로 민감한 이슈가 되었지만, 아사히신문은 서일본 연안에서의 수산경제와 천연자원 확보 및 개발이라는 경제적 차원에서 해결될 사안이라는 점을 견지한다.

〈표 13〉 경제

[단위 : 건수(%)]

구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합계
한국 국내 경제	3(15.8)	20(27.4)	5(17.2)	28(23.1)
한일 경제협력문제	7(36.8)	34(46.6)	14(48.3)	55(45.5)
한일 무역문제	7(36.8)	24(32.9)	7(24.1)	38(31.4)
북일 무역문제	-	6(8.2)	3(10.3)	9(7.4)
기타	-	27(7.3)	4(13.8)	31(25.6)

4) 사회

‘사회’ 관련 기사는 총 169건이었으며, 사회문제는 ‘범죄·경찰’, ‘사건·사고·재난·재해’, ‘인간흥미·가십’, ‘생활’, ‘환경·공해’, 그리고 ‘재한 일본인 문제’의 7개 소주제로 분류된다(표 14 참조).

역사인식 공동화를 위한 사회적 활동의 경우 역사교과서 공동연구 및 집필에 관한 의견, 일본의 역사교과서검정 문제에 관한 한국 측 반응 등이 중심을 이룬다. 한국의 대형 사건·사고에는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문세광사건),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1990년대의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사건,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일본의 언론은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해 비교적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4·19민주화운동, 언론자유수호운동, 광주사태, 1987년 민주화운동, 386세대의 약진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재일 한국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일 한국인 법적지위 문제, 지문날인반대 문제, 문세광사건으로 인한 반일감정 및 반일데모, 재일 조선인 피폭자 보상 문제 등이 언급되었고 재한 일본인 문제로는 1974년도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일본인 유학생 사건 등이 보도되었다.

‘사회’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게재된 내용은 ‘재일 한국인 문제’(58건, 34.3%)

〈표 14〉 사회

[단위 : 건수(%)]

구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합계
범죄·경찰	-	6(7.3)	2(3.5)	8(4.7)
사건·사고·재난·재해	5(16.7)	22(26.8)	20(35.1)	47(27.8)
인간흥미·가십	2(6.7)	4(4.9)	3(5.3)	9(5.3)
생활	-	3(3.7)	-	3(1.8)
환경·공해	-	1(1.2)	-	1(0.6)
재일 한국인 문제	18(60)	29(35.4)	11(19.3)	58(34.3)
재한 일본인 문제	-	-	1(1.8)	1(0.6)
기타	-	20(24.4)	21(36.8)	41(24.3)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건·사고·재난·재해'(47건, 27.8%)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그 이외의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게재되는 빈도가 매우 적었다. 신문별로 살펴보면,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이 아사히신문보다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사설에서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재일 한국인 문제'(58건)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표 15 참조). 일본의 신문은 재일 한국인 문제와 관련하여 '참정권·선거권 문제', '교육 문제', '법적지위 문제', '보상권 문제', '총련계 학생에 대한 이지메' 등의 다섯 가지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그 가운데 '법적지위 문제'가 25건(43.1%)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신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경우에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모두 '법적지위 문제'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실질적인 보상권 문제와 학교 내에서의 조총련계 학생에 대한 피해에 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덜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지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초기 재일 조선인 2세의 영주권 문제, 지문날인 문제 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한일 간 협의를 통해 다소 해결됨에 따라, 최근에 주로 다루어진 내용은 재일 조선인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의 문제였다. 참정권은 선거권 부여와 관련된 문제였고, 공무담임권은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된 재일 조선인의 간부승진 허용과 중앙정부 공무원 임용에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과거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의 경우 이 문제를 거의 보도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이들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재일 조선인에게 참정권과 선거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인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표 15〉 재일 한국인 문제

[단위 : 건수(%)]

구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합계
참정권·선거권 문제	4(22,2)	3(10,3)	5(45,5)	12(20,7)
교육 문제	5(27,8)	1(3,4)	2(18,2)	8(13,8)
법적지위 문제	8(44,4)	12(41,4)	5(45,5)	25(43,1)
보상권 문제	-	2(6,9)	2(18,2)	4(6,9)
총련계 학생에 대한 이지메	1(5,6)	1(3,4)	-	2(3,4)
기타	1(5,6)	17(58,6)	3(27,3)	21(36,2)

5) 문화·스포츠·교육·종교

‘문화·스포츠·교육·종교’를 다룬 사실은 모두 79건이었으며, 비교적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다(표 16 참조). 세부내용은 ‘문화 교류(상대국의 대중문화 유입 및 개방 문제, 한·일 양국의 예술·공연 등의 교류 문제 등)’, ‘공연 및 행사(한국의 공연이나 예술 관련 행사 소개 혹은 안내 등)’, ‘미디어 관련(한국의 텔레비전과 신문 등)’, ‘연예인 관련(특정 연예인 개인에 관한 내용)’, ‘한류 열풍(2000년대 이후로 등장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의 붐)’, ‘스포츠 전반(올림픽 등의 경기 개최, 경기 결과, 스포츠 시설, 관람 문화 등의 스포츠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스포츠 중에서도 한·일 양국의 경기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축구’와 ‘야구’, 그리고 교육에 관한 제도나 교육 현상 등도 일본 언론의 주요 관심사였다.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스포츠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37.1%(36건)를 차지하였다. 특히 ‘축구’에 관한 내용은 19건(19.6%)의 기사에서 다루어졌으며, ‘미디어 관련’ 내용도 17건(17.5%)의 기사에서 다루어져 비교적 다른 내용보다 많이 언급되었다. 신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사히신문의 경우 ‘축구’(8건, 80%)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았으며, 요미우리신문은 ‘스포츠 전반’(26건, 57.8%) 그리고 산케이신문은 ‘미디어 관련’(16건, 38.1%) 기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나 신문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에 대한 기사가 급증한 것은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를 전후해서 '축구'라는 용어가 자주 인용되었기 때문이며, 월드컵 이후에도 일본의 J리그와 한일 간 축구경기가 개최될 때마다 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일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상기시키며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사례로 축구를 드는 경향이 있었다.

특이한 점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이슈에 대해 심층적인 해설과 의견을 제시하는 사설에서 '한류 열풍'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사회에서 한류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결과이다. 한류 열풍 자체를 언급한 점도 특이하지만, 무엇보다도 한일 간 각종 문화, 공연, 행사, 민간단체 교류 등의 사례가 급증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나 독도 문제 등으로 인한 한일관계의 경색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주 언급했다는 것도 매우 특이했다.

〈표 16〉 문화·스포츠·교육·종교

[단위 : 건수(%)]

구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합계
문화 교류	2(20)	2(4.4)	8(19)	12(12.4)
공연 및 행사	-	4(8.9)	-	4(4.1)
미디어 관련	-	1(2.2)	16(38.1)	17(17.5)
연예인 관련	-	1(2.2)	1(2.4)	2(2.1)
한류 열풍	-	3(6.7)	1(2.4)	4(4.1)
스포츠 전반	1(10)	26(57.8)	9(21.4)	36(37.1)
축구	8(80)	7(15.6)	4(9.5)	19(19.6)
야구	-	-	1(2.4)	1(1)
교육제도·현상	1(10)	2(4.4)	2(4.8)	5(5.2)
기타	-	1(2.2)	1(2.4)	2(2.1)

‘한류’에 관하여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의 논조는 극단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한류가 절정이었던 2005년 6월 22일 한일수교 40년을 기념해서 보도된 두 신문의 사설을 비교했을 때 한류를 바라보는 시각이 신문에 따라 매우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같은 날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관련 사설을 보도하지 않았다.

먼저 아사히신문의 사설은 다음과 같다.

음악과 대중문화, 경제에서는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짝사랑’이 계속되었지만, 지금은 ‘한류 붐’이라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도 있어서 젊은이들끼리의 친근감은 확실히 증가했다. 도쿄 오쿠보의 코리아타운은 한국의 CD와 영화 DVD를 사려는 일본 여성들로 변성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젊은이들이 앞 다투어 읽는 만화의 대부분은 일본의 만화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에서의 한류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상대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같은 날의 산케이신문은 한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사설을 보도했다.

한국이 눈부시게 발전한 배경에는 일본과의 40년에 걸친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일본으로서도 한국의 분투가 기쁘다. 동시에 일본의 협력을 잘 살려주었다라는 의미에서 한국에는 감사도 하고 싶다. 이번 일본의 ‘한류 붐’은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의 제1차 한국붐에 이어서 제2차이지만, 이전보다 그 영향이 깊다. 제1차 붐은 그 후 위안부 문제로 상징되는 한국 측의 반일운동으로 위축되어버렸다. 이번 붐은 한국어와 역사에 대한 관심까지 조용히 확대되고 있다. 이것이 더욱 지속, 발전하는가는 한국 측의 이후의 대일자세에 달려 있다.

이처럼 산케이신문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협력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1차 한국붐이라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최근의 한류현상이 지니는 의미를 크게 평가하지 않았다. 게다가 한류의 지속이 한국의 반일운동과 같은 한국 측의 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성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매우 특이했다.

6) 국제관계

‘국제관계’에 관한 기사는 총 464건이었다. ‘국제관계’를 6개의 세부 주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표 17 참조). 구체적으로 국제관계는 ‘일반적인 내용(국제적인 행사, 정상회담, 각료 회의 등)’, ‘한·미 관계(미국 국회의원 매수공작사건, 미군 철수, 한·미 군사훈련,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주한미군 등)’, ‘한국·타국 관계(한국과 타국의 국교 수립 등)’, ‘북·일 관계(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이나 양국과 관련된 사건·사고 등)’, ‘북·미 관계(북한과 미국 관련 문제)’, ‘북한·타국 관계(김일성의 중국 방문, 중국 수상인 북한 방문 등)’ 등이 포함된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제외한 한국과 관련된 국가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국제관계’에 관한 내용 가운데 ‘북·일 관계’를 다

〈표 17〉 국제관계

[단위 : 건수(%)]

구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합계
일반적인 내용	16(19.5)	34(16)	56(32.9)	106(22.8)
한·미 관계	9(11)	54(25.5)	30(17.6)	93(20)
한국·타국 관계	11(13.4)	53(25)	25(14.7)	89(19.2)
북·일 관계	42(51.2)	107(50.5)	83(48.8)	232(50)
북·미 관계	3(3.7)	24(11.3)	13(7.6)	40(8.6)
북한·타국 관계	4(4.9)	38(17.9)	29(17.1)	71(15.3)
기타	-	32(15.1)	23(13.5)	55(11.9)

루고 있는 기사가 232건으로 50%를 차지했다. '북·일 관계' 관련기사는 '한·미 관계'(93건, 20%)나 '한국·타국 관계'(89건, 19.2%)의 기사 건수보다 훨씬 많았는데, 일본 신문이 북한과의 관계를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일 관계'를 다시 '전반적인 내용', '일본인 납치', '북한 핵', '사건·사고', '북일국교정상화회담', '재일조선인 북송 문제', '정상회담·상대국 방문',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역할' 등의 여덟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18 참조). 분석결과 '북·일 관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다루어진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85건, 36.3%)으로, 북한군 망명자, 북한과의 어업협정, 공동성명서 발표, 북한의 변화 촉구 등의 내용이었다. 또한 '북한 핵'에 관한 내용(61건, 26.1%)과 '일본인 납치' 문제(56건, 23.9%)도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언급된 내용이었다.

〈표 18〉 북일관계

[단위: 건수(%)]

구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합계
전반적인 내용	13(31)	35(32.4)	37(44)	85(36.3)
일본인 납치	5(11.9)	34(31.5)	17(20.2)	56(23.9)
북한 핵	7(16.7)	30(27.8)	24(28.6)	61(26.1)
사건·사고	5(11.9)	11(10.2)	11(13.1)	27(11.5)
북·일국교정상화회담	5(11.9)	19(17.6)	10(11.9)	34(14.5)
재일 조선인 북송 문제	1(2.4)	2(1.9)	1(1.2)	4(1.7)
정상회담·상대국 방문	6(14.3)	13(12)	21(25)	40(17.1)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역할	10(23.8)	10(9.3)	10(11.9)	30(12.8)
기타	-	16(14.8)	3(3.6)	19(8.1)

'북·일 관계'와 관련하여 가장 특징적인 결과는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각 신문사의 관심과 태도였다.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은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31.5%, 20.2%)을 기울이고 정부의 대책과 대북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데 비해, 아사히신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11.9%)을 기울이며,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도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이 높은 관심과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아사히신문의 경우 보도 건수도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정부의 차분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7) 한·일 관계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주제는 658건의 기사에서 다루어졌을 만큼 일본의 신문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내용이었다. ‘한·일 관계’는 크게 10개의 세부 주제로 구분하였는데, 그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다섯 가지 주제인 ‘한·일 어업협정 문제’, ‘독도 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 일본의 신문이 어떠한 논조로 보도했는지를 분석했다.

‘한·일 관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한·일 교류(양국의 정상회담, 각료 회의, 각국 정상의 상대국 방문, 양국 간의 협정문제, 조약 체결, 과거청산, 미래지향 등)’로 한일관계 기사의 42.4%(279건)를 차지했다(표 19 참조). ‘교과서 문제’(116건, 17.6%)가 그 뒤를 이었으며 반일감정이나 일본에 대한 한국의 관심 증대를 다룬 ‘한국의 일본관’(104건, 15.8%), 침략 전쟁의 인식론, ‘한일합방은 합법적 국제조약이다’ 등의 한국과 관련된 ‘일본 정치인의 발언’(102건, 15.5%), ‘야스쿠니 문제’(98건, 14.9%), ‘종군위안부 문제’(65건, 9.9%)의 순이었다. 특히 ‘한·일 교류’에 대한 내용을 제외했을 경우 아사히신문은 ‘야스쿠니 문제’(41건, 19.3%)를,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의 일본관’·‘교과서 문제’(41건, 16.7%)를,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일본관’(58건,

28.9%)을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한일관계

[단위 : 건수(%)]

구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합계
한일 교류	95(44.8)	112(45.7)	72(35.8)	279(42.4)
민간 교류	9(4.2)	8(3.3)	6(3)	23(3.5)
일본의 반성·사죄 요구	3(1.4)	24(9.8)	23(11.4)	50(7.6)
일본 정치인 발언	20(9.4)	33(13.5)	49(24.4)	102(15.5)
한국의 일본관	5(2.4)	41(16.7)	58(28.9)	104(15.8)
한·일 어업협정 문제	18(8.5)	29(11.8)	6(3)	53(8.1)
독도 문제	16(7.5)	24(9.8)	17(8.5)	57(8.7)
중군위안부 문제	18(8.5)	24(9.8)	23(11.4)	65(9.9)
교과서 문제	28(13.2)	41(16.7)	47(23.4)	116(17.6)
야스쿠니 문제	41(19.3)	26(10.6)	31(15.4)	98(14.9)
기타	2(0.9)	26(10.6)	14(7)	42(6.4)

① 한·일 어업협정 문제

‘한·일 어업협정’에 관한 기사는 총 53건이었으며, 이를 네 개의 세부 주제로 분류하여 신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표 20 참조). 전체적으로 보면, 한·일 어업협정 문제를 정치적 문제가 아닌 어업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대립보다는 협조를 요구해야 한다는 ‘신중한 처리’를 주문한 내용이 33

〈표 20〉 한·일 어업협정 문제

[단위 : 건수(%)]

구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합계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	16(53.3)	5(83.3)	21(38.9)
국제해양법조약 가입	-	5(16.7)	-	5(9.3)
신중한 처리	14(77.8)	16(53.3)	3(50)	33(61.1)
영유권과 어업권 상충	6(33.3)	16(53.3)	4(66.7)	26(48.1)
기타	-	12(40)	-	12(22.2)

건(61.1%)으로 가장 많았다. 분석 결과만을 고려했을 때,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어업협정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핵심 사안을 보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사히신문은 '신중한 처리'와 '영유권과 어업권의 상충'이라는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았는데,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이나 '국제 해양법 조약 가입' 등의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한·일 어업협정 문제'에 관련하여 일본 신문은 어떠한 논조를 보여주고 있는가? 기사 전체에 나타난 지배적인 논조, 그리고 기사 내용 가운데 한국에 대한 논조가 어떠한지를 '긍정', '중립', '부정'으로 나누어 분석했다(표 21 참조). '한·일 어업협정'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기사 전체의 논조는 중립적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논조만을 분석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부정적 논조의 기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케이신문의 경우 기사 전체의 논조는 물론 한국 측에 대한 논조 모두 긍정적으로 보도된 기사가 한 건도 없었다. 아사히신문은 어업협정 문제를 영유권 분쟁과 분리하여 어업·경제적 관점에서 국제법적 해결 또는 한일 간에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산케이신문은 서일본 지역 어민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정부에 대해 강력한 대응과 대책을 요구해 대조적이었다.

〈표 21〉 한·일 어업협정 문제에 관한 사실의 논조

[단위 : 건수(%)]

구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합계
기사의 논조	긍정	2(11.2)	2(6.9)	-	4(7.5)
	중립	9(50)	19(65.5)	3(50)	31(58.5)
	부정	7(38.9)	8(27.6)	3(50)	18(34)
한국 측에 대한 논조	긍정	2(11.1)	2(6.9)	-	4(7.5)
	중립	10(55.6)	13(44.8)	3(50)	26(49.1)
	부정	6(33.3)	14(48.3)	3(50)	23(43.4)
합계		18(100)	29(100)	6(100)	53(100)

② 독도 문제

‘독도 문제’를 언급한 기사는 총 57건이었으며, 관련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 ‘영토문제 관련 회담’, ‘독도 관련 발언’, ‘한국의 접안시설 건설 계획에 대한 유감표명’,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 등의 5개 세부 주제로 나누어 분석했다(표 22 참조). ‘독도 문제’의 경우 독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나 독도에 대한 해양 조사 등 독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언급한 주제가 31건(54.4%)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 ‘독도 관련 발언’, ‘영토문제 관련 회담’ 등의 내용도 적지 않게 다루어졌다. 한편, 한국이 독도에 접안시설을 건설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기사는 한 건으로 아사히신문의 기사였다.

〈표 22〉 독도 문제

(단위: 건수(%))

구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합계
전반적인 내용	10(62.5)	13(54.2)	8(47.1)	31(54.4)
영토문제 관련 회담	2(12.5)	3(12.5)	2(11.8)	7(12.3)
독도 관련 발언	1(6.3)	3(12.5)	5(24.9)	9(15.8)
한국의 접안시설 건설 계획에 대한 유감표명	1(6.3)	-	-	1(1.8)
시마네현 독도의 날 제정	1(6.3)	6(25)	3(17.6)	10(17.5)
기타	-	12(50)	1(5.9)	13(22.8)

‘독도 문제’에 관한 일본 신문 사설의 논조는 어떠한가? 기사 전체의 지배적 논조와 한국에 대한 논조 모두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기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23 참조). 특이한 점은 ‘한·일 어업협정 문제’와 마찬가지로 산케이신문의 경우 한국에 대한 논조가 긍정적인 기사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아사히신문이나 요미우리신문보다 한국 정부, 한국 국민,

한국 정치인 등을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표 23〉 독도 문제에 관한 사설의 논조

[단위 : 건수(%)]

구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합계
기사의 논조	긍정	1(6,3)	1(4,2)	1(5,9)	3(5,3)
	중립	11(68,8)	11(45,8)	4(23,5)	26(45,6)
	부정	4(25)	12(50)	12(70,6)	28(49,1)
한국에 대한 논조	긍정	2(12,5)	1(4,2)	-	3(5,3)
	중립	10(62,5)	8(33,3)	5(29,4)	23(40,4)
	부정	4(25)	15(62,5)	12(70,6)	31(54,4)
합계		16(100)	24(100)	17(100)	57(100)

③ 종군위안부 문제

‘한·일 관계’에 대한 기사 가운데 ‘종군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기사는 총 65건이었으며, 4개의 세부 주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24 참조). 세부 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부의 관여, 강압 인정, 공문서 발견 등 일본이 스스로 강제성을 인정한 내용의 ‘일본의 강제성 인정’, 종군위안부와 관련된 소송, 판결 내용, 법률 제정, 입법적 차원의 지원 등과 관련된 ‘법적 차원’, 국가적 차원의 보상 혹은 민간기금 마련 등의 문제를 다룬 ‘국가 보상·기금 마

〈표 24〉 종군위안부 문제

[단위 : 건수(%)]

구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합계
일본의 강제성 인정	2(11,1)	2(8,3)	6(25)	10(15,2)
법적 차원	4(22,2)	3(12,5)	2(8,3)	9(13,6)
국가 보상·기금 마련	8(44,4)	5(20,8)	2(8,3)	15(22,7)
국제사회·NGO 등의 여론의식 요구	2(11,1)	6(25)	1(4,2)	9(13,6)
기타	-	16(66,7)	17(70,8)	33(50)

련', 국제사회나 NGO 단체 등의 여론을 의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여론 의식 요구' 등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전체적으로 '국가 보상·기금 마련'(15건, 22.7%)을 언급한 내용이 많았으며, '일본의 강제성 인정'(10건, 15.2%)을 다룬 사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민감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신문 사실의 논조는 어떠하였는가? 기사 한 건에 나타난 한국에 대한 논조보다 기사 전체의 지배적 논조가 더 부정적인 경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참조). 이러한 결과는 실제 중군위안부를 경험한 여성들의 법적소송이나 그들이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모습보다는 중군위안부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일본 정부 태도의 문제점을 더 부정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산케이신문의 경우 앞의 두 가지 주제와 마찬가지로 중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논조의 기사를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표 25〉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실의 논조

[단위: 건수(%)]

구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합계
기사의 논조	긍정	4(22.2)	4(16.7)	-	8(12.3)
	중립	5(27.8)	6(25)	10(43.5)	21(32.3)
	부정	9(50)	14(58.3)	13(56.5)	36(55.4)
한국에 대한 논조	긍정	3(16.7)	2(8.3)	-	5(7.7)
	중립	6(33.3)	10(41.7)	14(60.9)	30(46.2)
	부정	9(50)	12(50)	9(39.1)	30(46.2)
합계		18(100)	24(100)	23(100)	65(100)

④ 교과서 문제

'교과서 문제'에 대한 기사는 총 116건으로 '한·일 관계'와 관련된 이슈 가운데 일본 신문이 다른 이슈보다 비교적 중요하게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 문제’는 ‘역사 교과서 검정 문제’, ‘일본 정부의 개입 문제’, ‘일본 우익단체의 활동’, ‘한국의 검정교과서 재수정 요구’, ‘일본의 역사인식’, ‘한국과 일본의 공동연구’ 등의 6개 세부 주제로 나누어 살폈다(표 26 참조). 분석 결과 현대사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 자위대 부분의 언급이 부족하다 등을 강조한 ‘역사교과서 검정 문제’ 관련 기사가 38건(32.8%)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일본 사회 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문제 제기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한국의 검정교과서 재수정 요구’에 관한 기사가 33건(28.4%)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자학사관 폐지, 대화 노력 등의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기사도 25건(21.6%)으로 다른 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었다. 특이한 점은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검정교과서 재수정 요구’에 관한 기사를 각각 17건(41.5%)과 16건(34%) 씩 보도했는데, 아사히신문은 한 건도 보도하지 않은 점이다. 다만 1982년 6월 문부성의 고교 역사 교과서 검정에서 중국 ‘침략’을 ‘진출’로 바꿔 쓰도록 지시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1차 역사교과서 파동), 한국과 중국 정부가 이에 반발하여 시정을 요구하자 모리 요시로[森喜朗] 당시 자민당 문교제도조사회 부회장이 당 특사로 방한하였고,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 책임으로 교과서 기술 시정을 약속하는 담화를 발표했으며, 문부성은 11월 ‘근린제국 조항’을 검정기준에 추가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사히신문은 이러한 일본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7월 23일 마쓰노[松野幸泰] 국토청장관과 후지오 마사유키[藤尾正行] 문부상이 행한 망언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매우 비판적인 시설을 보도한 바 있다.

이후 1986년 7월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편찬한 고교 교과서 ‘신편 일본사’ 검정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이 반발하고, 2000년 9월 새로운 역사교과서 모임(이하 ‘새역모’)이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미화하고 황국사관을 찬양하는

‘새역모’ 교과서를 작성하여 문부성에 그에 대한 검정 신청을 냈는데 그 내용이 공개되어 제2차 역사교과서 파동이 전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사히신문은 사실을 통해 새역모의 활동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표 26〉 교과서 문제

[단위 : 건수(%)]

구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합계
역사교과서 검정 문제	9(32.1)	20(48.8)	9(19.1)	38(32.8)
일본 정부 개입 배제	-	6(14.6)	4(8.5)	10(8.6)
일본 우익단체 활동	2(7.1)	6(14.6)	5(10.6)	13(11.2)
한국의 검정교과서 재수정 요구	-	17(41.5)	16(34)	33(28.4)
일본의 역사인식	7(25)	9(22)	9(19.1)	25(21.6)
한국·일본 공동연구	1(3.6)	5(12.2)	1(2.1)	7(6)
기타	-	6(14.6)	15(31.9)	21(18.1)

‘교과서 문제’를 언급한 일본 신문 사설의 논조가 어떠한지를 분석했다. 한국에 대한 논조보다는 기사 전체의 지배적인 논조가 더 부정적인 경향을 띤 것으로 나타났다(표 27 참조). 이러한 결과는 ‘교과서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주장이나 입장 혹은 정책보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관련 정책을 보다 부정적인 논조로 보도한 기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제도 자체에 대해 모든 신문들은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했지만 신문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교과서 검정과정 자체에서 역사인식이 결여된 점을 문제 삼았지만,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은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역사인식 문제를 주변국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논지의 사실을 보도해 차이가 있었다.

〈표 27〉 교과서 문제에 관한 사설의 논조

[단위 : 건수(%)]

구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합계
기사의 논조	긍정	2(7.1)	6(14.6)	2(4.3)	10(8.6)
	중립	13(46.4)	15(36.6)	17(36.2)	45(38.8)
	부정	13(46.4)	20(48.8)	28(59.6)	61(52.6)
한국 측에 대한 논조	긍정	3(10.7)	2(4.9)	-	5(4.3)
	중립	12(42.9)	23(56.1)	20(42.6)	55(47.4)
	부정	13(46.4)	16(39)	27(57.4)	56(48.3)
합계		28(100)	41(100)	47(100)	116(100)

⑤ 야스쿠니 문제

‘야스쿠니 문제’에 대한 기사는 총 98건이었다. 세부주제를 ‘일반적인 이슈’, ‘과거사 반성’, ‘A급 전범 합사’, ‘야스쿠니 참배 중단’, ‘제3의 추도시설 건립’ 등의 5개로 나누어 기사의 내용이 신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폈다(표 28 참조). 분석 결과 일본 수상과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신사 참배를 둘러싼 일본 내 갈등, 일본 내 여론 등을 다룬 ‘일반적인 이슈’가 59건(5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거사 반성’(26건, 26.3%), ‘A급 전범 합사’(23건, 23.2%), ‘제3의 추도시설 건립’(16건, 16.2%), ‘야스쿠니 참배 중단’(12건, 12.1%)의 순으로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별로 비교 분석해보면, ‘일반적인 이슈’와

〈표 28〉 야스쿠니 문제

[단위 : 건수(%)]

구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합계
일반적인 이슈	18(42.9)	17(65.4)	24(77.4)	59(59.6)
과거사 반성	9(21.4)	11(42.3)	6(19.4)	26(26.3)
A급 전범 합사	5(11.9)	8(30.8)	10(32.3)	23(23.2)
야스쿠니 참배 중단	4(9.5)	-	8(25.8)	12(12.1)
제3의 추도시설 건립	3(7.1)	7(26.9)	6(19.4)	16(16.2)
기타	-	12(46.2)	1(3.2)	13(13.1)

‘기타’의 내용을 제외했을 경우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은 ‘과거사 반성’⁹ 건, 21.4%·11건, 42.3%)을, 그리고 산케이신문은 ‘A급 전범 합사’(10건, 32.3%)를 비중 있게 다루었다.

‘야스쿠니 문제’에 관한 일본 신문 사설의 논조는 어떠한가?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하여 기사 전체의 지배적 논조보다 기사 내용에서 언급된 한국 관련 내용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9 참조).

〈표 29〉 야스쿠니 문제에 관한 사설의 논조

[단위 : 건수(%)]

구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합계
기사의 논조	긍정	4(9.8)	2(7.7)	2(25.8)	8(8.2)
	중립	26(63.4)	9(34.6)	8(25.8)	43(43.9)
	부정	11(26.8)	15(57.7)	21(67.7)	47(48)
한국 측에 대한 논조	긍정	6(14.6)	1(3.8)	-	7(7.1)
	중립	24(58.5)	13(50)	14(45.2)	51(52)
	부정	11(26.8)	12(46.2)	17(54.8)	40(40.8)
합계		41(100)	26(100)	31(100)	98(100)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전통적으로 매우 비판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1999년 8월 노니카 히로무[野中廣務] 관방장관이 A급 전범을 분사하고 야스쿠니신사를 특수법인화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일본 내 보수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아사히신문은 A급 전범의 분사나 제3의 추도시설 건립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후 한국과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자 아사히신문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다른 어떤 신문이나 방송보다 심각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과거 전쟁책임과 역사문제에 대한 자성과 반성 없는 상태에서 총리

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양심적인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피해국가인 중국과 한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도전이자 외교적 실패라고 혹독하게 비판하였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를 빈번하게 언급했지만, 아사히신문과는 달리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문제 삼는 중국과 한국의 정치상황, 일본 내 비판세력 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산케이신문은 한국과 중국이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문제 삼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국내정치적 의도에 따라 부화뇌동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논조는 신문 간에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01년에 한국과 중국의 반발은 매우 심했다. 세 신문의 사설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익성향이 가장 강한 산케이신문은 2001년 7월 27일자 신문에 다음 내용이 담긴 사설을 보도했다.

순국한 전몰자에 애도의 뜻을 바치고 싶다는 고이즈미 수상은 이번 선거결과가 보이고 있듯이, 많은 유권자에 의해 지지되었다라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참배하면 근린제국의 격렬한 반발이 있겠지만, 외교란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순을 어떻게 교묘히 레벨다운시킬 것인가의 수완이 시험되는 장이기도 하다.

산케이신문은 신사 참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선거결과를 인용하여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마치 일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행동인 것처럼 보도하면서 외교적인 마찰을 피하지 말고 정면돌파할 것을 주문했다.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요미우리신문도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았다. 같은 날 게재된 요미우리신문의 사설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래 외국의 '압력'을 받아서 수상의 의견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책임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수상으로서도 '타국의 압력으로 방침을 바꾸었다'라고 듣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다. 중국과의 회담은 대부분이 야스쿠니 참배 문제로 시종일관했고, 한국과의 회담은 대부분 역사교과서와 야스쿠니 문제였다. 다나가 외상은 거의 듣기만 했다. 이 결과 일본이 말해야 할 것을 충분히 상대에게 전하는 것이 가능했는가 의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참배보다는 참배에 집착함으로써 잃게 되는 일본의 외교적 이익문제를 지적했다. 즉 신사 참배가 일본 사회에 미치는 역사적·정신적 영향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채 외교적 차원의 손실만을 지적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하루 뒤인 2001년 7월 28일에 아사히신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설을 보도했다.

A급 전범이라도 사형된 후에는 부처님이 된다는 것이 국민감정이라고 수상은 말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수상의 개인적인 종교관에 지나지 않는다. 근린제국에는 전쟁에 의해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심적 육체적 상처를 지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일본이 과거의 역사를 잊고 다시 아시아에서 활개치는 것에 대한 경계감을 갖는 이도 있다. 이웃에 대한 상상력을 결핍한 언동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대외공신력을 손상시키고 국익을 손상시킨다. 수상에게는 이러한 사려가 없다. 신념을 갖는 것과, 아이들처럼 자신의 생각을 완고하게 고집하는 것은 다르다. 정치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숙한 균형감각이고 냉철한 현실 판단이다. 야스쿠니 참배는 그만두어야 한다.

사설에서 보듯이 아사히신문은 다른 두 신문과는 달리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그만두어야 한다며 정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묘사한 데 비해 아사히신문은 수상의 개인적인 고집이라며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참배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일본의 외교적 이익과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요미우리신문의 논조는 아사히신문의 논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8) 식민지 관련 문제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관한 내용을 식민지 시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식민지 시대 이후의 식민통치 배상 혹은 전후보상 문제에 관한 내용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30 참조). '식민통치 배상 혹은 전후보상 문제'의 경우 보상 관련 재판, 역사문제에 대한 사죄, 식민지 지배 반성, 민간모금기금, 외국인 피폭자 전원 보상, 한센병 환자 보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분석 결과, 총 76건의 식민지 관련 기사 가운데 40건(52.6%)이 식민통치 배상과 전후보상 문제를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사용된 세 신문 모두 일본의 식민지 시대와 관련하여 주로 보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30〉 식민지 관련 문제

[단위 : 건수(%)]

구분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합계
전반적인 내용	4(13.8)	16(44.4)	2(18.2)	22(28.9)
식민통치 배상· 전후보상 문제	19(65.5)	12(33.3)	9(81.8)	40(52.6)

세 신문은 한국을 식민지로 삼아 장기간 지배한 것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하시모토 전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린던 1997년의 사설을 분석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폈다. 먼저 1월 27일자

요미우리신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을 보도했다.

일찍이 일본이 조선반도를 식민지 지배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우리들은 그러한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할 점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거에 끌려 다니기만 하여 건설적인 관계구축으로의 길을 그릴 수 없는 것은 극히 불행한 일이다.

요미우리신문의 경우 식민지 지배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하지만 이는 과거의 역사일 뿐 미래의 양국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보인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시각은 산케이신문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산케이신문의 보도에서 식민지 지배를 반성한다는 내용은 찾기 힘들다. 한국의 김영삼 전 대통령이 8월 15일에 행한 기념식 연설에 대한 산케이신문의 사실(8월 16일자)이 대표적이다.

북조선의 상황은 확실치 않으나, 한국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52주년 기념 식전에서 항례의 축하연설을 행하고, 민족의 진정한 해방은 '남북통일'이라고 북조선과의 관계개선을 강하게 호소했다. 지금 민족에게 보다 절실한 과제는 반세기보다 더 지나버린 일본과의 '과거'가 아니라, 남북통일이라는 '미래'인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이 남북통일을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했다. 배경에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의한 국력증대가 있지만, 그 경제발전의 큰 계기가 된 것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한일국교정상화(1965)라는 '미래지향의 결단'이었다. 그때 고 박대통령은 민족적 체면에 집착하지 않고, 일본과의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를 향하여 국민의 반대를 누르고 결단을 내렸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반성한다는 내용보다는 전후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일본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또한

요미우리신문과 마찬가지로 과거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과거'일 뿐이고,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의 유무를 제외하면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은 식민지 지배를 '과거'의 문제로 한정시키고 이를 문제 삼는 태도는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아사히신문은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는 것과 더불어 그것이 과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있어 다른 두 신문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은 같은 해 '성인의 날(1997. 1. 15)'을 맞아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고하는 아사히신문의 사설이다.

축구 한일전이 되면 한국 측의 투지가 굉장한 것은 김치 탕이다라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젊은이가 있다. 젊은이는 식민지 지배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지라도 역사의 그늘에서 도망갈 수는 없다. 일본 선수 모두는 역사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아사히신문은 식민지 지배를 과거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인 문제로 간주한다. 또한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은 전후의 경제적인 교류를 과거와 단절된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보지만 아사히신문의 시각은 이들 두 신문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 8월 15일자의 사설을 보면 이러한 차이는 보다 분명해진다.

그것은 '대동아공영권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아시아를 침해하고 사람들을 살육하고 강제연행하고 협력을 강제한 군국일본의 일방적인 파탄통고이기도 했던 것일 것이다. 그러한 타국의 희생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도 않고 일본은 어떠한 전후의 출발점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일까. 구일본군, 군속의 전사자 수 약 230만 명, 공습 등으로 죽은 민간인 약 80만 명, 합쳐서 약

310만 명, 63년에 시작한 정부 주최의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추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다. 전사한 조선반도와 타이완 출신의 일본 군인도 그중에 포함되어 있다. 93년의 호스카와 수상 때부터 추도식에 참여하는 역대 수상이 아시아에 대한 가해책임도 언급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그러나 추도식에 흐르는 주선율은 어디까지나 내향적인 자국중심주의이다. 전쟁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약 1조 엔'과 '약 41조 엔'. 전후 일본 정부가 필리핀 등 28개국에 지불한 배상금의 합계와, 일본인 구군인, 군속과 그 유족들에게 지불한 '은급' 등의 누계와의 대비에, 그것은 역력히 드러난다.

위의 사설에서 드러나듯이 아사히신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인식과 그에 대한 반성이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진정한 전후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은 일본이 한국과 아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을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해석했지만, 아사히신문은 그러한 경제지원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금의 차원에서 조명함으로써 차이를 보였다.

V. 결론

이 연구는 한국 관련 내용이 담긴 신문의 사설을 분석함으로써 일본의 언론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폈다. 분석 시기는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는 1965년부터 2007년까지로 삼았다. 1945년이 아니라 1965년을 시발점으로 잡은 것은 196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로 인하여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제 측면에서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해임과 동시에 양국 간의 역사인식에 대한 차이와 갈등이 국가 간에 공식적으로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한 해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언론이라 하면 신문, 방송, 잡지, 그리고 최근의 인터넷 매체에 이르기까지 다루어야 할 폭이 너무나 넓다. 하지만 이 연구는 전통적으로 언론을 대표하고 있고, 또한 한국과는 달리 인터넷 매체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판매부수와 그 영향력에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는 일본의 신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신문의 기사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과 한일관계, 역사문제에 대한 언론의 입장이 간결하고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설을 선택하였다.

일본의 신문 중에서 진보, 우익 그리고 중도 성향을 띠는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각 신문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기에 그다지 본 연구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40여 년에 걸쳐 세 신문의 사설을 전부 수작업으로 확인하여 한국에 관한 부분만을 뽑아내어 분류, 분석한 시도는 이제까지 없었던 것으로 앞으로의 연구에 기초가 될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빈도분석과 신문 간의 논조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접근방법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 한일관계, 역사문제와 같은 심도 깊은 주제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맥락이 어떠한지를 심층적으로 조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시기에 특정 사안에 대한 보도분석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기간 일본 언론이 묘사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분석한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판단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설에 나타난 일본 언론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시대별로 증가와 감소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의 증가가 반드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일본 언론의 관심추이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역사교과서와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같은 역사문제 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었을 때도 사설에서의 한국에 대한 언급은 늘어났고, 서울올림픽,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그리고 한류 붐과 같이 한국에 호감을 갖는 계기가 있을 때에도 사설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은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일본 총리대신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한일간에 쟁점이 되었을 때, 한국에 대한 언급이 신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가령 총리의 신사 참배를 문제삼는 한국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산케이신문은 아사히신문보다 많은 건수의 사설을 보도했다. 반면에 아사히신문은 오히려 한국의 신문보다 더 역사적인 시각의 차원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를 조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의 한국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한류 붐에 대해서도 일본의 언론은 다양한 시각에서 이를 조명했다. 아사히신문은 상호 문화교류의 측면에서 한류를 묘사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산케이신문은 일본이 한국의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하면서 한류의 지속가능성은 한국의 태도에 따라 영향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즉 산케이신문이 위안부문제와 같은 식민지시대의 역사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일본을 비판하는 것을 한류의 지속성과 연관시켜 보도했다는 점은 매우 특이했다.

또한 이 연구는 일본 언론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를 뛰어넘어 일본 언론 자체에 대한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 동일 주제를 다룬 사설을 비교함으로써 각 신문의 논조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가령,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슈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긍정적 논조를, 아사히신문은 부정적 논조를 그리고 요미우리신문은 중립적 논조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 신문의 논조는 기존의 연구가 제시한 결과와 비교해도 일관적이지만, 이를 통해 기존의 결과를 장기간을 대상으로 확인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특히 일부 이슈와 관련하여 진보적인 언론으로 평가되는 아사히신문이 요미우리신문 및 산케이신문보다 과장된 표현을 상대적으로 더 사용했다는 결과는 매우 특이했다.

이 연구는 앞서 언급했듯이 다른 연구를 위해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한일관계사나 한일 간의 정치외교를 분석하는 연구자에게 각 시대별로 가장 문제시되던 쟁점을 이 연구에서 각 신문의 사설에서 주로 다루어지던 안건과 비교함으로써 어떠한 문제는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어떠한 문제는 그렇지 못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사안이라 해도 어느 시기에는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았지만, 특정 시기에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구과정 중에서 수집된 한국과 관련된 사실을 자료집 형태로 만들어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후속 연구는 분석대상과 분석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사설 외에 스트레이트 기사도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일본 언론의 한국 인식뿐 아니라, 일본 언론인이 한국과 한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또한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 참고문헌

- 김정기(2006), 『전후 일본정치와 매스미디어』, 한울아카데미.
- 김춘식(2002), 「한·일 월드컵과 일본 관련 보도 : 2002년 3~5월의 방송 3사 뉴스 분석」, '한일 방송뉴스의 상호보도 비교' 국제세미나 발표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 이숙중(2002), 『전환기의 한일관계』, 세종연구소.
- 오진환(1991), 「일본 언론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신문을 중심으로」, 『언론학보』, 한양대학교.
- 조규철(2004. 1),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한일 커뮤니케이션의 겹」, 『일본학보』, 한국일본학회.
- 한상일·한정선(2006), 『일본, 만화로 제국을 그리다-조선병탄과 시선의 정치』, 일조각.
- 高橋哲哉(2001), 『歴史/修正主義』, 岩波書店.
- 旗田巍(1969), 『日本人の朝鮮觀』, 勁草書房.
- 吉見俊哉(1994), 『メディア時代の文化社會學』, 新曜社.
- 山本武利(1981), 『近代日本の新聞讀者層』, 法政大學出版局.
- 山本武利 編(1994), 『日韓新時代: 韓國人の日本觀』, 同文館出版.
- 西尾幹二 外 編(2002), 『新しい歴史教科書』, 扶桑社.
- 成田龍一(2001), 『「歴史」はいかに語られるか: 1930年代「國民の物語」批判』, 日本放送出版協會.
- 柴山哲也 編著(2004), 『日本のジャーナリズムとは何か』, ミネルヴァ書房.
- 原壽雄(1997), 『ジャーナリズムの思想』, 岩波書店.
- 尹健次 外(2005), 『戦後思想と社會意識』, 岩波書店.
- 鄭大均(1995), 『韓國のイメージ: 戦後日本人の隣國觀』, 中央公論社.
- 井上俊 外 編(1996), 『メディアと情報化の社會學』, 岩波書店.
- 佐藤卓己(2002), 『「キング」の時代: 國民大衆雜誌の公共性』, 岩波書店.
- 佐藤卓己(2003), 『戦後世論のメディア社會學』, 柏書房.
- 川村湊·鄭大均 編(1986), 『韓國という鏡: 戦後世代の見た隣國』, 東洋書院.

- 青木保 外 編(2003), 『メディア：言論と表象の地政學』, 岩波書店.
- 黒田勝弘・市川速水 著(2006), 『朝日vs産経ソウル發-どうするどうなる朝鮮半島』, 朝日新聞社.
- テッサ・モーリススズズキ 著・田代泰子 譯(2004), 『過去は死なない：メディア・記憶・歴史』, 岩波書店.
- 山田昭次(1969), 「自由民権期における興亞論と脱亞論-アジア主義の形成をめぐっ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6.
- 小針進(2005), 「韓國における對日歴史認識問題：焦點/對日歴史認識の諸相」, 『國際問題』(通號 549).
- 初瀬龍平(1984), 「脱亞論再考」, 『近代日本とアジア文化の交流と摩擦』, 東京大學出版會.
- Barne, G.(1993), "History for the Masses." In Jonathan Unger ed., *Using the Past to Serve the Present*, New York : M. E. Sharpe.
- Cohen, J.(1960), A Coefficient of agreement for nominal scal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0(1), 37-46.
- Hein, L. & Selden, M.(2000), *Censoring history : citizenship and memory in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 M. E. Sharpe.
- Iyengar, S.(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rippendorff, K.(1980), *Content analysis :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Beverly Hills, CA : Sage.
- Landy, M.(2001), *The historical film : history and memory in media*, Rutgers University Press.
- Lee, J. B.(1985), *The Political character of the Japanese pres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Marc, D.(1995), *Bonfire of the humanities : television, subliteracy, and long-term memory loss*, Syracuse University Press.
- Rindon, L. G.(1994), *Shadows on the past : studies in the historical fiction film*, Temple University Press.

Wimmer, R. D. and Domminick, J. R.(1994), *Mass media research : An introduction*, Belmont, CA : Wadworth Publishing.



한일 간 역사갈등의 구조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근대국가 성립기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최석완

- I. 머리말
- II. 1950~1960년대의 연구(일본)
- III. 1970~1980년대의 연구(일본)
- IV. 1990~2000년대의 연구(일본)
- V. 1950~2000년대의 연구(한국)
- VI. 갈등의 구조와 해소방안의 모색
- VII. 맺음말



한일 간 역사갈등의 구조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근대국가 성립기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최석완

I. 머리말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일본과 한국 역사학계의 비판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¹⁾ 그러나 대부분의 비판은 역사교과서에 등장하는 왜곡 부분에 대한 지적과 기존의 연구를 염두에 둔 반박에 그치고 있다. 전후 일본 역사학계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역사교과서 문제가 차지하는 위치와 극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본격적인 연구는 드물다. 현재의 비판은 최근의 보수적 연구(비팽창주의론)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종래의 진보적인 연구(팽창주의론)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1)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비판한 연구성과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그 가운데 한국에서 출판된 주요 업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편(2002), 『한중일 역사인식과 일본교과서』, 역사비평사; 이계황 외(2003), 『기억의 전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신철(2007), 『한일 근현대 역사전쟁』, 선인; 한국사연구회·한일관계사학회 편(2008), 『일본역사서의 왜곡과 진실』, 경인문화사; 현대송 편(2008),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나남.

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글에서는 일본의 보수단체가 발행한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일본 역사학계의 어떠한 연구동향 속에서 등장한 것인지,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최근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새로운 역사교과서(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 2001)가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하 교과서의 내용과 이에 대한 한국의 수정요구 및 일본의 검토결과를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²⁾

(예 1)

[건본본의 기술] 일본 정부 내에서는 러시아의 힘이 조선에 미치지 전에 조선을 중립국으로 하는 조약을 각국에 체결하도록 하고, 중립 보장을 위해 일본의 군비를 증강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한국의 수정요구 의견] 일본 정부의 일각에서 약간 논의된 것을 일본의 조선 강압정책을 부정하는 의도로 기술. 일본 군비 증강이 조선의 강제 점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은폐하고, 조선 중립을 위한 것으로 왜곡.

[검토결과] 일본 학계에서는 조선 중립화안이 갑신정변 이후 일본의 대조선 정책 기초의 하나로서 존재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음.

(예 2)

[건본본의 기술] 조공국이 점차 소멸되어가는 것은 황제의 덕이 쇠퇴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화질서 붕괴 위기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에 청은 최후의 유력한 조공국인 조선만은 잃지 않으려고 하여,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하게 되었다.

[한국의 수정요구 의견]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대립을 일면적으로 설명하고 일본이 청을 가상적국으로 한 사실을 왜곡.

2)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수정 요구 사항 및 일본 정부 답변 자료』(비매품), 교육인적자원부, 80~81쪽.

[검토결과] 일본 학계에서는 갑신정변 발발, 친진조약 체결 이후의 일본에
서는 청과 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태도를 내세워왔다는 것이 널
리 인정되고 있음.

[전본본의 기술]은 최근의 보수적 연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한국의 수정요구 의견]은 종래의 진보적 연구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정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검토결과]가 나온 것은 당
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의 수정요구는 당초부터 받아들여지
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문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나 보수적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이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후속으로 평가받는 『일본인의 역
사교과서(日本人の歴史教科書)』(自由社, 2009)의 기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교과
서를 보면, 위의 (예 1) 및 (예 2)와 관련한 기술이 표현상 다소 완화되었을 뿐,
관점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역사교과
서』에 대한 비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말해준다.³⁾ 역사교과서 문제
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글에서는 전후 일본 역사학계에서
통설로 자리 잡은 진보주의 역사학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고 아울러 보수주의

3) 『일본인의 역사교과서』, 163~164쪽. 다만, 일본의 대청 군비확장과 관련하여, “조선
에서 있었던 청조와의 세력 다툼에서 두 차례 패배한 일본은 청과의 전쟁을 예상하여
급속히 군비를 확장한 끝에 거의 대등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라고 쓰고 있다. 이
는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일본의 대청 군비확장에 관한 기술을 완전히 제외시켰던 것
을 감안하면, 한국 및 일본 진보주의 역사학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혹은 일본의 대청 군비확장을 부정할 만한 학문적 성과가 아직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
는 사실을 방증해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역사학의 연구가 점차 이를 극복해가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그 과정에서 종래의 역사교과서와 비교해볼 때, 최근의 두 교과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일본의 조선 중립화 구상과 청의 군비확장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일본의 대청 군비확장에 관한 내용이 빠져버리거나 소략하게 다루어진 배경에는 어떠한 연구 시각의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를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아울러 진보주의 역사학과 보수주의 역사학의 갈등을 초래해온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하겠다.

II. 1950~1960년대의 연구(일본)

이 시기의 연구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주목해야 하는 연구로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와 마쓰시타 요시오[松下芳男]의 연구를⁴⁾ 들 수 있다. 먼저 다보하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일본의 대조선 정책을 설명했다.

임오군란(1882. 7) 직후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외무경의 신증론과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 및 아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강경론이 대립했다. 그러나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이노우에였다. 이노우에는 1882년 10월 이후 조선 독립 원조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의 소극론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적극론을 절충하여, 청과의 협조를 유지하면서 조선의 자주독립을 완성시킨다는 이중의 모순된 정책을 설정하였다.

4) 田保橋潔(1940),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下, 朝鮮總督府中樞院; 松下芳男(1978), 『改訂明治軍制史論』上·下, 圖書刊行會. 이 책은 1956년에 출판된 것을 재간한 것이다.

1884년 청불전쟁의 영향으로 청의 종주권이 약화되자 이노우에와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 공사는 조선의 자주독립을 완성시킬 기회라면서, 청과의 마찰도 각오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토와 요시다 기요나리[吉田清成]는 정책의 전환에는 찬성하지만 청과의 충돌은 회피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독립의 기운을 촉진시키되 청과의 충돌은 회피한다는 절충이 이루어졌고, 급진개화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이노우에는 모든 조치를 다케조에 공사에게 일임했다. 다케조에는 1884년 10월 귀임한 후 갑신정변(1884. 12) 기도문제에 대해 청훈했으나 이토, 요시다, 이노우에는 정변 기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정변 후 이노우에는 청의 호위병 파견에 대하여 정부에 호위병의 파견을 요청하는 한편, 청과의 개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청조 종속문제의 선결을 주장했다. 이토 등은 종속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생각이며, 충돌은 회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성조약(1885. 1) 후, 이토는 이홍장(李鴻章)과 천진조약(1885. 4)을 체결하였다. 담판을 앞두고 강경론이 비등했지만 이토는 이노우에와 함께 평화적 해결을 지향했다. 천진조약은 형식상 청일 양국이 평등하게 조선에 파병할 수 있는 권리를 승인한 것이었다.

한편 1885년 5월 한러밀약사건이 터지자 이노우에는 러시아의 조선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 이홍장에게 「조선외무판법 8개조」(1885. 6)를⁵⁾ 제안하였다. 이것은 조선을 청일 양국의 보호 아래 두자는 제안이었다. 여기에는 조선이 청의 보호국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었다.

천진조약 이후 이토와 이노우에는 열강과의 불평등조약을 개정하는 문제

5) 「조선외무판법 8개조」는 보통 「조선변법 8개조(朝鮮弁法八カ條)」로 불리지만, 이 글에서는 원 사료의 표현에 따랐다.

에 집중했다. 이 때문에 대조선 정책은 소극적이 되었으며, 청과의 협조를 유지하는 자세를 나타내게 되었다.

한편 마쓰시타의 연구는 군사정책 면에서 일본이 팽창주의였음을 확인시켜준다. 1880년 11월 야마가타가 천황에게 제출한 「인방병비략(隣邦兵備略)」은 6) 일본의 군비가 대내적인 것에서 대외적인 것으로 전환하였으며, 아울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대외 전쟁도 불사한다는 사상으로 충만한 의견서였다. 임오군란은 청을 가상적국으로 하는 대규모 군비확장에 동인을 제공한 사건이었다. 일본은 마쓰카타 마사요시[松方正義] 대장경의 승인과 천황의 칙허하에 증세를 통해 군비를 확충해간다는 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했다. 당시 등장한 군비확장과 관련한 의견서 등에는 국가주의와 군국주의 사상이 넘쳐났다. 1885년 군비축소론이 고개를 들기도 하였으나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육군경의 반발에 부딪혀 사라졌으며, 천황은 1887년 해방비를 하사하기도 했다. 메이지 10년대를 통해 일본의 군제는 프랑스식에서 독일식으로 전환해 갔으며, 1889년에는 징병령의 개정이 단행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일본의 군제가 군국주의로 물들어갔음을 의미했다.

다보하시와 마쓰시타의 연구는 전후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진보주의 역사학의 팽창주의론과 보수주의 역사학의 비팽창주의론은 이노우에와 이토의 주도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강은 양책을 넘나드는 이들의 자세를 각각의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그리하여 팽창주의론은 이들의 온건론을 일시적 전술에 지나지 않는 점진적 침략주의로 평가하였고, 반면 비팽창주의론은 비침략주의

6) 6책으로 구성된 「인방병비략」은 야마가타가 가쓰라 다로[桂太郎], 오가와 마타지[小川又次] 등의 장교를 파견하여 청의 정세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간하게 한 것으로, 여기에는 청의 병비에 관한 내용이 상술되어 있다. 한편 야마가타는 이를 천황에 상주할 때,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 「진인방병비략표(進隣邦兵備略表)」를 함께 제출했다.



로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팽창주의론은 임오군란, 갑신정변을 계기로 본격화된 대청 군비확장을 근거로 청일전쟁을 준비된 전쟁으로 보았고, 비팽창주의론은 군비확장정책의 파탄을 강조함으로써 우발적 전쟁으로 평가하였다. 전후의 성과라면 특히 최근에 들어와 조선 중립화 구상의 실체를 밝혀내려는 작업이 본격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전후의 연구 가운데 먼저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등장한 것들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 시기 연구의 특징은 한마디로 팽창주의론이 통설적 위치를 점유했던 것이라 하겠다. 비팽창주의론도 등장했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미약하였다.

먼저 이노우에 기요시(井上清)의 연구가 주목된다.⁷⁾ 이노우에는 1878년 참모본부의 설치에 통수부(統帥部)의 독립을 의미하며, 동시에 일본군이 내란 진압용에서 대외 전쟁용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노우에는 「인방병비략」의 내용을 청일 대립의 관점에서 파악했으며, 임오군란 직후 장래의 청일전쟁에 대비한 군비확장을 추진한 사실, 갑신정변 후 군비부족을 이유로 청과의 무력충돌을 회피한 후 군비확장에 더욱 매진한 사실 등을 지적했다. 또 1886년에서 1889년에 걸쳐 이루어진 전면적인 군제개혁으로 대륙작전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노우에는 팽창주의론의 관점에서, 청일전쟁을 천황제 절대주의가 계획하고 준비한 전쟁으로 보았다.

후지와라 아키라(藤原彰)와⁸⁾ 우메타니 노보루(梅溪昇)도⁹⁾ 이노우에의 연구와

7) 井上清(1975), 『日本の軍國主義』(新版) I・II, 現代評論社. 이 책은 1953년에 출판된 것을 재간한 것이다.

8) 藤原彰(1987), 『日本軍事史』上, 日本評論社. 이 책은 1961년에 출판된 것을 재간한 것이다.

9) 梅溪昇(1953), 「日本側からみた日清戦争」, 『史林』 35-4 ; 梅溪昇(1962), 「日本側からみた日清戦争—補論」, 『歴史教育』 10-2 ; 梅溪昇(1984), 『日本近代化の諸相』, 思文閣





동일한 시각을 나타냈다. 다만 우메타니는 일본의 갑신정변 기도설을 주장하는 한편 야마가타의 「외교정략론」(1890. 3)을 다음과 같이 이해했다. 즉, 이는 러시아에 대한 대책이라는 관점에서 이익선인 조선을 청일 양국이 공동으로 보호하는 문제를 고려한 것이지만, 결국은 조선을 둘러싼 전쟁의 위기가 목전에 임박했음을 역설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1885년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가 참모본부 차장에 부임한 이후 대청 군사작전이 주도면밀하게 검토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청일전쟁을 준비된 전쟁으로 규정하였다.

다나카 나오키치(田中直吉)에게서도 팽창주의론의 관점이 뚜렷하게 확인된다.¹⁰⁾ 다나카는 이노우에 외무경의 소극책을 청에 대한 군비와 재정의 열세를 고려한 일시적 전략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임오군란은 군비확장의 동인이 되었으며, 갑신정변은 이노우에와 이토가 다케조에 공사를 이용하여 일으킨 사건이었다. 정변 후 이노우에는 청과의 무력충돌에 대비해 호위병의 파견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이토는 조선 독립론의 유지와 함께 충돌을 회피해야 한다는 방침을 확인하였다. 이토는 천진 담판에 임하여 강경한 자세를 드러내기도 했으나 이노우에 외무경이 이를 억제하였다. 천진조약은 청일 양국의 공동 철병과 대등한 파병권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외교적 승리였다.

야마베 겐타로(山邊健太郎)는¹¹⁾ 임오군란 발발 직후 강경론을 주장하는 야마가타와 온건론을 내세우는 이노우에 외무경이 대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갑신

出版.

- 10) 田中直吉(1957), 「日鮮關係の一斷面－京城壬午の變」, 日本國際政治學會 編, 『日本外交史研究－明治時代』, 秋期特別號, 有斐閣; 田中直吉(1957), 「朝鮮をめぐる國際葛藤的一幕－京城甲申の變」, 『法學志林』 55-2.
- 11) 山邊健太郎(1960), 「日清天津條約について」, 『アジア研究』 7-2; 山邊健太郎(1966), 『日本の韓國併合』, 太平出版社; 山邊健太郎(1966), 『日韓併合小史』, 岩波新書.





정변은 정부와 민간이 일체가 되어 기도한 사건이었으며, 천진조약은 청의 우위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조약상으로는 청일 양국의 평형을 규정한 불안정한 것이었다. 「조선외무판법 8개조」에는 러시아의 조선 진출과 청의 종주권 강화라는 사태를 고려하여, 청에 양보하면서도 일본의 지위만큼은 유지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팽택주(彭澤周)는¹²⁾ 임오군란 직후의 강경론과 온건론의 갈등은 책략에서의 대립일 뿐, 팽창이라는 기본방침에서는 일치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갑신정변은 이노우에 외무경의 묵인 또는 지시하에 다케조에 공사가 독단적으로 일으킨 사건으로 보았다. 팽택주는 일본 정부와 민간의 협작을 부정했으나 양자의 조선 지배 전략에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카쓰카 아키라(中塚明)도 팽창주의론에 입각해서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을 검토했다.¹³⁾ 일본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이 발발했을 때 청일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군사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까닭에 강경한 방침을 관철시키지 못한 채, 군비확장에 매달리게 되었다. 일본의 군비는 「진인방병비략표」를 계기로 대외용으로 전환하였으며, 아마가타의 「육해군 확장에 관한 재정 상신(陸海軍擴張に關する財政上申)」(1882. 8)은 대륙작전용 군비확장 계획을 수립시킨 결정적 계기였다. 1886년에서 1889년 사이에 이루어진 군사개혁은 청일전쟁에 대비한 군비의 질과 양을 강화시켰다. 군부에는 군비확장에 반대하는 월요회(月曜會)와 같은 모임도 있었으나 전제천황제와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아니었

12) 彭澤周(1960), 「清佛戰爭期における日本の對韓政策」, 『史林』 43-3; 彭澤周(1962), 「朝鮮問題をめぐる自由黨とフランス」, 『歴史學研究』 265; 彭澤周(1962), 「フェリー内閣と日本」, 『史林』 45-3; 彭澤周(1963), 「甲申事變をめぐる井上外務卿とフランス公使」, 『歴史學研究』 282; 彭澤周(1969), 『明治初期日韓清關係の研究』, 塙書房.

13) 中塚明(1968), 『日清戰爭の研究』, 青木書店.





다. 오히려 참모본부를 중심으로 「청국정토책안(淸國征討策案)」(1887)과 같은 구체적인 대청 작전구상이 등장하였다. 군비확장의 성격은 방어적이 아닌, 청과의 전쟁을 목표로 하는 침략적인 것이었다. 나카쓰카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조선을 제압하는 것이 전제천황제의 일관된 자세였으며, 이를 상징하는 것이 이익선 조선의 지배를 주장한 「외교정략론」이었다고 강조하였다.

사토 쇼이치로(佐藤昌一郎)¹⁴ 및 오이시 가이치로(大石嘉一郎)¹⁵ 1880년대에 전개된 마쓰카타(松方)재정을 군비확장재정으로 평가함으로써 팽창주의론을 뒷받침하였다. 먼저 사토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마쓰카타는 군비확장을 위해 정화의 축적과 지폐정리를 급속하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1883년부터 본격화된 군비부(軍備部)¹⁶ 방식의 군비확장은 1885년에 이르러 군사비 증액 요구와 지폐정리에 따른 증세 수입의 감소로 인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마쓰카타는 긴축재정을 강조하면서도 1886년 5월 군사 공채의 모집을 건의함으로써 군비확장의 재편, 강화가 가능해졌다. 마쓰카타는 한때 군비확장의 중지를 요구하는 대장성의 부국우선론에 가담하기도 했으나 이는 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 마쓰카타는 군비확장재정을 관철시켰다.

한편 오이시는 마쓰카타재정의 특징을 재정의 군사경찰화 및 지폐정리의 원수에서 찾았다. 또 군비확장은 조선의 지배를 놓고 벌어질 청일전쟁을 상징

14) 佐藤昌一郎(1963), 「「松方財政」と軍擴財政の展開」, 『商學論集』 32-3; 佐藤昌一郎(1963), 「松方財政論の再檢討」, 『經濟學年誌』 創刊號; 佐藤昌一郎(1964), 「企業勃興期における軍擴財政の展開」, 『歷史學研究』 295.

15) 大石嘉一郎(1989), 『自由民權と大隈・松方財政』, 東京大學出版會. 이 책은 1960년대에 발표된 논문을 수록한 것이다.

16) 증세를 통해 얻은 재원 중 군비확장에 투입하고 남은 잉여분을 군비부에 축적해두었다가 부족한 연도에 지출하여 군비확장에 충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 시기에는 팽창주의론에 입각한 연구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반면 비팽창주의론의 입장을 취하는 연구의 수는 많지 않은데, 그중에 주목되는 것이 야스오카 아키오[安岡昭男]의 연구이다.¹⁷⁾

야스오카는 이노우에 외무경의 외교를 점진적 침략주의로 규정한 팽창주의론의 견해를 정면에서 반박하였다. 야스오카에 따르면, 이노우에의 외교는 청과의 협조를 유지하면서 조선의 자주독립을 진전시키려는 모순된 것으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청일전쟁은 피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열강과 동등한 입장에서 근린국가를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 간의 제휴를 통해 열강의 야심을 막아내려는 것이었다. 야스오카는 이러한 시각에서 갑신정변 기도설을 부정했고, 「조선외무판법 8개조」를 청일 협조노선의 연장으로 보았다. 「청국정토책안」의 청일 대립적 성격은 인정했지만, 「진인방병비략표」에 대해서는 청일협조에 주안을 둔 러시아 대책으로 파악했다. 또 일본의 군비확장을 수세적·방어적인 것으로 규정한 반면 일본에 대한 청의 군비확장 및 무력시위를 강조하는 자세를 나타냈다. 나아가서 러일전쟁 때까지의 가상적국은 러시아였으며, 공세로 군사작전을 전환한 것도 러일전쟁 이후의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스오카는 조선 중립화 구상과 관련한 동향도 강조하였다.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의 「조선전략의견안(朝鮮政略意見案)」(1882. 9)은 영미독청일에 의한 조선의 공동 보호와 중립화를 제안한 것으로 보

17) 安岡昭男(1965), 「明治前半期における井上馨の東亞外交政略」, 『法政史學』 17; 安岡昭男(1967), 「井上馨論」, 日本國際政治學會編, 『國際政治』 33; 安岡昭男(1969), 「日清戰爭前の對清論策」, 『軍事史學』 4-4; 安岡昭男(1995), 『明治前期日清交渉史研究』, 巖南堂書店; 安岡昭男(1998), 『明治前期大陸政策史の研究』, 法政大學出版局. 이 책들은 1950년대 이후 발표된 논문을 수록한 것이다.



았고, 「외교전략론」은 이익선인 조선을 청일이 공동으로 보호하자는 중립공동보호책이었다고 강조했다.

III. 1970~1980년대의 연구(일본)

이 시기의 연구는 전반적으로 앞 시기의 연구를 계승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다만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접어들면서, 통설적 팽창주의론을 정면에서 반박하는 비팽창주의론이 활발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먼저 팽창주의론을 지지하는 후지무라 미치오(藤村道生)의 연구가¹⁸⁾ 주목된다. 후지무라는 이 시기의 동아시아 정책을 전략적 청일협조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진인방병비략표」는 강병을 중시하는 군사우선사상의 표현이었으며, 대청 무력대결구상은 유구(琉球)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을 가상적국으로 하는 군비확장정책을 추진했으나, 군비확장이 완성될 때까지는 청과의 협조를 유지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달성한다는 모순된 정책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고, 협조를 위해 중주권을 묵인하는 것도 불가피했다. 이 때문에 이노우에, 아마가타, 이토 등 정부 내의 의견도 일치되지 않았다.

이토는 자유당과 급진개화파의 모의를 간파하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와 다케조에 공사를 귀임시켰다. 그러나 프랑스

18) 藤村道生(1971), 「琉球分島交渉と對アジア政策の轉換」, 『歴史學研究』 373; 藤村道生(1973), 『日清戰爭』, 岩波書店; 信夫清三郎 編(1974), 『日本外交史』 I, 毎日新聞社, 3장~5장; 藤村道生(1995), 『日清戰爭前後のアジア政策』, 岩波書店. 이 책은 1970년대 이후 발표된 논문을 수록한 것이다.

의 대만 영유를 견제하기 위해 정변기도방침을 철회했다. 한편 친진조약은 조선에서의 청일 양국의 권력의 평균을 실현한 것이었고, 「조선외무판법 8개 조」는 청의 종주권을 묵인하고 조선을 청일의 공동 보호 아래 두려는 청일 협조정책의 산물이었다. 「외교정략론」은 이익선인 조선을 방호하기 위해서라면 군사력의 행사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아울러 영리 대립 속에서 조선을 방위하려면 영독과의 연합 및 청일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청일 공동의 조선보호주구상(朝鮮保護主構想)을 피력한 것이다. 그러나 그 목적은 조선의 확보에 있었다.

친진조약 이후 외교 당국은 영국의 청국 지지를 고려하여 조약개정이 달성 될 때까지는 청일전쟁을 고려하지 않았다. 청과 협조하여 조선의 내정을 개혁 하려는 움직임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군부는 러일전쟁에 앞서 전략의 요충인 조선을 확보하기 위해 청일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팽창주의론의 입장은 시바하라 다쿠지[芝原拓自]의 연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¹⁹⁾ 시바하라는 「진인방병비략표」를 청일 대립의 관점에서 파악하였고, 「육해군 확장에 관한 재정 상신」을 군비확장의 발단이 된 의견서로 평가하였다. 다만 군비 부족으로 인해서 당분간 청과의 무력충돌을 회피하는 범위에서 열강의 협조를 얻어 조선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공인화시키는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조선정략의견안」은 러시아의 남하와 청의 간섭 그리고 미영독의 이권 획득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동아시아의 정세 및 일본의 국력을 고려한 현실적 방책이었다. 갑신정변은 정부와 민간이 일체가 되어 일

19) 芝原拓自(1981), 『日本近代化の世界史的位置』, 岩波書店; 芝原拓自(1988), 『日本近代思想大系 對外觀』, 岩波書店.

오킨 사건이었으며, 「조선외무판법 8개조」는 청의 세력을 배제하려는 정책이 중요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일본의 정책은 「외교정략론」에 나타나듯이, 이익선 조선을 방호하는 데 필요한 군비확장과 애국교육의 강화를 기본으로 한 것이었다.

시바하라는 이노우에와 이토가 열강의 세계 분할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소형의 제국주의를 건설하려 했으며, 여기에는 조선 침략과 동양 맹주를 지향하는 제국주의적 논리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청일전쟁 전에 등장하는 청일 협조주의는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팽창주의론의 입장은 다음의 연구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먼저 나카무라 나오요시[中村尙美]는²⁰⁾ 「진인방병비략표」, 「조선정략의견안」, 「외교정략론」 등의 성격을 조선 침략 내지는 청일 대립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나카지마 쇼조[中島昭三]도²¹⁾ 「조선정략의견안」과 「외교정략론」을 팽창주의론의 입장에서 해석하였다. 아울러 나카지마는 일본의 갑신정변 기도설을 지지했으며, 정변 직후 이노우에 고와시가 청과의 국지전을 주장한 사실을 강조했다. 반노준지[坂野潤治]와²²⁾ 도야마 시게키[遠山茂樹]도²³⁾ 임오군란 이후의 정책을 전략적 청일협조와 팽창주의론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아울러 군비확장을 강조함으로써 청일전쟁을 준비된 전쟁으로 규정하였다.

쓰다 다카코[津田多賀子]는²⁴⁾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이 온건적이었던 배경에

- 20) 中村尙美(1991), 『明治國家の形成とアジア』, 龍溪書舎. 이 책은 1970년대 이후 발표된 논문을 수록한 것이다.
- 21) 中島昭三(1985), 「井上毅と朝鮮問題」, 『國學院法政論叢』 6.
- 22) 坂野潤治(1977), 『明治・思想の實像』, 創文社; 坂野潤治(1987), 「壬午・甲申事變期の外交と内政」, 大久保利謙 他編, 『日本歴史大系』 4, 山川出版社.
- 23) 遠山茂樹(1975), 『日本近代史』, 岩波全書.
- 24) 津田多賀子(1982), 「1880年代における日本政府の東アジア政策展開と列強」, 『史學

열강에 대한 경계가 있었음을 규명하였다. 「조선정략의견안」은 러시아의 침략과 청의 간섭을 막기 위해 조선을 중립화하자는 제안이었지만 현실성은 없었다. 임오군란 후의 군비확장은 청뿐만 아니라 열강에 대한 대항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후의 대조선 정책은 청의 종주권을 부정한다는 일관된 방침 외에는, 장기적 전망을 결여한 불안정한 것이었다. 쓰다는 갑신정변 기도설을 지지했고, 정변 후 이노우에 외무경이 청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러밀약사건과 거문도사건은 대조선 정책을 동요시켰다면서, 「조선외무판법 8개조」를 청의 지도적 권리를 인정한 조선 독립론의 방기로 보았다. 그러나 이후 일본은 영리 대립을 이용하여 열강과 동등한 입장에서 청과 조선에 침략자로서 임하는 국가노선을 선택했고, 그 결과 군비확장도 침략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외전용으로 재편되었다고 주장했다.

오하타 도쿠시로[大畑篤四郎]는 팽창주의론의 입장에서 서 있으면서도 야스오카 등의 연구를 의식하여 다소 신중한 판단을 내렸다.²⁵⁾ 이노우에 외무경의 온건한 자세를 강조하였으며, 갑신정변과 관련한 적극적 자세를 부정했다. 「조선외무판법 8개조」는 청일 공동의 조선 보호책이었으며, 「외교정략론」은 조선 중립화 구상이자 이익선 조선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군비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서라고 이해하였다. 오하타는 임오군란 이후 군비확장을 추진한 점은 인정했으나 청일전쟁까지의 대외정책은 청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신중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시기에는 대체로 팽창주의론의 입장을 취하는 연구가 주류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팽창주의론에 입각하여 팽창주의론을 비판하는 연구도 198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雜誌』 91-12.

25) 大畑篤四郎(1983), 『日本外交政策の史的展開』, 成文堂.



먼저 주목되는 것이 무로야마 요시마사(室山義正)의 연구이다.²⁶⁾ 무로야마는 마쓰카타재정의 초점을 군비확장재정으로 규정해온 종래의 통설을 반박하였다. 임오군란 후 대청 군비확장에 착수했지만, 그 실체는 증세 범위 내로 군비확장을 제한하는 군비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폐정리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시키려는 것이었다. 더구나 군부의 군사비 증액 요구와 디플레이션에 따른 증세 수입의 감소 때문에 군비확장의 파탄은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1886년에 들어와 군비부가 폐지되었다. 그 후 군비확장은 해군 공채의 모집을 통해 추진되었으나 정확의 관점에서 강하게 규제되었다. 요컨대 마쓰카타의 정책 이념인 건전재정노선이 관철되었다는 것이다.

오야마 아즈사(大山粹)는²⁷⁾ 비팽창주의론의 관점에서 이노우에 외무경의 외교를 청일 양국의 우호 친선을 신중하게 모색한 외교였다고 주장했다. 임오군란 이후 이노우에는 청과의 협조를 중시하여 조선의 독립을 양성하는 정책에 반대했으며, 종주국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청에 맞기려 했다고 보았다. 또 군비확장은 청에 대한 대항이었으나 가상적국을 러시아에서 청으로 변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갑신정변과 관련해서도 이노우에를 적극적인 정변기도자로 평가한 연구를 근거가 없는 낭설이라고 비판했다. 정변 후 이노우에가 호위병을 대동한 점을 지적하고는 있으나, 일관되게 프랑스와의 동맹에 부정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평화주의자였음을 부각시켰다. 이노우에가 친진조약 체결 당시 이토의 강경론을 억제한 것이나 「조선외무판법 8개조」를 청에 제안한 것은 청과의 우호 친선을 중시한 외교였다고 보았다.

26) 室山義正(1981), 「松方財政の展開と軍備擴張－松方財政の再檢討(上)(下)」, 『金融經濟』 190・191; 室山義正(1984), 『近代日本の軍事と財政』, 東京大學出版會.

27) 大山粹(1989), 「朝鮮事變と井上外交」, 『政治經濟史學』 277.





노세 가즈노리(野瀬和紀)는²⁸⁾ 야스오카의 연구를 수용하여, 이노우에의 외교를 청일협조에 중점을 둔 비팽창주의로 규정하였다. 이노우에가 프랑스와의 동맹을 거절한 점, 다케조에가 조선 주재 청국 관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근거로, 갑신정변 기도설은 다보하시의 추론을 맹신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IV. 1990~2000년대의 연구(일본)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팽창주의론에 대한 본격적인 반론이 등장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다카하시 히데나오(高橋秀直)의 연구이다.²⁹⁾ 다카하시는 팽창주의론을 청일전쟁이라는 결과에 얽매인 성급한 결론이라고 비판하고, 정부의 대외정책을 그때그때의 상황 속에서 재조명한 후 이를 다시 장기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였다. 그리하여 청일전쟁 전의 동아시아 정책을 청일협조에 중점을 둔 비팽창주의로 규정하였다. 다카하시는 특히 온건파, 긴축파의 대내외 정책 주도과 장기적 전망의 청일 협조주의를 강조했다.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임오군란 후 이노우에는 강경론을 억제했으며, 조선 독립 지원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청조 종속관계의 승인을 전제로 한 불간섭주의를 내세웠다. 다

28) 野瀬和紀(1977), 「甲申事變の研究(一)－清佛戰爭と日本外交」, 『朝鮮學報』 82.

29) 高橋秀直(1988), 「一八八〇年代の朝鮮問題と國際政治」, 『史林』 71-6; 高橋秀直(1989), 「壬午事變後の朝鮮問題」, 『史林』 72-5; 高橋秀直(1989), 「形成期明治國家と朝鮮問題」, 『史學雜誌』 98-3; 高橋秀直(1989), 「壬午事變と明治政府」, 『歷史學研究』 601; 高橋秀直(1990), 「松方財政期の軍擴問題」, 『社會經濟史學』 56-1; 高橋秀直(1990), 「西南戰爭後の軍備政策」, 『創立六十周年記念論文集』, 神戸商科大学; 高橋秀直(1995), 『日清戰爭への道』, 東京創元社.





만 강경론의 반발을 고려하여, 청과의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조선의 자주독립을 꾀한다는 모순된 정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갑신정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등, 청일협조를 중시했다. 그 후 거문도사건을 계기로 청일협조를 더욱 강화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영리 대립에 대항하려는 정책을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조선 속국론의 승인을 의미하는 「조선외무판법 8개조」를 제안하는 등, 일본 스스로가 조선 침략을 억제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외교정략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의견서의 핵심은 이익선 조선 보호론이 아니라 청일협조를 전제로 한 조선 중립화 구상에 있었다.

한편 군비확장정책에 관해서는 무로야마의 연구를 확대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군축과에 대한 긴축파의 승리, 즉 강병보다 부국을 중시하는 긴축재정노선이 관철되었다고 강조했다. 군비확장정책이 추진된 것은 인정하지만, 1885년에 들어와 재정위기에 봉착하면서 긴축파의 반격이 개시되었고, 이 때문에 기존의 군비확장정책이 파탄되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온건파와 긴축파는 조선을 지배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청일협조를 통해 동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일전쟁은 준비된 전쟁이 아니라 청일 협조노선의 단절을 의미하는 우발적 전쟁이라는 것이 다카하시의 주장이다.

오사와 히로아키[大澤博明]도 비평창주의론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정책을 분석하였다.³⁰⁾ 동아시아 정책은 임오군란 이후 야마가타의 조선 독립 원조론을

30) 大澤博明(1991), 「天津條約體制の形成と崩壊(一)(二)」, 『社會科學研究』 43-3·4; 大澤博明(1995), 「明治外交と朝鮮永世中立化構想の展開」, 『熊本法學』 83; 大澤博明(1998), 「朝鮮永世中立化構想と近代日本外交」, 『靑丘學術論集』 12; 大澤博明(1998), 「明治前期の朝鮮政策と統合力」, 『年報政治學』; 大澤博明(2001), 『近代日本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 노선은 천진조약의 체결과 거문도점령사건을 계기로 붕괴되었다. 천진조약은 청일 양국의 조선 불가침 및 영토 보전을 약속한 것이었으며, 영국의 거문도 점령은 청의 조선 속국론에 대한 승인을 전제로 한 사건이었다. 아마다타에 대비되는 것이 이노우에 외무경이다. 이노우에는 조선 침략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시킨다고 보고 친영반러, 청일협조 그리고 방어목적의 군사노선을 근간으로 하는 조선 현상유지론을 주장하였다. 이는 아마다타의 정책이 붕괴되면서 유력해졌다. 이노우에는 청의 중주권 강화를 의미하는 「조선외무관법 8개조」를 제안하는가 하면, 청과의 대립을 의도하지 않는 군부의 온건파와 연대하면서 군비확장파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외무대신이 이노우에의 정책에 반발하여 미국 및 러시아와의 협조를 주장했으나 곧 한계에 봉착하였고, 결국 제1차 아마다타 내각이 등장하면서 이노우에의 노선으로 복귀하였다. 「외교정략론」은 영독청일의 연합을 전제로 한 조선 침략의 부정이었다.

한편 오사와는 「조선정략의견안」의 조선 중립화 구상에 주목하였다. 이것은 조선 중립의 열국 공동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만약 이것이 실현되었다면 조선에 대한 침략을 억제하는 기능을 발휘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또 조선 중립화 구상은 공식 정책으로 채택되어 추진된 것으로 보았다. 오사와에 따르면, 「조선정략의견안」은 청일협조를 통해 열강의 아시아 침략에 대항한다는 「진인방병비략표」의 과제가 구체화된 것이며, 조선의 중립문제에 대한 이노우에 외무경의 관심 표명과 「조선외무관법 8개조」는 중립화 구상의 실현을 위한 방안이었다. 또 「외교정략론」도 조선의 중립을 공동으로 보장하자는

의東アジア政策と軍事』, 成文堂; 大澤博明(2004~2005), 「日清天津條約——一八八五年の研究(一)(二)」, 『熊本法學』 106 · 107.

제안이였다. 그 후 조선 중립화 구상은 청일 공동의 조선 내정개혁론으로 이행했으나 청과의 합의 도출에 실패함으로써 청일전쟁에 이르게 되었다.

오사와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메이지 전기 일본이 일관된 침략주의였다는 전통적인 학설은 선입견에 사로잡힌 허구에 불과할 것이다. 오히려 이노우에와 이토가 주도한 동아시아 정책의 본질은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청영일동맹과 청의 조선 속국론에 대한 승인을 바탕으로 한 조선 침략의 부정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누즈카 다카아키^[大塚孝明]와³¹⁾ 이토 유키오^[伊藤之雄]는³²⁾ 야스오카, 다카하시, 오사와 등의 비팽창주의론을 지지하였다. 이누즈카에 의하면, 이노우에는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열강의 진출에 대항하려 하였으며, 이는 「조선정략의견안」의 조선 중립화 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또 이노우에는 갑신정변을 기도한 일이 없다. 천진조약은 조선 불가침 및 영토 보전에 합의한 것이며, 「조선외무관범 8개조」는 청일협조의 강화를 위해 제안한 것이었다.

한편 팽창주의론의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비팽창주의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경향도 보인다. 하라다 게이이치^[原田敬一],³³⁾ 오에 시노부^[大江志乃夫],³⁴⁾ 나가이 히데오^[永井秀夫]³⁵⁾ 등의 연구가 그것이다. 하라다는 오사와가 주장하듯이, 천진조약은 조선 불가침 및 영토 보전을 보장한 것으로 보았다. 오에는 뚜렷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 채 다카하시의 연구에 의존하면서, 조선 독립 원

31) 大塚孝明(1996~1997), 「井上馨の外交思想(I)(II)」, 『政治經濟史學』 366·367.

32) 伊藤之雄(1994), 「日清戰前の中國・朝鮮認識の形成と外交論」, 古屋哲夫 編, 『近代日本のアジア認識』,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33) 原田敬一(2008), 『日清戰爭』, 吉川弘文館.

34) 大江志乃夫(1998), 『東アジア史としての日清戰爭』, 立風書房.

35) 永井秀夫(1990), 『明治國家形成期の外政と内政』, 北海道大學圖書刊行會.

조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아마가타와 이노우에가 대립한 내용, 거문도사건을 계기로 청일 대항에서 영리 갈등에 대한 대항 쪽으로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진 사정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나가이도 다카하시의 연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여, 임오군란 이후 설정된 대청 무력대결노선이 청일전쟁까지 일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또 거문도사건은 청일대항노선에서 청일협조노선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청의 역할이 우세해지면서 일본의 소서구주의가 후퇴한 점을 고려할 경우, 군국주의 외교라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나가이는 조선 중립화 구상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려는 일관된 방침이 존재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조선의 중립화 문제를 다룬 논고가 많아졌다. 하세가와 나오코[長谷川直子]의 연구도³⁶⁾ 그중의 하나이다. 하세가와는 「조선정략의견안」의 중립화 구상에 대해, 이는 청의 종주권이 강화된 시점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일시적으로 내세운 전략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조선의 실질적인 독립을 확보함과 동시에 청의 간섭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세가와는 이러한 전략적 청일 협조주의가 「외교정략론」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다만, 청일전쟁까지 청과의 대결을 지향하는 지속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았다.

오카모토 다카시[岡本隆司]는 조선 중립화 구상의 성격과 변용을 추적하였다.³⁷⁾ 「조선정략의견안」은 청과의 관계를 결렬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조선에 대한 청의 독점적 보호와 간섭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중립

36) 長谷川直子(1994), 「壬午軍亂後の日本の朝鮮中立化構想」,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2; 長谷川直子(1995), 「近代日本における東アジア世界再編の論理」, 『總合研究』 3.

37) 岡本隆司(2006), 「『朝鮮中立化構想』の一考察」, 『洛北史學』 8.

화 구상이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채용되어 적극적으로 추진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천진조약은 청의 종주권을 공동화시키고 조선을 중립화하기 위한 교두보로서의 성격을 내포하며, 「조선외무관법 8개조」는 청일이 공동으로 조선을 보호함으로써 러시아의 조선 보호를 저지하려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외교정략론」도 조선의 중립문제가 관심사였음을 인정하였다. 오카모토는 조선 중립화 구상이 실현되었다면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낮았다면서 실현되지 못한 원인을 조선과 청의 반대에서 찾았다.

한편 비팽창주의론의 확산과 더불어 「외교정략론」에 대한 재평가 작업도 활발해졌다. 구로노 다에루[黒野耐]는³⁸⁾ 팽창주의론의 관점에서 「외교정략론」을 분석하였으나, 나가무라 도모유키[中村朋之]는³⁹⁾ 비팽창주의론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나가무라는 「외교정략론」의 이익선 개념이 영토적 야심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절대적 조건은 조선의 중립에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후쿠치 준[福地淳]은⁴⁰⁾ 「진인방병비략표」, 「외교정략론」 등을 분석한 후, 청일 간의 제휴와 조선의 중립화를 모색하던 야마가타의 노력은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추구하는 청의 행동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였고, 이는 곧 청일전쟁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주목되는 것은 가토 요코[加藤陽子]의 연구이다.⁴¹⁾ 가토는 야마가타가 빈 대학의 로렌츠 폰 슈타인의 이익선 개념에 접한 것이 「외교정략론」

38) 黒野耐(1995), 「明治期における日本軍の戦略思想の變遷」, 『政治經濟史學』 349.

39) 中村朋之(2005), 「明治期日本における國防戰略轉換の背景」, 『日本大學大學院總合社會情報研究科紀要』 5; 中村朋之(2006), 「山縣有朋の「利益線」概念」, 『軍事史學』 165.

40) 福地淳(2008), 「山縣有朋の國防構想の變遷」, 伊藤隆 編, 『山縣有朋と近代日本』, 吉川弘文館.

41) 加藤陽子(2002), 『戰爭の日本近現代史』, 講談社.



탄생의 배경이었음을 밝혀내고, 여기에는 이익선 조선의 중립을 무력으로 실현한다는 발상이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팽창주의론의 관점에서 비팽창주의론을 비판한 연구도 존재한다. 다다 요시오[多田嘉夫]는⁴²⁾ 「조선정략의견안」의 중립화 구상이란 청의 종주국으로서의 지배력을 공동화시키고 아울러 조선을 대륙 침략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야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케다 노리타카[池田憲隆]는⁴³⁾ 마쓰카타재정이 군비확장재정이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야마무로, 다카하시, 오사와 등의 연구를 비판했다. 이케다는 군비확장정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마쓰카타재정의 긴축재정으로서의 성질이 약화된 점, 지폐정리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오히려 해군 공채의 발행을 통해 군비확장이 존속될 수 있었던 점, 긴축과가 해군 억제에 실패함으로써 해군의 군비확장 규모가 점차 비대해진 점 등에 주목했다.

운노 후쿠주[海野福壽]의⁴⁴⁾ 모리야마 시게노리[森山茂徳]도⁴⁵⁾ 비팽창주의론을 비판했다. 운노는 갑신정변 기도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선외무판법 8개조」에는 종주권에 편승해서 조선에 대한 개입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야마가타가 이익선 조선의 확보를 위한 군비확장을 주장한 것은 청일전쟁을 예고하는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모리야마는 다

42) 多田嘉夫(1991~1994), 「明治前期朝鮮問題と井上毅(一)~(四)」, 『國學院法研論叢』 18-21.

43) 池田憲隆(2001), 「松方財政前半期における海軍軍備擴張の展開」, 『人文社會論叢』 6, 社會科學編; 池田憲隆(2002), 「1883年海軍軍擴前後期の艦船整備と横須賀造船所」, 『人文社會論叢』 7, 社會科學編; 池田憲隆(2003~2004), 「軍備部方式の破綻と海軍軍擴計畫の再編(上)(中)(下)」, 『人文社會論叢』 9-11, 社會科學編.

44) 海野福壽(1995), 『韓國併合』, 岩波新書.

45) 森山茂徳(1985), 「明治政治史における朝鮮問題」, 坂野潤治 編, 『日本近代史における轉換期の研究』, 山川出版社; 森山茂徳(1992), 『日韓併合』, 吉川弘文館.



카하시가 야마가타를 조선 독립 원조론자로, 이노우에를 청조 종속관계 승인론자로 대비시킨 점을 비판했다. 양자의 대립은 청의 간섭 가능성을 낮게 볼 것인지 혹은 높게 볼 것인지를 놓고 벌어진 갈등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외무판법 8개조」는 청의 우위를 인식한 상태에서 일본의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노우에의 의도는 청의 간섭을 차단하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외교정략론」은 이익선인 조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의 확보를 역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석완은⁴⁶⁾ 다카하시와 오사와의 연구가 사료를 해독하거나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노우에 외무경은 조선의 독립체제를 보전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이를 위해 야마가타나 사쓰마파의 군부와 연대하여 대청 개정을 모색한 일이 있음을 밝혀냈다. 또 갑신정변 기도설을 뒷받침하는 사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일본의 의도는 조선의 집권세력을 압박하여 보다 많은 이권을 획득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까닭에 급진개화파의 정변 기도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선외무판법 8개조」는 조선에 대한 간섭권을 청으로부터 획득하려는 책략이었으며, 「외교정략론」의 조선 중립화 구상 및 청일 공동의 조선 보호주 구상은 일본 단독의 보호권을 획득하려는 야심에서 나온 일시적 전략이었다고 평가하였다.

V. 1950~2000년대의 연구(한국)

한국 역사학계에서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예는 많지

46) 崔碩莞(1997), 『日淸戰爭への道程』, 吉川弘文館.

않다. 연구 시각은 팽창주의론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요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신기석,⁴⁷⁾ 신국주,⁴⁸⁾ 백종기,⁴⁹⁾ 김경창,⁵⁰⁾ 성황용,⁵¹⁾ 김용구⁵²⁾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임오군란 이후 이노우에 외무경을 비롯한 온건파의 우세와 군비확장의 추진, 일본 정부의 갑신정변 기도 그리고 정변 후 이노우에가 정부에 대해 호위병의 파견과 조선 독립론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요구한 사실 등을 지적하였다. 천진조약은 청일의 대등권을 보장한 일본의 외교적 승리로 보았다. 그 밖에 신기석은 「조선외무판법 8개조」에 대해, 청의 우월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양보이지만, 일본 세력을 만회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국주와 백종기는 천진조약에 대해, 청과 일본의 조선 침략을 일시 보류시키거나 장래의 청일 충돌에 대비한 일시적 휴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성황용은 청불전쟁을 계기로 적극정책을 추진한 인물을 이노우에가 아닌 이토로 보았다. 김용구는 이노우에 고와시나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의 조선 중립화론을 조선 독립론의 아류로 규정했다. 청의 진출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열강의 도움을 받아 조선이 청의 속방으로 전락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술책이

47) 신기석(1959), 「갑신정변과 한청일 외교관계」, 『國際法學會論叢』 4-1 ; 신기석(1966), 「안전보장과 한말 정국」, 『國際法學會論叢』 11-1.

48) 신국주(1965), 『한국근대정치외교사』, 탐구당 ; 신국주(1985), 「갑신정변에 대한 재평가 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갑신정변연구』, 평민사.

49) 백종기(1977), 『근대한일교섭사연구』, 정음사.

50) 김경창(1974), 「갑신정변 후의 한일, 청일 교섭 시말」, 『경희대학교논문집』 8 ; 송암 김경창박사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1985), 『송암김경창박사화갑기념논문집』, 대왕사.

51) 성황용(2005), 『근대동양외교사』, 명지사.

52) 김용구(2004),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도서출판 윈.



었다는 것이다. 「조선외무판법 8개조」는 청일 양국의 조선 공동 통치를 제안한 것으로 평가했다.

신기석 등의 연구시각은 배성동,⁵³⁾ 신용하,⁵⁴⁾ 박은숙,⁵⁵⁾ 최덕수⁵⁶⁾ 등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⁵⁷⁾

정재정은⁵⁸⁾ 「조선외무판법 8개조」가 청일 공동의 조선 내정 개혁을 제안한 것으로, 이는 조선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였으며, 또 러시아의 위협 앞에 청 세력의 배제라는 일본 외교의 기본방침조차 포기하는 일이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노우에 외무경은 18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열강 간의 대립을 역으로 이용하여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한편, 군비확장을 대규모로 추진하여 구미제국주의 국가의 대열에 동참하는 길을 열어갔다고 주장했다.

최석완은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⁵⁹⁾ 일본은 청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를 조약개정을 통해 자신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팽창주의 정책을 전개했다. 「외교정략론」은 단기적으로 러시아의 조선 침략을 차단하고, 조선 속국론을 지지하는 국제여론을 분산시키며, 조선의 내정 불안을 해소하려는 다각적인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에 대한 패권 확보의 방안 및 절차를 설파한 것으로, 일본 단

53) 배성동(1975), 「한일관계와 일본국내정치의 전개-임오사변과 갑신정변을 중심으로」, 『논문집』 2,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논문집.

54) 신용하(2000), 『초기 개화사상과 갑신정변 연구』, 지식산업사.

55) 박은숙(2005), 『갑신정변연구』, 역사비평사.

56) 최덕수(2004), 『개항과 조일관계-상호인식과 정책』, 고려대학교출판부.

57)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1993), 『한국외교사 I』, 집문당.

58) 정재정(1989), 「井上馨-명치정부에서의 역할과 조선침략의 실천」, 『國史館論叢』 1.

59) 최석완(1998), 「일본의 근대화와 동아시아질서의 재편문제」, 『日本歷史研究』 7; 최석완(1998), 「송방재정기의 육해군 확장문제」, 『中央史論』 10·11합집; 최석완(1999), 「일본 정부의 동아시아질서 재편정책과 청일전쟁」, 『東洋史學研究』 65.



독의 조선 보호주 구상을 전망하는 것이었다. 한편 임오군란 전후 추진된 군비확장정책은 단순히 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구 열강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군비를 갖추려는 것이었다. 그 후 군비확장정책은 18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영청연합군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전환되었다. 그 과정에서 긴축파는 군부의 대규모 군비확장 요구를 억제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단순한 군축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목적은 군의 정예화를 통해 영국 또는 러시아와의 동맹에 대응할 수 있는 대륙작전용 군비를 갖추려는 데 있었다. 한편 이노우에 외무경은 동아시아를 둘러싼 열강과의 식민지 경쟁에 직접 참여할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최문형은⁶⁰⁾ 이노우에 외무경이 조선의 독립이나 중립을 보장하려 한 이유는 청의 종주권을 부정함으로써 조선 침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친진조약은 청의 종주권을 견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승리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조선외무판법 8개조」는 청의 종주권을 묵인하고 조선을 청일이 보호함으로써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일시적 전술이었다. 「외교정략론」은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력 사용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청일협조의 표방은 일본의 적이 러시아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다양한 채널을 통해 등장한 조선 중립화 구상에 관한 연구도 있다. 다만 그 시각은 비평창주의론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서중석은⁶¹⁾ 임오군란 직후 『호치신문(報知新聞)』이 주장한 열국 공동의 조선 보호론, 다케조에

60) 최문형(2001), 『한국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지식산업사; 최문형(2007),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침략』, 지식산업사.

61) 서중석(1965), 「근대국동국제관계와 한국영세중립국론에 대한 연구」, 『論文集』 4, 경희대학교.

귀임 당시 드러난 이노우에 외무경의 조선 영세중립화 구상, 부들리의 조선 영세중립국론에 대한 이노우에 외무경의 소극적 찬성, 청국 주재 영국 공사 파크스와 일본 공사 에노모토가 제안한 청일 공동의 조선 보호론 및 이에 대한 이노우에 외무경의 반대 등을 분석한 후, 일본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총괄하였다. 일본이 조선의 중립화에 찬동하는 의향을 보인 것은 조선에서의 정치적 후퇴를 감안하여, 조선이 타국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일본이 조선 지배의 야망을 방기하고 진심으로 조선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공동 보호하려 한 일은 없다는 것이다.

권영배외⁶²⁾ 박희호도⁶³⁾ 서증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견해를 밝혔다. 권영배는 일본의 조선 중립화론이 대청 군비 부족을 고려하여 침략적 야심을 감추고 청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했고, 박희호는 청조 종속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며 침략정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비나타 스미오도 조선 중립화론은 조선에 대한 청의 간섭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았다.⁶⁴⁾

VI. 갈등의 구조와 해소방안의 모색

1980년대 중반 이후 팽창주의론에 비해 비팽창주의론의 영향력이 확대되

- 62) 권영배(1992), 「한말 조선에 대한 중립화 논의와 그 성격」, 『역사교육논집』 17.
- 63) 박희호(1996), 「일본인이 제기한 1880년대의 한국중립화론」, 『동국사학』 30 ; 박희호(1998), 「1880·90년대의 조선중립화론」, 『동북아』 7.
- 64) 大日方純夫(2009), 「청일전쟁 전후 일본 정치에서의 동아시아 질서 구상」, 왕현종 외,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 전략』, 동북아역사재단.

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팽창주의론과 비팽창주의론의 공방이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양자는 상대의 연구방법론이나 사료 인용 등에 관한 철저한 검증을 생략한 채,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 강화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양자의 갈등이 쉽사리 해소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이하에서는 몇 가지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사료 인용 태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하겠다.

첫 번째로 일본 정부의 갑신정변 기도설에 관한 문제이다. 갑신정변 기도설은 주로 팽창주의론에 의해 주장되어왔다. 그러나 갑신정변 기도설은 다보바시의 연구에서 보았듯이, 애초부터 사료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약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가 다케조에 공사에게 부여한 훈령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전해주는 사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당시 일본 정부의 의도를 유추할 수 있는 사료로는 다케조에 공사가 귀임 후 일본 정부와 주고받은 공적 문서인 외교문서기⁶⁵⁾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일본 정부가 다케조에 공사에게 부여한 훈령의 내용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다. 다케조에는 갑신정변을 지원하려는 듯한 태도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하려는 상호 모순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신정변 기도설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유당사(自由黨史)』⁶⁶⁾나 『갑신일록(甲申日錄)』⁶⁷⁾과 같은 사적 사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일본 정부 혹은 다케조에 공사와의 접촉을 통해 느낀 점을 정리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갑신정변 기도설을 지지해줄 수 있는 결정적인 사료는 될 수 없다. 이들 외에 갑신정변 기도설을 지탱해주는 주요 사료로 주목받아온 것으로는 이노우

65) 金正明 編(1996), 『日韓外交資料集成』, 巖南堂書店, 3권 3~7쪽 및 7권 145~173쪽.
 66) 板垣退助 監修(1992), 『自由黨史』 下, 岩波書店.
 67) 韓國學文獻研究所 編(1979), 『金玉均全集』, 亞細亞文化社.

에 가쿠고로의 회고담과 서간이 있다. 이노우에 가쿠고로의 회고담과 서간을 처음 소개한 것은 아마베로, 현재 서간은 『일한외교자료집성(日韓外交資料集成)』과 『이노우에가오루 관계문서(井上馨關係文書)』에도⁶⁸⁾ 수록되어 있다. 아마베는 이들 사료를 이용하여 이노우에 가쿠고로가 이노우에 외무경으로부터 약간의 자금과 함께 갑신정변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조선으로 건너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점차 아마베의 사료 이용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노우에 가쿠고로가 이노우에 외무경에게 보낸 서간은 아마베가 추정하듯이 1883년에 작성된 것이 아니며, 『이노우에가오루 관계문서』에서 추정하는 1884년의 것도 아닌, 1885년의 것임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이노우에가쿠고로선생전(井上角五郎先生傳)』⁶⁹⁾ 등에서 확인되듯이, 이노우에 외무경이 이노우에 가쿠고로에게 지원한 자금 및 지시는 『한성순보(漢城旬報)』 발간 사업과 관련한 것이었다. 이처럼 갑신정변 기도설은 일본 정부의 침략성을 비판하기 위한 주요 학설로 주장, 강조되어왔지만 실은 아직도 사료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은 부정확한 학설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 하겠다.

비평창주의론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갑신정변 기도설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노우에 외무경은 임오군란 이후 청과의 협조를 증시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자세는 갑신정변 전후에도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에노모토다케아키 관계문서(榎本武揚關係文書)』에⁷⁰⁾ 수록된 다케조에의 서간을 발굴하여, 다케조에에게 부여된 훈령의 내용이 갑신정변 기도와 직접적으로

68) 4월 6일자 이노우에 가쿠고로가 이노우에 외무경에게 보낸 서간. 金正明 編(1996), 앞의 책, 3권 466~467쪽, 國立國會圖書館憲政資料室.

69) 井上角五郎先生傳記編纂會 編(1934), 『井上角五郎先生傳』, 井上角五郎先生傳記編纂會.

70) 國立國會圖書館憲政資料室.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본다면, 현재까지 반복 강조되어온 학설의 경우 오히려 가장 기초적인 사료 검증에 불철저한 점이 있으며, 아울러 새로운 사료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연구방법론의 측면에서도 일본 정부의 대조선 정책을 주로 급진개화파와의 관련 속에서 논하는 태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집권민씨파를 비롯한 여타 세력과의 관련에도 주목하면서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일본 정부의 조선 중립화 구상에 대한 평가문제이다. 이 문제는 최근에 비팽창주의론에 의해 적극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조선정략의견안」과 「외교정략론」에 주목하였다. 먼저 「조선정략의견안」에는 청일협조를 기초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려는 아시아연대사상이 작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선 중립화 구상이 실현되었다면 아시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일본의 조선 침략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서 조선 중립화 구상이 정부의 정책으로 자리 잡아 추진된 사실을 밝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노우에 고와시와 야마가타가 조선 중립화 문제를 논의한 사실, 다케조에 공사와 멜렌도르프가 청일 공동의 조선 보호문제를 논의한 사실, 이노우에 외무경이 조선 중립화에 관심을 표명한 사실 등을 근거로, 대조선 정책의 초점은 조선의 중립화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천진조약과 「조선외무판법 8개조」를 재해석하고, 이들은 조선 중립화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지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청일 공동의 조선 보호구상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조선 중립화 구상은 팽창주의론은 물론 비팽창주의론도 지적하고 있듯이, 청과 조선 그리고 일본의 내부 사정을 고려할 경우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또 아직까지는 이 구상이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확정되어 추진

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사료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비팽창주의론은 「조선정략의견안」의 문구 자체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비판한 한국의 수정요구는 타당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팽창주의론의 「조선정략의견안」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이들은 조선 중립화 구상을 일시적 전략으로 평가하였다. 여기에는 청의 종주권을 억제함으로써 일본의 조선 침략을 원활히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팽창주의론은 국제정세의 변동과 이노우에 고와시의 동아시아 정략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조선 중립화 구상의 성격을 파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다음으로 「외교정략론」은 이익선 조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군비확장을 촉구한 팽창주의적인 의견서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외교정략론」의 전체 내용을 고려할 때, 애초부터 반박을 당할 여지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익선 조선 방어를 위해서도 영독청일 4개국 공동의 조선 중립화 구상 및 청일 공동의 조선 보호주 구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팽창주의론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외교정략론」의 본질이 청일 협조를 바탕으로 한 조선 중립화 구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논쟁은 문구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실제 「외교정략론」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정략론」을 군사전략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 「외교정략론」이 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하는 작업 등이 활성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 밖에 조선 속국론에 대한 국제여론의 추이와 야마가타의 동아시아 정략 속에서 차지하는 「외교정략론」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일본 단독의 조선 보호권 지향을 읽어내려는 작업이 등장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다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조선 중립화 구상이 일본

정부에서 실제로 논의되었던 것인지, 논의되었다면 그 실체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밝혀줄 만한 보다 구체적인 사료를 발굴해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선전략의견안」, 「외교전략론」의 문구에 매달리기보다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시야에 넣은 상태에서 조선 중립화 구상의 성격에 접근하려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세 번째로, 이노우에 외무경의 외교를 전략적 수준을 넘어선 항상적 청일 협조주의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팽창주의론은 이노우에의 외교를 온건한 성격의 점진적 침략주의로 평가해왔다. 이 때문에 이노우에가 갑신정변을 기도한 흔적이 있으며 정변 직후에는 대청 강경론을 주장한 일 있다는 다보바시 등의 지적은 '온건론자 이노우에'라는 평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오히려 청일협조적 성격의 「조선외무관법 8개조」를 크게 고려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노우에에 대한 평가는 철저한 검증을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아직 충분한 사료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팽창주의론이 이노우에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해온 사료는 공적 문서인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를 제외하면, 『세가이이노우에공전(世外井上公傳)』이나⁷¹⁾ 『이와쿠라공실기(岩倉公實記)』⁷²⁾ 등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비팽창주의론은 이상과 같은 팽창주의론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이들은 이노우에의 온건론이야말로 점진적 침략주의가 아니라 청일협조를 중시하고 나아가 청조 종속관계를 승인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유지하려는 비팽창주의라고 규정했다. 그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기존

71) 井上馨傳記編纂會 編(1968), 『世外井上公傳』 3, 原書房.

72) 岩倉公舊跡保存會 編(1927), 『岩倉公實記』 下, 岩倉公舊跡保存會.

의 사료에 대한 적극적인 재해석이라 할 수 있다.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청불전쟁 관련 사료를 활용하여 이노우에가 갑신정변을 기도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궁내청 서릉부의 『메이지15년조선사건[明治十五年朝鮮事件]』과 국립국회도서관헌정자료실의 『산조가문서(三條家文書)』에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활용하여 임오군란 이후 취한 온건론의 실체가 청조 종속관계의 승인을 의미하는 수준의 것이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나아가서 이를 바탕으로 갑신정변 직후 이노우에의 강경론을 지탱해온 『일본외교문서』의 의미를 정반대로 해석하였고, 「조선외무판법 8개조」를 청조 종속관계의 승인으로 규정하였다. 그 밖에도 『이토히로부미관계문서[伊藤博文關係文書]』와⁷³⁾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된 문서를 활용하여, 이노우에가 군비확장에 반대하는 긴축론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조선 지배가 일본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앞으로 이노우에에 대한 평가는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함께 특히 비팽창주의론의 연구를 검증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비팽창주의론에 의해 활용되고 있는 이노우에의 훈령에는⁷⁴⁾ 열강에 대한 국가적 체면을 고려하여 조선의 도서를 점령하려는 침략적 태도가 선명히 드러나 있다. 이와쿠라에게 보낸 이노우에의 서간에는⁷⁵⁾ 청조 종속관계에 대한 전면적 승인이 아닌 부분적 묵인만을 의도하는 태도가 확인된다. 갑신정변 직후의 의견서인 「청국교섭심득사[淸國交涉心得伺]」에서는⁷⁶⁾ 조선의 독립문제를 해결하려는 강경한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팽창주의론은 이러한 사실

73) 伊藤博文關係文書研究會 編(1973), 『伊藤博文關係文書』 1, 塙書房.

74) 1882년 8월 27일자 花房義質에게 보내는 井上馨의 훈령, 『明治十五年朝鮮事件』.

75) 1882년 10월 29일자 岩倉具視에게 보내는 井上馨의 서간, 『岩倉具視文書』 362.

76) 『三條家文書』 書類 三四-18.

들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조선외무판법 8개조」에 대한 평가도 문구 자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이홍장과 이노우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에 초점을 맞춘다면, 청에 대한 양보나 혹은 청조 종속관계에 대한 승인으로 파악하는 시각이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로는 군비확장의 성격과 관련한 문제이다. 팽창주의론은 대체로 해군보다도 육군의 군비확장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 마쓰카타의 재정 관련 의견서를⁷⁷⁾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재정 부족 속에서 군비확장을 지속하려는 자세를 추출해내려고 노력했다. 그 밖에 「진인방병비략표」의 성격을 청일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읽어냈다. 반면 비팽창주의론은 육군의 군비확장이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것으로서 영국이나 러시아와의 동맹에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정예화였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들은 해군 내부에 존재하던 방어적 군비파와 이노우에 외무경과의 연합을 강조했다. 따라서 마쓰카타의 의견서에 대해서도 건전 재정을 강조하는 자세를 부각시켰다. 이러한 관점은 「진인방병비략표」를 청일협조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자세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팽창주의론의 경우에는 적어도 최초의 대규모 군비확장 목표가 중요했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간과하는 측면이 있으며, 해군의 군비확장문제에 대한 천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약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비팽창주의론의 경우에는 마쓰카타 긴축재정 속에서도 군비확장이 동시에 추진된 사실, 최초의 대규모 군비확장정책을 수립시킨 세력 속에 마쓰카타와 이노우에 외무경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또 해군의 '수세적' 군비확장이 결코 대외전쟁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는 비판 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77) 『松方正義關係文書』, 國立國會圖書館憲政資料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 주의해야 할 문제는 팽창주의론과 비팽창주의론의 논쟁이 지나치게 청일전쟁을 의식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아닐까 한다. 청일전쟁을 상징한 대규모 군비확장을 입증함으로써 팽창주의를 강조하려 하거나 그러한 군비확장을 억제하는 모습 속에서 비팽창주의를 이끌어 내려는 자세는 당시 일본의 군사정책을 통일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진인방병비략표」, 「육해군 확장에 관한 재정 상신」에는 열강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군비 확보의 의지가 들어 있다는 사실, 긴축파가 추구한 것은 단순한 군비 축소가 아닌 열강과의 동맹을 감당할 수 있는 군의 정예화에 있었다는 사실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갑신정변 이후의 군비확장문제는 영청연합군의 탄생에 대비한 체제 구축에 있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군사전략에 초점을 맞추되 동아시아 세계에서 가용될 수 있는 서구 열강의 군사력을 시야에 넣은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VII. 맺음말

이상에서 일본 역사학계와 한국 역사학계에서 진행되어온 연구동향에 관해 살펴보았다.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을 팽창주의로 규정한 진보주의 역사학의 팽창주의론은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쳐 통설적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서 보수주의 역사학의 반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현재는 팽창주의론의 입장에서 서 있던 연구가 비팽창주의론의 일부 내용을 수용할 만큼, 그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의 연구는 팽창주의론과 대동소이한 경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연구를 제외하면,

비팽창주의론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비판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의 이면에는 바로 이상과 같은 양국 역사학계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들 역사교과서는 조선 중립화 구상, 청일협조론, 대청 군비확장의 파탄, 부국 중심의 국가노선 등을 강조하는 비팽창주의론의 연구성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편 역사교과서에는 청의 군비 증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의 역사학계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진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역사교과서 집필자들의 보수적 성향이 크게 작용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문제는 팽창주의론과 비팽창주의론 모두가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시키는데 집중할 뿐, 상대의 연구방법론이나 사료의 취사선택에 대해,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려는 자세가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다. 진보주의 역사학과 보수주의 역사학, 그리고 한일 간의 역사 갈등을 해소하고 아울러 교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논리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외 사정에 따라 변화하는 일본의 대외정책을 통일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동시에 기존 사료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새로운 사료의 발굴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의 대외정책을 청일전쟁을 통한 조선 지배의 추구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하려는 고정된 자세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메이지유신에서 청일전쟁에 이르는 기간은 서구형 근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던 시기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약개정을 통해 열강과의 불평등관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고, 동시에 청이나 조선과는 일본을 우위에 두는 불평등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청일전쟁을 통한 조선 지배의 실현만이 동아시아의 패자 일본을 전망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

니었던 것이다. 전쟁이라는 수단은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존재하였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조약개정이야말로 동아시아의 패자 일본의 등장을 전망하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 추진되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사료〉

『明治十五年朝鮮事件』.

『三條家文書』.

『松方正義關係文書』.

『岩倉具視文書』.

『井上馨關係文書』.

『榎本武揚關係文書』.

『漢城旬報』.

金正明 編(1996), 『日韓外交資料集成』, 巖南堂書店.

岩倉公舊跡保存會 編(1927), 『岩倉公實記』下, 岩倉公舊跡保存會.

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

伊藤博文關係文書研究會 編(1973), 『伊藤博文關係文書』1, 塙書房.

井上角五郎先生傳記編纂會 編(1934), 『井上角五郎先生傳』, 井上角五郎先生傳記編纂會.

井上馨傳記編纂會 編(1968), 『世外井上公傳』3, 原書房.

板垣退助 監修(1992), 『自由黨史』下, 岩波書店.

韓國學文獻研究所 編(1979), 『金玉均全集』, 亞細亞文化社.

〈단행본〉

加藤陽子(2002), 『戰爭の日本近現代史』, 講談社.

高橋秀直(1995), 『日清戰爭への道』, 東京創元社.

김용구(2004),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도서출판 윈.

大江志乃夫(1998), 『東アジア史としての日清戰爭』, 立風書房.

大石嘉一郎(1989), 『自由民權と大隈・松方財政』, 東京大學出版會.

大畑篤四郎(1983), 『日本外交政策の史的展開』, 成文堂.

大澤博明(2001), 『近代日本の東アジア政策と軍事』, 成文堂.

藤原彰(1987), 『日本軍事史』上, 日本評論社.

- 藤村道生(1973), 『日清戦争』, 岩波書店.
- 藤村道生(1995), 『日清戦争前後のアジア政策』, 岩波書店.
- 梅溪昇(1984), 『日本近代化の諸相』, 思文閣出版.
- 박은숙(2005), 『갑신정변연구』, 역사비평사.
- 백종기(1977), 『근대한일교섭사연구』, 정음사.
- 山邊健太郎(1966), 『日本の韓国併合』, 太平出版社.
- 山邊健太郎(1966), 『日韓併合小史』, 岩波新書.
- 森山茂徳(1992), 『日韓併合』, 吉川弘文館.
- 西尾幹二 他(2001), 『新しい歴史教科書』, 扶桑社.
- 성황용(2005), 『근대동양외교사』, 명지사.
- 松下芳男(1978), 『改訂明治軍制史論』上・下, 圖書刊行會.
- 송암김경창박사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1985), 『송암김경창박사화갑기념논문집』, 대왕사.
- 신국주(1965), 『한국근대정치외교사』, 탐구당.
- 信夫清三郎 編(1974), 『日本外交史』I, 毎日新聞社.
- 신용하(2000), 『초기 개화사상과 갑신정변 연구』, 지식산업사.
- 室山義正(1984), 『近代日本の軍事と財政』, 東京大學出版會.
- 安岡昭男(1995), 『明治前期中日交渉史研究』, 巖南堂書店.
- 安岡昭男(1998), 『明治前期大陸政策史の研究』, 法政大學出版局.
- 永井秀夫(1990), 『明治國家形成期の外政と内政』, 北海道大學圖書刊行會.
- 遠山茂樹(1975), 『日本近代史』, 岩波全書.
- 原田敬一(2008), 『日清戦争』, 吉川弘文館.
- 이계황 외(2003), 『기억의 전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신철(2007), 『한일 근현대 역사논쟁』, 선인.
-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편(2002), 『한중일 역사인식과 일본교과서』, 역사비평사.
-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수정 요구 사항 및 일본 정부 답변 자료』(비매품), 교육인적자원부.
- 日本人の歴史教科書編集委員会(2009), 『日本人の歴史教科書』, 自由社.
- 田保橋潔(1940),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下, 朝鮮總督府中樞院.

- 井上清(1975), 『日本の軍國主義』 I・II (新版), 現代評論社.
- 中村尙美(1991), 『明治國家の形成とアジア』, 龍溪書舍.
- 中塚明(1968), 『日清戰爭の研究』, 青木書店.
- 芝原拓自(1981), 『日本近代化の世界史的位罝』, 岩波書店.
- 芝原拓自(1988), 『日本近代思想大系 對外觀』, 岩波書店.
- 최덕수(2004), 『개항과 조일관계 - 상호인식과 정책』, 고려대학교출판부.
- 최문형(2001), 『한국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지식산업사.
- 최문형(2007),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침략』, 지식산업사.
- 崔碩堯(1997), 『日清戰爭への道程』, 吉川弘文館.
- 坂野潤治(1977), 『明治・思想の實像』, 創文社.
- 彭弼周(1969), 『明治初期日韓清關係の研究』, 塙書房.
- 한국사연구회·한일관계사학회 편(2008), 『일본역사서의 왜곡과 진실』, 경인문화사.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1993), 『한국외교사 I』, 집문당.
- 海野福壽(1995), 『韓國併合』, 岩波新書.
- 현대송 편(2008),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나남.

〈논문〉

- 岡本隆司(2006), 「朝鮮中立化構想の一考察」, 『洛北史學』 8.
- 犬塚孝明(1996~1997), 「井上馨の外交思想(I)(II)」, 『政治經濟史學』 366·367.
- 高橋秀直(1988), 「一八八〇年代の朝鮮問題と國際政治」, 『史林』 71-6.
- 高橋秀直(1989), 「壬午事變後の朝鮮問題」, 『史林』 72-5.
- 高橋秀直(1989), 「形成期明治國家と朝鮮問題」, 『史學雜誌』 98-3.
- 高橋秀直(1989), 「壬午事變と明治政府」, 『歴史學研究』 601.
- 高橋秀直(1990), 「松方財政期の軍擴問題」, 『社會經濟史學』 56-1.
- 高橋秀直(1990), 「西南戰爭後の軍備政策」, 『創立六十周年記念論文集』, 神戸商科大学.
- 권영배(1992), 「한말 조선에 대한 중립화 논의와 그 성격」, 『역사교육논집』 17.
- 김경창(1974), 「갑신변란 후의 한일, 청일 교섭 시말」, 『경희대학교논문집』 8.
- 多田嘉夫(1991~1994), 「明治前期朝鮮問題と井上毅(一)~(四)」, 『國學院法研論叢』

18-21.

- 大山梓(1989), 「朝鮮事變と井上外交」, 『政治經濟史學』 277.
- 大日方純夫(2009), 「청일전쟁 전후 일본 정치에서의 동아시아 질서 구상」, 왕현중 외,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 전략』, 동북아역사재단.
- 大澤博明(1991), 「天津條約體制の形成と崩壊(一)(二)」, 『社會科學研究』 43-3·4.
- 大澤博明(1995), 「明治外交と朝鮮永世中立化構想の展開」, 『熊本法學』 83.
- 大澤博明(1998), 「朝鮮永世中立化構想と近代日本外交」, 『青丘學術論集』 12.
- 大澤博明(1998), 「明治前期の朝鮮政策と統合力」, 『年報政治學』.
- 大澤博明(2004~2005), 「日清天津條約——一八八五年の研究(一)(二)」, 『熊本法學』 106·107.
- 藤村道生(1971), 「琉球分島交渉と對アジア政策の轉換」, 『歷史學研究』 373.
- 梅溪昇(1953), 「日本側からみた日清戰爭」, 『史林』 35-4.
- 梅溪昇(1962), 「日本側からみた日清戰爭—補論」, 『歷史教育』 10-2.
- 박희호(1996), 「일본인이 제기한 1880년대의 한국중립화론」, 『동국사학』 30.
- 박희호(1998), 「1880·90년대의 조선중립화론」, 『동북아』 7.
- 배성동(1975), 「한일관계와 일본국내정치 전개—임오사변과 갑신정변을 중심으로」, 『논문집』 2,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논문집.
- 福地惇(2008), 「山縣有朋の國防構想の變遷」, 伊藤隆 編, 『山縣有朋と近代日本』, 吉川弘文館.
- 山邊健太郎(1960), 「日清天津條約について」, 『アジア研究』 7-2.
- 森山茂徳(1985), 「明治政治史における朝鮮問題」, 坂野潤治 編, 『日本近代史における轉換期の研究』, 山川出版社.
- 서중석(1965), 「근대국동국제관계와 한국영세중립국론에 대한 연구」, 『論文集』 4, 경희대학교.
- 신국주(1985), 「갑신정변에 대한 재평가 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갑신정변연구』, 평민사.
- 신기석(1959), 「갑신정변과 한청일 외교관계」, 『國際法學會論叢』 4-1.
- 신기석(1966), 「안전보장과 한말 정국」, 『國際法學會論叢』 11-1.
- 室山義正(1981), 「松方財政の展開と軍備擴張—松方財政の再檢討(上)(下)」, 『金融經濟』 190·191.

- 安岡昭男(1965), 「明治前半期における井上馨の東亞外交政略」, 『法政史學』 17.
- 安岡昭男(1967), 「井上馨論」, 日本國際政治學會 編, 『國際政治』 33.
- 安岡昭男(1969), 「日清戰爭前の對清論策」, 『軍事史學』 4-4.
- 野瀬和紀(1977), 「甲申事變の研究(一)-清佛戰爭と日本外交」, 『朝鮮學報』 82.
- 伊藤之雄(1994), 「日清戰前の中國・朝鮮認識の形成と外交論」, 古屋哲夫 編, 『近代日本のアジア認識』,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 長谷川直子(1994), 「壬午軍亂後の日本の朝鮮中立化構想」,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2.
- 長谷川直子(1995), 「近代日本における東アジア世界再編の論理」, 『総合研究』 3.
- 田中直吉(1957), 「日鮮關係の一斷面-京城壬午の變」, 日本國際政治學會 編, 『日本外交史研究-明治時代』, 秋期特別號, 有斐閣.
- 田中直吉(1957), 「朝鮮をめぐる國際葛藤的一幕-京城甲申の變」, 『法學志林』 55-2.
- 정재정(1989), 「井上馨-명치정부에서의 역할과 조선침략의 실천」, 『國史館論叢』 1.
- 佐藤昌一郎(1963), 「松方財政と軍擴財政の展開」, 『商學論集』 32-3.
- 佐藤昌一郎(1963), 「松方財政論の再檢討」, 『經濟學年誌』 創刊號.
- 佐藤昌一郎(1964), 「企業勃興期における軍擴財政の展開」, 『歴史學研究』 295.
- 中島昭三(1985), 「井上毅と朝鮮問題」, 『國學院法政論叢』 6.
- 中村朋之(2005), 「明治期日本における國防戰略轉換の背景」, 『日本大學大學院總合社會情報研究科紀要』 5.
- 中村朋之(2006), 「山縣有朋の「利益線」概念」, 『軍事史學』 165.
- 池田憲隆(2001), 「松方財政前半期における海軍軍備擴張の展開」, 『人文社會論叢』 6, 社會科學編.
- 池田憲隆(2002), 「1883年海軍軍擴前後期の艦船整備と横須賀造船所」, 『人文社會論叢』 7, 社會科學編.
- 池田憲隆(2003~2004), 「軍備部方式の破綻と海軍軍擴計畫の再編(上)(中)(下)」, 『人文社會論叢』 9-11, 社會科學編.
- 津田多賀子(1982), 「1880年代における日本政府の東アジア政策展開と列強」, 『史學雜誌』 91-12.
- 최석완(1998), 「일본의 근대화와 동아시아질서의 재편문제」, 『日本歷史研究』 7.
- 최석완(1998), 「송방재정기의 육해군 확장문제」, 『中央史論』 10・11합집.

최석완(1999), 「일본 정부의 동아시아질서 재편정책과 청일전쟁」, 『東洋史學研究』 65.

坂野潤治(1987), 「壬午·甲申事變期の外交と内政」, 大久保利謙 他編, 『日本歴史大系』 4, 山川出版社.

彭澤周(1960), 「清佛戰爭期における日本の對韓政策」, 『史林』 43-3.

彭澤周(1962), 「朝鮮問題をめぐる自由黨とフランス」, 『歴史學研究』 265.

彭澤周(1962), 「フェリー内閣と日本」, 『史林』 45-3.

彭澤周(1963), 「甲申事變をめぐる井上外務卿とフランス公使」, 『歴史學研究』 282.

黒野耐(1995), 「明治期における日本軍の戰略思想の變遷」, 『政治經濟史學』 349.

미국 내 한인들의 동북아시아 역사 갈등 대응

강원대학교 류승렬

- I. 머리말
- II. 미국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 III. '요코 이야기' 교재 퇴출
- IV. 독도 지명 표기 변경 저지
- V. 역사 현안 대응의 특징
- VI. 맺음말



미국 내 한인들의 동북아시아 역사 갈등 대응

강원대학교 류승렬

I. 머리말

필자는 최근 미국에서 동북아시아 역사 갈등과 관련하여 재미 한인들이 전개한 의미 깊은 일들을 되짚어보고자 한다.¹⁾

2000년대 이후 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은 국가 간 대립을 증폭시키고 대립 국면을 침체화하는 등 견잡을 수 없이 확대일로를 걸어왔다. 재미 한인들은 국내에 사는 우리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역사적 현안을 깔끔하게 해결함으로써 민족적 자긍심과 국제적 위상을 크게 드높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H. Res. 121) 통과, 소위 '요코 이야기'의 교재 채택 저

1) 동북아시아 역사 갈등과 관련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신주백(2005), 「동북아에서 역사교과서 협력의 갖는 의미와 진로」, 『역사와 현실』 56 ; 신주백(2006), 「동아시아 역사 만들기」, 『창작과 비평』 132 ; 안병직(2006), 「국제화해와 역사교육」, 『역사교육』 98 ; 김지훈(2007), 「한·중 역사갈등 줄이기」, 『역사문제연구』 17 ; 정재정(2007), 「한·일의 역사갈등과 역사대화」, 『사학연구』 88.

지, 미국 의회도서관의 주제어 변경 저지 및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지명 표기 번복 등은 재미 한인의 적극적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²⁾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 대한 체계적 정리나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필자는 세 가지 사안에 대응하여 재미 한인들이 전개한 일련의 움직임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면서 핵심역할을 한 중심 인물들과 한인 네트워크에 대하여 살필 것이다.

미국 내에서 공간된 국문과 영문 신문, 잡지 기사, 관련 연구 등을 위주로 개별 사안의 경과를 살필 것이다.³⁾ 물론 사안별 검토에 그치지 않고 그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저변의 네트워크와 주도 인물을 파악하는 총괄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어느 사안이든 헌신적이고 자발적인 주도자와 중심적 한인 네트워크의 결합 속에서 해결의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한인 네트워크의 내용과 성격, 작동의 기제와 방식 그리고 중심 인물을 확인하는 일 등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II. 미국 하원의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통과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통과는 문제 제기, 인식의 확산, 조직적 대응, 후속 활동의 전개 등을 고려할 때 역사 갈등 사안 해결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특

- 2) 류승렬(2009. 9. 17), “왜냐면-‘한글학교’ 아닌 ‘한국학교’ 위주 지원 문제”, 『한겨레』.
- 3) 본문의 인용 자료는 미국 현지에서 발간되는 영문과 한글로 된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들이 다수이며, 더불어 각 사안과 관련된 중요 인사들과의 인터뷰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관련 자료의 많은 부분은 웹상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편의를 위하여 중요한 자료의 소스는 홈페이지 주소를 제시하였다.

히 미국 내에서 역사 현안을 이슈화하여 결실을 거두려면 어떤 논리와 방식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많은 교훈과 시사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뜻있는 미국 의원들의 집요하고 끈질긴 의지와 노력, 재미 한인 네트워크와 지도자의 역할이 잘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은 1990년대 이후 미국 주요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아 많은 논설과 기사가 실렸으며 관련 연구도 축적되었다. 따라서 2007년 7월 31일 미국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도 그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동안 숭한 난관과 곡절을 거쳐야만 했다.

1997년 관련 결의안이 처음 미국 하원에 제출된 이래 일본의 로비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다가 일곱 차례의 시도 끝에 하원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다. 오랜 난산을 거듭하던 위안부 결의안이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데는 한국 정부나 정치인 또는 한국 내의 민간이 나선 것이 아니라 한인 유권자센터⁴⁾를 중심으로 재미 한인들의 응집된 노력이 결정적이었다. 미국 각지의 한인 단체들은 물론 엠네스티와 같은 국제 인권단체, 다른 아시아계 단체들과의 연대 활동도 한몫을 하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 정부는 결의안 통과를 극력 저지하기 위해 집중적 로비를 전개하였다. 일본 정부는 38년 동안 공화당 일리노이 출신 의원을 했고 소수당 원내대표를 14년 동안 했던 미첼(Bob Michel)을 워싱턴 최고의 로비스트인 호간과 하트슨(Hogan & Hartson)과 함께 들여보내 매달 6만 달러를 지불하면서 적극적 로비 활동에 나섰다. 미첼은 일본 정부가 고용한 한 작은 로비스트 집단의 거물일 뿐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2006년 10월 초에는 “지금으로

4) KAVC : Korean American Voters Council, <http://kavc.org/>

서는 일본이 다시 의회에서 자신의 승리를 산 것처럼 보인다. …… 지금 우리가 위안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할 정도의 참담한 상황이 초래되었다.⁵⁾ 결국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무효가 되었고, 이 때문에 2007년 3월부터 재상정을 위한 활동을 새로 시작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007년 6월 3일에는 일본 극우 신문인 『산케이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추진하는 한국계 정치력 단체의 배후에는 중국계 반일 조직이 숨어 있다. 중국 정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세계 규모의 화교 중국계 주민의 조직인 ‘세계항일전쟁사실우호연합회’가 그 배후이다. 그동안 한국계 시민들의 풀뿌리 정치력과 인권차원의 결의안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진 결의안 운동의 배후가 실체를 드러냈다”⁶⁾는 터무니없는 기사를 실으며 방해 공작을 벌이기도 했다.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한 것은 한인들의 단결된 ‘풀뿌리 정치력’이었다.⁷⁾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추진은 미국 시민의 입장에서 ‘인권옹호와 평화 만들기’라는 명분을 지니고 있었는데, 일본 측은 일본의 우익 권력을 옹호하려는 로비스트를 앞세웠다. 따라서 한인들의 ‘풀뿌리 정치력’과 일본 정부 로비스트 간의 대결 구도로 전개되었던 것이다.⁸⁾

2007년 2월 15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지구 환경 소위원회에서 열린 「‘위안부’의 인권의 보호에 대한 공청회」에서 마이클 혼다 의

5) Silverstein Ken(Oct. 5, 2006), “Cold Comfort : the Japan Lobby Blocks Resolution on WWII Sex Slaves,” *New York Times*.

6) “시사 진단 - ‘극단’은 외면당한다”, 『LA중앙일보』(2007. 6. 25).

7) “인터뷰 - 위안부결의안 통과 이끌어온 산파역 김동석소장”, 『뉴욕 중앙일보』(2007. 6. 26).

8) “시사 칼럼 - ‘위안부’ 로비는 시민의 권리”, 『LA중앙일보』(2007. 6. 12).

원은 먼저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자신이 겪은 과거 아픈 경험과 비극과 부정을 드러냄으로써 진정한 화해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노력한 자신의 활동을 진솔하게 소개하였다. 특히 과거 일본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과거의 범죄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국제관계의 긍정적 전개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더욱 주목되는 바는 결의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일본 본국의 집요한 개입과 물질적 원조를 바탕으로 한 로비 세력의 압력과 방해의 부적절함을 부각하면서 “이 여성들의 힘과 인간성, 그리고 그녀들이 증언하는 진실은, 이 결의를 저지하려고 하는 어떠한 정치적 압력도 능가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많은 간섭과 정치적 압력을 받아왔다고 언급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처음 미국 하원에 제출되어 통과되기까지의 경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발의 내역

제출연도	결의안 명	발의자
1997	H. Con. Res. 126	윌리엄 루핀스키(민주, 일리노이)
2000	H. Con. Res. 357	레인 에번스(민주, 일리노이)
2001	H. Con. Res. 195	레인 에번스(민주, 일리노이)
2003	H. Con. Res. 226	레인 에번스(민주, 일리노이)
2005	H. Con. Res. 68	레인 에번스(민주, 일리노이)
2006	H. Res. 759	레인 에번스(민주, 일리노이) 외
2007	H. Res. 121	마이클 혼다(민주, 캘리포니아) 외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사죄 결의안의 숨은 주역은 레인 에번스(Evans)⁹⁾ 전

9) 일리노이 주 록아일랜드 출신인 에번스 의원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의원이다. 1997년부터 일본의 온갖 로비와 방해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결의안을 추진한 숨은 주역인 그는 2003년에는 미국 주재 일본 대사관에 “일본 정부는 정신대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빨리 사과하고 보상하라”는 편지를 쓰기도 하고 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의회 증언을 주선하기도 했다.

에번스 의원의 입법정신을 그대로 계승하여 마이클 혼다 의원이 2007년 1월 법안을 발의하고, 하원의원 16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였다. 2007년 6월 26일 「중군 위안부 결의안-‘혼다-랜토스 수정 결의안’」은 찬성 39 : 반대 2로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¹⁰⁾ 이어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공식 사죄 결의안(# 121)이 상정 35분만에 하원의원 435명 전원 지지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외교위원장은 첫 지지 발언에서 “어떤 나라도 과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중군 위안부들이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매춘 행위를 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은 ‘강간(rape)’이란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강변이며 “일본 정부가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게임은 구역질이 난다”고 비판했다.¹¹⁾ 또 혼다 의원은 결의안 통과에 한인 사회가 조직적으로 행동하며 많은

1998년 같은 일리노이 주 출신인 윌리엄 루핀스키 의원이 일본 정부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토록 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을 때 함께 일하면서부터라고 한다. 2006년 말 정계 은퇴 후, 고향인 일리노이 주에서 파킨슨병과 싸우고 있는 그는 병으로 몸을 가누기조차 쉽지 않은데도 방청석에서 휠체어에 앉아 동료 의원들의 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보았으며, 하원에서 일본군 군대위안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감격에 겨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10) 랜토스 위원장은 다만 한·미·일 3국 간에 미묘한 시각차를 보여온 일본 총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혼다 결의안’과 관련 ‘사과’를 ‘권고’하는 쪽으로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11) “위안부 결의안 미 하원 ‘본회의’ 통과, 30일 만장일치로”,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2007. 7. 31).

정보를 제공하고 활발한 로비를 벌이는 등 큰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결의안 통과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위안부 문제의 중요성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¹²⁾

일본 정부에서 주도한 강제 군대 매춘 제도인 ‘위안부’는 집단강간과 강제 유산 그리고 신체절단과 사망, 궁극적으로 자살을 초래한 성적 폭행 등, 잔학 성과 규모 면에서 전례 없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가운데 하나다. 결의안은 1930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군의 중군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인·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정부가 저지른 중군위안부 제도를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 중 하나로 규정했다. 또 집단 강간과 강제낙태, 정신적 모욕, 성적 학대 등으로 신체적 장애와 학살 또는 자살이 포함된 전례 없이 잔인하고 중대한 사건임을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과거 범죄행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일본 정부에 대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양식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군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죄할 것, 일본 총리가 총리의 자격으로 공식 사과할 것, 일본 정부가 중군위안부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미화하려는 주장을 거부할 것, 중군위안부에 대한 사실을 현재와 미래의 세대들에게 교육시킬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¹³⁾

미국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국 의회에서 일본군의 중군위안부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과 미국 의회가 역사적 진실을 외면해온 일본 정부에게 자성을 촉구한다는 점에

12) “혼다 의원 ‘한인들 로비 큰 역할’”, 『워싱턴 중앙일보』(2007. 7. 31).

13)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전문)”, 『중앙일보』(2007. 6. 26).

서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로비 회사를 고용하고 미국에 대해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등 일본 정부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한인 사회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원들에게 편지 보내기 등 대의회 설득 노력을 통해 얻어낸 한인 민초(民草)들의 '승리'라는 점이 크게 부각되었다.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시민으로서 재미 한인들이 나서서 언론을, 그리고 정치인을 움직인다는 계획된 순서를 조직적·체계적으로 밟아나간 재미 한인 풀뿌리 운동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기사를 통해 잘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30일 미국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일본군강제종군위안부결의안'은 미국에서 한국이 일본을 이긴 최초의 승전이며 동시에 일본이 한국인에게 패한 최초의 패전이다. 이 싸움의 주력군은 미주동포였고, 사령부는 뉴욕의 동포사회였다. 1994년부터 10여년 이상 끈질긴 시도가 있었지만 일본측의 로비에 부딪혀서 번번이 실패했다. 처음 이 사안을 들추어 보았을 때엔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워싱턴의 정치논리에 낙담과 허탈감만을 가졌다. 그래서 '강제종군위안부'란 이슈를 미국시민의 눈으로, 수도 없이 리허설을 반복했다. 흥분에 가까운 분노가 치미는 것에는 미국인, 한국인 심지어는 일본인들도 공통이었다. 바로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우선은 미국의 여론을 움직일 궁리를 했다. 직접적인 피해자 할머니를 찾아서 청문회를 개최했고 청문회의 생생한 증언을 의회신문과 각종 유튜브 동영상으로 퍼뜨렸다. 막막했지만 별의별 자료를 다 동원해서 뉴욕타임스 데스크에 쏟아 부었다. 자료가 쌓이면 데스크가 움직이는 것은 한국의 언론이나 미국언론이나 마찬가지였다. 뉴욕타임스의 사설에서 나오니 LA타임스가 받아서 썼고 그러고는 워싱턴포스트가 이를 확대시켰다. 기적 같지만 당연한 이치였다. 그러한 과정과 동시에 지역구에서 서명, 전화걸기, 팩스 보내기 운동을 진행했으며 그것을 갖고 연방하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아무리 강한 로비도 시

민(납세자)의 의견을 앞설 수는 없는 것이 의회 내의 불문율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168명의 공동발의 의원을 확보했던 것이다. 제안 논리는 '일본이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미국과 결합하면 미국도 똑같은 국가가 된다'라는 논리였다. 미국의 정치인에게 '집단적인 강간범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가는 논리로 바꾸었다. 6월 26일 하원외교위원회에서 참석의원 41명 중에 2명의 반대위원을 빗대어서 의회전문지인 '더 힐(The Hill)'은 "이렇게 용감한 의원이 워싱턴에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란 조롱에 가까운 기사를 내기도 했다. 미국이 우리편을 들어주도록 한 작업이 추진과정의 거의 전부였다.¹⁴⁾

미국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처음 통과된 후, 2007년 11월 8일 네덜란드 하원에서, 또 11월 28일 캐나다 하원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¹⁵⁾ 이러한 내용의 결의안은 유럽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7년 11월 14일 국회의원 97명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III. '요코 이야기' 교재 퇴출

'요코 이야기' 교재 퇴출 운동은 *So Far from the Bamboo Grove*라는 책이 미국 학교 교재로 채택·사용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재미 한인들이 벌인 캠페인이다. 일본계 미국인인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의 자전적 소설로 일본인

14) 김동석(2008. 7. 26), "특별기고-독도문제, 무식하고 용감하면 백전백패", 『주간 미시간』.

15) "캐나다 하원 일본 위안부 사과 결의안 통과", 『밴쿠버 중앙일보』(2007. 11. 29).

소녀와 가족들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한국을 떠나는 과정을 그리면서 한국인이 일본 부녀자들에게 강간, 폭력을 일삼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역사 왜곡과 한인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운동이 한창 벌어지던 당시 하버드 대학의 카터 에커트 교수는 잘못된 내용과 더불어 역사적 맥락과 균형 감각을 결여한 것이 이 책의 큰 문제라고 비판하였다.¹⁶⁾

이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 문제 제기로부터 현재의 한국 역사·문화 알리기 운동의 전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재미 한인들이 전적으로 주도해왔다는 점이다. 한국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은 사안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이끈 기본 바탕을 이루었다.

‘요코 이야기’는 출간 이후 미국에서 교재로 채택되어 장기간 사용되어오다 2006년에야 비로소 문제가 제기되었기에 “1986년 발간되고 많은 중학교에서 추천도서가 된 지 오래인데 이제 와서야 한인 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은 “그간 아이들이 어떤 책을 보는지 부모들의 관심이 없었고, 책을 읽은 대부분의 한인 2세들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데 기인하는 바가 컸다.¹⁷⁾

‘요코 이야기’ 교재 퇴출 운동은 다음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최초 제기자인 허보은 양의 극적 문제 제기와 어머니 박영순(수산나)의 기민한 대응으로 비롯되었다.

뉴욕 근교의 한 사립학교 7학년에 재학 중인 허보은 양(11, 미국명 알렉스)은 지난 9월 영어 시간에 교재가 배포되자 선생님께 “나는 집에 가겠다”며 가방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허양이 학교를 거부한 것은 한국인을 가해

16) Carter Eckert(Dec. 16, 2006), “A matter of context,” *boston.com News*.

17) 권태면(2007. 2. 2), “‘요코 이야기’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KoreaMonitor*.

자, 일본인을 피해자로 묘사한 잘못된 책을 배우지 않겠다는 항의의 표시였다. 보은 양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그건 옳은 일이니까요”라며 “선생님께 집에 가겠다고 말할 때도 가슴이 뛰지 않았다”고 당당히 말했다. 허양은 “어떤 문장을 읽고선 눈물을 터뜨릴 뻔했다. 한국을 침략해 많은 사람을 죽인 건 일본인데 이 책에는 여러 곳에서 한국인이 일본 사람을 성폭행하고 아주 나쁜 것처럼 나온다. 우리 반 친구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나를 놀리고, 슬퍼지지 않을까. 내가 편안하게 느끼고 마음껏 의견을 표현해야 할 우리 반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¹⁸⁾

허 양은 2005년 여름에 어머니를 따라 한국을 방문해 국립박물관 등을 둘러보고 일본이 식민지 통치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다. 문제 제기로 인해 한동안 해당 과목 선생님께 미움을 받았고, 성적도 박하게 나왔지만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또한 허 양의 어머니인 박영순 씨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갔다. 두려움으로 숨지 않고 당당히 나섰다”¹⁹⁾는 지적처럼 딸의 행동을 적극 후원하였으며, 이후 보스턴, 쿠퍼티노 등 각지에서 벌어진 퇴출운동에도 경험의 전수, 책 내용의 문제, 대응방법 등 여러 모로 자문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허 양의 문제 제기 이후 재미 한인들의 고발이 봇물처럼 이어졌다. “지난해 보스턴의 한 한국 아이는 학교에서 책을 읽다가 사라졌어요. 찾아보니 도서관 책상 밑에 숨어서 울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시카고도서관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이 책과 관련해 공식적인 항의 접수가 네 차례나 있었다고 하네요. 일부 영어 교사들은 여전히 ‘요코는 평화를 주장하는 작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 “한인 여중생의 ‘당찬 승리’-‘요코 이야기’ 교재사용 금지 받아낸 허보은 양”, *koreatimes.com*(2007. 1. 19).

19) “가지 않은 길”, 『*koreatimes.com*』(2007. 1. 8).



요코가 평화주의자로 행세하는 동안 많은 한국인 아이와 학부모는 가슴앓이를 해온 겁니다”²⁰⁾라고 한 데서 그동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갈등과 마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보스톤에서는 한인 학부모 아그네스 안 부부와 헨리 장 부부가 지영선 총영사²¹⁾를 찾으면서 운동이 시작되었다. 학부모들은 보스톤 총영사가 학교와 교육 당국에 항의편지를 보내주기를 원했으며, 총영사는 다방면에 걸쳐 적극적으로 후원 활동을 펼쳤다.²²⁾ 또한 『연합뉴스』의 이기창 워싱턴 특파원은 관련 내용을 처음 발굴하고 각종 의혹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취재·보도함으로써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²³⁾

쿠퍼티노에서는 2007년 3월에 로손 미들스쿨에 다니던 7학년 학생이 교재를 읽다 문제의 소설을 처음 지적하고 영사관 등에 알리는 일이 있었다.²⁴⁾

‘요코 이야기’ 사안의 경우 미국 신문인 『보스톤 글로브(The Boston Globe)』가 지속적으로 기사화한 것이 인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사안이 불거진 초반 무렵 미국 내의 전반적 상황은 “퇴출 결정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는 식으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미국 정부 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한·일 간의 ‘감정 싸움’ 정도로 볼 가능성이 없지 않고 그다지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을 것”²⁵⁾이라

20) “‘요코이야기’ 못 배우게 하겠다’ 용감했던 모녀 이야기”, 『동아일보』(2007. 1. 23).

21)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대통령이 직접 발탁하는 특임 공관장으로 2006년 3월, 첫 여성 총영사로 보스톤에 부임했다. “미 보스톤 총영사 지낸 지영선씨 외교관 경험 담은 책 출간”, 『한국일보』(2010. 1. 18).

22) “이 사람-‘초차 외교관’ 경험 책으로 낸 지영선 환경연합 공동대표 “도전하는 인생에 늦은 때란 없다””, 『한겨레』(2010. 1. 19).

23) “‘요코이야기’ 대응 한인 단체들 모였다”, 『워싱턴 중앙일보』(2008. 3. 15).

24) “2만 5천 명 서명 동참 성과’ 요코이야기 캘리포니아 교재 퇴출 축하연”,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2008. 11. 20).

25) “요코이야기 퇴출 운동 美 한글학교 교장”, 『연합뉴스』(2008. 11. 5).



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주 차원에서 ‘요코 이야기’ 교재 퇴출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성공한 것은 캘리포니아 주이다. 운동은 처음 쿠퍼티노에서 비롯되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쿠퍼티노 시 교육구 린다 덴만 교육감은 ‘요코 이야기’ 관련 교재 검토위 구성을 제의해왔다고 허준영 실리콘밸리 한국학교 교장이 밝혔다. ‘요코 이야기’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있던 한인사회는 이미 교재검토위원회 패널에 최소 3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놓고 있었다. 교육구 정례 이사회에는 한인사회 정유숙, 다이애나 박, 김윤순 씨 등 3인이 학부형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다이애나 박씨는 “교육구 당국이 한인사회가 주장한 ‘요코 이야기’ 교재 퇴출 요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어서 감사한다”고 말한 후 “다민족 미국사회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요코 이야기’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교재 위원회 개최에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뜻도 밝혔다.²⁶⁾

지역 차원에서 전개되던 퇴출 운동을 캘리포니아 주 전체로 확대시킨 것은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이다. 협의회의 최미영 회장은 2008년 8월 27일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 책임자인 토마스 아담스²⁷⁾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고 ‘요코 이야기’를 모든 필수 또는 권장 도서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별한 문화 집단의 역사적 부정확함과 부정적으로 불균형을 이룬 묘사들을 포함하고 있는 특별한 자료원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소설은 제2차 세

26) “미국 당국, ‘요코 이야기’ 관련 교재 검토위 구성 제의”, 아리랑 webmaster@arirang21.com(2007. 4. 26).

27)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 책임자로 교재 채택 담당 행정관이다.

계대전 종말 상황의 한국인을 부정적으로 불공평하게 묘사하고 있다. 비록 이 책이 픽션으로서 또 저자가 이야기를 보다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날짜나 세부 내용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은 한국 민족을 대하는 단 한 번의 또는 몇 번밖에 안 되는 기회 중의 한 번일 수 있다. 더욱이 이야기가 자서전의 감정과 억양을 가질 때 학생들이 현실과 픽션을 분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책의 편파적이고 부정확한 서술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하여 적대적인 또는 인종 편견적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실제 여러 한국계 학생들이 이 책으로 인해 비웃음거리가 되거나 배척당하고 있다. 이 책을 읽은 베이 지역의 한국계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학생들은 한국의 문화 전통과 한국 인종임에 대하여 수치심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책의 오도되고, 문화적으로 편향된, 그리고 한국과 한국사에 관한 잘못된 진술들은 학생들의 정체성, 감정, 그리고 교육적 경험에 정당하지 않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로서 또 납세자로서 나는 주 정부가 이 교재를 캘리포니아의 교실에서 제거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는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고 믿는다.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자들은 이 책을 공식 학교 교육과정에서 삭제할 법적 도덕적 의무를 지고 있다. 이미 이 책은 매사추세츠 주, 뉴욕 주,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주에 있는 학교들의 필수 읽기 목록에서 삭제되었다.²⁸⁾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는 2008년 10월 1일 미국 내 한인 사회 전체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Far From the Bamboo Grove[일명 '요코 이야기'] 진정

28) 서신 내용 및 관련 증거를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주소도 포함하였다. Park Chung-a(Jan. 23, 2007), "More American Schools Stop Textbook Falsifying Korea," *Korea Times*, Reprinted in AsiaMedia, Jan. 23, 2007 <http://www.asiamedia.ucla.edu/article.asp?parentid=61889> ; Lisa Kocian(Nov. 2, 2006), "Ban Book from Class, Panel Says," *Boston Globe* ; http://www.boston.com/news/local/articles/2006/11/12/ban_book_from_class_panel_says/?page=2

서 보내기」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캘리포니아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 교재가 없는 관계로 전체적인 맥락을 배울 수 없는 상태에서 왜곡된 역사를 배우게 되고, 또한 내용상으로도 6~8학년 학생들에게는 과도한 표현(폭력, 강간 등을 포함하는)이 있다는 점이다. …… 이 일은 우리 한인 2세대뿐 아니라 미국인을 비롯한 타 민족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가치와 올바르게 배울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귀한 계기가 될 것이다. …… 모든 소속학교 교사들이 교사로서, 학부모로서, 세금 납부자로서 바르지 않은 교재의 퇴출을 원하는 진정서를 새크라멘토에 있는 주 교육부 커리큘럼 담당 아담스씨와 교육감인 오코넬씨에게 발송하기로 결정했다.²⁹⁾

이렇게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한 달 만에 2만 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학부모들은 버스까지 대절해 공청회 장소인 새크라멘토까지만 길을 가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주 교육청 공청회 사상 이처럼 많은 한인이 참가한 것은 처음이었으며, 한인들이 단결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큰 힘이 발휘될 수 있고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운동이 한창 벌어질 때는 퇴출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도 서지 않았고 미국 정부 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한·일 간의 '감정 싸움' 정도로 보아 그다지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 등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겨내야

29) 공문은 KSANC-08-09. 공문과 함께 보낸 서명지는 “We, as parents and taxpayers, request that So Far from the Bamboo Grove be removed from any required or recommended reading list”라고 되어 있다.

했다.³⁰⁾

2008년 11월 5일 캘리포니아 주는 마침내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킨 ‘요코 이야기’를 어학 교재에서 퇴출시키기로 전격 결정했다. 캘리포니아 주 교재채택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30분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 및 공청회를 열고 ‘요코 이야기’ 교재 채택에 반대하는 재미 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 관계자 등의 발언을 경청한 뒤 1시간 30분 만에 위원 만장일치로 퇴출을 결정했다. 그동안 서명운동을 주도해온 인사 4명은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 참석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퇴출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요코 이야기’ 교재를 만들어온 미국 현지 출판업자들은 회의에서 “역사적 왜곡 논란 등 문제점이 있어 교재를 자진 출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³¹⁾

이렇게 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교재 채택 저지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로써 모든 문제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는 여전히 ‘요코 이야기’를 교재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요코 이야기’ 사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와 ‘요코 이야기’의 실체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 기사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는 ‘요코 이야기’를 쓰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미국의 저명한 아동문학자 울리(Woolley)와 깊은 친분을 맺고 1년 동안에 걸쳐 함께 집필과 수정 작업을 했다.

울리 여사는 아이들이 없었지만, 어린이들과 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30) “요코이야기 퇴출 운동 美 한글학교 교장”, 『연합뉴스』(2008. 11. 5).

31) “캘리포니아, 역사 왜곡 ‘요코이야기’ 퇴출 결정”, 『연합뉴스』(2008. 11. 5).

고 친구들이 이야기한다. 그녀는 책에서 흔히 자신의 경험이나 세계 여행을 끄집어내곤 했다. 그녀는 항상 케이프 코드에서 열린 작가 워크숍에서 가르치는 수강생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쓰라고 다그쳤다. <어린이를 위한 글쓰기>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만약 당신이 작가라면 당신은 언어의 마술을 사랑하고 또 언어를 사용하여 어린이들을 당신이 창조하는 세계로 데려가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어와 더불어 일하는 데는 환희가 있음을 알 것이다. 케이프 코드에서 올리 여사는 글쓰기와 책 관련 행사의 불박이었다. 그녀는 북클럽의 시작을 도왔고, 글쓰기 워크숍에서 가르쳤던 트루로 도서관의 친구들과 함께 일했고, 또 도서관에서 '이야기 시간'을 열었다. 도서관이 1996년 새 건물을 열었을 때, 그녀를 좇아서 어린이들의 방이라고 이름지었다. 북 트루로 도서관의 전 수탁자인 브로크(Anne Brock)는 "캐더린 올리의 글쓰기와 문학 인생은 나에게 최고였다"고 말했다. 이러한 올리 여사의 충실한 학생들 중 한 명이면서 1년 동안 성공적인 청소년 소설- 'So Far From the Bamboo Grove'-의 초고를 만드는 작업을 함께 수행했던 이가 브루스터의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이다. ³²⁾

2006년 9월 보스턴 인근 도버셔본 학구의 한국인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교재 채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10월 30일 지역 내 학교의 교장과 교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균형 잡힌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기 힘들다"며 교과과정에서 이 책을 제외시킬 것을 권고했지만 일부 중학교 교사들이 '일종의 검열'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2007년 1월 3일 도버셔본 지역학교위원회가 애초 결정을 번복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³³⁾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가 10년 넘게 보스턴을 비롯한 매사추세츠 주와 전국의 학교들

32) "Catherine Woolley, 100 ; dozens of books enthralled children By Gloria Negri, Globe Staff," *The Boston Globe*(July 27, 2005).

33) "일제 패망기 한국인이 가해자? 일본 여성 역사 왜곡 소설 미 중학교 교재사용 파문", 『한겨레』(2007. 1. 18).

을 방문해 한 번에 2,000여 달러의 사례금을 받고 '저자와의 대화'를 열고 자신의 책 내용이 마치 모두 사실인 양 말해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의 특강과 관련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 Cape Cod에 살고 있는 왓킨스는 자기 책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여러 지역의 학교들을 방문해왔다. …… 다른 부모들과 학생들은 아주 사랑받는 교육적 경험의 하나로서 칭찬하고 또 일반적으로 전쟁의 죄악을 묘사하고 있는 책으로서 지지를 표현하고 있다. ³⁴⁾
- 모든 것은 전쟁 탓이며 “전쟁은 잔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³⁵⁾
- 왓킨스가 우리 학급에 왔을 때 우리들은 그녀의 친근한 성품과 원기 왕성한 태도에 매료되었다. ³⁶⁾
- 나는 교사로 이 책을 Middleton에서 10년 동안 6학년 수업에서 사용해 오고 있다. 나의 학생들은 이 책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들은 저자인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가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나누기 위해 우리들을 방문했을 때 생각이 바뀐다. …… 책에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나는 이러한 메시지에 공감하지 않을 학생을 한 명도 만난 적이 없다. ³⁷⁾
- 생존, 가족의 소중함, 교육의 가치, 전쟁의 헛됨 등과 같은 이슈들을 멀리 뛰어넘는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한 독립 학교에서 5학년 학생들에게 이 책을 가르쳤다. …… 요코의 이야기에 깊이 감명하여 감동을 받지 않은 학생은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는 또한 저자에 의한 연례 방문의 특권을

34) “School board may vote on use of Korea book By Lisa Kocian, Globe Staff,” *The Boston Globe*(Dec. 31, 2006).

35) “Book launched discussion at school about pain, prejudice, Charlotte Boulay, Lecturer, University of Michigan,” *The Boston Globe*(Nov. 26, 2006).

36) “Alex Hudson, Dover, LETTERS ; In defense of ‘Bamboo Grove’,” *The Boston Globe*(Nov. 19, 2006).

37) “JEANNE P. BENTLEY, Many teachable moments would be lost if book is banned,” *The Boston Globe*(Nov. 19, 2006).

누려오고 있다. 요코는 독특하고 영감을 주는 인물이며, 그녀는 자기가 만나는 각각의 모든 사람들을 껴안는다. 부모들과 학생들은 해마다 요코가 친절함, 감사, 겸손, 그리고 평화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위해 돌아온다. 38)

- 왓킨스는 과거에 핵무기에 반대한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해온 반전운동가이다.
- 왓킨스는 지역의 모든 학교에서 연설하였다. 그녀는 13년 동안 the Dover-Sherborn district에 있는 학교들을 방문해오고 있다. 그녀의 책은 매사추세츠 주와 미국 전체의 많은 학교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화요일 날 Franklin's Annie Sullivan Middle School에 나타난 왓킨스는 7학년 학생들이 영어 수업 시간에 그 책을 읽었던 것에 대한 질문들을 받았다. 그녀는 붉은 허리띠와 함께 주황색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 왓킨스가 지난주에 방문했던 the Franklin middle school의 교장인 Beth Wittcoff는 왓킨스가 학교를 방문하여 이야기할 때 반전 메시지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39)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는 피스애비(The Peace Abbey), 40) 스톤워크(Stonewalk), 41) 피스풀투모로(Peaceful Tomorrow) 42) 등 각종 반전 평화운동 단체에도 가담하였으며, '요코 이야기' 사안이 크게 불거져 자신을 변호할 때는 늘 그 단체의 회관에서 임원들과 함께 임하였다. 처음 문제 제기를 한 허 양이 다니던 학교의 영어 교사 책상 위에는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가 직접 한자로 '나의 절친한 친

38) "GLENDA SPEYER, Newton, LETTERS ; Book banning would deprive schoolchildren," *The Boston Globe*(Nov. 19, 2006).

39) "Author defends memoir Says it's not meant to bash Koreans By Lisa Kocian, Globe Staff", *The Boston Globe*(Nov. 19, 2006).

40) <http://www.peaceabbey.org/>

41) <http://www.stonewalk.org/>

42) <http://www.peacefultomorrow.org/>

구에게 라는 문구를 써 넣은 엽서 그림이 들어 있는 금색 프레임의 액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는 '요코 이야기'를 13년 전부터 교재로 사용해왔다. 교사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였던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는 언제나 기모노 차림에 계다를 신고 각 학교들을 순례하며 자기 책을 소개하는 강연을 해왔는데, 허 양이 다니던 학교에도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다.⁴³⁾

IV. 독도 지명 표기 변경 저지

2008년 7월 불쑥 벌어진 독도 지명 표기 변경 사안은 곧바로 민감한 이슈가 되었다. 사태 발생 직후 전 국민이 격앙하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할 만큼 뜨겁게 달아올랐다. 사안이 불거지자 재미 한인들은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로 다져진 조직적 기반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조직적·체계적으로 대응하였다. 일부 언론은 주미 한국 대사관과 본국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을 주도한 듯이 보도하였지만, 실제 문제 포착·제기부터 해결까지의 전 과정에서 재미 한인의 역할이 돋보였으며 조기 해결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엄밀히 따지면 7월 10일경부터 16일까지는 미국 의회도서관의 도서분류 주제어 변경, 7월 말에는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주권표시 변경이라는 상이한 별개의 두 사안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두 사안의 내용과 성격 및 상호 관련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기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43) “‘요코이야기 못 배우게 하겠다’ 용감했던 모녀 이야기”, 『동아일보』(2007. 1. 23).

독도의 주권표시 변경을 처음 전한 <한국방송>은 지난주에 이미 이런 움직임을 제보받아 이를 정부 쪽에 알렸지만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그렇지 않아도 독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경 조짐은, 얼마 전 미국 의회도서관이 도서분류 주제를 독도에서 '리앙쿠르 바위'로 변경하려다 재미교포들의 제보와 반대운동으로 보류하면서 이미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런데도 외교통상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런 일들을 미리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니 한심하다.⁴⁴⁾

여기서 두 가지 사안을 전혀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애초 독도 지명 표기 변경 사안은 미국 의회도서관의 독도 주제어 변경과 관련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의회도서관의 주제어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독도(주제어 번호 151)가 리앙쿠르 암석이라는 주제어로 바뀌는 것보다 상위 주제어가 ‘한국의 섬’이 아니라 일본해의 섬들(주제어 번호 550)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독도가 일본해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군도로 여겨질 우려”가 있었다. 당시 미국 의회도서관은 변경과 관련 미국 지명위원회와 지리원이 이미 독도 대신 리앙쿠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일 간 영유권 분쟁에 대해 한쪽 편을 들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기도 했다.⁴⁵⁾

미국 의회도서관 주제어는 누군가 신청하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 정부의 독도 지명 관련 부서들은 의회도서관의 주제어 변경 사안이 터질 무렵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이미 검토·확인하고 있었다고

44) “사실-말뿐인 독도 대책, 무능한 정부”, 『한겨레』(2008. 7. 28).

45) “‘독도 주제어’ 변경 첫 제기 김하나씨 “민간 노력으로 부족 한국 정부 나서야””, 『LA 중앙일보』(2008. 7. 15).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이 정부든 민간이든 의회도서관의 상징성을 감안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나서지 않았나 하는 추정이나, ⁴⁶⁾ “독도란 이름을 갑자기 바꾸겠다고 한 것은 해당직원(도서관 사서직원)이 『뉴욕 타임스』에 난 ‘독도는 우리 땅’이란 전면 광고를 보고서 그곳이 분쟁지역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괜히 건드려서 큰일을 낼 뻔했다”⁴⁷⁾면서 의회도서관의 독도 표기 변경이 직전에 『뉴욕 타임스』에 게재된 독도 광고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⁴⁸⁾가 제시되었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7월 16일(수) 주제 전거(典據) 협력프로그램(SACO) 편집회의를 열어 ‘Tok Island(Korea)’로 되어 있던 주제 명표(특정 주제에 대한 표제로 사용되는 단어나 어구)를 ‘Liancourt Rocks(리앙쿠르 암석)’로 변경할 방침이었다. 이처럼 주제가 변경된다는 사실을 최초 제보한 것은 컬럼비아 대학교 도서관 사서인 일본계 히데유키 모리모토⁴⁹⁾이다. 그는 2008년 7월 7일(월) 매주 정기적인 도서분류 정보들 중에서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처음 접하였다. 그는 ‘독도’ 명칭이 한국에 관련된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같은 대학의 한인 사서인 신희숙⁵⁰⁾ 씨와 협의한 후, 매주 한 차례 보내는 정보로 “직접적인 도서 정보는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알려준다”는 내용의 이메일로 의회도

46) “혹시 주제가 ‘독도’ 폐기편 ‘일본해 섬들’에서 검색해야”, 『LA중앙일보』(2008. 7. 15).

47) “맨해튼에 만든다는 ‘독도는 우리 땅’ 광고판 … 목적을 위해서는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지 않을까”, 『세계한인신문』(2010. 2. 16).

48) “독도광고, 분쟁지역으로 비치게 하는 역효과만 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 센터 김동석 소장 주장”, 『경향신문』(2010. 3. 21).

49) Mr. Hideyuki Morimoto ; Japanese Cataloger, 308 Kent Hall,

50) Korean Studies : Ms. Hee-sook Shin ; Handles in-depth reference on Korean topics, buys Korean materials, oversees preservation of Korean collection, conducts overseas Korean exchanges,

서관의 주제어 변경 회의 일정과 내용을 전해주었다.⁵¹⁾ 신희숙 사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곧바로 동아시아사서협의회 한국자료분과위원회에 알렸다.⁵²⁾

하와이 대학 장순영 사서를 비롯한 한인 사서들은 북미지역 아시안 사서들이 서로 메일링을 하는 ‘이스트리브’라는 리스트를 통하여 이 내용을 접하였다. 이메일로 연락을 받은 한국자료분과위원회의 김하나 위원장은 7월 10일 일반 사서들과 달리 도서목록을 다루는 기술파트에서 근무하는 장순영 사서에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문의했다. 7월 14일 한국학 관련 사서들은 마침내 공동으로 문안을 작성하여 CPSO(Cataloging Policy and Support Office)의 국장인 바바라 킬렛 박사에게 청원서를 보냈다. 장순영 사서는 같은 날 별도로 목록규칙과 전례에 비추어 또 다른 청원서를 바바라 킬렛에게 보냈다. 7월 15일 한국학 관련 사서들은 CPSO로부터 16일 논의하기로 되어 있던 안건들 중에서 독도 명칭 변경 문제를 삭제할 것이며, 앞으로 한·일 양국 간의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⁵³⁾

김하나 씨는 7월 15일 국제전화 인터뷰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한국 정부가 시급히 여러 채널을 통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주 캐나다 토론토 총영사관·주미 한국 대사관에는 직접 전화와 문서로, 외교통상부·국토해양부엔 이메일 등으로 알렸다”고 한다.⁵⁴⁾

51) “미 의회도서관 명칭변경 보류 … “앞으로가 더 중요” 토론토 한인 김하나씨 ‘독도’ 구했다”, 『토론토 중앙일보』(2008. 7. 16).

52) 이상 히데유키와 신희숙 사서 관련 내용은 필자가 직접 당사자인 신희숙 씨와의 대담에서 확인하였다.

53) “‘독도지킴이’ 장순영 하와이대학 사서(司書) “한국인으로 당연한 일 했을 뿐 …””, 『하와이 중앙일보』(2008. 8. 28).

54) “‘독도 주제어’ 변경 첫 제기 김하나씨 “민간 노력으론 부족 한국 정부 나서야””, 『LA 중앙일보』(2008. 7. 15).

〈표 2〉 미국 의회 독도 주제어 표기 변경 사태의 경과

날짜	관련 사항
7월 7일(월)	뉴욕 컬럼비아 대학 도서관의 히데유키 모리모토라는 일본계 미국인 사서가 처음 발견하여 한인 사서 신희숙 씨에게 알림. 신희숙 씨는 곧바로 동아시아사서협의회 한국자료분과위원장 김하나 씨에게 알림.
7월 8일(화)	한국자료분과위원회 김하나 씨가 한국자료분과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알림.
7월 10일(목)	김하나 씨가 도서목록을 다루는 기술파트에서 근무하는 하와이 대학 사서 장순영에게 문의.
7월 14일(월)	한인 사서들이 공동으로 문안을 작성하여 CPSO(Cataloging Policy and Support Office) 국장인 바바라 킬렛 박사에게 청원서 보냄. 장순영 사서는 목록규칙과 전례에 비추어 별도의 청원서를 작성하여 바바라 킬렛 국장에게 보냄. 김하나 씨는 주미 한국 대사관과 조지워싱턴 대학 김영기 교수에게 긴급히 알림.
7월 15일(화)	CPSO로부터 16일 논의 예정 안건 중 독도 명칭 변경 문제를 삭제할 것이며, 앞으로 한·일 양국 간의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답변 받음.

이상 미국 의회도서관의 독도 주제어 변경 사태 전개의 경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다음으로 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지명위원회(BGN)가 독도의 지위를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했다 반복한 소동의 경위를 살펴보자.

이태식 주미 한국 대사는 독도의 주권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된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변경 사실을 안 것은 7월 25일 오전이라고 확인하였다.⁵⁵⁾

55) 미국 지명위원회(BGN)는 미국의 지명을 통일하기 위해 1890년 벤저민 해리슨 전 대통령 지시로 설립된 연방기관이다. 미국 내는 물론 해외의 지명에 관한 원칙과 정책 그리고 지명 사용에 대한 절차를 관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무부와 중앙정보국(CIA) 등 10여 개 부처에서 파견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BGN에서 외국 지명 표기와 관련한 결정이 내려지면 연방정부는 물론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이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태식 대사 일문일답-한국령 원상회복 노력 … 미주 한인과도

미국 지명위원회는 독도를 지칭하는 명칭인 리앙쿠르 암석(Liancourt Rocks)이 ‘바다(ocean)’에 속한다는 중립적인 표시와 ‘한국(South Korea)’에 속한다는 표시를 함께 해오다 이를 갑자기 바꾼 것이다. 즉, 지명위원회 웹사이트(<http://geonames.usgs.gov>)의 외국지명 검색(Search Foreign Names) 란에서 ‘Liancourt Rocks’를 입력하면 소속된 국가란에 ‘주권 미지정(Undesignated Sovereignty)’이라고 나오게 변경된 것이다.⁵⁶⁾

이러한 돌발 사태에 당면하여 주미 한국 대사관은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부에 독도 표기 원상회복을 요청했으나 미국 측은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명위원회가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미국 원래의 입장대로 일관성을 지키려 한 것”이며 독도에 관한 특정국의 주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원래대로 맞게 표기를 바꿨을 뿐이라는 싸늘한 대답뿐이었다. 이태식 주미 한국 대사는 28일 네그로폰테 미국 국무부 부장관 등 백악관과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독도 표기 변경 문제를 집중 제기했으나 미국 측 인사들은 이번 결정이 “전문가들이 정치적 고려 없이 내린 결정”이라면서 미국 정부의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함을 완곡하게 강조하였다. 따라서 7월 29일 현재의 기류는 독도 지명 표기의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⁵⁷⁾

그런데 단 하루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통해 미국 지명표기위원회의 독도 표기를 분규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한 것이다.⁵⁸⁾ 물론 완전한 원상회복이 아니라 지도에서 독도란 이름을

협력”, 『LA중앙일보』(2008. 7. 27).

56) “미국 지명위원회 표기 변경 파문 ‘독도, 임자 없는 땅’”, 『LA중앙일보』(2008. 7. 27).

57) “JBC 포커스-독도 지명 표기 논란”, 『중앙방송』(2008. 7. 29).

58) “미, 독도표기 원상회복, ‘주권 미지정지역’서 복구 … 부시 대통령 직접 지시”, 『뉴욕



아예 빼버린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독도, 다케시마, 리앙쿠르 암석이라는 세 가지 이름이 병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명위원회는 독도, 다케시마란 명칭을 함께 지워버리고 리앙쿠르 암석이란 표기만 남긴 것이다. 그것도 처음에는 독도만 지우고 다케시마는 그대로 뒀다가 이에 대한 지적이 일어나자 2~3일 지나서 다케시마를 지운 것이다.⁵⁹⁾ 이후 국무부 동아태국 회의실에 걸려 있는 지도에 독도는 ‘독도(Tok-to)’로 표시되고 동해는 ‘SEA OF JAPAN(EAST SEA)’이라고 적혀 있어 한국과 일본의 주장을 나름대로 다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⁶⁰⁾

이러한 소동과 관련해 미국 측은 시행 과정에서 수많은 예외와 데이터베이스의 오류들이 발견되어 원상회복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⁶¹⁾ 그러나 한국 방문을 앞둔 부시 대통령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한·미 양국에 좋을 것이 없다는 심각성과 급박성을 인식하여 본인이 직접 해결에 나선 것이라든가,⁶²⁾ 부시 대통령이 선심을 베풀 것⁶³⁾이라는 등의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른 한편 지명 변경을 추진한 미국 측의 입장과 관련해 지명위원회는 운

중앙일보』(2008. 7. 30).

59) “뉴스 속 뉴스-독도, 우리가 이겼나”, 『LA중앙일보』(2008. 8. 5).

60) 힐 차관보는 이날 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무부는 이번(독도 영유권 표기 변경) 문제와 관련해 BGN과 협의한 바가 없으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문가들에 의해 그런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그러나 조지 부시 대통령의 지시로 재검토돼서 원상회복이 이뤄졌다”며 이번 결정이 부시 대통령의 ‘결단’임을 강조했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한편, 힐 차관보는 의원들과 헤어지면서 “오늘은 대한민국 외교 승리의 날”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슈포커스 日, ‘독도 영유권 주장’ 논란-美 국무부 동아태국 회의실 지도에도 ‘독도’로 표기 힐차관보 “오늘은 대한민국 외교 승리의 날””, 『조선일보』(2008. 7. 31).

61) “‘독도 표기변경 잘못’ 미 국무부 시인”, 『LA중앙일보』(2008. 7. 31).

62) “독도 표기 원상 복귀 … 워싱턴 특파원 1문 1답”, 『중앙방송』(2008. 7. 30).

63) “김창욱 칼럼-미국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뉴욕 중앙일보』(2008. 8. 4).



영이 독립적이기는 하지만 미 정부 기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독도의 이름이 밀리고, 소속 지역이 규명되지 않은 분쟁지역으로 변했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독도의 귀속권을 한국 쪽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의 친일 본적 의도가 다분히 작용하였다고 추정하는 견해도 제기되었다.⁶⁴⁾

독도 사안은 한국 국내에서는 늘 급박하고 심각한 양상을 띠지만, 독도 지명 표기 변경과 관련된 핫이슈를 미국인들이 크게 주목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힘들다. 실상 미국인들은 독도에 대해 잘 모르고 생각도 없으며 한인 동포 들조차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확신만 있을 뿐 왜 우리 땅인지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다.⁶⁵⁾ 따라서 독도 사안과 관련한 미국 내 언론의 논조를 보면 대체로 특별히 자기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기보다는 경제적·정치적 이해를 부각 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한·일 간 갈등의 완화·해소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미국 외교관으로 여러 해 동안 한국과 일본 업무를 두루 다뤘고 국무부 한국과장과 일본과장을 잇따라 지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 대학 아태연구센터 한국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의 독도 소유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한국인들은 자신 있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 독도 문제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지는 말라”고 충고한다. 그는 워싱턴 정보지 『넬슨 리포트』에 “한국인들이 독도 문제에 아주 강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며, 개인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동조

64) 미국 지명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독도’라는 이름 대신 리앙쿠르 록스라는 명칭을 공식 사용키로 결정한 것은 31년 전인 1977년 7월 14일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철호 특파원(2008. 7. 28), “미 지명위원회, ‘독도는 귀속되지 않은 영토’로 표시”, 『주간 미시간』.

65) “워싱턴독도수호특위 최정범 위원장 미 하원 아태소위원장과 독도 방문, 애틀랜타서 도 스티커 홍보, 11월 독도 세미나 개최 예정”, 『애틀랜타 타임즈』(2008. 9. 3).

한다”면서 한국은 독도 문제에 자신 있고, 조용하면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한국이 효과적인 독도 대응전략을 개발하려면 각국의 움직임과 의도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분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⁶⁶⁾

V. 역사 현안 대응의 특징

재미 한인들이 세 가지 사안의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공통점은 표 3을 통해 확인되듯이 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미국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논리와 정치력에 토대를 두고 기민하게 대응하였다는 사실이다.

특히 “위안부 결의안, 비자 면제, 독도 명칭 변경 등 연방정부 수준의 이슈는 한국 언론이 그리고 한인들이 또한 한국에서 우리의 활동에 별로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사업”⁶⁷⁾이라고 한 데서 드러나듯이 재미 한인 풀뿌리 운동을 이끌고 있는 한인 유권자센터가 캠페인을 주도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사안은 거대 로비회사를 고용하여 미국 정부와 의회에 외교적 압력을 행사해온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미 한인 사회가 NGO와 시민단체, 순수 자원봉사자들의 풀뿌리운동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지속적으로 미국 의회를 설득하고 여론에 호소함으로써 이룬 값진 성과였다. 특

66) “스트라우브 前국무부 한국과장 ‘독도는 한국 땅 … 美 지지 요구말라’, ‘당장 지지 요구 역효과 우려’”, 『연합뉴스』(2008. 8. 1).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미국 외교관으로 한국에서 12년, 일본에서 8년간 근무했고 2002~2004년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내며 북핵 협상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2004~2006년 일본과장을 끝으로 국무부를 떠나 존 스홉킨스 대학으로 옮겼으며 2007년 봄 학기엔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하기도 했다.

67) “한인정치력신장운동, 한인유권자센터 김동석 소장에게 듣는다”(2009. 1. 28). <http://kavc.org/xe/1188>.

〈표 3〉 재미 한인의 역사 현안 대응상의 특징

구분	역사적 현안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요코 이야기'	미국 의회도서관의 독도 주제어 변경
첫 발의·제기	에번스 의원	히보은(7학년 수업)	히데유키(컬럼비아 대학교 도서관 사서)
본격 제기	마이클 혼다 의원	박 수산나, 아그네스 안, 실리 장	김하나
재미 한인 네트워크	한인유권자센터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	한인 유권자센터
한국정부 개입	비공식적	정부 차원 무대응	공식적·적극적 대응
한국 현지 공관의 활동		보스톤 총영사관의 적극 지원	
일본 정부의 개입	일본 수상 방문 전방위 로비 적극 전개		일본 정부 공식 항의
미국인의 반응		일부 미국 교사들의 적극적 반대	
후속 작업	기념비 건립 추진 정대협과의 연대 활동	한국 역사·문화 교육 위한 다방면의 활동 추진	각종 이벤트·캠페인 개최
명분	도덕성(여성, 인권)	도덕성(인종차별 반대, 인권)	정치적 판단과 의지

히 2006년 말 일본 정부의 집중 로비로 결의안 통과가 무산된 뒤 재상정을 위해 한인 유권자센터가 중심이 되어 의원들 대상의 개별 접촉, 한인들의 지지 서명 유권자 명부 전달, 지역구 의원들 대상의 지지 서명 촉구 편지 보내기, 지지 서명을 받기 위한 의사당 방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운동을 전개하였다.

미국 의회 전문지인 『힐(THE HILL)』은 한인 시민운동이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재미 한국인의 의회 로비 중심 시민단체가 오랫동안 전개해온 노력은 하원 외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여성들을 성적으로 노예화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

시킬 다음 주에 절정에 달할 것이다. …… 시민운동은 재미 한인단체들을 강력한 로비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하여 쿠바계 미국인이나 유대인 공동체, 타이완계 미국인처럼 한인연맹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금년 상반기 동안 한인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약 10만 달러를 모금하여 선전 활동에 사용하였다. 68)

‘요코 이야기’ 교재 퇴출 운동은 국내보다 미국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적극적인 저지 투쟁이 성과를 거두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어 출판을 못했으나, 국내에는 2005년 ‘요코 이야기’ (문학동네)란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69) 이 책을 번역·출간한 출판사(문학동네)가 ‘다양한 시각’ 론을 내세우며 짐짓 옹호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고, 일부 외국인학교에서 ‘균형잡힌 시각’ 론을 내세우며 교재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지금껏 제대로 문학 작품으로 다뤄지지 않은 패망한 일본 국민의 심경과 조선인들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휴머니즘도 비친다” 70)거나 “일본의 역사 왜곡에 반대하는 저자는 ‘피해자-가해자’라는 구도에서 벗어나 민족이나 국가라는 이름하에 고통을 당했던 개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71)는 극찬과 함께 책을 소개할 정도로 당시 언론이나 지식층은 무관심·무책임했다. 일부에서는 크게 문제가 된 이후에조차 “과연 소설은 당시의 한국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려 한 것일까. 그렇지

68) Tiron Roxana (Jun. 20, 2007), “‘Comfort Women’ resolution to reach Foreign Affairs panel”, *THE HILL*.

69) “일 전범 팔이 쓴 엉터리 조선 회상기 미 중학교 필독 교재 채택”, 『동아일보』(2007. 1. 18).

70) “책의 향기-열두 살 일 소녀가 본 1945년 조선과 일본”, 『동아일보』(2005. 5. 7).

71) “영혼에 패인 ‘만행’의 상처-색다른 시각서 ‘일본 문제’ 다룬 두 권의 책”, 『경향신문』(2005. 5. 2).

는 않을 것이다. 조선이 일제에 의해 침략당하고 식민 지배를 받았다 해서 당시 한국인은 모두 선한 자들일 것이라는 추정은 불행히도 설득력이 없다. 요코의 세 모녀가 부산으로 가는 동안 일본인은 약자였고 한국인은 강자의 입장에 있었다. 한국인은 강자의 위치에 설 때 일본인들이 저질렀던 죄악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사건이나 역사도 민족 개념이 끼어들 경우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번 경우가 그렇다. 이 세상에 집단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있다면 개인적 정의가 있을 뿐이다. 민족이라는 집단은 도덕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왜 이런 일을 벌이느냐는 핀잔과 냉소를 보이기도 하였다.⁷²⁾

산발적으로 벌어지던 교재 퇴출 운동은 캘리포니아 주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후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 교재 퇴출 결정이 내려지게 된 데는 한인 사회의 단결을 유도하면서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업무 분담, 논리적 대응과 언론의 적절한 활용 등을 꾀한 지도부의 역할이 가장 컸다.⁷³⁾ 한국인만을 특정하여 폄하하는 것은 ‘인종차별’이고 인권의 문제가 된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는 논리적 대응과 함께 적극적·조직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한 것이 유효적절하였다. 또 북가주·남가주 등 각지의 한국학교와 학부모회 관계자들은 연합해 자체 연락망과 이메일 등을 통해 조직적인 활동을

72) “오후여담-‘요코 이야기’”, 『문화일보』(2007. 1. 25).

73)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 홈페이지에는 ① 한인들의 단결 : 2만 5,000명이 1~2장의 진정서를 보냈음, ② 시기의 적절성 : 앞으로 6년간 사용될 교재의 채택 시간에 맞추었음, ③ 철저한 준비 : 가주 교육부의 교재 채택 과정을 리서치함, ④ 픽션인 책을 논픽션으로 가르칠 때 생기는 법적·교육적 문제점 지적, ⑤ 5명의 발언자가 각각 법률적 입장, 교육적 입장, 작가의 입장, 부모의 입장, 커뮤니티의 입장에서 발언하기로 정하고 계획을 짰음, ⑥ 총영사관과 교육원의 도움, ⑦ 적절한 시기에 언론에 발표, ⑧ 두 출판사에서 스스로 철회하는 보이지 않는 도움 등을 들고 있다.

전개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⁷⁴⁾

미국 의회의 독도 주제어 표기 변경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 모든 것은 해외에서도 조국을 잊지 않고 항상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 덕분이었다. 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여성은 국가에서 훈장을 줘도 모자랄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그들이 다 한 셈인데, 정부는 무슨 보답을 했는지 모르겠다. 독도를 최소한 분쟁지역으로라도 만들기 위해 은밀한 공작을 계속하는 나라가 있다. 그러나 우리 외교 당국의 대응은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사실을 이번에도 확인했다. 최소한 1년 넘게 미국 관계기관에서 그런 일이 진행됐는데도 당국은 까맣게 몰랐다. 교민들의 제보에도 적극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⁷⁵⁾고 한 바와 같이 재미 한인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미국 측은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정리라고 해명하려 했지만 쿠릴열도나 센카쿠열도의 사례를 찾아내고 미국 지명위원회 위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이 작업이 적어도 1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독도를 최소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은밀한 공작을 저지시킨 것이다.

북미·호주·뉴질랜드·프랑스에 있는 한인 사서 연락망을 통해 이 문제를 협의한 뒤 북미 동아시아도서관협회 한국분과위원회 이름의 공문을 의회 도서관에 보내 “이 문제는 한·일 간의 영토분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동아시아사서협회의 한국자료분과위원회에 속하는 북미·호주·뉴질랜드·프랑스에 있는 한인 사서 연락망이 중심 네트워크로

74) 교재 퇴출 운동을 성사시킨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는 후속 작업으로 한국역사문화위원회를 설치하고 2세들에게 적합한 교재를 개발하여 미국 전역에서 ‘요코 이야기’가 아닌 한인들이 쓴 교재를 채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75) KBS 워싱턴지국 윤제춘 기자(2008. 10. 29).

서 급박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한 것이다.

독도의 지위를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하려는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시도가 좌절된 것은 한인 유권자센터가 중심이 되어 신속히 대응하였기 때문이다. “한인 동포들이 의회로 몰려가서 겨우겨우 막아냈다. 한인 동포들이 독도란 이름을 살린 것이다”⁷⁶⁾라고 하듯이 재미 한인들이 기민하게 결집하여 미국 의회로 달려가서 의원들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댄 벌튼 의원은 “유권자센터가 독도 문제를 들고 왔을 때가 인상적이었다. …… 당시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란 것에 주목하지 않았고 지금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미국의 이슈’로 제기하였기 때문에 의원들이 나설 수 있었다”고 언급한 데서 저간의 사정을 살필 수 있다.⁷⁷⁾

표 4에서 확인되듯이 세 사안의 해결에 핵심 역할을 한 조직들이 내세운 명분과 논리를 보면 공통되는 바가 있다. 우선 ‘평화와 인권’이란 보편적 명제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이해가 일치됨을 강조하고,⁷⁸⁾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자기 권리를 주장했다는 점이다.

결국 풀뿌리 운동에 기반을 둔 재미 한인들의 탄탄한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문제 해결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막대한 물량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한 로비에 대항할 수 있는 결정적 무기가 무엇인지 새삼 확인하게 된다.

76) 김동석(2010. 2. 16), “맨해튼에 만든다는 ‘독도는 우리 땅’ 광고판 … 목적을 위해서 는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지 않을까”, 『세계한인신문』.

77) 김동석(2009. 12. 24), “주목받는 한인들의 풀뿌리 운동 미주 사회에서 풀뿌리 기반 없이 정치인에 펼치는 로비 활동이 오히려 한인 정치력 약화 초래”, 『세계한인신문』.

78) 김동석(2009. 12. 24), 위의 글.

〈표 4〉 역사 현안 대응의 명분·논리와 운동 중심 조직

사안	명분·논리	중심 조직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통과	아무리 강한 로비도 시민(납세자)의 의견을 앞설 수 없다. 여론을 만들어낼 때까지 철저하게 숨은 공격이었다. 일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했고 워싱턴의 작동방식을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했다.	한인 유권자 센터
요코 이야기 교재 퇴출	한국학교 소속 교사로서, 학부모로서, 납세자(tax payer)로서의 권리를 내세웠다. 우리 학생들을 구하기 위하여 교육자들은 공립학교 교육과정에서 이 책을 배척할 법적·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다.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여과 과정 없이 무차별 전달되고 있다.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
독도 지명 표기 변경 철회	한인 동포들이 유권자로서 의회로 몰려가서 겨우겨우 막아냈다. '미국의 이슈'화로 미국 의원들이 나서게 했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다.	한인 유권자 센터

반면 독도 이슈 등 각종 역사 현안에 대응하여 한국의 정치인, 연구단체와 미국 현지의 총영사관, 각 지역 한인회 등은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조직적·체계적 대응을 주도하기보다는 사태 전개에 따라가기 급급하였다. 이런 사실은 “미국 정부가 독도 표기의 변경을 추진했을 때 솔직히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요코 이야기를 추천도서 목록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한인사회가 앞장서 모두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준 것을 감사한다”라는 현지 총영사의 언급에서 단적으로 살필 수 있다.⁷⁹⁾

VI. 맺음말

79) 이의현(2008. 11. 27), “시민권자협·LOKA USA ‘독도포럼’ 열어, 국회특위 의원들과 총영사·한인회장 등 200여 명 참석 현실과 전략 토론”, 『koreatimes.com』.

최근 동북아 역사 갈등에 대한 재미 한인 동포들의 대응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동북아 역사 갈등이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숙된 대응을 필요로 한다.

미국에서 현안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재미 한인 지도자들은 그동안의 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침착하고 냉정한 분석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각 지역 한인 단체들의 경우 대개 이벤트성 행사에 치중하고 있으며, 본국의 일반적 여론뿐 아니라 미국 주재 외교 당국자도 임기응변의 대처에 골몰하여 뚜렷이 대조를 이룬다. 한때 ‘유대인 비하’ 논란으로 홍역을 겪은 이원복 교수가 “유대인들이 국가 이미지를 저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가 ‘요코 이야기’에 대처한 것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었다”⁸⁰⁾는 언급은 여러 모로 시사가 된다.

재미 한인 사회의 고립성이 한인 정치력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내나 현지 한인 사회만을 겨냥한 각종 이벤트성 행사에 치중하기보다는 “인구로 볼 때 아시아계 중에서도 중국, 필리핀, 인도, 베트남에 이어 5위에 불과한 한인들이 영향력을 키워가려면 다른 민족과 소통하며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의 벽을 허무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이야기가 많다.⁸¹⁾

재미 한인들은 앞으로도 동북아시아 역사 현안과 관련하여 많은 역할이 기대된다. 미국이 이들 현안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80) “가로세로 세계사-중동편’ 펴낸 이원복 교수, 유럽 중심 벗고 ‘세계의 세계사’ 그린다”, 『경향신문』(2007. 3. 22).

81) “뉴욕 한인사회, 시의원 출마 한인후보 텃밭 낙선에 충격”, 『동아일보』(2009. 11. 13).

더욱 그러하다.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 사안은 본질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전범 국가로서의 일본과 전후 처리의 주역이었던 미국에 직결된 문제이다. 미국은 1946년 연합군 사령관 포고령으로 독도를 한국으로 반환할 것을 명시했으나,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상 한국에 대한 반환 목록에서 독도를 누락시켜 논란의 불씨를 남긴 원죄를 지고 있다.⁸²⁾ 따라서 재미 한인들은 미국이 자국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반역사적이고 무책임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⁸³⁾

아울러 '요코 이야기'의 경우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적 배경이 공백으로 남아 있는 것은, 미국에서 자기 나라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과 공범 관계에 있다"⁸⁴⁾는 지적처럼 미국과 무관한 사안이 아니다.

앞으로 재미 한인들은 미국 정부에 대하여 동북아시아 역사 분쟁과 관련한 미국의 책임을 환기함과 아울러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촉구함으로써 분쟁의 해소와 갈등의 치유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거창한 행사 개최나 대형 홍보판 설치 등과 같은 즉흥적·가시적 이벤트에 환호하기보다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세심한 준비 작업과 대처 노력에 협력과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82) "사설-미국이 주장하는 '독도 중립'의 허구성", 『경향신문』(2008. 7. 30).

83) "사설-일본 도발-미국 묵인'의 독도 주권 침탈 구도", 『한겨레』(2008. 7. 31).

84) 요네야마 리사(2008. 2. 28), "내셔널리저서 벗어나야 한일역사 똑바로 보인다 '한일 역사인식 논쟁의 메타히스토리'", 『국민일보』.

해외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할 경우 현지 한인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연락과 협조를 통한 인식과 이해의 공유는 도외시한 채 설익은 논리를 앞세우며 아전인수식 대응을 반복하며 호기나 부린다면 될 일도 그르치기 십상이다. 재미 한인 중심 활동가들은 늘 국내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며 혹시라도 엉뚱한 일이 불거질까 하는 염려를 갖고 있다고 한다.

기초적인 사항의 정비와 관련해 독도 영문 표기에 대해 생각해보자.

국내에서 '독도'의 영문 공식 표기는 'Dokdo'지만, 대부분의 영문 자료는 'Tokdo' 또는 'Tok Island'라고 적고 있다. 다만 『뉴욕 타임스』의 경우 근래 'Dokdo'라고 하면서 일본명인 'Takeshima'도 함께 기재한다. 2004년의 조사이지만, 반크의 구글(www.google.com)을 통한 전세계 웹사이트 대상 'Tokdo'·'Takeshima' 표기 현황 조사를 보면, 2만 4,000개의 웹사이트가 'Takeshima'로 하고 있고, 'Tokdo' 표기 웹사이트는 4,100개에 불과하였다.⁸⁵⁾

이렇듯 간단하고 기본적인 사항부터 정리하고 현안이 불거지기 전에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리고 교육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일어나는 혼선과 시행착오를 불식해나가는 일이 시급하다.

85) 유호곤(2004. 7. 9), "구글에 독도표기 4,000여개 불과, 다케시마 표기는 2만 4천여 건, 해외사이트 대다수 "'독도/다케시마' 병기 계속할 것'", 『koreatimes.com』.

• 찾아보기

- <ㄱ> 204, 206, 210, 211, 214
- 가쓰라 다로 282
- 가와카미 소로쿠 284
- 갑신일록 305
- 갑신정변 278, 279, 281, 283~285, 287, 290~294, 296, 299~301, 305, 306, 309, 310, 312
- 강제동원 159
- 강제동원생환자 159
- 강제동원희생자 159
- 강제연행(deportation) 165
- 개인청구권 164
- 거문도사건 291, 294, 297
- 거문도점령사건 295
- 경제 226, 238, 243, 245
- 경제전강조주간 23
- 계획송환 122
- 고노 담화 192
-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 179, 181
- 고철 25, 34, 45, 54~56
- ‘공(公)’과 ‘개(個)’ 197
- 공산당 126
- 과거 전쟁 189, 191, 193~196, 200~202, 204, 206, 210, 211, 214
- 과거청산 153
- 관내지역 126
- 교과서 문제 224, 258, 260, 261
- 구로다 기요타카 280
- 구호정책 136
- 국가무담책 164
- 국가책임 149
- 국가총동원법 169
- 국공유재산 124
- 국민당 126
- 국적조항 161
- 국적포기운동 153
- 국제관계 226, 238, 251
- 국제노동기구(ILO) 165
- 국제법 111
- 군국주의 146
- 군속 122, 169
- 군인 122, 169
- 궁도죄 136
- 귀환 109
- 귀환자 108
- 귀환환경 121

극단적인 이분법 201~203

근대 111

급부금 155

급진개화파 281, 288, 300, 307

기사의 구성 226

기사의 논조 226

기사의 중심 231

기사의 표현형식 226, 233

기자클럽 221

김학순 152

<ㄴ>

남조선과도입법의원 140

남한 122

노무 169

논조 234

뉴스 프레임 231

<ㄷ>

다케조에 신이치로 281

대내적 진후처리 160

대량강간 69

대련(구 관동주) 123

대만 122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 150, 160, 166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 152, 166

도서분류 주제어 변경 342

도쿄대공습 161

독도 문제 224, 256, 257

독도 주권표시 변경 342

독도 지명 표기 324

동북지역 126

동아시아사서협의회 한국자료분과위원회 345

동아일보 21, 22, 28~32, 34, 42~44, 48, 50, 53, 59

동원 110

동화협회 144

<ㄹ>

러일전쟁 287, 289, 298

로렌즈 폰 슈타인 298

롤랑 바르트 187, 216

<ㄴ>

마쓰카타 마사요시 282

마이클 혼다 의원 328

Martens 조항 77

만국공법 111

만주 123

만화 전략 179, 185, 201, 203, 204, 208, 213, 214

메이지유신 313

멜렌도르프 307
 모집단 224
 문화·스포츠·교육·종교 226, 238, 248,
 249
 미국 의회도서관 342, 346
 미국 지명위원회 342, 347, 354
 미수금 160
 미수금피해자 159
 민간인 122
 민간장용 166

 〈ㅂ〉
 배한정서(排韓靜書) 127
 법령 2호 124
 법령 33호 124
 베르사유조약 146
 보상책임 165
 보수 225
 보수우익 179, 185, 186, 188, 201, 214
 복원(復員, 제대)군인 107, 130
 복원자 145
 부담조정법 165
 부들러 304
 북미 동아시아도서관협회 한국분과위원회
 354
 북일관계 226, 252
 북한 123, 125

분석단위 224
 불편부당 220

 〈ㅅ〉
 사유재산 124
 사유재산 처리 121
 사할린 123, 129
 사회 226, 238, 246
 삭풍회 152
 산케이신문 223
 새로운 역사교과서 278, 279, 308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181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113
 생활보호법 146
 성노예 64
 성폭력 63
 세궁민 137
 세화회 150
 소개민 107, 130
 소련군 125
 소련지구 송환에 관한 미소간 협정 129
 소유권 124
 손진두사건 152
 송환정책 167
 시효 164
 식민 110
 식민기구 120

- 식민자(colonial settlers) 107
- 식민지 110
- 식민지 관련 문제 238, 265
- 식은조사월보 21, 22, 29, 31~35, 44, 46, 59
- 신고마니즘선언스페셜 전쟁론(新ゴーマニズム宣言SPECIAL 戦争論) 180
- 신국가건설 135
- 신뢰도 227
- 신생정부 120
- 신화론 187
- 〈○〉
- 아사히신문 223
- 아시아여성기금 65
- 애국부인회 26, 54
- 야마가타 아리토모 280
- 야스쿠니 190, 192, 193
-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참배 문제 224, 228, 231, 261, 262
- 에노모토 다케야키 301
- 에번스 의원 328
-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152
- 역사 갈등 323
- 역사교과서 237
- 연방원호법 165
- 옛장수 27, 28
- 오가와 마타지 282
- 오야마 이와오 282
- 오쿠마 시게노부 295
- 외교정략론 284, 286, 288~291, 294, 295, 297, 298, 300, 302, 303, 307~309
- 요미우리신문 223
- 요시다 기요나리 281
- 요코 이야기 323, 332, 334, 335, 338, 352, 357
- 요코 카와시마 왓킨스 331, 338~341
- 원폭피해자 161
- 월남민 141
- 월요회 285
- 위로금 160
- 위안부 63, 152, 169
- 유용(留用) 정책 123
- 유족 146
- 유족의 범위 159
- 육해군 확장에 관한 재정 상신 285, 289, 312
- 은급법 146
- 은급법특례심의회 147
- 응급구호 121
- 응징사동맹 151
- 의도적 표집 224
- 의료지원금 160
- 이노우에 가오루 280

- 이노우에 가쿠고로 288
- 이와쿠라 도모미 280
- 이주 110
- 이토 히로부미 280
- 이흥장 281, 311
- 인구이동 110
- 인도에 반하는 범죄 69
- 인민원호회 143
- 인민위원회 125
- 인방병비략 282, 283
- 인양자 145, 154
- 인양자급부금등지급법 154
- 인양자급부금제도 148
- 인양자단체전국연합회 143
- 인양자 등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 157
- 인양자특별위원회 143
- 일괄송환 122
-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323~325, 330, 350
- 일본본토 115
- 일본인의 역사교과서 279
- 일본 저널리즘 220
- 일본제국 109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 153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60
-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167
- 일화예금령 129
- 일화적 프레임 232
- 임오군란 280, 282~285, 288, 290~294, 301, 303, 306, 310
- 입법부작위 166
- 〈ㄷ〉
- 자유당 288
- 자유당사 305
-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 335~337
- 재미 한인 323, 330, 331, 333, 342, 350, 355, 357
- 재산권 124
- 재외재산 107
- 재외재산문제심의회 149
- 재외재산보상요구운동 149
- 재일 한국인 문제 226, 248
- 전몰자 146
- 전상병자 146
-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 146
- 전재동포 112
- 전재동포구제회 143
- 전재민 107, 130
- 전재민원호법 140
- 전재자 145
- 전쟁책임 147

전쟁피해자 107, 131
 전쟁피해자(희생자)론 145
 전쟁희생자 131
 전후 민주주의 189, 194~197, 200, 201,
 205, 214
 전후보상 108
 전후책임 108, 147
 전후처리 113
 점령당국 120
 점령지 110
 접수(몰수) 125
 정착원호 136
 조선근로동원원호회 151
 조선변법 8개조 281
 조선외무판법 8개조 281, 285, 287~292,
 294~296, 298~303, 307, 309~311
 조선전재동포원호회 139
 조선정략의견안 287~291, 295~297, 299,
 307~309
 조선총독부 169
 조선폐품통제주식회사 25, 28
 조약개정 289, 302, 313, 314
 중군위안부 문제 224, 257, 258
 주제어 변경 324
 주제적 프레임 232
 주한미군정 122
 중국본토 122
 중앙일한협회 144
 중일전쟁 17, 19~21, 23, 28, 30, 43
 지명위원회(BGN) 346
 GHQ 122
 지원법 130, 170
 진보 225
 진상조사 169
 진실과 화해위원회 87
 진인방병비략표 282, 285, 287~290, 295,
 298, 311, 312
 장병령 282
 < ㄱ >
 차별금지원칙 95
 참모본부 283
 천진조약 279, 281, 284, 285, 289, 292,
 295, 296, 298, 301, 303, 307
 천황 282
 천황제 절대주의 283
 창국교섭심심사 310
 창국정토책안 286, 287
 청불전쟁 281, 301, 310
 청일전쟁 283~287, 289~291, 293, 294,
 296~299, 312, 313
 총독부 식산국 32, 41, 44, 56, 57
 출입국 관리 121
 침략주의자 168

<ㄱ>

캐나다재판 149

쿠릴 123

<ㄷ>

태평양전쟁유족회 152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
원에 관한 법률 158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
회 159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152

태평양지역 123

특별교부금 157

<ㄴ>

파크스 304

폐물이용보국회 23, 43

폐품공출 43

폐품이용갱생회 24, 44

폐품회수 20~26, 28~31, 34, 37, 42~45,
47~59

폐품회수조합 26, 28

폐품회수협회 47, 48

풀뿌리 정치력 326

‘피해자’ 판정 159

<ㄹ>

한국 국내 정치 226, 238, 241, 243

한국 멸시관 235

한국피폭자협회 152

한리말약사건 281, 291

한성순보 306

한성조약 281

한인 네트워크 324, 358

한인 유권자센터 325, 350, 351

한인 풀뿌리 운동 330, 350

한일관계 226, 238, 240, 253, 254

한일기본조약 219

한일 어업협정 224

한·일 어업협정 문제 254, 255

한일협정 153

해방전쟁 191, 202

해외 귀환자 141

해외인양자전국대회 142

행상감찰표 27

헤이그협약 77

호치신문 303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46

근현대 한일관계의 제 문제

초판 1쇄 인쇄 2010년 12월 15일

초판 1쇄 발행 2010년 12월 22일

지은이 김인호 · 장복희 · 이연식 · 강기철 · 조규철 ·
김춘식 · 강태웅 · 오일환 · 최석완 · 류승렬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화 02-2012-6142

팩스 02-2012-6187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0

ISBN 978-89-6187-207-2 93910

-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